

발간 등록번호

11-9900363-000017-14

남북대화

제69호

('02.12 ~ '03.11)



남북회담사무국

<제 목 차 례 >

I. 2003년 남북대화 개관	9
II. 대통령 특사 제2차 방북	15
III. 남북장관급회담	21
1.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21
2.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27
3.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35
4.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41
IV. 군사분야회담	49
1.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49
2. 제6~7차 남북군사실무접촉	52
3.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	55
4. 제9~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	58
5. 제1~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	60
V. 남북경제분야 회담	65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65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71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78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85
5.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92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개관	96
7. 남북철도·도로연결 제3차 실무접촉	98
8.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101
9.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104
10.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107

1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110
12.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114
13.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	117
14.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121
1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128
16.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139
17.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147
18.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150
VI.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55
1. 남북직접자실무접촉	155
가. 개 요	155
나. 제2차 남북직접자실무접촉	155
다. 제3차 남북직접자실무접촉	160
2.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회의	165
가. 개 요	165
나. 제1차 추진단회의(2.13~15)	165
다. 제2차 추진단회의(3.3~5)	168
라. 제3차 추진단회의(8.21~23)	169
3. 제5차 남북직접자회담	172
4.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179
VII. 경수로건설사업	189
1. 경수로 건설현황	189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추진	192
3. 새로운 북한 핵문제 대두 및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199
<부록 1> 남북관계일지	207
<부록 2> 남북회담 합의서	247

I. 2003년 남북대화 개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조성되어 오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 발전되면서 남북대화는 2003년 한해도 활발히 진행되어 총 37회의 각종 남북회담이 열렸다.

2002년 말 북한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소 긴장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목표를 두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하였다.

먼저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 방문(1.27~29)을 추진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을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경주되었다. 정부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1.21~24, 서울)과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4.27~30, 평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려를 상세히 전달하였다. 또한 다자회담의 유용성·시급성·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방법임을 설득하였다.

북한은 핵문제를 처음에는 미국과의 문제로서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우리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을 통해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7.9~11, 서울)에서는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정신은 제1차 6자회담(8.27~29, 북경)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이후에도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10.2), 핵역지력 공개 가능성 시사(10.16)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10.14~17, 평양)을 통해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제2차 6자회담의 조속한 호응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방향임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적대시정책 및 압살정책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비록 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남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교환하는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가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대화가 지속되는 그 자체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제2차 6자회담 참여 의사를 표명(10.30)하였고, 서면불가침 담보를 고려할 용의가 있으며, 동시 행동원칙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11.15)하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관계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장관급회담(4회)을 통해 7~8차 이산가족 상봉,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참가,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등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도 합의하였다.

경제분야의 회담은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남북관계가 총론적인 차원을 벗어나 구체적인 이행문제로 들어섬에 따라 분야별 실무접촉이 많아졌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4회)를 비롯하여 남북경제제도실무협의회(3회),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2회) 및 실무접촉(5회), 남북해운실무접촉(1회), 청산 결제를 위한 실무접촉(1회), 원산지확인실무접촉(1회) 등 총 17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경제분야의 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에서 철도 궤도 연결(6.14), 개성공단착공식(6.30), 금강산 육로·해로관광 재개, 4대 경협합의서 발효(8.20), 식량차관 분배 현장방문 등과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직접거래 방식 확대 및 협의사무소 개설(11.8), 경제시찰단의 상호방문, 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설 등을 합의 하였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측의 자재·장비 제공, 우리측 기술인원들의 현장지도, 공사현장 상호방문 등을 합의하였다.

군사분야의 회담은 철도-도로 연결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접촉이 계속되었다. 남북군사실무접촉(4회)과 남북군사실무회담(1회) 그리고 동해선 통신선연결실무접촉(2회)이 개최되었으며. 군사분야의 회담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문제를 합의하였고, 군 인사의 공사현장 상호방문, 남북관리구역내의 초소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하였다. 다만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다루게 될 군사당국간의 고위급 회담개최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인도분야에서는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 단회의(3회)와 남북적십자회담(1회) 및 실무접촉(1회), 그리고 3차례의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되었다. 특히 제4차 적십자회담 이후 상호 이견으로 1년간 담보상태에 있던 면회소 건설 문제를 전담건설 하는 방식으로 합의(11.6)하였다. 면회소 건설은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증가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창구가 상실화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1회)을 가졌다.

한편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회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관계가 과거 대결과 불신의 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이에 걸맞는 회담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의 파행적인 회담운영, 상대방에 대한 신뢰훼손을 지양하면서 실질적인 의제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남북회담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비용절감과 실질협의를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무회담의 경우 개성 또는 문산 지역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회담을 추진하였다. 또한 회담의 장소도 회담의제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서울, 평양을 벗어나 개성, 속초, 금강산 등으로 유연하게 정하였다. 또한 회담행사도 만찬 차량제대의 편성 회담장의 운영 등을 보다 내실있고 경제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I. 대통령 특사 제2차 방북

1. 방북 배경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력 외교를 전개하였다.

2002년 10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2003년 1월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에 특사를 파견하는 한편 미국에도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을 보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조율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통령 특사의 북한 파견을 추진하였다. 우리측은 2003년 1월 10 일경 북한측에 특사 파견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2003.1.21~24)중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왔다.

남북 양측은 대통령 특사의 방북 합의사실을 1월 24일 오후 함께 발표하였다. 우리측 발표는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 청와대 대변인 발표 요지 >

-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월 22일부터 평양을 방문함.
- 임동원 특사의 방북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을 대표해서 이종석 인 수위원이 함께 감.
- 이번 특사방문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핵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현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임성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이 동행함.

2. 진행 경과

대통령의 특사 방북은 2003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임동원 특사 등 일행 8명은 2002년 4월 제1차 방북시의 전례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 귀환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체류기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김용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북한측 고위 인사들과 현안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에서 중요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리측에 양해를 구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내용을 전달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통령님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특사를 보내 따뜻한 조언이 담긴 친서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이 말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측 임동원 특사는 방북기간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사는 북한측이 취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핵의혹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과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다.

또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측이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NPT 탈퇴 선언 철회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등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농축우라늄 계획 의혹의 해명과 이의 폐기를 선언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대화에 들어갈 것을 권고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우리측 설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이제까지 밝혀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였다. 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현 단계에서는 개발할 의사도 없다”, “이를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용의가 있다”, “핵문제는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쌍방이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우리측이 남북 군사당국간에 군사분계선 통과문제가 해결된 만큼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를 촉진하여 2월에 완료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이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차기정부도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며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북한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당선자측 대표인 이종석 인수위원은 당선자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핵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남북장관급회담

1.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9차 장관급회담은 제8차 회담 합의에 따라 2003년 1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1월 6일 대북전화통지문을 보내 제9차 회담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월 9일 답신 전화통지문을 통해 1주일 정도 연기하여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

한편 북한측은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탈퇴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측은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침해당할 수 없다”면서 NPT탈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측은 같은 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NPT 탈퇴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응해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측이 IAEA에 의한 핵동결 해제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으며, 당면한 제9차 회담의 전망도 극히 어두워지게 되었다.

정부는 진행중인 남북화해협력사업을 계속 이어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측이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입장변화를 설득·추구·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리측이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는 대북전화 통지문을 1월 15일 발송함으로써 제9차 장관급회담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2)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경협사업 등 남북 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핵개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북한측이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무기 개발대책을 세운 적도 만들 의사도 없으며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계획만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의 산물로서 북미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선군정치를 통해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동족인 남측이 아니며, 남측은 미국에 대해 진정한 대화와 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선 「임시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이미 제시한 문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철도-도로 연결 일정,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및 면회소 설치 등에 대한 우리측 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외세의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이 민족공조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귀측의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화해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귀측은 최근 핵동결을 해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음.
 - 귀측의 이러한 조치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남북 쌍방은 지난 '92년 민족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거나 그 잠재력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재처리 시설과 우리농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임.

- 남과 북은 이러한 민족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귀측은 국제 사회로 하여금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실천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임.
- 우리측은 귀측에서 분명하게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선언하고, 시급하게 핵동결 해제조치를 원상복구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 제9차 장관급회담은 몇 가지 현안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책임이 있음.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문제, 개성공단을 조속히 건설하는 문제,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산가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화하는 문제, 군사분야에서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진전된 합의가 있기를 바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제 9 차 북남상급회담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달고 있는 매우 복잡한 정세속에서 열리고 있음.
 - 쌍방대표단은 이번에 6.15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주역으로서 올해의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 라는 대명제에 충실하게 대화와 협력,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담보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첫째로, 북남쌍방이 6.15 북남공동선언을 변함없이 민족공동의 통일 리정표로 틀어 쥐고 나갈데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조성된 정세하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를 우려하는 온 겨레에게 밝은 희망과 굳은 신심을 안겨 주게 되기를 기대함.
- 둘째로, 북남쌍방은 조선반도의 참여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공조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임.

-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위험은 민족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음. 외세에 의한 평화의 유린은 우리 북쪽에만 재난으로 되지 않으며 그것은 남쪽에도 꼭 같이 재난으로 됨.
- o 셋째로, 북남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자주적 대(대)외를 확고히 세우고 북남사이에 합의된 문제들을 중단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 (1.24)

남북은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측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남북 양측은 1월 24일 새벽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교류협력사업의 계속 추진 △차기 회담 일정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우리측은 종결발언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안보 현안문제 해결과 화해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북한측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측은 남북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합의에 충실하고 동요없이 완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긍정 평가, 향후 이를 계속 준수·이행
- 핵문제에 대한 쌍방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중인 교류 협력 사업의 계속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회의(2.11 ~14, 서울) 개최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4.7~10, 평양) 개최

2.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0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제9차 회담시 합의에 따라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측이 4월 7일까지 실무절차 협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4월 7일 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보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정세현 수석대표는 대북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4월 7일부터 평양에서 개최기로 한 제10차 장관급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려울수록 남북간에 대화를 갖고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안에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4월 1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이른바 「초경계태세」 때문에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제10차 회담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4.21 대북전통문을 통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3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제10차 회담이 새정부 「평화번영정책」의 구상과 함께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뒤 대화의 틀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협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처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측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원칙과 신뢰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제 남북관계가 전술과 기교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회담에서 남북은 전체회의 3회를 비롯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포함한 6개항의 합의사항을 타결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참여정부가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에 변경이 있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조성발(내각사무국 참사)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만길(문화성 국장) 허수림(민정련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 지도국 처장)

제10차 장관급회담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장관급회담이 10차례 개최됨으로써 역대 남북회담 중 두 자리 숫자 개최 회담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측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진행중인 대화가 계속 이어진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4.27)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새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측의 핵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제10차 장관급회담 직전에 북경 3자회담(4.23~24)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한측에 대해 이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새 정부가 6.15 공동선언 준수·이행을 확약하고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면서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교류활성화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우리측은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화해협력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함.
- 평화번영정책은 남과 북이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공존공영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굳건히 다져 나가는 정책임.
- 앞으로 남북이 함께 지켜야 원칙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남북화해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한층 발전시켜야 하겠음.
 - 둘째,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원칙과 신뢰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셋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
 - 넷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제도화해야 함.
- 최근 귀측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른 데 대해 먼저 깊은 유감을 표명함.
 -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만일 귀측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나아가 제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

- 우리측은 귀측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우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귀측이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함.
-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관국들과도 적극 대화하고 협력할 것을 권고함.
 -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대화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대화의 길이 막히면 사태는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악화될 것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오늘의 정세하에서 외세의 일방주의적인 강권을 배제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더 긴절한 과업은 없음.
- 이번 회담에서 북남쌍방이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리행 의지를 온 민족앞에 다시금 확약할데 대한 문제, 북남 쌍방이 대남, 대북 텔레비존방송과 분계연선지대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소리방송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이미 민간급에서 합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올해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당국이 적극 밀어 주며 통일대축전의 폭을 넓혀 민간과 함께 당국도 참가하는 통일대축전으로 정례화할데 대한 문제, 6.15공동선언발표 3 뉘전으로 동서해선 철도·도로런결 착공식과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식을 의의 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 북남당국이 쌍방적십자단체들사이에 협의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는 금강산 흠어 진 가족, 친척면회소건설착공식을 책임지고 적극 밀어 주며 그 착공식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함.
 - 또한 이미 합의하고 추진하여 오고 있는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령해통과와 우리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어민들이 리용하는 사업을 조속히 협의락착할데 대한 문제,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하여 쌍방

민간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협력사업들을 적극 밀어 주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할데 대한 문제, 특히 남측이 우리측 아태가 남측 현대아산과 추진하기로 한 일련의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 바람.

(2) 제2차 전체회의 (4.28)

제2일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첫날 전체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측이 기회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핵활동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고 언급해온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측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또한 북한측이 유관국과 대화를 시작한 만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함께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들을 협의·해결할 것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양측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3) 제3차 전체회의(4.30)

남북은 두 차례 전체회의 이외에도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었다.

우리측은 회담 마지막 날까지 핵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핵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간에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며,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과 북한측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남북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제10차 장관급회담을 종료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종결회의에서 우리측 강원도 평창의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
-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이 잘 진행되고 정리화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한측 참가문제를 협의·추진
- 남과 북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19~22간 평양에서 개최
-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
 -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빠른 시일내에 개최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9~12간 서울에서 개최

3.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사항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19~23, 평양)와 제8차 군사 실무접촉(6.4, 판문점), 제5차 철도-도로실무접촉(6.7~9, 개성), 제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7.2~4, 문산),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실무 접촉 등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특히 철도-도로 실무접촉과 실무협의회는 개성과 문산에서 출퇴근 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행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이 군사분계선상에서, 6월 30일에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각각 진행되었다.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당초 계획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제8차 경추위에서 합의한대로 쌀 40만톤과 비료 20만톤의 대북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측은 베이징 3자회담(4.23~24) 이후 추가적인 악화조치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담 직전인 7월 8일 “핵재처리를 완료했음”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11차 회담의 최우선 목표를 북한 핵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두었으며, 최소한 남북대화를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1차 회담은 제10차 회담시 합의에 따라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7.10)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개발 불용,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및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일·중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을 북한측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집중적으로 촉구하였다.

특히 △미·일·중·러 등 국제사회가 모두 다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있다는 점(불가피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유용성)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히 다자회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시급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안전문제도 보장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남북경협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문제, 남북사회문화협력 추진위원회 구성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안들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주적론 등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공조를 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문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자기측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귀측의 핵문제에 의해 한반도 평화에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핵문제를 둘러싼 내외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귀측은 최근 이른바 '핵 억제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음.
 - 귀측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음.
- 귀측이 핵개발을 즉각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함.

- 핵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미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
귀측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귀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
 - 우선 확대 다자회담을 지체없이 수용하기 바람. 또한 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입장에서 귀측이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진심으로 권고함.
- 남북간에 약속한 사항들이 실천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남북이 화해협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들부터 성의를 다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남북이 이미 채택한 바
있는 4개 경협합의서들을 이른 시일내에 발효시키는 절차를 완료하고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도 보장해 주어야 하겠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과 남은 오늘의 엄중한 실태를 바로 보고 이에 책임적으로 대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지금 남측군부에서 <주적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면서 동족
사이에 대결을 고취하고 있음.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도움을 주고 동족의 희생을
가져 올뿐임.
- 북과 남이 민족공조로 미국에 의해 조성된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며 북남화해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당면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함.
- 첫째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막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평화수호의지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
자는 것임.
 - 둘째로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끌어 가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에 민족공조로 대처해 나가자는 것임.

- 셋째로, 북과 남은 대북, 대남텔레비존방송과 전연지대방송뿐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든 방송을 2003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임
- 넷째로, 북과 남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에서 조직하는 8.15광복의 날 행사가 온 민족의 반전평화와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대축전으로 되도록 당국이 적극 협력하자는 것임 .
- 다섯째로, 북과 남은 쌍방적십자단체들이 민속명절인 올해 한가위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흠어 진 가족, 친척상봉과 면회소건설 착공식을 진행하도록 협조하자는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 (7.12)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타결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의 지속적인 설득에 힘입어 쌍방은 북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북한측이 다자회담 참여 등 대화를 통한 해결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쌍방은 남북관계 진전문제와 관련 △추석계기 제8차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 구성 △민간단체들의 8.15 광복절 행사 협력 △제6차 경추위(8.26~29, 서울) 및 제2차 장관급회담(10.14~17, 평양)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회담기간 중 4개 경협합의서 발효절차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모색
-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8.26~29, 서울) 개최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
 - 이 회의에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의 교류협력 및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협의
-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 적극 지원
- 제12차 장관급회담 '03.10.14 ~17 평양 개최

4.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1차 회담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고, 후속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오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남북간 화해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9월 1일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재개되고, 9월 15일에는 평양관광이 시작되었다. 제1차 경주위에서 합의한대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식량분배 현장확인도 북한측의 협조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개천절 행사를 비롯 유경정주영체육관 개관행사 등 민간차원의 교류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담 직전에 이르러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다. 북한측이 이른바 6자회담 무용론과 핵억제력 강화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0월 2일에는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재처리 플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용도변경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 제반사항을 점검·보완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제12차 장관급회담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측은 10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장관급회담 북한측 대표를 일부 교체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김만길·조성발

대표를 대신하여 최영건 건설건재공업성 부상과 전중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새로이 회담대표에 합류하게 되었다. 북한측은 또한 최영건 대표가 기존 박창련 위원장 대신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북한측 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0.15)

우리측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한 발표는 사실여부를 떠나 북한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 관련국가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발표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조치나 발언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제1차 6자회담 합의사항에 북한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환기시키고 6자회담에 참가했던 나머지 국가들이 2차 회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측도 조속히 성의를 가지고 제2차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함께 우리측의 핵불용 및 평화적 해결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북한측이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남북경협이 차질없는 추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확대 및 제도화 △이산가족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남북민간교류가 활발하다고 평가하면서도 8.15행사 등에
서의 북한체제 비난문제, 개성공단 공사 부진, 이산가족면회소 협의
부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8.15 민간행사,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거론하면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반복단체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개성공단공사가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
하여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표본사업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밖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요구하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내년 추석까지 완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항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것이라고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귀측에서는 핵재처리를 완료했다고 하면서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표를 하였음.
- 만일 귀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남북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임.

-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핵과 관련하여 귀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음.
- 우리측은 귀측의 핵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 제2차 6자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진심으로 촉구함.
 - 아울러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조치와 위협적인 발언도 자제해야 함.
- 아울러 진행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체계화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기대함.

<북한측 기초발언 요지>

- 남측의 일부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중상하고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까지 모독하는 망동들이 벌어졌음.
 - 이와 같은 란동들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북남합의서의 기본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임.
 - 남측의 극우보수단체들의 분별없는 란동이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우리측은 그에 대해 여러차례 경종을 울렸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
 - 문제의 심각성은 남측당국이 그러한 란동을 묵인비호 하고있는데 있음.
 - 남측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보고 사태를 근원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책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제11차 북남상급회담이후 6.15공동선언리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한 우리측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로, 상대방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중상모독하며 북남관계의 기초를 허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하는 것임.
 - 둘째로, 민족경제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실속있게 추진

하는 것임.

- 셋째로, 6.15공동선언의 제8항의 요구대로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는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10.17)

첫날 전체회의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점검·보완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제12차 회담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공식 회담 및 접촉은 물론, 만찬·환담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모든 발언기회를 통해 북한측에 「핵문제」 해결을 거듭해서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선 북한측의 핵재처리 완료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先핵포기」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회담기간중에 나온 핵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10.16, 외무성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이러한 조치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바로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북측을 불신하고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남북대화 무용론과 남북관계 중단까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하였다.

즉 외무성 발표는 북한측의 대화에 의한 해결 입장을 표명한 것인 바, 미국이 先핵포기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최근 뉴욕접촉까지도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측의 대화의지를 밝히는 수단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어떠한 대화의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서서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회담기간 내내 북한측이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측의 진전된 태도변화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와중에서 북한측의 「핵억제력의 물리적 공개」 시사 발언이 불거져 나오는 등 회담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더욱이 북한측은 △반북단체 해체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측은 남북대화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추후 회담 일정에만 합의하고 제12차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
- 진행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11 월초 평양에서 개최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2004.2.3 -6 간 서울에서 개최

IV. 군사분야회담

1.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가. 개 요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본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 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는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 상에서 임시도로 접속지점을 본도로 노선으로 변경·통행할 것을 제의하고 북한측이 동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를 제의함에 따라,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3년 9월 17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쌍방은 임시도로 접속지점 변경을 위해 지난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시('03.1.27) 채택·발효한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이하 ‘잠정합의서’로 한다) 중 임시도로 연결지점의 군사분계선 개방을 규정한 제1항을 수정·보충하는 ‘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 표	문성목 (국방부 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김지호 (합참남북교류협력관, 대령)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길강섭 (경의선·동해선 계획관, 중령) 김경중(건교부 남북교통과장)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김상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 경과

회의에서 쌍방은 기초발언을 통해 ‘보충합의서’에 관한 자기측 기본입장을 밝히고, 합의서(안)을 상호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추가적인 합의서 채택없이도 임시도로 접속지점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아울러 임시도로 접속지점이 변경되더라도 ‘잠정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임시도로를 본도로 노선으로 변경하게 되면 군사분계선 개방구간도 변경해야하므로 ‘잠정합의서’를 수정·보충하는 추가적인 합의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보충합의서’(안)을 상호 교환한 후, 수 차례에 걸친 문안 조정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본 합의서는 서명·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되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은

2003년 9월 18일부터 불편한 임시도로 대신에 노반작업이 완료된 기본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충합의서 요지>

- o 쌍방은 2003.1.27 체결한 잠정합의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
 - 쌍방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
 -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 10m, 서해 20m)을 개방
 - 이미 이용하던 임시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들은 폐쇄

2. 제6~7차 남북군사실무접촉

가. 개 요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02.8.27 ~30)에서 동해선 임시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02.12.15~17)에서 철도·도로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임시도로 개통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2002년 12월 23일 '평화의 집'에서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2003년 1월 27일 '통일각'에서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주체와 관련한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우리측이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는 원칙하에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북이 직접 통보하여 처리하는 간소화된 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 북측이 수용함으로써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발효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목 (국방부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표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정영도 (군정위연락단 부단장,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이병열(인민무력부, 상좌) * 제7차 접촉시 이병렬 → 임창남으로 교체

나. 진행 경과

2002년 12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경의선 북한측지역 철도공사 및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합의서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관리구역내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리구역은 엄연한 비무장 지대의 일부이고 따라서 남북관리구역내에서도 정전협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쌍방이 재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먼저 남북간 지뢰제거작업의 검증이 무산된데 대해 우리측을 비난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을 합친 하나의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제시한 합의서 안을 통해 “남북관리구역내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는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은 23시 20분까지 회의를 계속하면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측이 '통행에 관한 절차와 안전 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반대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미진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 이후 쌍방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쌍방은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과 관련된 절차상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부합되게 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2003년 1월 27일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관리구역 통행에 관한 문제는 현행 판문점에서 적용되고 있는 남북간의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통행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는 남과 북이 직접 통보하여 처리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 제시안을 수용함으로써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을 채택·발효시켰다.

<잠정합의서 요지>

-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해야 함.
 -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
-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

3.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

가. 개 요

북한측은 2003년 5월 30일 우리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철도·도로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정형에 관하여 호상료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 토의를 위하여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우리측이 수용함으로써 2003년 6월 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2003년 6월 11일 각각 10명의 인원이 동·서해지구 철도·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내용의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확인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계획된 6월 11일 상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남북 군인들이 비무장지대 상대측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통행

절차는 지난 1월 27일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시 합의한 임시도로
통행절차가 적용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 (국방부 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 표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정영도 (군정위 연락단 부단장,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 경과

회의에서 우리측은 먼저 철도·도로연결 공사현장의 “정형에 관한 호상료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측에 문의하였는바, 북한측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상호방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철도·도로노반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반적인 공사를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쌍방의 공사진행상황을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동 계획에서 남북이 동·서해지구를 동시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하루동안 상호 방문을 실시하여, 공사진척상황, 구조물설치상황, 지뢰해제 등 전반적인 철도·도로 연결공사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상대측의 설명을 청취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기본발언에서 철도·도로연결에 대비하여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에 따른 남북관리구역내 경계초소 설치와 동해선 통신선 연결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북한측 어선들의 NLL 침범에 대한 북한측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다. 공사현장 상호방문과 관련해서는, 먼저 방문인원에 군관계자 이외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민간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방문날짜는 6월 11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방문인원을 군관계자로 한정할 것을 고수하였으나 마지막에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 확인계획」에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작업 현장확인계획 요약▶

- 날 짜 : '03. 6. 11
- 시 간 : 동해지구 남측지역 09:00 ~12:00
 북측지역 14:00~17:00
 서해지구 북측지역 09:00~12:00
 남측지역 14:00~17:00
- 확인인원 : 동·서해지구 쌍방 각각 10명
- 방문구역 : 쌍방 남북관리구역 전 구역

4. 제9~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

가. 개 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 제3조 6항은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 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초소를 설치하며, 그 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은 건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경비초소의 건설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우리측은 2003년 11월 8일

남북이 초소의 규모와 형태를 같이 하고 공통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2003년 11월 14일에 제9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평화의 집’에서, 2003년 11월 28일에 제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이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하여 초소의 형태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경비초소의 기능 및 운용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회담운영과장,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대표	이명훈(1사단 부사단장, 대령) 정영도(군정위 연락단 부단장, 대령)	김상남(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 경과

제9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관리구역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 채택전까지 잠정합의서로 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경비초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구적이므로 잠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경비초소의 규모와 형태(3.5명, 팔각정), 주간근무원칙 등에 합의

하였으나, 초소근무인원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상대측 제시안에 대한 검토 후 다시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주일 후에 개최된 제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합의서를 잠정합의서가 아니라 본합의서로 하는 등 북한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수정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북한측도 경비초소 근무인원을 3명으로 하는 등 우리측 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제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초소의 규모와 형태에 최종 합의하고, 교통통제대 설치, 근무인원3명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경비초소 설치·운용시기 초소의 기능 등에 대해서는 쌍방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하여 조속히 동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5. 제1~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 제4조 4항은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하며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다음” 연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선 남북 공사 현장간 통신선은 2002년 9월 25일 연결되었다. 상기 합의서에 따라 우리측은 지뢰제거 작업이 완료(’02.12.11)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해선 통신선 연결을 북한측에 제의하였지만 북한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03.6.4)시 우리측은 다시 동해선 통신선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북한측도 동의함에 따라 2003년 6월 20일 제 8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이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지점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는 쌍방 동해지구 공사현장 군사실무책임자가 참석하였는바, 우리측에서는 임봉래 대령 외 4명이, 북한측은 박기용 상좌 외 3명이 참석하였다. 제 8차 동해선 통신선연결실무접촉에서 쌍방은 통신선 연결구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 이후 남북은 문서교환방식 등으로 협의를 계속하였으며, 제9차 남북군사실무접촉('03.11.14)에서 쌍방은 제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3년 11월 18일 북한측에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11월 21일 제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11월 19일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제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이 2003년 11월 21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지점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동해선 통신선연결 실무접촉에서는 쌍방 동해지구 공사현장 군사실무책임자가 참석하였는바, 우리측에서는 임봉래 대령 외 4명이, 북한측은 엄창남 상좌 외 4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02.9.17) 제4조 4항에 따라 동해지구 쌍방 공사현장 사이의 통신 보장을 위하여 2003년 12월 5일 유선통신 2회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신선 연결지점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 도로연결지점 동측으로 하고, 쌍방이 각기 군사분계선 후방 250m 지점에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함 사이를 통신케이블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V. 남북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가. 개 요

2002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한 핵문제와 철도·도로연결 및 개성공단건설 착공 문제 등 남북간 기 합의된 경제협력 현안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협의하였다.

회담은 북한 핵문제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문제 등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내용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고 종료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윤진식(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2.12)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에 관한 양측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각각의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남북 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반도 안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협사업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경의선 철도를 빠른 시일내에 연결하고 동해선은 합의된 시일내에 완료하며, 개성공단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남북 양측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진강공동조사를 3월중 실시하고, 4개 경협합의서를 조기에 발표시키며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키는 한편, 식량 및 자재·장비 제공 관련 분배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와 관련해서는 「동시연결·동시개통」 원칙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해선의 온정리-저진간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해운협력,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등 경협사업과 관련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북측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남과 북이 이제까지 합의한 사업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경제협력 확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하는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하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첫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문제
 -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동해선도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여 합의된 시일내에 연결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열차운행합의서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신호·통신·전력 계통의 자재·장비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개성공단 건설 문제
 - 착공식은 쌍방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일정이 잡히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하겠음.
 - 우리측에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공단건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도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조기 제정과 건설비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음.
- 셋째,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
 - 늦어도 3월 중에는 공동조사가 실시되어 금년 우기 전에 홍수예보 시설 설치 등 수해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람.
 - 기상·수문자료 및 수리시설 관련 자료 등은 공동조사 전에 교환하고

요목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넷째, 경험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우리측은 현재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도 발효절차를 조속히 취해 주기 바람.
 - 통행합의서와 관련 북측이 현단계에서 통행기본합의서 채택이 어렵다면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를 우선 채택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섯째, 식량, 자재·장비 제공 관련 분배현장 확인 문제
 - 식량차관 4차 제공분에 대한 분배내역 통보와 제2차 분배현장 확인 일정과 관련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람.
 - 철도·도로 자재 장비의 사용결과 통보와 우리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확인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지난 시기부터 북남경제협력사업을 달가와 하지 않고 간섭과 압력으로 장애를 조성하여 오던 외부세력으로 인해 조선반도의 정세가 악화되고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사업에 어두운 그늘이 던져지고 있음. 쌍방은 이번 회의를 통해 6.15공동선언의 변함없는 이행을 바라는 우리 겨레에게 민족의 번영과 통일에 대한 확신과 낙관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번 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첫째,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 동·서해의 철도 및 도로 연결문제에서 동시연결, 동시개통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임.
 - 우리는 쌍방이 동해선과 서해선에서 비무장지대의 철도연결공사부터 끝내고 각기 자기측 방향으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되 동해선 철도의 온정리-저진사이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공할 것을 제안함
- 둘째, 개성공업지구건설 문제
 - 2월 중 빠른 시일내에 적당한 시점에서 착공식을 진행하며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 가도록 쌍방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안함.

- 기타 해운협력, 경제협력의 제도적 담보 마련을 위한 문제 등 협력 사업과 관련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2) 위원장접촉 및 위원접촉 (2.12~2.13)

양측은 핵문제와 남북경협 관련 현안들에 대한 협의를 위해 위원장 접촉과 위원접촉을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적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하였으나 북한측은 핵문제는 상급회담 등에서 계속 진지하게 토의된 사항으로 경추위에서 제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 양측은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착공, 임진강 공동조사,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문제와 식량 및 자재·장비 차관 제공과 관련한 현장방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하였으나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2.13)

남북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합의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약>

-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쌍방은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5차 회의는 회의기간 중 북한측의 돌출발언으로 인해 회담일정이 하루 연장되는 등 난항을 거듭한 회의였다.

전체회의시(5.20) 북한측이 기본발언을 통해 한미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와 관련 “반북대결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주장을 함에 따라 5.22 오후까지 실질문제 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담이 공전되었던 것이다.

우리측은 재난 발언과 관련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북한측의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결국 5.22 오후 북한측이 「재난」 발언에 대해 해명함으로써 현안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시작,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행사 개최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김창세(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5.20)

북한측은 이례적으로 「기본발언」과 「제안발언」으로 분리하여 회담에 임하는 그들의 기본입장을 표명하였다.

「기본발언」에서는 한·미공동성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만약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령(零)으로 될 것이며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별도의 「제안발언」을 통해 쌀지원, 철도·도로연결, 개성공업지구건설, 임진강수해방지, 전력협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5개항의 합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경협 원칙 등을 설명하고 안정적 경협추진을 위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활성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기존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오늘 우리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어 온 쌍방 경제협력의 전도가 우려되는 시기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가지게 됨 .
- 귀측은 미국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성명》 이라는데서 세상사람들이 봉쇄와 군사적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우려하는 이른바 《추가적 조치》 라는것에 합의하였으며, 북남 쌍방간의 경제협조도 《핵문제》의 해결정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하였고, 이제는 《북이 하자는대로만 따라가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음 .

- 만약 귀측이 《핵문제》요 《추가조치》요 하면서 반복대결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령으로 될것이며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 .
-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귀측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북한측 제안발언 요지>

- 기본발언을 통해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쌍방 경제협력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되고 있음 .
- 이번 회의가 좋게 출발한 쌍방 경제협력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려는 입장에서 우리측 제안을 함.
- 첫째 쌀 제공 문제
 - 남측은 흰쌀 50여만을 제공하되 준비상 관계로 쌀 50만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어렵다면 먼저 쌀 20만을 5월 하순부터 제공할 것을 기대함.
- 둘째,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 동·서해선 철도연결 행사를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설비·자재 제공 이용과 관련된 기술실무적 대책들을 시급히 세워 공사를 최대한 빨리 완공해 나가야 할 것임 .
- 셋째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제
 -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이 반드시 현대아산 개발책임당사자들의 참가하에 늦어도 6월 20일 경에는 이루어지도록 남측이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 넷째 임진강수해방지문제

-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 지는데 따라 6월 중에는 반드시 임진강유역의 쌍방 지역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장마전에 큰 물동보체계를 세울 데 대한 합의를 이룩할 것을 제안함 .
- 다섯째, 전력협력문제
 -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후 곧 서해선철도연결구간을 통해 송전선 연결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그외, 투자보장, 2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서와 북남해운합의서를 오는 6월중에 발효시켜 경제협력의 제도적 조건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지난 2월 남측에서는 참여정부가 새로이 출범하여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음.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과 나아가서는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임.
- 새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범하였으나 북측의 핵문제가 이 같은 여건 조성을 어렵게 하고 남북경협추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간에 합의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되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현재 진행중인 경협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첫째,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연결 문제
 - 제4차 철도 도로연결실무접촉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를 금년 3월 말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6.15 이전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 경의선 철도 개통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재·장비의 수송과 인원들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속히 공사를 끝낼 것을 촉구하며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도 합의된 일정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둘째,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북측이 토지임대료, 지장물 보상비 등에 대한 남측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미 합의된 5개 주요 하위규정도 착공 이전에 공포되기를 바람.

○ 셋째, 금강산관광 활성화

- 「사스」로 인해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 6.15 이전에는 재개되기를 바라며, 동 지구에 대한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도 채택하여 관광객들이 오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넷째, 임진강 수해방지

- 지난 3.20 북측에 전달한 바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안이 조속히 타결되어 금년 우기전에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람.
- 남북간의 공유하천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북한강의 임남담과 임진강의 황강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람.

○ 다섯째, 식량 및 비료 지원

- 지난 10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식량과 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 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도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분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람.

(2) 위원장접촉 및 위원접촉 (5.20 ~5.23)

제1차 전체회의(5.20) 시의 「재난」 발언과 관련 우리측은 공식일정을 연기하면서 위원장접촉 등을 통해 북한측의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북한측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강한 입장에 난색을 표시하다가 5.22 오후 제1차 위원접촉을 통해 「재난」 발언의 “근본취지는 대결이 격화되어 북남 관계가 련으로 되고 재난이 닥쳐와 북이나 남이나 불행하게 되지 않고 다같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음을 명백히 하게 됩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위원접촉(5.23) 부터 실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쌀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50만톤 제공을 요구하면서 한꺼번에 50만톤을 제공하는 것이 준비상 어렵다면 우선 20만톤을 5월 하순 중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지원하겠으나 지원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문제 등 상황을 악화 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행사, 개성공단 착공식,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금강산 육 해로관광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기에 대해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협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결국 양측은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고 궤도 연결행사를 6.10일경 진행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5.23)

남북 쌍방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된 5.2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가지고 개성공단 착공식 6월 하순 개최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6월중 실시, 금강산 육로 및 해로관광 6월중 재개 등 7개항의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합의사항 요약>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 궤도 연결행사는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6월 10일경 진행
 -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② 개성공단 건설
 - 착공식은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6월 하순 개최
 - 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
- ③ 임진강 수방사업
 - 6월중 공동조사, 장마전 홍수에보체계 구축
 - 북측은 장마에 대비, 임남댐 방류와 관련 필요한 통보 실시
- ④ 경협 제도적 장치 마련
 - 4개 경협 합의서, 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통산 통관 검역 합의서 등을 필요절차를 거쳐 조기 발효
- ⑤ 금강산 관광 활성화
 - 육로 및 해로관광 6월중 재개 적극 노력
- ⑥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 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식량차관 제공 합의서)
- ⑦ 경추위 제6차 회의 개최(8월 하순, 서울)
 - 경추위 산하 실무협의회, 실무접촉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가. 개 요

2003년 5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가 2003년 8월 26일

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6차 회의에는 우리측 일부 위원이 보직변경됨에 따라 권도엽, 최영철, 김호홍 위원이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6.27~29, 북경) 되는 상황에서 참여한 쟁점사항이 없었던 만큼 통상의 회담일정(3박 4일) 보다 하루 단축하여 진행되었다.

쌍방은 진행중인 경협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일정 확정 등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하였다.

< 쌍방 위원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권도엽(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중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8.26)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대 경협사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년내 경의선 철도를 개성공단까지 연결하고 동해선 철도도 조기에 연결하며 금년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연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의 조기 제정·공포와 차질없는 공단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북한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정례화하고, 특구경계를 확정하며 통행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 외에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고 식량분배현장 방문을 동·서해 각 1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9월 중에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고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의 역할을 평가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남북경협 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개성·문산 온정라 저진간 철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동시에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단 개발은 현대가 개발 당사자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당국이 책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부속합의서의 토의를 시작할 것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협력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동북아전력망 형성과 가스관 부설문제를 논의할 것과 상품·임가공 직거래 방식 확대, 선박 해체업·대외건설 분야 협력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경제협력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함께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첫째, 남북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문제

- 경의선 철도를 금년내에 개성공단까지 연결하고 동해선 철도도 조기에 연결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도 금년내에 연결해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둘째,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이 조기에 제정·공포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통신·통관·검역합의서의 세부합의서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음.
- 우리측은 공단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바, 북측에서도 토지임차료, 지장물 이전비용 등 건설에 따른 제반비용 문제와 관련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람.

○ 셋째, 금강산관광 여건 개선

- 금강산 관광사업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구경계를 확정하고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을 공포하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통행·통신·통관·검역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통행합의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함.

○ 넷째, 임진강 수해방지

- 늦어도 10월 중에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 다섯째, 식량분배현장 확인

- 1차적으로 10만톤 수송이 완료된 만큼 9월 중에는 동서해 각 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이 실시되어야 함.

○ 그 외, 경제시찰단 방북, 중소기업 협의창구 개설, 남북간 경제공동

연구 등에 대해서도 실천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최근 북남경제협력사업에서 이루어진 주목할만한 성과들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민족끼리》의 정당성과 실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음.
-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입장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몇가지 제안을 밝히고자 함.
- 첫째, 경제협력 추진 문제
 - 철도 및 도로건설을 다그쳐 올해 말까지 동해선에서는 온정라 저진사이, 서해선에서는 개성-문산사이 궤도부설과 도로노반공사를 끝낼 것을 제의함.
 - 개성공업지구건설추진문제와 관련 남측은 우선 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를 시급히 끝내고 공업지구하부구조망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대아산이 개발당사자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적으로 밀어주어야 할 것임.
 - 해운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발효시키고 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토의에 들어가야 할 것임.
- 둘째,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문제
 - 동북아시아지역 전력망형성 문제와 가스관 부설문제를 전력분과회의를 개최하여 토의할 것을 제안함.
 - 상품 및 임가공의 직접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필요한 실무적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밖에 지난 시기 민간급에서 제기된 바 있는 선박해체업과 대외건설 분야에서의 북남협력문제들을 토의하면 될 것임.

(2) 위원장접촉 및 분야별 실무접촉, 위원접촉(8.26 ~8.28)

양측은 위원장접촉과 이번 제6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도된 분야별 실무접촉 등을 통해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리측은 철도·도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물론 특히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식량분배투명성 확보, 경제시찰단 방북, 중소기업 협의창구 개설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집중거론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북아전력망 형성과 가스관 연결 등 남북간 에너지협력 문제와 상품 및 임가공거래의 직교역방식 확대, 선박해체업 대외건설 등의 분야 협력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양측은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확충문제, 3대 경협사업, 직교역방식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노정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간 협력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에너지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선박해체업·대외건설 협력 등 민간차원의 경협사업도 개인사업자들에 맡겨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득하였다.

한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현지확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9월 중 3차 실무협의회 개최와 10월중 현지조사를 촉구하였다.

식량분배현장 방문은 5차 경추위시 합의에 따라 동서해안 각 2곳에 대해 9월 중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경제시찰단 상호방문 문제는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

다. 결국 양측은 식량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실시하는 문제 등 9개항에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8.28)

남북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궤도부설과 도로노반공사의 연내 완료, 남북간 직거래방식 확대와 그를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등 9개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합의문 요약>

- ①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남측은 자재 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
- ② 개성공단 개발
 -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
- ③ 금강산관광
 -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 이행 협력
- ④ 경험 제도적 장치 마련
 - 4개 경험합의서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 관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 동시 개최
- ⑤ 임진강 수방사업
 -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 ⑥ 직거래방식 확대
 - 남북간 직접거래방식 확대와 그와 관련한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 추진
- ⑦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 남측경제시찰단 북측 방문,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⑧ 식량분배현장 확인
 -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은 9월 중,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 5~7명씩으로 함.
- ⑨ 제7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가. 개 요

2003년 8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이 전력협력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가운데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경험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직거래 확대 협의사무소 설치 문제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0.12 합의) 및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합의서」(10.28합의)도 서명·교환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위 원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권도엽(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영철(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사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1.6)

남북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합의문 초안을 교환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전력협력이 경협사업의 선차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전력협력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공사현장 방문을 11월 중에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 건설문제에 우리측 당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청산결제 합의서 후속조치문제 토의를 위한 청산결제분과도 구성 하자고 제의하였다. 기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타결과 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식량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의 성과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남 쌍방은 민족공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경제협력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통일번영에 이바지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음.

- 6.15 북남공동선언이 내세운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경제협력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자 함 .
- 첫째, 동·서해선철도 연결공사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는 문제
 -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11월 중에 쌍방 관계자들의 동·서해선 공사현장에 대한 실무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북남사이의 전력협력 문제
 - 북과 남의 전력자원 효율적 이용, 동북아시아지역 전력망 형성 등 전력협력문제 논의를 위한 전력분과회의를 개최
- 셋째, 개성공업지구건설추진문제
 - 지금 개발업체들이 추진중에 있는 1단계 100만평 개발지역에 대한 하부구조설계를 올해중에 끝내고 다음해부터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측 당국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람 .
 -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개발업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남측의 관리기관 구성을 요청함 .
- 넷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청산결제분과를 조직·운영할 것을 제의함
 - 원산지확인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쌍방이 합의한 대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 바람.
- 다섯째, 기타 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한 문제
 - 지난 6월 남측에 넘겨준 임진강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
 - 해운합의서를 빨리 발효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부속 합의서 토의도 다그쳐야 함.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철저하게 준수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성과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첫째,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문제
 - 자재·장비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도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바람.
 - 공사구간의 상호방문은 방문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점검한 후에 실시
- 둘째, 개성공단 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
 - 우리측은 공단의 내부기반시설 건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음.
 - 공단의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귀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하위규정들과 당국간에 채택하여야 할 합의서들도 금년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행합의서가 조속히 채택되어야함.
- 셋째,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
 - 우리측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도 「금강산 관광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측 사업자가 요구하는 관광여건 개선에도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
 - 관광특구 개발의 본격 추진에 맞추어 통행 등 당국차원의 제도적 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넷째, 직접거래의 확대를 위한 조치들의 조속한 시행
 - 우리측 기업인들이 귀측과 직접 만나서 사업추진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성지역에 내년 3월중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함.
- 다섯째,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 지난 6차 회의에서 경제시찰단 상호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금년 내로 교환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섯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
 - 공동조사에 대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일곱째, 식량분배현장 방문
 - 이번 회의에서 3·4차 방문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여덟째, 제B국 어선 불법어로 공동대처
 - 서해어장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남북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장접촉 및 위원접촉(11.6~11.8)

회의초반 북한측은 위원장접촉과 위원접촉 등을 통해 전력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전력협력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며 전력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들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측은 현 단계에서 전력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업들에도 장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결국 북한측이 제3차 위원장 접촉시(11.7) 전력협력 문제를 철회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내년도 개성공단 건설공사의 본격추진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내 하위규정의 공포와 통행합의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개설, 경제시찰단 교환방문, 식량분배현장방문(3·4차), 제B국 불법어로

공동대처 등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다.

북한측은 철도·도로공사구간 현장방문 문제와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서의 조속한 타결, 해운합의서 올해안 발효, 청산결제분과 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양측은 상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적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도부터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결과 철도·도로공사현장 상호방문, 개성공단 건설 일정, 청산 결제 시범실시,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의사무소 개설 등 7개항에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11.8)

남북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직거래 확대 등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합의문 요약>

- ① 철도·도로 공사현장 상호방문 실시
 - 경의선(12.8) : 관문역~도리산역, 동해선(12.2) : 남북관리구역내
 -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2~5, 속초) 개최
- ② 개성공단 건설
 - 금년내 하위규정 제정·공포 및 1단계 구역 설계 완료
 - 내년초 기반시설 건설 착수 및 내년 상반기안 1만평 규모 시범 단지 개발
- ③ 청산결제
 - 내년부터 청산결제거래 시범적 실시
 - 청산결제 실무협의(11월 하순, 평양) 개최
- ④ 해운합의서 및 임진강 수방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임진강 수방 관련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
- ⑤ 직거래 확대 등 협의를 위한 사무소
 -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성공단에 설치
- ⑥ 경험관련 회의
 -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경험제도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개최(11월 하순~12월 초순, 평양 또는 개성)
- ⑦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04.3.4~3.7, 서울 개최

5.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가. 개 요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문제와 기반시설 건설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착공식 개최일정,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합의서」를 타결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교식(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대 표	김중태(통일부 교류총괄과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체신성 부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7)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해 북한측이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공단착공 이전에 신속하게 제정·공포할 것을 촉구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공단건설을 위해 기업들은 신속한 수송·통관과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 등을 요구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통신·통관 및 검역문제를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안에 착공장소를 정하고 2002년 12월 25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착공식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하부구조망을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 관련 개발업체를 지체없이 선정,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
 -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이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공단착공 이전에 제정
 - 통신·통관·검역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이번 회담에서 합의
 - 공단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토지 임대료, 지장물 철거 비용 등을 조정

- 착공식 문제
 - 착공과 관련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 사업자간에 협의·해결 되는 것이 바람직
 - 경의선 육로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공사진행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통행로 마련

- 기반시설 건설 문제
 -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외부 기반시설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
 -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경과지 무상 제공, 노동력 제공 및 투자비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협조하여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도 필요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개성공업지구건설착공문제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안에 착공장소를 정하고 2002년 12월 25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착공식 개최
 - 이번 접촉에서 착공식 규모, 형식, 방법 협의

- 개성공업지구 하부구조망 건설 문제
 - 남측은 관련 개발업체들을 지체없이 선정하고, 착공식에 대응하여 하부 구조망 건설을 빨리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

- 개성공업지구의 세관 검역 통신에 관한 문제
 - 3개 합의서 토의문제를 진전시켜나가야 함

(2) 제3차 전체회의 (12.8)

남과 북은 12월 8일에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차례 전체회의와 5차례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한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착공식 개최일정, 착공전 문산-개성간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표적인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건설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공동보도문 요지>

-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
 -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 개통
 -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대한 기본합의서」 요지>

< 통신합의서 주요 내용 >

-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직접 교환·연결
- 우편물 및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정치·군사적 목적에 전용 불가
-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 및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전기통신망 설치·운영

< 통관합의서 주요내용 >

-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 부과 면제
- 반출입 물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세관수속과 검사

< 검역합의서 주요내용 >

- 검역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물자 통과 및 지정통로로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 생략
-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후, 실시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개관

제1차 실무협의회('02.9.17)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과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합의한 남북쌍방은 1·2차 실무 접촉을 통해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및 인도·인수 절차,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2차례의 실무협의회와 5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 하였다.

먼저 남북쌍방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기 자기측 구간으로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기준을 확정하였다.

남북간 열차·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등도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여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를 채택하고,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대부분의 사항들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이러한 가운데 남과 북은 2003년 6월 30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궤도연결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손봉균(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이성한(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장)	길원국(철도성 차장) 김창식(철도성 과장)

- ※ 우리측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시부터 손봉균→김경중(남북교통과장) 교체, 실무접촉시에는 조명균 수석대표와 손봉균(제3차 실무협의회 이후 김경중) 대표만 참석
- ※ 북한측은 길원국→최진택(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시)으로 교체

7. 남북철도·도로연결 제3차 실무접촉

가. 개요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연결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북한측에 제3차 실무접촉을 12월 11일 내지 12일에 평양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해운실무접촉과 함께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하였다.

쌍방은 개최 일자와 장소문제로 몇차례 전화통지문을 교환한 끝에 제3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1일차 접촉(12.16)

우리측은 전체회의에서 △레일·침목 등 궤도부설 관련 2차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가서명·교환절차 진행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 △전체적인 공사일정 조정 등에 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공사일정 조정 및 임시도로 개설문제는 우리측 자재·장비 제공문제가 보장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열차운행합의서 및 전체분 자재·장비목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열차운행합의서와 전체분 자재·장비 목록 등을 교환하고, 서로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종료하였다.

이어 진행된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판문역 구간을 2003년 1월 15일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차량운행합의서의 쟁점사항인 통행료와 벌금 등의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의선 임시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본도로구간을 철도·도로 및 개성공단 착공 장비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차량운행합의서는 우리측 안에 동의하고 열차운행합의서는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자접촉을 통해서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는 우리측 설계에 따라 제공하며, 시공은 북한측이 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

(2) 2일차 접촉(12.17)

제2일차 접촉에서 쌍방은 궤도부설 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접근하였으나, 경의선 연결문제는 북한측이 트레일러보장 등 자재·장비제공과 연계하므로 추후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쌍방은 차량운행합의서와 임시도로 개통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4개항의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공단 착공 전까지 개통
 - 쌍방은 경의선 임시도로 개설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
- 차량운행기본합의서는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표시키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2003년 1월 중순에 평양에서 개최

8.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가. 개 요

제3차 실무접촉시 합의에 따라 북한측은 2003년 1월 1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차 회의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1.23)

우리측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경의선 철도를 2월 중순경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궤도부설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와 개통식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전체분 자재·장비 문제를 합의하고, 철도·도로 통행에 대비하여 열차운행합의서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에 관한 문제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간의 철도·도로연결 착공이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를 과시한 사변이나 외세의 간섭과 훼방으로 합의된 일정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철도·도로 연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일정 계획을 혁신적으로 다시 협의·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기 합의된

공사용 설비·자재의 품목과 수량, 제공 날짜 등을 재확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문제
 - 경의선 철도 연결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궤도부설 자재·장비 제공문제 우선 합의와 경의선 철도 개통식 문제 협의
- 자재·장비 전체제공분 관련
 - 전체분 자재·장비제공문제 합의 및 기술인원의 공사현장 방문과 자재·장비 사용결과 통보 실시와 자재·장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의선과 동해선의 임시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통
- 열차운행합의서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관련 문제
 - 열차운행합의서의 구체적인 협의 및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설 관련 협의 추진
- 우리측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문제에 대한 북측의 관심과 협조 요청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남철도·도로연결 공사일정계획을 혁신적으로 다시 정하고, 그에 맞게 공사용 설비·자재의 품목, 수량과 제공날짜 등 재확정
 - 공사를 빨리 추진시켜 완공하는데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과 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협의

(2) 제2차 전체회의 (1.25)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 5회, 실무대표접촉 3회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방법과 궤도부설 자재·장비 제공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고, 1월 25일 새벽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약>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
-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
 - 1차분 자재·장비와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제공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상호 교환하고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9.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가. 개요

제4차 접촉은 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과 이용 결과 통보형식 등을 협의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정부대표단으로서는 최초로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방북,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3.11)

우리측은 △ 자재·장비 사용현장 방문문제,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3월 하순경 착수와 이에 따른 궤도 자재·장비 제공문제, △ 1차 제공분 품목과 수량 조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용현장 방문과 사용결과 정례적 통보문제는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경의선·동해선 각기 3.24~26, 3.28~30 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자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사용결과 통보문제는 우리측 입장을 수용 하되, 현장방문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이번 접촉에서 고장난 설비의 정상

가동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해선 공사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서해선 동시 병행 원칙을 강조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착공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2) 제2일차 접촉(3.12)

우리측은 공식적인 행사를 생략하되,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공사를 3월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착수하여 각기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은 3월 28일경 군사분계 선상에서 각기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되, 남과 북이 책임자급이 참석하는 연결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과 부문별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3월말 착수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
-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 인원들의 현장 방문 진행
 - 경의선은 3.20~22까지, 동해선은 3.24~26까지 각각 진행
 - 기술인원; 단장(대표)명, 기술인원 4~5명 포함 총 9명 정도
 - 왕래 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 북측은 현장방문 5일 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사용결과를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
-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한다.
 - * 첨부 1: 궤도 자재 37, 장비 31,
 - * 첨부 2: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자재: 33→35개 품목, 장비: 측량장비 등 추가)
-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자재·장비 전체 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

10.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가. 개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행사를 6월 10일경에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결행사 개최문제와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제5차 실무접촉이 진행되었다.

한편 제5차 실무접촉은 우리측 대표단이 회담기간 중 매일 오전 9시경 MDL을 넘어 방북했다가 오후에 귀환하는 「출퇴근회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6.7)

회의에서 우리측은 연결행사를 6월 12일에 실무협의회 대표(국장급) 주관하에 각기 40여명이 참석, 행사의 의의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신호·통신·전력계통의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고 제공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해 정례적으로 사용현장을 방문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연결행사와 관련하여 6월 14일에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빈으로 장관 또는 차관급이 참석하는 등 연결행사를 의의있게 치르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장장비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문제는 동·서 각 2회씩 실시하고,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운전을 위한 기술지원도 동·서에서 6.20~7.10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제2일차 접촉(6.8)

북한측은 연결행사와 관련 행사주빈자는 최소한 차관급(경추위 위원장)으로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사장 주변에 통일기를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류와 시멘트 등의 제공량을 증가시켜 주도록 요구하며, 신호·통신·전력계통 현장조사는 북한측 사정을 감안, 7월 10일부터 12일, 15일부터 18일 사이에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통일기 사용이 당국차원의 행사에 부적합함을 설명하고, 유류·시멘트는 구체적 사용내역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현장 조사는 7월 중순에 실시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은 차기 접촉에서 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3) 제3일차 접촉(6.9)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과 △궤도 △도로 △신호·통신·전력 등 3개 분야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연결행사 개최문제, 고장장비 수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에 합의하고, 5차 실무접촉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3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요약>

- 남북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
 -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
 -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
-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
 - 기술지원은 본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
-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
-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

1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가. 개요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7월2일부터 4일까지 문산 인근 흥원 연수원에서 「일일출퇴근회담」 방식으로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측 대표단이 경의선 임시도로를 이용하여 우리측의 지방도시인 문산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남북간에 회담장소와 왕래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자기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7.2)

우리측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분 자재·장비의 수량과 품목을 확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고장장비

수리와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문제와 열차운행 협의서 등도 협의하자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공사를 병행추진하여 동시개통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특히 동해선 우리측 구간 공사와 관련 강릉까지 연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전체분 자재·장비 수량과 품목에 합의하고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 및 제공장비 기술지원문제 등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전체분 자재·장비 제공문제
 -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자재와 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 확정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일정과 절차 등에 관련한 사항
 - 경의선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선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3일간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단은 단장 1명과 신호·통신·전력분야 기술자 각 1명 및 지원인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 제공장비의 기술지원 관련
 -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
- 열차운행협의서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관련 문제
 - 열차운행협의서 타결 및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본격 건설을 감안하여 열차·차량운행사무소의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동, 서해선 병행추진 동시개통의 원칙에서 쌍방이 자기측 방향으로의 철길연결공사를 중단없이 계속 추진
 - 특히 동해선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부터 남측 저진까지의 공사를 빨리 끝내고 계속해서 강릉까지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 철도·도로연결공사용 설비자재 문제
 - 설비자재 종합명세의 품목과 수량을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공사일정에 앞세워 빠른 시일안에 제공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및 제공설비들의 기술봉사문제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빨리 완성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과 제공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봉사문제 협의

(2) 제2차 전체회의(7.4)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 9회, 실무대표접촉 5회를 통해 전체분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고, 7월 4일 오후 6시에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약>

-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에 합의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경의선 7.15~17, 동해선 7.22~24
- 제공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남측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해결
-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 문제를 계속 협의
 -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
- 차기 실무접촉은 8월초 개성에서 개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주요 내용>

- 궤도 자재 45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34개 품목(유상공여 : 28, 유상임대 : 6) 총 79개 품목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 추후 남측 설계에 따라 비품 일식
- 도로 자재 36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25개 품목(유상공여 : 13개, 유상임대 : 12개)
 - ※ 상기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척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12.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가. 개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경의선 7.15~17, 동해선 7.22~24)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추진하였다.

북한측은 먼저 전화통지문을 통해 8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성에서 제6차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은 협의사항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8월 7일부터 8일까지로 수정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정몽헌 회장 사망과 관련하여 장례식 이후로 회담을 연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 8·15행사시 인공기 소각사건이 발생하여 북한측이 「대구U대회」 불참의사를 밝히는 등 실무접촉 관련 연락관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8월 19일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남북쌍방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6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8.21)

우리측은 전체분 자재·장비를 10월부터 제공하되, 노동용품·유류 등은 우선 제공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는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추가 기술지원 일정을 확정하고 임시도로 대신 본도로 노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범위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6차 경추위에서 경의선·동해선 개통날짜를 금년내로 확정하자고 제의할 계획인바, 전체분 자재·장비를 조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콘크리트혼합장 설치·운영과 고장 장비 수리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일정, 신호·통신·전력계통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2) 제2일차 접촉(8.22)

남북쌍방은 수석대표접촉과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기술지원 일정문제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관련 기술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쌍방 이견을 조율하였다.

북한측은 경의선 본도로를 이용하는 문제와 이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하지만, 군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성-판문역간 전철화 설비를 제공해 줄 것과 사업구간(경의선, 동해선)에서 평양 철도성 까지 통신선로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전철화 설비는 제3차 실무접촉시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통신선로 구성도 사업구간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쌍방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6차 실무접촉 합의서와 부록을 발표하였다.

<합의서 요약>

-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시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
-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 : 경의선 9.1~ 9.6, 동해선 9.16~ 필요한 기간 진행
 - 제공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 동해선 9.1~9.7, 경의선 9.16~9.25 진행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
-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함.
-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 협력을 실시
 - 남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10월 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
-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

13.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

가. 개요

북한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궤도부설과 도로노반공사 완료에 필요한 유류와 폭약 등을 조속히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0월 20~22 금강산에서 제7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10월 하순에 개최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부문별 협의로 진행하자고 회신하였다.

쌍방은 개최 일자, 장소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10.27~28 개성에서 진행하되 조기 일몰에 따른 대표단 이동문제 등을 감안 일일 출퇴근방식 대신 체류회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10.27)

우리측은 북한측이 긴급 요청한 폭약 제공문제는 사용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류 제공량 확대 등은 장비가동을 등 수요량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기술지원은 2003년 11월 말부터 계속 진행할 것과 장관급회담시 우리측 대표단 육로 이동을 거부한 북한측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임시도로 이용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폭약은 우리측이 현장확인 후 필요한 폭약량을 폭과 장소, 발파량을 고려 주 1~2회 정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기술지원은 12월중에(동해선 12.6~12, 경의선 15~21), 경의선·동해선 공사현장 상호방문은 11월 중순에 실시하고, 11월말 속초에서 제8차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2) 제2일차 접촉(10.28)

북한측은 공사현장 방문일자를 이번 실무접촉에서 확정할 것을 강조하고(동해선 11.26~27, 경의선 12.4~5), 암반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공사현장 방문 일시·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후 경추위에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임시도로 이용범위 확대에 대한 북한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우리측 입장을 상부에 전달토록 요구하였다.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과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협의 결과를 정리한 후 7차 실무접촉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약>

-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 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
-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 이를 위한 1차 사용현장 방문 : 경의선 11.8, 동해선 11.5 실시
 -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
- 제6차 기술지원을 경의선 2003.12.15 ~21, 동해선은 12.6~12.12 실시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는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
-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

〈암반 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 요약〉

- 뉴마이트플러스 I (50mm, 25mm), 전기너관(6M) 및 관련 부속장비 제공
 - 쌍방 협의를 통해 자재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후 자재 잔량 및 비소모성 부속장비는 반환
- 자재는 주1회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수송되며, 1회 제공량은 동·서해 뉴마이트플러스 I 16톤, 전기너관 11,200개 정도로 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제공량 및 제공횟수를 조정
- 자재는 폭약 및 너관을 구분하여 전문수송차량으로 운반하며 인도인원 이외에 화약류 관리기사 1명이 동행
 - 수송차량은 앞, 뒤면에 “화”를 부착하고 일반자재수송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
- 자재 인도·인수는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창고에서 진행
 - 북측은 수송 차량의 통행·자재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조치를 하며, 남측 인도인원이 자재 입·출입장부 확인에 협조
- 북측은 초기 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참관인원은 화약류관리기사 1~2명 포함 총 3~4명으로 함.

14.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가. 개 요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00.11.11)에서 채택된 4개 경협 합의서가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00.12.16)에서 서명·교환됨에 따라 4개 경협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1년 5월 18일 대북서한을 통해 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부여와 관련하여 조약방식으로 발효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북한측도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발효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청산결제 은행 선정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02.8.27~30)에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와 원산지확인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경추위 3차 회의('02.11.6~9)에서 개최 일정을 합의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제도 실무협의회 1차 회의가 200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대 표	엄종식(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법률가위원회 참사) 김기문(출입국사업국 부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우리측은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대비한 후속조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청산결제은행 선정 기타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들의 확충문제 등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경제협력사업의 법적 담보를 강조하면서 상사분쟁 및 청산결제 관련 후속조치, 투자보호 및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확인, 인원 및 기재들의 출입문제 등의 해결을 주장하였다.

양측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4개 합의서 후속조치, 통행합의서의 채택문제 등에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4개 합의서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순차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증대되고 있는 남북간의 인적왕래를 고려하여 남북간의 통행합의서 채택을 제안한데 대해 북한측은 개성·금강산 지구에의 출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전반적인 통행합의서를 채택하지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4개 경험합의서의 발효에 대비하여 후속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2000년 12월 서명된 4개 경험합의서는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상사 분쟁해결 절차 및 청산결제 문제와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협의할 것을 정하고 있음.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 위원회는 법률 및 국제무역 투자실무에 정통한 인사로 구성하며 법인격을 부여하여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교환 후 6개월 이내에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중재위원회 구성문제도 문서교환 방식과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함.
 -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후 중재규정 제정, 중재인 명부작성·교환, 중재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임.
- 다음으로 청산결제 문제와 관련하여
 - 청산결제은행 선정은 청산결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고려하여 남북이 상호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청산결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대금결제 등을 담당할 은행의 경우 송금의 편의보장, 민족내부거래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우리측은 복수의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함.
 - 청산결제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추후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하면 될 것임.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조치도 협의해야 함.

- 특히 남북 주민의 통행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동해선 임시도로의 개통과 경의선 철도·도로 완공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번 회담에서 증명서 소지 및 출입심사, 체류기간, 방문지역에서의 편의제공 및 신변안전보장 등 통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문제를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또한 남북간 교역확대를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정 교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확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원산지 확인은 남북교역물품의 관세면제 및 청산결제의 적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쌍방의 세관당국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밖에 산업표준·산업재산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 문제와 경험 관련 분야 법령의 상호교환에 대해서도 협의하여야 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경제협력제도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 안을 제기함.
- <북남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후속조치 문제임.
 - 중재위원회 구성과 재결원명단, 중재규정을 쌍방이 각기 작성하여 이 법이 발효된 시기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교환하면 될 것임.
-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후속조치 문제임.
 - 북남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청산결제, 거래대상으로 선정하는 문제 청산결제는행선정 문제를 <북남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30일안으로 문서로 교환하면 될 것임.
- <북남사이의 투자보호에 관한 합의서>와 <북남사이의 소득에 관한 2중과세 방지 합의서>에 관한 문제임.
 - 쌍방 당국이 발효시켜 이행하면 될 것임.
- <북남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문제임.

- 쌍방이 이미 문서를 교환하여 충분히 연구해 온 만큼 이번에 협의하여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음.

○ 북남사이의 인원 및 기재들의 출입문제임.

- 이번 회의에서 당면하게 제기되고 법적 담보가 마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개발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출입, 체류, 거주 문제를 협의한 다음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최종 낙착을 지으면 될 것임.

이 지구들에서 통행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북남사이에 법적 담보가 마련되는 데 따라 전반적인 통행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2)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쌍방은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열어 통행합의서, 원산지 확인,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청산결제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거주등록과 관련한 합의서>와 <북남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쌍방은 청산결제은행 선정, 원산지확인합의서 채택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통행합의서의 성격과 적용범위, 원산지 확인기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일반결제은행 등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통행합의서의 경우 우리측은 남북간 통행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만큼 개성공단·금강산 지구 통행에 한정되지 않으며 신변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제시한 합의서 안이 북한측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성격이며 남북간의 합의사항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금강산지구 출입문제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며 신변 안전보장은 원칙적인 수준으로 규정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산지확인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원산지확인의 주된 목적이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 확인기관은 관세에 대해 고유권한을 가진 세관당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확인기관 지정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로 상대방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경제 협력연합회」를 제시하였다.

상사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남북이 공동으로 중재 위원회를 구성하되, 우선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추후 4개 합의서와 함께 발효시키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남북이 4개 합의서 발효 후 상사중재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도 남북이 각각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운영문제는 중재규정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청산결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측 조선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일반 결제은행문제는 외국환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범위를 제한하지는 북한측 입장이 대립하였다.

남북은 양측의 경험관련 제도 및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

하고 차기 회담을 2003년 1월 중에 개최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북한측은 합의서 채택이 불가능해지자 회담결과와 차기 회담 일정이 포함된 공동보도문 발표를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의견접근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보도문의 발표가 무의미하다는 우리측 입장에 따라 쌍방이 종결발언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1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가. 개 요

2003년 2월에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가 남북 경추위 산하의 실무협의회 개최일정을 협의하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우리측은 2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경험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쌍방은 몇차례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2차 실무협의회를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3월 22일 북한측이 경추위 북한측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라크전에 대한 우리측의 준비태세와 <데프콘-2>에 대한 우리측 당국자의 발언을 이유로 일방적인 연기를 선언함으로써 2차 회의는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측은 4개 경험합의서에 대한 체결동의안이 2003년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개최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4개 경험합의서 발효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타진하였고 북한측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3년 7월 5일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위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서 발효 관련 문본 교환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 바란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이후 북한측이 7월 12차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를 제의해 옴으로써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2차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엄종식 대표가 김호년 대표로 교체되었고 북한측에서도 김기문 대표가 최정원 대표로 교체되었다.

2차 회의에서 쌍방은 4개 경험합의서 발효 통지문을 8월 6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기로 하고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쌍방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구본민(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무역성 법규국 부국장) 최정원(출입국 사업국 처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우리측은 이번 회담의 협의 과제로 4개 경험합의서의 발효 절차 마무리,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과 청산결제은행 지정등 4개 경험합의서의 후속조치 마련문제를 협의 타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원산지 확인절차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 산업표준·산업재산권 등의 제도적 장치 확충 문제를 협의하고 통행·투자 등 경제협력관련 법령을 상호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 원산지 확인, 통행합의서 채택만을 협의하고 기타 사안은 차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원산지 확인,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에 관한 쌍방 합의서(안)을 교환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경제협력의 제도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힘.
- 첫째 북과 남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문제임.
 - 1차 회의때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으므로 원산지발급기관과 원산지 증명서양식교환문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작과 관련한 문제들을 쌍방이 협의하여 이번 회의에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음.
- 둘째 북남사이의 출입, 체류, 거주에 관한 문제임.
 - 현시기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질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면 될 것임.
- 북남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문제임.
 - 「북남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19조 4항에 따라 북남 상사중재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밖의 후속조치 문제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토의하는 것이 좋겠음.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이번 회담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 첫째, 4개 경험합의서 발효 절차를 마무리하는 문제
 - 4개 경험합의서에 대해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 이므로 문본을 상호교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는 일만 남아 있음.
 - 이번 회담에서 문본의 내용과 교환방식, 일시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람 .
- 둘째, 4개 경험합의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는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되어있으며 남북이 상사중재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중재규정을 제정하고 중재인 명부를 작성·교환하게 되어 있음 .
합의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 청산결제 합의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차 회의를 청산결제 은행 지정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의 문제는 결제은행 지정 후에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면 될 것임 .
결제절차와 방법 등 청산계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술적인 문제들은 실무접촉시에 청산결제은행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일반결제 은행은 송금편의나 금융거래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정하면 될 것임 .
- 셋째, 원산지확인 절차에 대해서임 .
 - 원산지확인은 남북교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여 남북간의 교역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관세면제결정과 교역질서의 투명성 보장은 당국의 고유한 권한과 의무 이므로 원산지증명과 확인은 쌍방 당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임 .

- 넷째로, 남북간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임.
 - 남북간의 통행에 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통행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합의서를 채택하자는 귀측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임.
 - 다만 남북관계 현실과 개성·금강산 지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통행합의서에는 신변안전과 편의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출입절차 등 세부적인 문제도 일방의 의사가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
- 그밖에도 산업표준·산업재산권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 문제와 통행, 투자, 상사중재, 원산지 등에 관한 법령의 상호교환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어야 하겠음.

(2) 수석대표 접촉

① 4개 경협합의서 발효와 관련한 문제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전체회의시 200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을 통해 내부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히며 발효문본을 이번 회담에서 교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문본내용과 교환일자 등에 대해 남북이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발효문제는 대외적으로 알려야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공동보도문에 포함할 것을 설득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문건형식, 교환시기를 협의할 권능을 위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보도문에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발효통지문에 국호와 직명 중 하나만 포함하거나, 쌍방이 편리한 대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호가 4개 합의서의

본합의서에도 명기된 사항으로 일관성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든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였다.

남북은 발효통지문본 내용에 합의하고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교환기로 하였다.

②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문제
원산지확인문제는 합의서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접근된 상태로 협의를 시작하여 양측이 각 1차례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용이하게 합의에 도달하였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대한상공회의소(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로, 확인기관은 세관(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북)로 하되 동 기관들에 대해 쌍방 당국이 권한있는 기관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우리측의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등에 관한 확인서안'과 '남북공동사용 원산지 증명서 양식안'을 전달하였다.

③ 「청산결제은행」 지정 합의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우리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한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합의시까지 일반결제업무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④ 회의결과 마무리 문건의 형식 및 내용

북한측은 「합의서」 형식으로 제2차 회의 결과를 마무리 짓고, 통행, 원산지, 상사중재위 등 양측이 합의서를 놓고 토의한 부분만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통행, 원산지, 상사중재위 등은 타결이 되고 나면 별도의 합의서로 발표될 것이므로 전체회의의 결과는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4개 경협합의서 발효절차, 청산·일반결제은행 타결, 통행·원산지·상사중재위 합의서 협의, 산업재산권·법령교환 문제 등 남북이 협의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토의결과 남북은 합의서 형태로 회의결과를 공표하고 원산지, 청산결제 은행 지정, 상사중재위와 통행 문제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3)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대표접촉

북한측이 1차 회의시 우리측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반영한 합의서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지위, 중재위 구성, 중재규정 제정, 중재인 명부 작성·교환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재판기능(중재판정 취소신청, 당사자 이의신청 등)을 상사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에 규정하는 문제, 회의 개최 요건 회의

결과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2차례 수정합의서 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타결을 시도 하였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추후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한다는 수준에서 협의를 마무리하였다.

(4) 통행 관련 대표접촉

북한측은 개성·금강산지구를 통합한 합의서로 규정하지는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질서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양측은 인원·수송수단의 출입절차, 출입검사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방문증명서와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기로 합의하였다.

방문증명서의 경우 우리측은 우리측당국이 발급하는 증명서 만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하는 통행증명서를 우리측 당국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와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성공과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체포·구금·압수·수색 금지 및 북한측법 위반시 우리측으로의 강제송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강제송환 규정은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며 개성·금강산 지구는 신의주, 나진-선봉지구와는 다른 침예한 지역으로 북한측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5) 제2차 전체회의

남북 쌍방은 7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틀간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5개항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와 10조로 구성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2차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8월 6일 교환하기로 했던 4개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은 북한측이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사망, 우리 시민단체들의 8.15 반북집회 등을 이유로 두차례 연기함에 따라 8월 20일에 가서야 교환이 이루어졌다.

<합의서 요약>

-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
-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
-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
- 제3차 회의의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4개 합의서 발효통지문>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김령성 귀하

나는 2000년 12월 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고 채택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2003년 7월 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 세 현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요지>

- 적용범위
 -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함.
 - 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과 그 변경사항을 상호 통보
- 원산지증명서
 -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
- 원산지 판정기준
 -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당해 물품의 전부나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등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
 -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에 최종적으로 북 또는 남에서 생산된 경우
 -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로 불인정
- 원산지 확인절차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
 -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
 - 확인결과를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산지 확인기관
 - 남측은 세관,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함.
 -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과 변경사항을 통보
- 원산지증명서 면제
 -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탁송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정상교역 물품 등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협의

16.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우리측 지역 문산에서 진행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쌍방은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좁히지 못했으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임영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윤선호(무역성 법규국 부국장) 최정원(출입국 사업국 처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0.11)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원산지확인 합의서 이행에 따른 문제, 법령교환문제 등을 공통 의제로 제기하였다.

그밖에도 우리측은 2004년 초 청산결제 실시를 제의하고 이를 위해 청산결제 한도, 대상품목과 한도, 신용한도와 이자율 등도 협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산업재산권의 교차신청과 인정 문제도 제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먼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임.
 - 우리측은 위원회의 재판기능과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내용은 합의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한 후 4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중재규정 초안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
- 둘째,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는 이 두 지구의 특성에 맞게 채택되어야 하겠음
 -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문증명서와 신변안전 보장방안 등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임.
- 셋째, 청산결제 실시를 위한 결제한도, 대상품목 선정 등의 구체적인 준비 문제임.
 - 우리측은 청산결제의 한도를 남북간의 상업적 거래 규모와 최근

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되 남북간의 교역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신용한도는 교역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연말대차의 청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면 될 것이며, 그 이자율은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는 전년도 거래내용과 상호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하기 위한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음.
- 넷째,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임.
-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산지확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하겠음.
 - 쌍방이 운영하고 있는 세부규정 등 관련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원산지확인 절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의하는 바임
- 산업재산권의 교차신청과 인정, 경제관련 법령의 교환 등에 대해서도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첫째 북남상사중재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
- 2차 회의에서 기본적인 의견일치를 보았으므로 실무자들끼리 문안을 정리하여 합의서를 맺으면 될 것임.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출입, 체류질서에 관한 문제
- 2차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토의하였으므로 합의를 보지 못한 몇개 조항만 토의하여 합의서를 채택하면 될 것임.
- 셋째, 법령, 규정교환문제
- 쌍방이 어떠한 규정을 교환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토의하면 될 것임.

- 넷째 <북남사이에 맺은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당 기관들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이행하게 하면 될 것임.

(2) 수석대표 접촉

① 청산결제

우리측은 청산결제 한도·대상품목·이자율 등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청산결제 한도·대상품목 등은 경추위에서, 신용한도·이자율 등은 은행간 실무접촉을 통해 결정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차기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청산결제 시행 준비를 위해 북한측이 계획하고 있는 청산결제은행 지급지시 통신수단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북한측은 다음 기회에 확인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원산지 확인

남북 쌍방은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국·과장급을 대표로 3명 정도로 구성하고 개최시기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또한 11월 중순경 원산지 확인절차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우리측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42개의 지방세관과 61개 지방상공회의소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북한측에 통보했음을 주지시키고 북한측은 이에 상응한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북한측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③ 법령교환

우리측은 북한측의 기본법령, 개성·금강산 지구 개발, 철도·도로연결, 해운·항만, 통행·통관·검역·통신·투자·세금·무역·경제활동 등에 대한 법령 등의 목록을 전달하였으며 북한측은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3)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대표접촉

다섯 차례 진행된 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위원회 기능의 합의서 명시, 위원회 결정에 대한 남북 재판기관의 재심금지 등 그동안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우리측 중재법을 제시해 가며 “이의신청, 기피신청, 취소신청은 우리측 중재법상 최종 판정권이 법원에 있으므로 합의서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북한측을 납득시켰다.

쌍방은 각 3차례 수정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4) 통행합의서 채택관련 대표접촉

쌍방은 각기 제시한 합의서(안)을 놓고 상호 조문 검토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방문증명서 발급, 신변안전보장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우리측 당국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만으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도 함께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였다.

가장 쟁점이 된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4개항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의 주권침해를 비롯하여 범위반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북측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뒀으로써 북한측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질서위반자는 남측지역으로 강제송환하며 그에 대한 조사는 남과 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측이 우리측 안에 대해 더 연구해서 차기회담에서 입장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5) 제2차 전체회의(10.12)

남북은 수석대표접촉과 분야별 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5개항의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과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원산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11월중 시범적인 확인 사업 실시 합의
-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은 차기 회의에서 협의
- 경제협력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절한 시기에 상호 교환
- 제4차 회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결정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요약>

- 위원회의 법적 지위
 -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짐.
 -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짐
- 위원회 구성
 -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함.
- 위원회의 기능
 -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요약 —

- 위원회 결정의 효력
 -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재조 제 항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 위원회 회의는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소집
-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활동보장
 - 남과 북은 분쟁사건 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함.
 -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
- 통지
 -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함.
- 협의 및 수정·보충
 - 합의서의 해석·적용 관련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름

17.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개 요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02.11.18~20, 금강산)시 남북은 제2차 실무접촉을 2002년 12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2002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쌍방이 제시한 해운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15조 37항의 「남북해운 합의서」을 가서명·채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무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서 호(통일부 과장) 김진홍(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조정철(육해운성 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26)

회의에서 쌍방은 제1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 합의서(안)를 상호 교환하고 쌍방 합의서(안)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간 해상운송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해상항로를 개설하는 항구의 추가,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남북관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해상항로대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상대측 영해 통과 허용, 쌍방 항구간 항로의 최단거리 설정 등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각기 제시한 합의서(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후, 계속 검토·협의를 나가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2차 전체회의(12.27)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간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하고, 우리측 선박이 북한측 항구내 정박중에도 직접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정박중 통신보장 문제는 국내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합의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제3차 전체회의(12.28)

남북은 제2차 전체회의 이후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접촉을 가진 결과, 북한측이 통신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남북해운합의서」를 타결, 쌍방 수석대표가 가서명 하였다. 아울러 쌍방은 「부속합의서」에 관해서도 개략적인 자기측 입장을 개진하였다. 쌍방은 12월 28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발표한 후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요지>

1. 남북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 일방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
 -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
2. 해양사고시 상호 협력
 - 일방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재난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및 인명·재난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 조치
 -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3. 선박의 통신보장
 -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
4.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 통신망 구성·운영
5.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

18.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03.8.26~28, 서울)시 남북은 제3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일정을 협의,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에서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제2차 실무접촉시 가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해 수차례의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개최, 많은 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쌍방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장현(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박규식(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0.11 오전)

회의에서 쌍방은 기초발언을 통해 부속합의서에 관한 자기측 기본입장을 밝히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안)을 상호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경제성과 안전성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해상항로대 설정, 해양사고 발생시 공동 구조·구난 북한측 항만 정박시 직접 통신 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주장하면서, 부속 합의서 채택에 관한 자기측 입장을 개진하였다.

쌍방은 상대측이 제시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해 검토한 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2~4차 전체회의(10.11 오후~10.12 오전)

세차례의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라도 부속합의서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해상항로대 설정의 경우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측 항구에서 정박 중 통신보장의 중요성 등을 거듭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해상항로대 단축 등을 계속 주장한 반면, 통신보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3) 제5차 전체회의(10.12 오후)

남북은 이틀간 수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접촉을 가지고 부속합의서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선박운항의 허가절차,

상대측 해역 통과시 기본원칙과 금지행위,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지만, 해상항로대 및 통신 보장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쌍방은 10월 12일 오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 미진한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와 그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 채택 의의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음.
-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항로대 및 통신 보장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의 장소와 날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음.

VI.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가. 개요

남과 북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 및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해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적십자실무 접촉을 가졌다.

쌍방은 제1차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산가족면회소,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남과 북은 2003년 1월 22일 제3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이산가족 및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문제를 차기 접촉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나.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우리측은 2002년 12월 4일 제2차 실무접촉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해 북한측은 12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2차 실무접촉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병용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별 보좌역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리금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리금철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윤미량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위원) 유광수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위원)	함동혁(설계전문가) 류성수(건축전문가)

(1) 전체회의(12.16)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쌍방 기본입장 및 합의서(안)을 교환하고,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문제들을 협의하였다.

금강산면회소와 관련하여 쌍방은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에 면회소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협의·실행기구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규모, 설계 주체, 착공식, 운영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남북 각기 제1차 접촉 시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연건평 2,300평 규모를 제시하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계획 설계는 우리측이 초안을 마련하여 북한측과 협의하며, 착공식은 설계 완료 후 1주일 내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면회소 운영은 완공 1개월 전 협의·확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1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면회소를 짓고, 계획

설계는 북한측이 주관하며, 착공식은 2개월 후 실시하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면회소 운영·관리는 건물 완공 단계에 가서 협의·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문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 제6차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은 우리측이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기조발언」 내용이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하며, 규모는 연건평 2천 3백평 크기로 함.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은 남북 각기 10명씩 구성하며, 2003년 1월 중 첫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계획설계는 남측이 주관하며, 설계 완료 후 1주일 내에 착공하면 회소 운영·관리는 건물 완공 1개월 전 협의·확정토록 하며, 남측이 자재·설비를 북측이 인력을 제공토록 함. 면회소 완공 전까지 정례적으로 상봉을 실시하며, 첫 면회는 2003년 설을 계기로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전쟁시기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3년 1월 중 상대측에 명단을 통보하며, 전쟁 이후 행불자 문제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함.
 - 2003년 1월과 2월에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2월 중 생사·주소가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300명의 서신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
- 북측은 별도의 기본발언문을 낭독하지 않고 준비해온 합의서(안)을

낭독하면서 자기측 입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북한측 기본입장이다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하며, 규모는 1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금강산면회소 건설 상무조는 남북 각기 10명씩 구성하며, 2003년 12월 중 첫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형성설계는 북측이 주관하며, 1년내 건설을 완공하며 2003년 2월 착공토록 함. 면회소 운영·관리는 완공 단계에 가서 협의·확정토록 하며, 남측이 자재·설비를 북측이 부지 및 노력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
- 2003년 설을 계기로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함.

(2) 수석대표 접촉(12.16~17)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수석대표 접촉을 6차례 가지고 쌍방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우리측은 전체회의시 제기한 입장을 토대로 하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완공 전 지속적 상봉 실시, 전쟁시기 등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 방안을 제기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문제에 주력하자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교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3) 전체회의(12.17)

남과 북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서도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02년 12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2차 실무접촉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2박 3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내용이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문제와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
-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행불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
-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계속 협의

다.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우리측은 2003년 1월 6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전달하여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해옴에 따라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이

2003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은 제2차 실무접촉시와 동일하였다.

(1) 전체회의(1.21)

남과 북은 2003년 1월 21일 오전 10시 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쌍방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제2차 실무접촉시의 입장을 토대로 하여 면회소 설치·운영, 제6차 이산가족 상봉 등 면회소 완공 전 면회의 정례화 보장,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도 면회소 규모, 착공식 일자,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일자, 전쟁시기 행불자 및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문제 등을 제의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추후 협의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하여 면회소 착공식이라는 시한을 정하여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쌍방 기초발언문 내용이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구역으로 하며, 규모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함.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은 2003년 2월 10일 첫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계획설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하며, 실시설계는 남측이 주 관함. 착공식은 설계 완료 후 1주일 내에 실시하며, 면회소 운영·관리는

건물 완공 1개월 전 협의·확정할 것을 제의함

- 제6차 상봉은 2003년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고, 면회소 완공 전 지속적으로 상봉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전쟁시기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3년 2월, 3월 중 각기 200명씩 명단을 교환하고, 2003년 3월과 4월에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명단을 각기 100명씩 교환할 것을 제의함.
- 제5차 적십자회담은 2003년 3월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금강산면회소 장소는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하며, 규모는 1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건평 규모는 건설 실무자간에 협의·확정토록 함. 금강산면회소 건설 상무조는 2003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첫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설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하며, 착공식은 2003년 4월 중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은 2003년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시범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 후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함.
- 2003년 4월말 제4차 실무접촉을 열 것을 제의함.

(2) 수석대표 접촉(1.21 ~22)

남과 북은 2003년 1월 21일부터 22일 양일에 걸쳐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가지고 면회소 규모 등 쌍방 쟁점사항에 의견을 조율하였다.

쌍방 최대 쟁점사항이 되었던 면회소 규모문제는 북한측이 연건평 2만 2천평을 제시함에 따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막판 협상에서 북측이 구체적 규모를 명기하자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건설추진단을 통해 추후 협의하자고 물러섬에 따라 타결되었다.

면회소 계획설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착공식과 면회소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끝까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나 우리측이 착공식 일자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수용하고, 북한측은 면회소 운영·관리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접점을 찾게 되었다.

한편 우리측은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전체회의시 밝힌대로 우선 면회소 건설문제에 집중하고, 그 밖의 문제들은 착공식 이후 협의·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제3차 실무접촉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면회소 건설문제와 제6차 이산가족상봉문제에 우선 합의하고, 시범적 생사·주소확인 등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접촉에서 협의·해결해 가기로 하고 북한측 입장을 수용하였다.

(3) 전체회의(1.22)

남과 북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율한 내용을 토대로 2003년 1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 등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다음은 「합의서」내용이다.

<합의서 요약>

1. 금강산면회소 설치·운영
 -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함.
 -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형식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며, 연건평은 건설 실무자들이 협의·확정
 -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
 - 설계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
 - 면회소 건설은 1년 내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4월 중 실시
 -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각기 10명씩 「금강산 면회소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접촉을 2월 10일에 진행
 - 운영문제는 면회소 완공 1개월 전까지 확정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
3.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 등은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
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

2.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회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면 회소 건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를 2003년 2월 부터 8월까지 세 차례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세차례의 적십자실무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회소 연건평, 계획설계 주체,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면회소 연건평 규모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고, 계획설계 주체, 착공식 일자, 면회소 시설 관리·운영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임 에 따라 양측은 합의서를 채택하 지 못한 채 추진단회의를 종료하게 되었다.

나. 제1차 추진단회의(2.13~15)

우리측은 제1차 추진단회의를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 촉에서 합의한 대로 2월 10일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준비를 해왔으나 금강산 수송운항인 설봉호의 일정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2003년 2월 4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차 추진단 회의 일자를 200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하자고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2월 5일 우리측 제의에 동의하는 의사를 전달해와 제1차 추진단 회의가 2003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남과 북의 대표단은 설계, 건축, 전기 분야 등 건설기술자들로 각기 10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민병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	함동혁(건축전문가)
대 표	유종렬(적십자관계자) 이재호(적십자관계자) 유광수(적십자관계자) 최영운(적십자관계자) 최보원(적십자관계자) 이창욱(건축전문가) 송재원(기계전문가) 유재봉(전기전문가) 김영웅(설계전문가)	황철(적십자관계자) 김성철(적십자관계자) 류성수(건축전문가) 김성일(건축전문가) 최중춘(설계전문가) 로대현(설계전문가) 리재우(설계전문가) 리명근(설계전문가) 진주양(설계전문가)

※ 제3차 추진단회의시 우리측은 최보원, 유재봉 대표가 불참, 북한측은 김성철 대표에서 김소형 대표로 교체

남과 북은 2003년 2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및 추진단 운영방안 등에 대한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어 2월 15일 대표 단 출발 전까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면회소 건물 형태 및 기본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구체적 규모가 산출될 수 있음을 강조한 데 반해, 북한측은 우선 연건평을 확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건평 2만 2천평 규모의 건물 및 부대시설 내역을 제시하였다.

계획설계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쌍방 각기 초안을 마련하여 추진 단에서 협의·확정하고, 실시설계는 우리측이 주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계획설계는 북한측이 하고 실시설계는 남측이 주관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면회소 건물형태 및 설계 등 선행공정을 먼저 확정하고 착공식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매월 2회 정례적으로 추진 단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착공식을 2003년 4월 중에 실시하자고 주장 하면서 자재·장비 내역서까지 제출하였다. 또한 추진단은 금강산지역에 상주하여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북한측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과 북은 전체회의 2회, 단장·실무협의 5회를 통해 면회소 규모 및 설계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나 쌍방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쌍방은 제2차 추진단회의를 2003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어 면회소 건물형태 및 기본시설, 규모, 설계 등 쟁점사항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제1차 추진단회의를 종료하였다.

다. 제2차 추진단회의(3.3~5)

쌍방은 제1차 추진단회의 합의에 따라 2003년 3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은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남과 북은 제1차 회의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회소의 규모 및 형태, 착공식에 필요한 설비·자재 제공, 추진단 운영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우리측은 제1차 회의 시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면회소 규모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안을 제시하였다.

즉 면회소의 장래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3,039평(10,047㎡) 규모가 바람직하며, 이산가족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가족호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선행공정 일정에 합의하는 데 따라 착공식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북한측도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제1차 회의 시보다는 다소 후퇴한 18,000평(60,000㎡)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북한측의 최종안임을 강조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금강산 지역의 풍치와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10~12층을 초과하지 않는 종합센터 형태로 지을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제1차 회의시 제시하지 않았던 면회소의 기본시설과 공

용시설에 대해 제2차 회의시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측의 입장에 근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착공식과 관련해서는 2003년 4월 중 실시를 전제로 착공 식용 설비·자재를 단계별로 제공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측이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제2차 추진단 회의 기간중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문제들을 토의한 결과 면회소의 기본시설과 공용시설, 추진단 구성 등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면회소 건설의 핵심이 되는 건물형태, 연건평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차 회의시와 같이 자기측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차기 회의 일자도 확정하지 못한 채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다.

라. 제3차 추진단회의(8.21~23)

제2차 추진단회의 이후 5개월 여가 지나도록 차기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금강산면회소 건설도 지연되게 되면서 남과 북은 면회소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측은 2003년 8월 14일 우리측에 대남전화통지문을 보내와 200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3차 추진단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면회소 규모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타결짓고 한가위를 계기로 착공식을 실시하자는 의사도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동의하면서 제3차 추진단회의가 2003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2박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면회소 규모 및 필수 구성요소, 완공 후 시설 관리·운영방안 등 쟁점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필수 구성요소들을 확정된 후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3,039평으로 1천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필수 구성요소들에 대해 합의한 후 연건평을 확정하자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연건평은 1만 5천평(50,000m²)을 제시하여 여전히 우리측 입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착공식 일자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면회소 규모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03년 9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시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반면, 우리측은 규모와 구성요소만 합의되면 착공식은 최대한 빨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면회소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면회소 완공 후 관리비용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시설 관리·운영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완공 1개월 전 운영 방안을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제3차 추진단회의에서 상호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을 모색하였으나, 규모 및 시설관리·운영 등 면회소 건설의 필수적 사안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과 북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5일부터 7일 까지 금강산에서 제4차 추진단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3.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가. 성립 배경

남과 북은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우리측이, 인력과 부지는 북한측이 제공하는 「공동건설·공동관리」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쌍방은 각기 세차 레씩 적십자 실무접촉과 면회소건설 추진단 회의를 열고 면회소 규모와 설계 등 건설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으나, 규모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으로써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는 면회소 건설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공동건설 방식으로는 시공, 시설관리·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이견이 많이 나오고, 그때마다 이견을 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면회소 건설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면회소를 조속히 건설하고, 완공 후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건설과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건설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렇다면 건설 비용과 자재를 부담하는 우리측이 전담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측 주도의 「전담건설·전담관리」 방식은 건설과 완공 후 시설 관리·운영을 우리측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는 방식이다.

우리측은 이러한 구상을 남북장관급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제의하고,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측도 「전담건설·전담관리」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호응해 옴으로써 새로운 건설방식을 협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나. 개 요

우리측은 2003년 10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이산가족 면회소 건설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3년 10월 28일 전화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와 11월 4일부터 6일까지로 회담 일자를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우리측이 동의함에 따라 제5차 적십자회담이 1년에 만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남북 모두 수석대표를 포함하여 대표단 교체가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최성익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최기성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종렬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최창훈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황 철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다.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11.5)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등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하고,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각기 제시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양측은 면회소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에 건설하며, 건설과 완공 후의 시설관리는 남측이 주도하되 북한측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면회소 규모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사업, 회담, 행사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 이외에도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전쟁시기 및 전쟁이후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제외하고, 북한측은 비전향장기수 추가 송환문제 등을 제외하였다.

우리측은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2004년 설을 계기로 실시하되, 혹한기를 피하고, 이산가족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9차 이산가족상봉을 2004년 실시하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겨울철은 계절적으로 힘들고 기온이 따뜻한 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구체적 일자와 규모를 제시하였는데 반해, 북한측은 우선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를 타결하고, 기타 이산가족 사업들은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면회소 착공식 이후 협의·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우리측 내부에 남아있는 전향장기수 중 복송희망자, 복송된 비전향장기수 가족 등의 추가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 문제는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송환함으로써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다음은 쌍방 입장을 담은 기초발언 요지이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과 북은 지난 제4차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실무문제를 토의해 왔으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는 것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이번 회담에서는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킴으로써 면회소 건설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노력함.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위해 2003년 11월과 12월 중에 쌍방 각기 100명씩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2004년 쌍방 각기 300명씩 서신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
- 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을 위해 2003년 12월 우리측에 접수된 명단 중 300명을 북한측에 전달하는 것을 제의함.
이밖에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도 협의하여 진전되기를 바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쌍방은 지난해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금강산 지역에 흩어진 가족, 친척면회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동안 3차례의 실무접촉과 3차례의 상무조 회의를 통해 의견 상이도 있었지만, 오늘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토의를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금번회담에서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킴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내외에 보여주고,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2) 수석대표 접촉(11.5)

남과 북은 오후 3시 30분부터 수석대표 접촉을 가지고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초안 문안을 조정하고,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다.

금강산면회소 건설문제에 대해 쌍방은 우리측이 건설과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북한측은 우리측이 금강산 현지에서 건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합의하였다.

면회소의 위치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하며, 크기는 6,000평으로 하되 추후 필요할 경우 증축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면회소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남북 회담장, 행사장, 금강산관광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의 생사·주소확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면회소 건설 이외의 이산가족문제는 제3차 실무접촉에서 면회소 착공식 이후 협의·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착공 이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우선은 1년여 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금강산면회소 건설 문제를 마무리 하는게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북한측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11.6)

남과 북은 2003년 11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1항에 이르는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2박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쌍방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던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면회소

착공 이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합의서 내용이다.

<합의서 요약>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 건설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함. 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m²)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
4. 남과 북은 면회소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
5. 면회소 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 규모의 면회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8.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
9. 금강산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를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 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

4.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가. 추진 배경

정부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을 위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적극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 게임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분위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하였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우선 국제대학스포츠위원회(FISU)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대회참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02년 8월 북한측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이후 동년 10월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측의 체육관계자들로부터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2003년 2월 일본 아오모리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체육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측의 참가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북한측 교육성에 대회홍보자료를 비롯하여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규정, 참가신청서, 단체경기최종참가약속, 심판진 명단 등의 양식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은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공식의제로 제기

하였으며 북한측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회에 참가하고 우리측이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를 약 2개월 앞두고 SARS(급성 호흡기중후군)로 인해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이 6월 말 재개되자마자 북한측에 서한문을 보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단체경기에 대한 조추침이 모두 종료되었고, 7월초까지 단체경기의 참가비를 모두 납입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측의 참가종목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월 27일이 되서야 뒤늦게 전통문 답신을 보내왔다. 당시 금강산에서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접촉 일정을 7월 4일부터 6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었다.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나. 진행 경과

우리측은 하진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20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북한측은 장정남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하진규(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	장정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학생 체육협회 부위원장)
대 표	김승철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명예총무) 김승곤(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안명국(대학생체육협회 상무위원) 윤용복(대학생체육협회 상무위원)

남북은 이미 지난해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여 이를 위한 실무접촉과 행사운영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회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첫날 만찬행사에서도 북한측인사들은 이번 회담의 전망에 대해 대부분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1) 제1일 회의(7.5)

북한측은 오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선 기초발언을 통해 선수단은 220명, 응원단은 310명을 파견하며 여자축구, 정구, 육상 등 10개 종목에 출전할 것이라 밝히고, 이동경로는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대구 직항로를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편의보장 문제는 우리측이 북한측 선수단의 체류비용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통신선로의 경우 부산 아시안게임때 불편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직통전화와 국제 전화를 포함하여 선수단과 응원단에 12회선, 보도진에는 9회선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폐회식 행사 때에는 부산아시안

게임의 전례에 따라 ‘단일팀 깃발(한반도기)’을 들고 공동입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의 제의사항은 우리측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개폐회식 행사와 편의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선례를 따르기로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터라 쉽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만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응원단 규모가 조 직위에서 준비한 숙소의 수용능력보다 많았고 통신선로 요구규모도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판단하였다. 우리측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규모로 축소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였다. 이동경로의 경우에도 대구공항보다는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 쌍방이 제시한 기본입장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쌍방 입장 대비표>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① 선수단 구성 및 참가종목	-	○ 선수단(220명) : 선수, 역원, 심판원, 기자 포함 ○ 종목(10개) : 여자축구, 정구, 육상, 다이빙 유도 등
② 참가등록서류	○ 7월 21일까지 제출	○ 8월 5일까지 제출
③ 이동경로	○ 북측항공기로 김해공항 이용	○ 북측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대구 직항로 이동 ○ 귀환방법도 동일(9.1)
④ 개폐회식행사	○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 단일기 사용, 공동입장 - 「코리아」 표식, 단체복은 부산 아시안게임 전례 준용
⑤ 경기 및 회의 참석	○ 경기에 각각 출전 각종회의에 각각의 대표 참석	○ 경기에 각각 출전
⑥ 시상식	○ 국기 게양 FISU찬가 연주	○ 국기 게양, 국가 주악
⑦ 신변안전 및 질서준수	○ 남측은 숙소배정,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중 편의보장 ○ 북측은 남측의 안내, 질서준수	○ 체류기간 중 신변안전 보장
⑧ 체류경비지원	○ 선수단의 제반 체류경비 부담 ○ 응원단도 최대한 편의보장	○ 선수단과 응원단의 이동, 체류기간 중 제반경비 부담 ○ 개폐회식용 선수단 단체복과 마크제작비용 부담 ○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에 최대한 편의제공
⑨ 한반도기 및 인공기 게양	○ 한반도기는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남북간 경기시에만 사용 ○ 북측 국기게양은 FISU 규정 및 국제관례에 따름	○ 국기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관례와 FISU규정에 따라 함
⑩ 응원단 구성 및 숙소	-	○ 310명 규모, 호텔에서 숙박
⑪ 통신보장	○ 선수단에 국제전화 2회선 남북 직통전화 10회선 보장	○ 선수단·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직통전화 5회선 보장 ○ 기자단에 화면1, 음성1, 사진전송1, 전화5회선 보장
⑫ 대회기간 문제 해결	○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협의·해결	○ 뜨거운 동포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 판문점 연락대표선을 대구현지에서 이용
⑬ 추후실무협의	○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남북은 오전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에 일치로 보였다. 우리측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회참가 등록서류 제출시한(7월 21일)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시상식 때의 국가연주 문제도 대회규정상 FISU 찬가를 연주하게됨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응원단 규모와 이동경로, 통신선로 보장 규모로 남북은 오후에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였다

우리측은 응원단 규모의 경우 숙소의 수용능력상 250명 정도가 적당하며, 이동경로도 행사운영의 편리함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이 보다 적절함을 설명하였다. 통신선로도 비용문제를 들어 북한측의 양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오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측이 제공한 통신선로 규모를 예를 들면서 오히려 보도진의 화면전송로를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1일차 회의에서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는 2일차로 이어졌다.

(2) 제2일 회의(7.6)

제2일차 회의는 북한측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늦은 11시 25분에 수석대표접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측은 장소가 비좁은 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상기시키고 북한측이 제시한 응원단 310명 규모를 수용하였다.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우리측 안에 동의하여 김해 공항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신선로에 대해서 우리측은 남북직통전화를 총 12회선으로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국제전화 회선을 늘려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직통전화 12회선과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FAX 2회선을 포함한 국제전화 10 회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측 안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남북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문안정리를 위해 1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진 후 종결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서를 서명·교환하였다

<합의서 요약>

- 북측은 선수·임원·심판원 등 선수단 200명 정도와 응원단 310명 정도, 기자단 19명 파견
- 북측은 대회조직위에 7월 21일까지 종목별 최종 선수단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
-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항공기로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측에 오며,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 이용
- 남북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
- 남측은 체류기간 북측의 편의 보장, 북측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준수
- 남북은 각각 경기에 출전, 시상식에 각각의 국기 게양,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
-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제반 경비 부담, 북측 응원단·기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 보장
- 한반도기는 남북공동입장과 남북간 경기시에 사용하며, 북측 국기게양, 국호표기는 FISU 규정 및 국제관례 적용
- 남측은 북측에 남북직통전화 12회선, 국제전화 6회선,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등 보장
- 기타 문제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
- 제반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
- 추후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VII. 경수로건설사업

1. 경수로 건설현황

가. 주계약 체결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94.10)에 따라 KEDO와 북한 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95.12)되고, 1997년까지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거행된 착공식과 함께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KEDO와 한전은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TKC)을 서울에서 체결함으로써 경수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계약은 1999년 12월 15일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 체결과 2000년 1월 31일 KEDO-일본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0년 2월 3일 발효되었다.

KEDO와 한전간에 체결된 주계약은 총 1,8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서, 계약 일반조건 38개 조항(150개 세부조항)과 2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본공사 추진

주계약의 발효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해 오던 부지정지공사는 2001년 8월 31일 완료되

었다. 한편, 북한은 우리가 제출한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기초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특히 2002년 8월 7일에는 발전소 본관 신축공사의 최초 콘크리트 타설공사 착공식을 KEDO 회원국 대표와 언론, 북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부지에서 거행한 바 있다.

<KEDO-한전간 주계약 주요내용>

1. 의무사항
 - 한 전 : 가압경수로 1,000MW급 2기 건설, 각종 생활 및 기반시설 설치·운영, 부지운영 및 건설방법에 대한 책임 등
 - KEDO : 부지제공,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부지내 질서유지 등
 - 북 한 :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의정서 등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2. 공사기간 : KEDO-북한간 별도 의정서(인도 및 조치일정 의정서)에서 확정
3. 계약금액 : '97.1 불변가격 기준 40.8억불(물가변동분 보상조건)
4. 계약조건
 -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의 재정적·법적 보호
 - KEDO는 한전 및 협력업체들을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분쟁 및 중재절차 : 국제상사중재규칙
 - 교육훈련 : KEDO는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에 따라 충분한 수의 북한 훈련생을 훈련
 - 보 증
 - 전기출력 : 1,000MW(허용오차 : ±3%)

그 이후 원자로 1호기 공사는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2호기도 기초굴착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진입도로, 취·배수방과제 물양장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생활 부지내 근로자 숙소,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은 상당부분 완공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새로운 북한 핵문제 대두로 인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KEDO 집행 이사국들은 경수로 사업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계속 협의해왔으며 2003년 2월부터 공사의 속도를 늦추어(slow-down)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해 왔으나 사업을 지속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2003년 11월 21일 공사의 일시중단(suspension)을 결정하였다.

경수로사업 추진이 일시중단된 2003년 11월말 현재 경수로사업 추진현황은 종합설계 60.91%, 원자로설비 구매 68.36%, 시공 21.48% 등을 포함한 종합공정의 진척도는 34.02%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경수로 건설공사에는 주계약자인 한전을 비롯하여 합동시공단(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말 현재 우리측 인력 353명, 북한측 인력 100명, 우즈베크 인력 95명과 KEDO금호사무소 인원 등 총 555 명의 근로자가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불도저, Back-hoe(포크레인) 등 280여대의 중장비와 차량 등 건설장비가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추진

가. 「경수로공급협정」 후속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대북 경수로사업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1996년 4월부터는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총 13개의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를 체결하였고, 1997년 1월에는 「부지의정서」와 「서비스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미지급시 조치의정서」를 체결하여 1997년까지 총 6개의 후속의정서를 체결·발효하였다.

1999년중에는 경수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인력의 훈련 문제를 규정하게 될 「훈련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어 2000년 7월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000년 10월 20일에 평양에서 Anderson KEDO사무총장과 북한측 김희문 원자력총국 부총국장간에 서명되었다.

훈련의정서는 경수로발전소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할 북한측 운영인력의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의정서에는 훈련장소, 인원 등을 포함한 훈련계획의 수립·이행·완료에 관한 절차와 이와 관련된 KEDO와 북한간 책임분담 및 상호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7년 11월부터 「품질보장의정서」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1년 12월 3일 Kartman KEDO 사무총장과 북한측 리재선 원자력총국장간 정식으로 서명, 발효되었다.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근 거	비 고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에 대한 신변보호 등	경수로 공급협정 제4조 6, 7항	'96.7.11 발효
통 행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3, 6항	"
통 신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5, 6항	"
부 지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5조 3항	'97.1.8 발효
서비스	북한의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4, 6항	"
미지급시 조 치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6조 3항	'97.6.24 발효
훈 련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경수로 공급협정 제7조 2항	'00.10.20 발효
품질보장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경수로 공급협정 제6조 4항	'01.12.3 발효
원자력 손해배상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2항	'00-01(설명회 2회), '02중 4 차례 협상
인도일정 및 조치	북한의 핵동결 및 해제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3조 3항	미협의
상환조건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경수로 공급협정 제2조 4항	"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4항	"
핵 안전 및 규제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경수로 공급협정 제10조 5항	"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는 KEDO가 수행하는 품질보장(QA) 활동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품질보장 활동과정에서 KEDO와 북한측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 KEDO와 계약자들에 대한 면책, 품질보장 관련문서와 기록의 제공범위 및 시기에 관한 내용과 함께, KEDO가 제공하는 경수로 2기의 전기출력, 주요부품, 초기장전 핵연료 및 건설물에 대한 보증과 관련한 세부 기술사항 및 보증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년 들어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시 책임 범위와 배상체계 등을 규정하게 될 「원자력손해배상의정서」 협상이 4차례 진행되었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 대두로 중단되었다. 동 의정서는 북한측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어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정서의 기본개념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원칙 등에 대해 2000년과 2001년 중에 2차례의 대북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북한 핵문제 대두로 KEDO-북한간 협상이 중단된 2002년 10월까지 진행된 후속의정서 협상의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기타 현안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후속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와 북한은 기 합의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과 경수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실무협상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우선 KEDO-북한간에는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고위전문가

회의를 통해 효율적·경제적 해로이용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수준, 북한의 KEDO은행 이용문제 KEDO 인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다양한 제반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2000년도에는 2월과 12월에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1차회의에서는 2000년 2월 3일 KEDO-한전간 주계약(TKC) 발효 및 본공사 착공에 따라 본격적인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제반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옥외개폐소 문제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 손해배상문제 등의 현안사항이 토의되었다. 또한 통행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KEDO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 직항공로 개설방안을 제안하였고, 바지항로를 통한 객화선의 승선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도에도 3차례의 고위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다.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바지선 이용시 객화선 승선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독자위성통신망 설치, 남북 직항공로 개설문제 등도 협의하였다. 북한의 건설허가 발급을 앞두고 8월 개최된 두번째 회의에서 KEDO측은 공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북한 원자력 안전규제당국의 건설허가가 적기에 발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북한측도 경수로사업 진척을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11월초에 개최된 세번째 회의에서는 북한 원자력 고위 관계자들의 제3국 및 국내시찰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남북 직항공로 개설문제, 세관통관절차 등에 대해서도 쌍방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2002년도 들어서는 5월 한차례 고위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노무인력, 독자위성통신망 설치, 소외전력 구성, 안전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KEDO측에서는 건설일정표를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고위전문가회의 이외에도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통제 문제, 원자력안전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해당분야 실무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부지관리 및 개별서비스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KOK),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GBOK)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하였다.

특히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회의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현재의 110불을 600불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임금문제 미타결을 이유로 북한측은 2000년 4월 북한측 근로자 200명중 100명을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우즈벡 인력을 투입하였으며, 2003년 12월 현재 95명에 이르고 있다. 그간 고위급회담 2회(2001년 3월, 6월)와 카트만 KEDO사무총장 방북시 협의(2001년 12월), 전문가회의 2회(2002년 6월, 9월)등을 통해 양측 이견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쌍방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으나 2002년 10월 북핵문제의 대두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인원 및 물자의 보다 원활한 수송을 위해 그동안 고위전문가회의를 통해 제기해 오던 “효율적·경제적인 추가 항공로 개설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항공전문가회의가 2002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동해 직항공로 개설 및 북한측

항공관계자의 우리측 공항시설 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측 항공관계자가 5월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측 양양·김해공항 등을 방문하여 현지시설을 시찰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조업 등 각종 서비스 제공범위 및 기술적 사항, 단축항공로 등에 합의한 이후 7월 20일 양양-선덕간 시험비행(첫비행)을 실시함으로써 동해 직항공로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또한 2000년 10월 발효된 「훈련의정서」에 따라 KEDO는 북한측 운영인력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훈련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우선 2001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경수로대상사업국 김희문 국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 19명이 우리측 훈련시설 및 원자력 관련시설을 시찰하여 향후 운영인력의 본격적인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어 2002년 2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훈련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1단계 운영인력 훈련에 관한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여 훈련생의 생활조건 등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부지내 금호교육원에는 6월 5일부터 1단계 운영요원 123명이 입소하여 실내이론교육을 받고 10월 9일 수료하였다. 이후 북한측 운영인력 훈련은 북한 핵문제 대두이후 중단되었다.

KEDO는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설계자료 송수신 및 화상회의 등의 국내와 부지간 대규모 데이터통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자위성 통신망(ISCN)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그간 고위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북한과 통신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대두 등의 상황에 따라 개설시기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밖에도 원자력 안전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2002년 7월 2일부터 27일까지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는 북한 규제요원 25명이 규제기초과정 훈련을 수료하였다. 아울러 경수로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내 규제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 등을 북한측과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무회의도 수 차례 개최된 바 있다.

3. 새로운 북한 핵문제 대두 및 경수로사업 일시 중단

2002년 10월 17일 미국은 북한이 Kelly 차관보의 방북(10.3-5)시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정부도 10월 17일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남북 및 국제사회와 맺은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25일과 11월 21일 외무성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측의 핵 우선 폐기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시 미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한데 이어 2003년 1월 10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한·미·일은 APEC시 한·미·일 정상회담('02.10.26) 및 여러차례의 TCOG회의('02.11.9, '03.1.6, '03.6.12) 등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 기본합의(AF), NPT, IAEA협정,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 국제적 합의에 중대한 위반이며, 동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이 국제적 합의 준수 및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KEDO는 2002년 11월 14일 KEDO집행이사회(한·미·일 및 EU)를 뉴욕에서 개최하고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북한의 KEDO 및 KEDO집행이사국과의 향후 관계와 상호활동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제거에 달려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성명에서 12월 이후의 중유공급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3일 KEDO집행이사회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상황을 인식하고 공사의 속도를 늦추어(slow-down)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침하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공사의 축소 및 순연, 기자재 발주계약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이후 북한과의 각종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특히 KEDO-북한간의 원자력손해 배상의정서 협상의 중단으로 야기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 경수로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3년에만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5차례 개최하고 한·일 및 한·EU 양자협의로도 6차례 개최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의 결과, 2003년 11월 21일 KEDO집행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중단(suspension)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원칙

적으로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에서 일체의 공정은 중단되었고, 공사 재개를 감안하여 공사현장 및 제작중인 기자재 등의 보존, 유지를 위한 마무리 조치를 실시하고, 중단 기간중에는 보존·관리 활동이 추진된다.

이러한 중단관련 후속조치가 질서 있고 평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바, KEDO는 중단관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북한측과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향후 경수로사업의 재개문제는 중단기간 만료 전 집행이사국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부록 1> 남북관계일지

<부록 2> 남북회담 합의서

【 2002년 】

12. 3 러시아 외무성, 북핵관련 한반도비핵화보장 촉구성명
12. 4 北 방송,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중유제공의무) 파기 비난
12. 6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12.6~8, 금강산)
- 착공일, 개성-문산간 임시도로 개통 등 합의
12. 7 北 유류 바지선(삼광5호), NLL 넘어 우리측 해역으로
재표류
12. 9 IAEA 사무총장, 대북사찰 필요성 언급
- 12.11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12.11~13, 서울)
- 12.11 스페인 해군, 北 화물선 「소산호」 인도양에서 나포
- 美 해군이 수색, 15개의 스킵 미사일 발견
- 12.13 北 외무성, 미국의 북한 화물선 억류 관련 규탄 담화 발표
- 12.13 러시아 및 일본 외무부, 북한 핵시설 재가동 관련 우려 성명
발표
- 12.13 김대중 대통령,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부시 美 대통령과
전화 통화
- 한·미·일 3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냉정히

대응

- 12.13 北 원자력총국장, IAEA 총국장에게 편지
-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된 우리의 모든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최단시일내에 철거조치 요구
- 12.14 유엔 사무총장, 북한 핵동결 해제 관련 기자회견
-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에 협력하고 IAEA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방조치를 취하지 말 것 촉구
- 12.15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15~17, 금강산)
- 금강산면회소장소, 설계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공동보도문 발표
- 12.15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2.15 ~17, 금강산)
- 차량운행 및 임시도로 개통 등 합의
- ☆ 北 조평통, 핵동결 조치 해제 관련 담화 발표
- 전력생산을 위해 핵동결 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 12.16 김대중 대통령, 북핵 반대하되 평화적 해결 강조
- 12.16 美 국무·日 외상, 北 에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포기 및 국제협약 준수 촉구
- 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노무현 후보 당선
- 12.2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한-미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강화의지 표명

- 12.22 北 중앙통신사, 핵시설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 발표
- 12.23 제6차 남북군사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집)
- 12.25 제2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12.25~28, 평양)

【 2003년 】

- 1.1 北 신년공동사설, ‘민족공조 실현’ 강조
- 1.4 IAEA, 북핵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한달 유예 결정
- 1.5 北 민족화해협의회, 남측 민화협·범민련에 새해인사 서한 발송
- 1.6 통일부장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의
 -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1.6 IAEA, 핵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 1.7 정부, 북한에 IAEA 결의 성실히 이행 촉구
- 1.7 한미일 TCOG회의 공동성명, 북측에 신속한 핵폐기 촉구
- 1.8 EU 집행위원회, 대북긴급식량지원 결정
- 1.10 北, NPT 탈퇴 선언

- '93. 6. 11부로 정지시켜 놓았던 NPT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

* 정부, 북한의 NPT 탈퇴 즉각 철회 촉구

- 1.17 北 경추위 위원장, 식량차관 40만톤 제공에 사의 표명
- 1.18 러시아 북핵특사(로슈코프 외무차관), 평양도착, 일괄타결 안 중점 조율
- 1.20 김정일, 러 외무차관과 회담
 - 핵문제 타결을 위한 러시아의 포괄제안에 대해 협의
- 1.20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20~22, 금강산)
 - 면회소건설추진단 구성, 제6차 이산가족상봉 실시 합의
- 1.21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1.21~24, 서울)
- 1.22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1.22~26, 평양)
 - 남북철도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하기로 합의
- 1.23 러시아 외무장관, 북미 직접대화 촉구
- 1.25 北 외무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 거듭 촉구
- 1.27 대통령 대북특사(임동원), 방북(1.27 ~29)
 -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와 회담, 김대중대통령의 친서 전달, 2월중 경의선 철도 연결·금강산육로관광 2월초 실현 등 합의
- 1.27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판문점 통일각)

-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

- 1.29 대통령 대북특사(임동원) 귀환
- 1.29 美 대통령, 2003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 불용 거듭 천명
- 1.30 김대중 대통령, 대북유입 현대자금 '사법대상 제외' 입장 표명
- 1.31 노무현 당선자, 유엔 통한 대북제재 반대
- 2.1 北 아·태위, 금강산육로시험답사와 기본육로관광을 2.4-14 사이에 진행한다고 발표
- 2.1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경기 남북공동입장
- 2.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미 대표단 파견
 - 부시 대통령 면담 및 노무현 당선자의 친서 전달
- 2.3 유엔, 추가 대북지원 추진 발표
- 2.3 미국,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의지 표명
- 2.4 러시아, 북핵 안보리 회부 반대
- 2.5 국무총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병행추진 입장 표명
- 2.5 北 외무성, 핵시설 재가동 관련 언급
 -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생산에 국한
- 2.7 아오모리 동계올림픽 남북단장, 체육교류의향서 교환

- 2.7 美 대통령, 북핵문제 외교적 해결 강조
- 2.8 中 장쩌민 주석, 북핵 평화적 해결 강조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수호 강조
- 2.10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행사 개최
- 2.1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회의(2.11~14, 서울)
 - 북핵문제, 철도·도로연결 및 개성공단건설 착공문제 등 협의
- 2.12 北 외무성, '테러정권 지목' 관련 對美 경고
- 2.12 IAEA, 북핵 안보리 회부
- 2.13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제1차 회의(2.13~15, 금강산)
- 2.13 中, 유엔의 북핵문제 성급개입 경고
- 2.14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및 금강산시범 육로관광 실시
- 2.14 김대중 대통령 對국민성명, 남북정상회담시 대북송금은
평화와 국익을 위해 수용했다고 설명
- 2.15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61회 생일 중앙보고 대회 개최
- 2.15 러시아 외무장관, 북핵 정치·외교적 해결 강조
- 2.16 美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핵해결 다자해법 강조
- 2.17 北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정전협정 포기' 경고
- 2.17 러시아, 안보리 대북결의안 반대

- 2.18 北 외무성, 핵관련 강경조치는 자위목적이라고 주장
- 2.18 美, 北의 정전협정 포기위협 일축
- 2.20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2.20~25, 금강산)
- 2.20 국방부, 北전투기 NLL 침범 강력 항의
- 2.21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경의선 임시도로 통해 개성공업지구 육로사전답사 실시
- 초 北, 만경보호 입항금지 관련 對日비난
- 2.23 일반인 대상 육로 이용 금강산관광 실시
- 2.24 北, 지대함 미사일 동해상에 발사
- 2.24 美 국무차관, 북핵문제 다자틀 해결 거듭강조
- 2.25 제16대 대통령 취임
- 2.27 美·러 정상, 북한 비핵화 합의
- 2.27 IAEA, 北원전 재가동 보도 관련 성명
- 2.28 외교통상부, 북한 5MWe 원자로 재가동 관련 성명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호응할 것과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제반의무 이행을 촉구
- 3.1 ‘3.1 민족대회’ 개막(3.1~2, 서울 워커히 호텔)
- 3.1 美 국무부,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중단 시사
- 3.3 금강산면회소건설 추진단 제2차회의(3.3~5, 금강산)

- 3.3 日 총리, 북-일 평화선언 이행 주장
- 3.4 北 조평통, 대북송금 특별검사제 강행시 남북관계 동결' 주장
- 3.4 美 국방부, 西태평양에 추가병력 배치명령 하달
- ☆ 제4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종료(체코 프라하)
 - 유엔인권위원회가 차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비난결의 채택, 유엔고등판무관실이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방해없이 접근할 권리를 확보 등 촉구
- 3.5 美 국무부, 북한 종교탄압 우려국 지목
- 3.6 러시아, 美의 對北위협에 우려표시
- 3.7 국방부, 북한 공군기의 美정찰기 위협사건 관련 대북 성명 발표
- 3.10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4차 회의(3.10~ 12, 개성)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공사 3월말 착수 등 합의
- 3.10 국방부, 北 동해 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발사 사실 발표
- 3.10 WFP, 북한 2003년 식량부족 110만톤 추정
 - 필요 식량규모는 490만톤, 자체조달은 380만톤
- 3.11 노무현 대통령, 대북송금 관련 입장 표명
 - 조성문제 등은 특검에서 조사하되, 북한에서 사용된 돈은 정치적 해결

- 3.11 양대노총, 교류협력 논의차 방북
- 3.11 IAEA 사무총장, 北이 핵도발정책을 채택했다고 주장
- 3.13 통일부장관, 북핵·남북대화 병행추진 재확인
 - 평화변영정책 일환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병행
- ☆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통일선언문' 채택(평양)
 - 조국통일의 자주적 실현, 통일의 평화적 실현,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달성 등 천명
- 3.13 日 방위청, 동해에 이지스함 배치
- 3.14 北 아·태위, 대선전 한나라당 대북밀사 평양과 중국서 접촉 주장
- 3.15 유니세프, 대북 지원활동 중단우려 표명
- 3.16 유엔특사, 북핵해결과 인도적 지원 병행입장 표명
- 3.18 정부, 개성관광 남북협력사업자로 현대아산을 승인
- 3.18 北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 개최, 6.15 공동선언 실천촉구 호소문 발표
- 3.18 美 국무장관, 핵관련 대북경고
 -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해법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나쁜 선택을 자극할 것

- 3.19 노무현 대통령, 先북핵해결 後 한미관계 개선 입장 표명
- 3.19 北,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 거절
- 3.20 정부, 北에 핵관련 국제사회의 요구 수용 촉구
- 3.21 北 조평통, 對이라크전 南대응조치 비난 성명 발표
- 3.21 EU, 북한에 위기악화행동 자제 촉구
- 3.22 北 경추위 단장, 남북회담 연기 발표
 - 남한 당국이 이라크 전쟁을 구실로 ‘테프콘-2’라는 위험
천만한 초강경 태세를 취한 것은 온 겨레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
- 3.22 정부, 북한에 경협·해운회담 일방연기 관련 유감 표명
- 3.22 유엔 대북특사, 북핵조율 안되면 전쟁 가능성 언급
- 3.25 합동참모본부, 北어선 NLL 월선사실 발표
- 3.25 中, 북핵문제 유엔 개입 불원입장 표명
- 3.26 北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 개최
- 3.26 北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참모장교 정례접촉’ 중단 방침
통보
- 3.26 남북 해외동포학자 통일회의(3.26~27, 평양)
- 3.27 유엔사, 北연락관 파견거부에 유감 표명
- 3.28 北내각, 인민생활 공채 발행 결정

- 3.29 한·미 외무장관, 북핵문제를 다자대화의 틀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
- 3.30 日방위청장관, 대북선제공격 不위헌성 강조
- 4.1 美, 북한 인권침해상황 보고
 - 북한주민들은 60여년간 전체주의적인 억압에 구속받고 있다고 주장
- 4.2 北, EU의 대북인권결의안 추진 강력 반발
- 4.2 미국,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 전수 주장
- 4.6 北 외무성, 유엔 안보리결정 불인정 방침 발표
- 4.6 北 조평통, 국회의 대북 제재론 권고 비난
- 4.7 정부, 남북장관급회담 무산에 유감 표명
- 4.9 北,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 전국적 보고행사
- 4.10 러시아 국방장관, 다자간 대북체제 보장 용의
- 4.12 노무현 대통령, 북한에 핵포기 및 국제사회와 대화 촉구
- 4.12 北 외무성, 美 적대정책 포기 전제 다자회담 수용 의사
- 4.13 北 인민군, 태양절 충성맹세 예식 거행
- 4.14 정부, 남북 및 주변4강 6자대화 조기추진 방침
- 4.15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보다 북핵해결 우선 입장
- 4.15 北 당·정·군간부, 태양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 4.15 中, 북한 태도변화 긍정 평가
- 4.16 유엔 인권위원회, 北인권 규탄안 채택
-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 규탄 결의문을 채택
- 4.17 北赤 장재언위원장, 韓赤에 쌀·비료 지원 요청
- 4.18 정부, 北에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 촉구
- 4.18 北 외무성, 8천여대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
- 4.19 北,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4.27~29, 평양)
- 4.20 北, 日의 납치문제 제기는 대결 속셈이라고 주장
- 4.20 호주, 북한선박 「봉수호」 강제 예인 후 조사
- 4.21 美, 베이징 3자회담(4.23~25, 미국, 중국, 북한 참가) 공식 발표
- 4.22 北 조명록, 후진타오 국가주석 예방
- 4.22 日, 韓日 참가없이 北日 국교정상화 불가입장 표명
- 4.23 美 백악관, 북핵 영구제거가 관건이라고 설명
- 한반도 안정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입장

- 4.24 北 인민무력부장, 美 침략전쟁책동에 만반의 준비태세 강조
- 4.24 3자회담, 북한 대표단의 결정으로 이틀만에 종료
- 4.24 濠 총리, 북한은 아·태지역 최대의 안보 위협국이라고 주장
- 4.24 美 대통령, 北 협박게임으로 회귀 주장
- 4.25 외교통상부장관, 北 핵보유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침해행위라고 주장
- 4.25 北,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우려,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 4.25 北 외무성, 베이징 3자회담에서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 제시했다고 주장
- 4.25 美, 3자회담에서 北核폐기 및 韓日참여 강조
 - 한반도 비핵화 및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필요성 강조
- 4.25 中, 북-미 양국간 이견이 심각하지만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강조
- 4.26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핵언급 사실이면 중대위반, 남북대화
통해 폐기유도 방침 결정
- 4.26 영국, 핵문제 해결시까지 대북 외교관계 재검토 입장 표명
- 4.27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4.27~29, 평양)
 - 북핵 평화적 해결협력 합의
- 4.27 北, 美의 북핵보상 불가입장 비난

- 4.27 IAEA 사무총장, 북핵에 단호히 대처 주장
- 4.28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국회 제출
-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도모 목적
- 4.29 남북장관급회담, 북핵 평화적 해결협력 합의
-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계속 협력
- 4.29 中, 북핵 평화적 해결 위해 제2차 베이징 3자회담 추진 발표
- 4.30 北 외무성, 북핵 유엔회부시 비상조치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
- 美 백악관, 비상조치 등 북한의 경고 일축
- 4.30 美 연례 세계테러보고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 5.1 남북불교단체, 전국 사찰의 석가탄신일 법요식에서 동시 봉독하게 될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
- 5.1 호주총리, 北 마약밀수혐의 드러나면 강력 대처 경고
- 5.2 韓中 정상, 3자회담 유익 평가, 북핵문제 평화해결 노력 지속 합의
- 5.2 北, 베이징회담은 美 무성의로 실패했다고 주장
- 5.2 호주 외무장관, 봉수호 헤로인밀수 관련 北 대사에 항의
- 5.3 北 경비정 NLL 침범

- 5.4 美 국무장관, 북한핵보유 발표의 신뢰성 제기
- 5.6 北 외무성, 봉수호 마약 밀매와 무관 주장
- 5.6 美,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北·이란 겨냥 핵수출통제 강화방안 제시
- 5.8 美 국무부, 북핵 재처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
- 5.8 美 백악관, 북한선박 나포는 정보와 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주장
- 5.8 日 관방장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북제재도 검토중이라고 발표
- 5.9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북한 핵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
 - 한반도 비핵화, 北의 행동방향 제고, NPT에 따른 모든 안전 조치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
- 5.9 日 총리, 북한의 마약밀수, 미사일부품 대북수출 등 단속 강화 방침 발표
- 5.10 中 외교부부부장, 북핵조율 위해 訪韓
- 5.11 北 통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주장
- 5.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美대통령에 대북협상 지속 촉구 방침 표명
- 5.13 통일부장관, 北 개혁·개방 위해 경협 지속 강조

- 5.13 러시아, 北의 한반도비핵화 파기경고에 유감 표명
- 5.14 한미정상, 평화적 수단통해 북핵 제거 합의
 - 남북 교류·협력을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이며 추진
- 5.14 EU, 750만 유로 대북의료기기 및 약품 지원 발표
- 5.15 中·日, 한미정상회담결과 공감·환영
- 5.15 산업은행, 경의선 개통 물류효과 71억 달러로 추정
- ☆ 北 IOC위원(장웅), 아테네올림픽에 남북단일팀 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5.16 정부, 비료 20만톤 대북지원 결정
- 5.16 경의선 철도·도로 노반공사 종료
- 5.16 美, WFP통해 北에 식량 4만톤 인도적 지원
- 5.17 조선신보, 북한이 올 4.28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사실 보도
- 5.17 노무현 대통령, 북한은 개혁개방 통해 고립에서 탈피하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5.19 통일부장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계속 유효 입장
- 5.1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회의(5.19~23, 평양)
 - 철도 궤도연결 행사개최,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

실시 등 합의

- 5.19 北-스위스 외무장관회담,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 5.20 北,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미공동성명 강력 비난
- 5.21 청와대, 경추위 北 재난발언 유감 표명
- 5.21 北 조평통, 한나라당 대표의 북한체제 유도정책 발언 비난
- 美, 대북 경제제재 일본과 공동보조 방침 표명
- 美 조총련, 만경봉호 이용 미사일부품 수송증언은 날조됐다고 주장
- 5.22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핵악화시 검토될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행동가능 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혀
- 5.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쌀 40만톤 지원 등 7개항 합의 후 종료
- 5.23 美·日 정상, 北 긴장고조시 더 강경 조치 취할 것 경고
- 5.24 北 외무성, 조-미 쌍무회담 후 다자회담 개최 가능
- 5.24 日, 동중국해 침몰 北공작선 도요서 전시
- 5.25 北 조평통, 한미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시 남한에 엄청난 재난 초래 경고

- 5.26 북한어선 6척 집단 NLL 침범
- 5.27 정부, 北 재난발언 반복에 유감표명
- 5.27 노무현 대통령,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은 계승방침 표명
- 5.27 북한어선, 서해 NLL 월선
- 5.27 美, 先쌍무회담 제의 사실상 거부
 - 주요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통해서만 북핵문제의 지속적 해결책이 도출된다고 주장
- 5.27 러-中 정상, 북핵 평화해결 촉구
- 5.28 정부, 北에 'NLL월선 재발방지' 촉구
- 5.29 北 아·태위, 금강산 관광 6월초 재개 발표
- 5.29 北, 南 함정 영해 침입 군사적 도발감행 주장
- 5.30 北어선, NLL 집단 월선 후 귀환
- 5.31 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최신행 패트리엇(PAC-3)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발표
- 5.31 美하원의원 방북단, 최태복, 백남순 등 면담
- 5.31 日방위청장관, 북핵위기 고조땀 강력한 조치 경고
- 6.1 해군, 北어선 NLL침범에 경고포격, 추방
- 6.1 美·러 정상, 북핵포기 강력촉구
- ☆ 중국-프랑스 정상 북핵 평화적 해결 촉구

- 6.2 노무현 대통령, 북핵불용·평화적 해결입장 재확인
- 6.2 北, 어선 NLL 침범
- 6.2 방북 美의원단, 北 핵연료봉 거의 재처리 확인' 주장
- 6.2 北 조평통, 남한 당국자들이 체제비난을 하면 더 큰 재난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
- 6.2 G8, 북한에 핵개발계획 포기, 국제핵안전조치 준수 촉구
- 6.3 北 인민군 해군사령부, NLL수역 '북측 영해 주장
- 6.4 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강경한 조치'에 대해 그런 상황이 조성하지 말도록 북한에 대한 권고·경고의 메시지로 해석
- 6.4 제8차 남북군사실무접촉(판문점 평화의집)
 - 경의선과 동해선 양쪽 상대방 지역에서 공사 진척상황을 직접 확인키로 합의
- 6.5 日 총리, 北 일본인 납치는 테러행위 주장
- 6.6 北 외무성, G-8회담 결정은 미국의 강권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
- 6.6 유니세프, 세계각국에 인도적 차원의 對北지원 촉구
- 6.7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6.7~9, 개성, 출퇴근방식)
 - 연결행사 개최, 고장장비 수리 등을 위한 기술지원 등 합의

- 6.9 美 백악관, 북한주민의 최대 안보위협은 바로 북한정권이라고 지적
- 6.10 日, 북한 화물선 ‘남산B호’ 구조상 문제 시정때까지 출항 금지
- 6.11 남북 군사당국, MDL넘어 경의선·동해선 공사현장 상호확인
- 6.11 北 외무성,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
- 6.13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재개 및 6월하순 개성공단 착공에 합의
- 6.14 경의·동해선 남북철도 연결식 거행
- 6.15 남북 적십자,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각100명 명단 교환
- 6.16 노무현 대통령,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정치적 의미 강조
- 6.16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 확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6.17 美 국무부, 북한의 ‘물리적 보복’ 경고를 호전적 수사라고 일축
- 6.18 北 외무성, 미국의 다자회담은 북에 대한 고립압살 행위의 위장물이라며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 6.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무장관회의 북한 대표단, 북한의 NPT 복귀 등을 촉구한 ARF의장성명에 대해 공공연한

- 내정간섭이며 미국의 비열한 막후공작의 산물이라고 비난
- 6.20 국방부, 동해선 남북 軍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접촉
- 6.20 北 조평통, 한미 군사연습을 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하며 중단 요구
- 6.21 정부, 대북식량차관 1천67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키로 의결
- 6.21 러시아 외무부, 北-美 다자회담지지
- 6.21 파키스탄,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핵개발 기술협력은 전혀 없다고 주장
- 6.23 노무현 대통령, 특검요청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기간 연장 거부
- 6.23 北, 23일 예정됐던 만경봉호의 니키타항 입항을 유보한다고 통보
- 6.25 대북송금 특검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현대 통해 1억불 지불 발표
- 박지원, 정몽헌, 임동원 등 기소
- 6.26 파키스탄 대통령, 북한과 어떤 핵연계도 없다고 주장
- 6.27 北 외무성,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북한 인권문제 지적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비난
- 6.27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6.27~7.2, 금강산)

- 6.30 개성공단 착공식 거행(개성 판문군 평화리)
- 6.30 대한적십자사, 北에 실종언론인 생사확인 요청
- 7.1 국회,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 7.1 北 아·태위, 대북송금문제 관련 성명 발표
 - 특검수사결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평양상봉 관계자들의 전원 무죄석방을 주장
- 7.1 北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미국의 전력증강계획 관련 경고담화 발표
- 7.2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7.2~4, 파주 흥원연수원)
 -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 합의
- 7.3 美, 韓日포함 북핵 5자회담 확대 강력 촉구
- 7.4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 관련 실무접촉(7.4~6, 금강산)
 - 선수, 심판, 응원단, 기자단 등 500여명 파견 합의
- 7.6 北 조평통, 국방부의 '핵심적인 적 규정'에 대해 비난 성명
- 7.7 韓-中 정상회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해 다자회담 등 당사자간 대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
- 7.8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러시아에 보낸 위로전문에서 '어떤 형태의 테러도 반대한다'고 밝혀

- 7.9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7.9~12, 서울 신라호텔)
- 적절한 대화통해 핵문제 해결 등 합의
- 7.9 국가정보원,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고 보고
- 7.9 北 조평통, 수도방위사령부가 수도권 일대에서 전차 등 이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는 불순한 행위라고 비난
- 7.9 美 상원의교위,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을 가결
- 7.10 北 경비정, NLL 침범 후 귀환
- 7.11 北,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관련 입국자 감염진단 조치 해제
- 7.13 외교통상부장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조치는 '추가적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
- 7.13 美 국방장관, 北폐연료봉 재처리의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
- 7.16 유엔 사무총장, 북핵 평화적 해결 촉구
- 7.17 북한군, 중부전선 DMZ서 아군 초호 향해 기관총 총격
* 우리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과 경고방송 실시
- 7.17 中, 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남북한에 자제 촉구
- 7.18 美 대통령, 北 인권상황 강력 비난

- 7.18 北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정전협정체결 50돌 기념 인민군 초청 관련 참석거부
- 7.18 北 조평통, 美 국방부 ‘작전계획-5030’ 관련 성명 발표
 - 美 국방부의 ‘작전계획-5030’ 작성은 이라크 다음은 조선반도라고 한 전쟁폭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7.24 정부, 상반기 국내 입국 탈북자수 발표
 - 598명으로 작년 상반기 561명에 비해 7% 증가
- 7.24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외무장관 회의, 북핵 관련 의장성명 채택
 -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대화모멘텀 유지 등
- 7.27 유엔군사령부, 판문점서 정전협정 50주년 기념식 거행
- 7.27 中, 6.25 정전협정 50주년 맞아 北核회담 재개 촉구
- 7.29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회의(7.29~31, 개성)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7.31 국회,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 재의 결의안 부결
- 7.31 北 조평통, 을지포커스렌즈연습 관련 대미 규탄 성명 발표
 - 전쟁연습 책동은 무력압살 기도라고 비난
- 8.1 北 외무성, 6자회담속 쌍무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

- 8.1 정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관련 대북전통문 발송
 -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목적의 훈련임을 통보
- 8.1 美, 다자회담중 미-북 직접대화 기회 있을것이라고 언급
- 8.2 정부, 대북방송 중단요구 관련 대북전통문 발송
 -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해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
- 8.4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 현대본사 사옥에서 투신 자살
- 8.4 北 아·태위, 정몽헌 회장 사망 관련 애도성명 발표 및 조건 발송
 - 특검의 칼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
- 8.4 北 외무성, 6자회담 관련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담화 발표
- 8.4 美, 6자회담에서 북한과 안전보장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8.5 北, 제6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개최 일정 연기 제안
 - * 정부는 당국간 합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효통지문 교환과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촉구
- 8.5 日 관방장관, 남북자가족 인도 전에 수교교섭 불가방침 천명
- 8.6 국회의원 20명,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재개 촉구결의안 제출
- 8.7 北 외무성, 한-미합동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8.8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 정몽헌 사망 관련 담화 발표
- 고인의 뜻대로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을 계속 벌여 나갈 것
- 8.10 中 국가주석, 北 체제보장 필요 주장
- 8.11 北 조평통,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시위 사건 관련 미국, 한나라당, 정부당국을 비난
- 8.13 北 외무성, 6자회담 관련 담화
- 미국의 명백한 정책전환의지 확인, 불가침조약체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前에는 조기사찰 불허
- 8.14 외교통상부, 6자회담 중국 베이징개최(8.27 ~29) 공식 발표
- 8.14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남측대표단 330여명, 방북(8.14~17)
- 8.15 노무현 대통령,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북정책 방향 제시
- 6.15 남북공동선언 준수, 북핵 포기시 경제개발 지원 및 협력
- 8.15 北 중앙TV, KBS 와 공동제작한 평양 노래자랑 방영
- 8.16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9월 중 금강산육로관광 재개 합의 발표
- 8.17 北,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선수단 입국 취소 발표

- 8.17 北 조평통, 8.15 국민대회 규탄성명 발표
 - 극우 보수세력이 8.15국민대회에서 광란적인 반공화국 소동에 대해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 엄격히 대처할 것
- 8.18 통일부장관, 北에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촉구
- 8.18 日, 북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포괄해결 추진방침 발표
- 8.19 통일부장관, 8.15 행사시 인공기 소각 관련 유감 표명
- 8.19 北 조평통, 대구U대회 참가 발표
- 8.20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참가 북한선수단, 김해공항 통해 입국
- 8.20 남북4대경협합의서 교환·발효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8.20 남북IOC위원, 2004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 원칙 합의
- 8.21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3차회의(8.21~23, 금강산)
- 8.2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6차회의(8.21~22, 개성)
 -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일정 합의
- 8.21 국호영문표기문제 남북학술토론회(평양 김일성종합대학)
- 8.22 北 중앙TV, 대구하계U대회 여자축구경기 및 개막식 방영
- 8.24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北기자, 시민단체와 충돌
- 8.24 北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단 총단장, 기자-시민단체 충돌 관련 주동자 즉시 처벌과 사죄,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

- 8.25 대구U대회 조직위, 북한 기자단과 시민단체와의 충돌에 대해 유감 표명
- 8.25 정부, 평양관광사업체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 8.2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회의(8.26~28, 서울)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등 진행현황 점검
- 8.26 北 경비정, 연평도 해상 NLL 침범
- 8.26 日 억류 만경보호, 재검사를 받은 후 북한으로 출항
- 8.27 문화관광부장관, 北 선수 자극행위 강력 대처 방침 발표
- 8.27 북핵 6자회담(8.27~29, 베이징)
- 남북한 미·일·중·러 등 6개국 참가
- 8.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회의(8.26~28, 서울)
- 금년내 경의선·동해선 궤도부설 도로 노반공사 완료, 식량 분배 현장확인 등 합의
- 8.29 베이징 6자회담 공동발표문 채택없이 종료
- 8.29 北 외무성, 미국의 완전 무장해제시키려는 속심을 확인했다고 주장
- 8.29 中, 탈북자의 제3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불허한다는 기존

정책 고수방침 표명

- 9.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북측 선수·응원단, 귀환
- 9.1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관계자 33명, 방북
- 9.2 6.15공동선언 관철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의 진행(9.3, 금강산)
- 9.3 정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北 흑연광산개발사업 승인
- 9.3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
- 9.3 유엔 사무총장, 북한, 중국, 미국 등에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
- 9.4 통일부장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추진 방침 표명
- 9.4 美 백악관, 대북불가침보장은 부시 대통령 발언으로 충분하다고 주장
- 9.8 천태중, 北 영통사 복원에 기와 40만장 지원 합의서 교환
- 9.8 北 외무성,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없는 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의지 표명
- 9.9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북핵 협의차 訪中
- 9.9 北, 공화국 창건 55돌 관련 각종 경축 행사 진행
- 9.10 北, 日 납치문제 거론하면 강경대응방침 표명

- 9.13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5명, 금강산 방문(9.13~15)
- 9.13 北, 남한의 對이라크 파병 움직임 관련 비난담화 발표
- 9.13 러시아 외무장관, 北 미사일 개발 지원설 부인
- 9.14 평화관광, 일반인 대상 평양 관광 실시(9.14~18)
- 9.15 中,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군병력 배치 확인
- 9.16 정부, 제주도 평화체육축전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
- 9.16 北 외무성, 조-일평양선언 1주년 즈음 담화 발표
 - 지난 1년간 조-일 양국 관계가 오히려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놓여진 것에 대해 유감
- 9.17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관문점 통일각)
 -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 합의서 채택
- 9.19 北 조평통, 최근 주한미군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교체는 미국의 반복압살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실증한다고 비난
- 9.19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폐기촉구 결의안 채택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뤄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 9.20 제8차 남북이산가족 상봉(9.20~25, 금강산)
- 9.21 北 조평통,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대북압박발언 비난

- 9.22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입국
- 9.22 청년 유적답사단 179명 방북(9.22~26)
- 9.22 日 외상, 남북자 문제 해결에 총력 표명
- 9.23 北 민화협, 강원도지사 앞으로 태풍피해 위로 서신 발송
- 9.23 국정원, 송두율 교수 철야 조사
 - 北 노동당 정치국 중앙위원 김철수와 동일인물 여부 등 조사
- 9.23 日 외상, 남북문제 해결되면 수교 방침 표명
- 9.26 정상회담 관련 대북 송금관련자 유죄 판결
 -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며 송금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 9.26 北 조평통, 국회문광위 위원들의 방북국정감사 관련 보도
 - 평양과 개성을 방문,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화국의 존엄을 우롱하고 침해하는 주제넘는 행위라고 비난
- 9.27 국회 문광위원장, 방북국감 오해 유감 표명
 - 북한방문계획이 방북국감으로 보도된데 대해 적절치 않은 용어가 사용돼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본다며 유감을 표명
- 9.27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국회 문광위 방북 국정감사 관련 항의 전통문 발송
- 9.27 北 아·태위, 대북 송금사건 재판 관련 담화 발표

- 불법 비범 의 백해무익한 처사로서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들은 특검조작의 장본인으로서 거래와 역사앞에 범죄행위

9.27 美·러 정상, 北에 핵개발 중단 촉구

9.29 정부, 北에 ‘방북감사’ 관련 전통문 발송

-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상호 존중과 기초 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

9.29 北 외무성,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50주년 즈음 담화 발표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의사 표명 및 쌍무적인 불가침 조약 체결 주장

9.29 정부,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과 경로 등과 서명 이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9.30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남측대표단 방북(9.30~10.4, 평양)

- 개천절 행사와 함께 백두산 일대의 단군 유적 답사, 단군학술 토론회, 합동문화공연 등 예정

9.30 유엔총회 北 대표, 후속 6자회담 불참 표명

-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발판으로 삼으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6자회담에 아무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연설

10.1 국가정보원, 재북학자 송두율 北정치국 후보위원 확인 발표

-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서열 23 위의 정치국 후보
위원 겸 당 중앙위원으로 선임
- 101 北,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및 세금규정 발표
- 개성공단 진출 남측기업이 부담할 1인당 인건비는 최소 57.5달러,
기업소득세는 14%로 결정
- 102 제2차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평양)
- 103 北 외무성, 영변 핵시설 중단설 관련 담화 발표
-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8,000여대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주장
- 104 北 조평통, 남한의 이라크 파병 움직임 비난성명 발표
- 104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한다고 발표
- 105 정부, '98년 이래 금강산 관광객 총 53만 8천명으로 집계
- 106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참관단 800여명 경의선 육로통해 방북
- 107 北 외무성, 일본의 핵협상 참여 거부
- 108 韓·中·日 정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합의
- 108 北, 송두율 교수와 무관 시사
- 송두율을 北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가진
자들의 억지몽상
- 109 北 외무성, 납치문제 해결 관련 일본내 일시 귀국자 송환

주장

- 10.9 철도도로 자재·장비 6천만달러 추가 차관지원
- 10.11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3차회의 및 제3차 해운협력실무
접촉(10.11~12, 문산)
 -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0.14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10.14~17, 평양)
- 10.14 정부, 대북 10만톤 비료지원 결정
- 10.14 의료계 대표단, 평양 의학과학도론회 참석차 방북
- 10.15 남북방송인토론회 관계자 138명 방북(10.15~19)
- 10.16 北 외무성, 때되면 핵억제력 공개조치 취할 것이라고 언급
- 10.16 정부, 금강산 신규 숙박시설 설치 승인
- 10.18 외교통상부장관, 6자회담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
- 10.19 노무현 대통령, 핵포기시 북한체제유지 협조 입장 표명
- 10.19 제주평화축전 북측준비위, 예술단·취주악단 불참 통보
 - * 남측 제주도민추진본부, 방문단에 예술단·취주악단을 포함
시키라고 촉구
- 10.19 美 대통령, 對北 불가침조약 서명 배제 방침 표명
- 10.19 EU, 대북 비료자금 800만유로 지원 발표
- 10.20 한의학의료대표단 방북(10.21~25)

- 10.20 국방부, 北 동해 미사일 발사사실 확인
- 10.20 北 적십자, 日에 납치 북한인 생사확인 요청서신 발송
- 10.22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에 사무소 개설
- 10.23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北참가단 190명, 고려항 공편
제주공항 도착
- 10.24 국방부, 북한내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 명이라고 공개
- 10.24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막(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 10.26 국회 건설교통위원 등 61명, 개성공단 방문
- 10.26 北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용순 사망
 -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치료 중 26일 사망
- 10.27 평양관광 북측요청으로 중단, 내년 4월 재개
- 10.27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10.27~28, 개성)
 -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등 합의
- 10.28 北, 중동국가와 미사일거래 합법적 권리 주장
- 10.29 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방북
- 10.29 北, 김용순에 ‘공화국 영웅’ 칭호 수여
- 10.30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탈북자 면담불허 관련 中國
비난

- 11.4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시(11.4~6, 금강산)
- 11.5 외교통상부, 대북경수로 1년 일시중단 방침 확인
- 1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회의(11.5~8, 평양)
 - 직거래 확대협의사무소 설치 등 합의
- 11.6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측전담 방식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6000평 규모 착공 합의
- 11.6 정부, 북측의 경수로 공사장비 반출 불허조치 철회 요구
- 11.7 北 언론, 황장엽 訪美활동 비난
- 11.7 北 조평통, 한미연합사 해체·미군철수 주장
- 11.9 中 외교부 상무부부장, 방한(11.9~12)
 - 한국 정부와 2차6자회담대책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협의
- 11.11 北 외무성, 日에 인권피해 보상 회담 제의
- 11.12 경수로기획단장, 대북 경수로 사업 1년기한 일시중단 입장 표명
- 11.12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합의 체결
- 11.14 탈북자 정착교육시설 '하나원' 증축
- 11.14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남북관리 구역내 경비초소 설치와 운용 문제에 대해 협의

- 11.16 北 외무성, 적대정책 철회시 핵계획 포기용의 표명
- 11.17 금강산관광 5주년 기념식 19일 금강산서 개최
- 11.18 日 외상, 6자회담서 납치문제 거론 방침 표명
- 11.19 美 국방장관, 北 남침뎀 핵 공격 방침 표명
- 11.21 KEDO 집행이사회,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1년간 한시 중단 공식발표
- 11.22 北 노동신문, 유독 비전향 장기수들에게만 불허한 것은 비 인도적 행위라고 비난
- 11.23 美 하원,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방안을 담은 북한자유 법안 상정
- 11.24 北, 南 해군경비정이 서해에서 포사격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
- 11.24 中 총리, 北核문제 일부진전 언급
- 11.25 외교통상부장관, 對北안전보장 공동성명 추진 발표
- 11.25 日 총리 상황악화시 對北 제재 검토의사 표명
- 11.26 예장통합 선교위원장, 북한에 교회건립 지원합의 발표
- 11.26 北 신문, 주한미대사의 대북경협 신중 발언 비난
- 11.26 러시아 외무부, 러-美 6자 회담 필요 공감 발표

- 11.27 외교통상부, 2차 6자회담 공동 합의문서 채택추진 발표
- 11.28 남북군사실무회담 제10차 수석대표 접촉(판문점 통일각)
- 11.28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6자회담으로 지역안보공동체형성 강조
- 11.28 北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유엔의 대북지원 호소 환영
- 11.29 北 신문, 경수로 위약금 즉시 지불 주장
- 11.29 日, 北 감시 정찰위성 발사 실패

<부록 2> 남북회담 합의서

□ 남북장관급회담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 양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 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 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평양

□ 남북군사회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대령문성묵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
대좌유영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쌍방은 2003년 1월 27일 체결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쌍방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한다.
2.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 10m, 서해 20m)을 개방한다. 이미 이용하던 임시 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들은 폐쇄한다.

2003년 9월 1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대령문성목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단장
대좌유영철

남북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2월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들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법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개성공단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하여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한다.

북측은 공단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측은 착공과 때를 같이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의 빠른 협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개성공단의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이를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발효시키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2년 12월 8일

금 강 산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 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 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 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 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

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 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조 제 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말한다

<북측>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의미한다.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 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통관
물품
말한다
열차·차량운행사무소
명부
상호
통관절차
송하인
수하인
운송
운송인
컨테이너
봉인의 이상유무
개장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통행차량, 차량

<북측>

세관통과
물건
의미한다
련운, 차량운행사무소
명단
호상
세관수속과 검사
송화인
수화인
수송
수송자
김함
봉인의 상태
개봉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운수수단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 사항들을 이 합의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
-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 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 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 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 다. 우편물
-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 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상호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생산장소
포장의 수 및 종류
중량
발급일자
한글
당해 물품
인장
도축
냉동
냉장
쇠고기
송품장
사유
여행자
별송품
진위
서명
부속서

북 측

호상
판매자
구매자
수송수단
생산지
포장/표식
무게
발급일자
조선어
해당물품
공인
도살
랭동
랭장
소고기
적선문건
리유
여행자
발송품
진실성
수표
부록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

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파주)에서 남북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대상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원산지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시기와 장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는행간 실무 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장소와 날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 산(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 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하기로 한다.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차분 자재·장비와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상호 교환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2003년 1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윤진식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자기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들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합의하였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되는데 따라 첨부 1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경의선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의 부록에 따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남측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해 나간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은 2003년 8월 초 개성에서 개최한다.

2003년 7월 4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조사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경의선은 2003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다.

2.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은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로 한다.

북측은 동·서해 비무장지대안에 대한 설계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남측에 제공한다.

3. 현장조사 대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들로 한다.

현장조사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며, 북측은 설계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력한다.

4. 남측의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 1명, 신호·통신·전력계통 기술자들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남측은 현장조사 5일 전에 현장조사 인원을 통보하며, 북측은 남측

조사단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5. 남측 현장조사 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로 하며 운송수단(소형버스 1대)은 남측이, 운전인원은 북측이 보장하고 현장조사인원들의 숙식비용은 경의선은 북측이, 동해선은 남측이 부담한다. 현장조사를 위한 남측 인원들의 비무장지대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6. 남과 북은 현장조사 자료에 기초한 설계에 따라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빠른 시일안에 협의·확정하고 필요한 제공대책을 수립한다.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실무접촉이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철도·도로연결공사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그와 관련한 실무적 대책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일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장비가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수송을 위한 임시도로를 개성 공단 착공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경의선 임시 도로 개설과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을 위한 쌍방 군사 당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를 해당부문에 각기 제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기본합의서를 필요한 서명·교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하였으며, 열차운행기본합의서도 빠른 시일내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4.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제2차회의를 2003년 1월중순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금 강 산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을 2003년 3월10일에서 1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한다.

가.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공사착수 5일전까지 협의·확정한다.

나.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경의선·동해선 임시 도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가. 1차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은 경의선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선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나. 현장방문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은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명을 포함하여 8~9명 정도로 구성한다.

다.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이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통보 내용 확인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측은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라 장비들에 대한 수리정비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되, 남측 인원들에 대한 명단제출, 신분안전, 편의제공 등은 종전관례에 따른다.

마.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 5일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자재·장비 사용결과를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한다.

4.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 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전체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 교환 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3년 3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사인원을 제외한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확정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1차분 자재를 부록 3과 같이 합의 조정한다.

3.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기술지원은 본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한다.

4.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한다.
왕래하는 인원들의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 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 까지 문산에서 진행한다.

2003년 6월 9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철도연결 행사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행사주관은 국장급으로 하며, 행사참가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공사인원과 행사인원, 기자들을 포함하여 각기 50명 정도로 한다.

2. 행사 사회는 경의선에서는 남측이,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하며 연결사는 각각 3분정도로 하되, 경의선은 남측이, 동해선은 북측이 먼저 진행한다.

연결사와 사회자의 발언은 행사 2일전에 문서로 상호 교환한다.

3. 연결행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행사는 쌍방 행사주관자들의 연결사 낭독 이후 공사인원들이 레일을 고정시키고, 자갈정리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로 한다.
- ② 사회자는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간단한 안내를 한다.

4. 철도 연결행사와 관련한 기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사참가지들의 복장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일체 표식을 하지 않는다.

② 철도연결행사장 간판은 철도연결 지점 한쪽에 세운다.

행사장 간판의 규격은 높이 3m, 너비 0.8m로 하고 경의선 행사장에는 남측이, 동해선 행사장에는 북측이 각각 1점씩 제작 설치한다. 간판 앞뒤면에는 「남북철도연결행사, 2003년 6월 14일」라는 글을 양측의 표기 방식에 따라 흰바탕에 청색으로 명기한다.

③ 행사에 필요한 방송설비는 쌍방이 각자 편리한대로 이용하되 철도 연결행사지점 자기측 지역에 마이크를 각각 1대씩 설치한다.

④ 기자들의 취재는 원칙적으로 자기측 지역에서 진행하며 행사 장면외에 다른 대상들을 촬영하지 않는다.

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에 지장을 주는 방송, 공연 등은 하지 않는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남측 인원들의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콘크리트 혼합장, 파쇄장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남측인원들의 기술지원은 동·서 각 지역에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2.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남측인원의 기술지원은 동·서 각지역에서 각각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경의선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며, 동해선은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다.

3. 남측은 기술인원을 동·서해 각 지역에서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과 수리정비에 각각 6~7명 보장한다

4.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로 하며, 운송수단은 동·서해 소형버스 각각 2대와 수리정비를 위한 이동정비차 각각 1대를 남측이 보장하고, 운전인원은 북측이 보장한다.

5. 기술인원들의 숙식장소는 경의선에서는 「자남산 여관」, 동해선에서는 「현대해상호텔」이나 「콘테이너」를 이용하며 숙식비용은 경의선은 북측이, 동해선은 남측이 부담한다

1차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갖고 1차분 자재·장비 제공 품목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순번	품 목	수 량	순번	품 목	수 량
자 재	22	디젤유	2,665t	22	디젤유	4,165t
	24	모빌유	100t	24	모빌유	150t
	25	변속기유	12t	25	변속기유	22t
	26	그리스	10t	26	그리스	20t
	27	방추유	20t	27	방추유	35t
	28	제동유	10t	28	제동유	18t
	29	부동액	20t	29	부동액	35t
				36	무수축물타르	96톤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을 200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9월 16일부터 필요한 기간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들은 경의선 5~6명, 동해선 7~8명으로 한다.
- ②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우선 동해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의선에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기로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 날짜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 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을 한다.

남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10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본도로나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 설치문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빨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 제 차 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03년 8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설계 합의사항

1. 신호분야

번호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1	군사분계선 열차확인장치	· 남북간 분계선 열차통과 확인장치 설치	
2	폐색방식	· 연동폐색	
3	연동장치	· 전기연동장치	역구내 취급
4	케이블설치	· 케이블은 관로사용 매설	
5	건널목	· 건널목 안전설비는 설계결과에 따라 반영(방법 및 수량)	
6	신호기 색등배열 및 현시방법 역운영방식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양측 신호 등 배열과 현시방법 등을 일치시킴)	
7	궤도화로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8	진로표시기 구성방법 및 설치방법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9	신호전원	· 신호전원은 배전선로 전원 · 예비전원은 축전지	
10	자동열차정차장치	· 설계 반영(수량은 열차 수량에 따라 반영)	
11	기관차정비선 화차수리선 등에 대한 조작설비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12	건축한계 · 차량한계 기준	· 북측 건축한계, 차량한계 적용	

2. 통신분야

번호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1	군사분계선 남북통신 연결방법 및 통신케이블 종류	· 북측방향 좌측으로 시설 · 광케이블 24C×1회선 · 동케이블 0.65×25P 1회선	
2	전송설비	· 경의선 3대, 동해선 6대, 남북연결 용 2대 : 7대	
3	수자식교환기	· 개성 1대, 금강산 1대 설치	
4	무선통신	· 열차운행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 설계반영	
5	영상감시장치	· 주요역 설치 (현문, 개성, 감호, 금 강산)	
6	역구내통신	· 남측 설계에 따라 반영	
7	역사령통신	· 열차운행관련 역구내 통신회선구 성 설계반영	
8	역구내 부속설비	· 열차운행 및 역운영에 필요한 설 비 설계반영	

3. 전력분야

번호	구 분	합 의 내 용	비 고
1	군사분계선 남 북 전원연결 관 계	· 북측방향 우측으로 신설	
2	전원설비	· 경의선 - 개풍변전소~개성간 배전선로 신설 · 동해선 - 고성변전소~고성간 배전선로 신설	
3	예비전원	· 경의선, 동해선 북측 인근선로에서 자 체해결	
4	배전선로 사용 전압	· 고압 : 6.6kV 3상 60Hz · 저압 : 380V, 220V	
5	사용기기 종류 (변압기, 차단 기 등)	· 변압기 : 몰드식 · 차단기 : 진공식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에서 11월 8일, 동해선에서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한다.

사용현장방문 및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 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남측이 전달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 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암반 제거용 자재 제공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에 따라 암반 제거를 위한 자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1. 자재제공은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하여 주 1회 진행한다.
2. 남측은 자재제공전 북측의 자재 사용현장(사용장소, 자재창고)을 방문한다.
사용현장방문인원은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3. 자재제공 수량 및 제원은 자재 사용현장 확인결과에 따라 정한다.
4. 자재수송은 자재전문수송차로 하며 일반물자 인도·인수 차량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5. 자재수량에 대한 인도·인수는 쌍방 해당 전문가들이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북측 자재 창고에서 진행한다.
6. 북측은 자재창고에 입·출입 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남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북측은 초기 2~3회 자재 사용상황을 남측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7. 북측은 남측 자재 수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자재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이 합의하는 데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4일

서 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 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에 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담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들은 합의 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US\$265(미화 이백육십오 달러)로 계산하고, 남측은 북측 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쌀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식량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및 선박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북측은 남측의 분배투명성 확인 보장 등 쌀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3년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첨 부>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정미 40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 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포 장

- ①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2%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이후 3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키며, 매달 쌀 10여만톤씩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우선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원산항, 청진항, 송림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해상 수송하며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선박의 북측 지역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수송선박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명단, 출항 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일 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식량인수회사는 매 출항 3일 전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상태를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 ④ 쌍방은 지정된 식량인도회사와 식량인수회사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을 남측에 통보한다.
-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홀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 합의서 체결후 7일 이내에 남측 식량인도회사에 제공한다.
-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 화물해상운송계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 수확인서(부록)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의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 ① 제공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남측의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와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쌀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매 분배문건 통보후 10일 이내에 남측 인원들이 식량 분배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은 동·서해지역 각각 한곳 이상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 촬영을 허용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부 록》

식량인수확인서

2003년 5월 23일자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식량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차량명) :
4. 도착항(도착지)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1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 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구간 현장방문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사구간 현장방문(이하 “현장방문”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방문 인원은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 실무인원을 포함하여 각기 10여명으로 하며 현장방문 구간은 경의선은 판문역~도라산역까지, 동해선을 남북관리구역내로 한다.

현장방문 인원,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장방문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2. 현장방문 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로 가며, 각기 1~2대의 자기측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3. 현장방문시 쌍방은 촬영기, 사진기,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공사상황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방문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4. 현장방문 인원들은 상대측 공사구간 방문시 상대측의 안내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이 자기측 지역 방문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실무자 등 7~8명의 인원으로 동행한다.

6. 남과 북은 현장방문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 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 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나. 중재판 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 측	북 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판정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 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 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한다.
-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질 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접촉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 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 병 응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리 금 철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강산이산가족 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함) 건설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5.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한다.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 m) 규모의 면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 면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 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면회사무소의 건설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8.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

9.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1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1월 6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이 병 응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장 최 성 익

합 의 서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북측 대학생체육협회간 실무접촉이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르는 제반 실무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임원, 심판진을 포함하여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기자단은 19명으로 한다.
2. 북측은 7월 21일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3.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오며 남측지역 이동시에는 남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 및 복장은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의 전례에 따른다.

5. 남측은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 숙소배정, 수송,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은 경기대회 참가기간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6.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7.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체류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북측 응원단 및 기자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8.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한반도기는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간의 경기시에 사용하며 남측은 북측의 국기 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보장하며, 북측 기자단에 TV 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남북직통전화 2회선과 국제전화 4회선 FAX 2회선을 제공한다.

10.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11. 대회기간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12.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추후 제기되는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3년 7월 6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 직 위 원 회
사 무 총 장 하 진 규

북 측 을 대 표 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학 생 체 육 협 회
부 위 원 장 장 정 남

남북대화

제70호

('03.12 ~ '04.11)

통 일 부



I. 2004년도 남북대화 개관 1

II. 남북장관급회담 9

- 1.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 11
-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 18

III. 남북 군사분야 회담 25

- 1.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27
- 2.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31
-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 / 36
- 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및
수석대표접촉 / 40
- 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
(제1차~제2차) / 43
- 6.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45

IV. 남북 경제분야 회담 49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 51
-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 60
- 3.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66
- 4.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70
-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 74
- 6.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 80
- 7.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 83
- 8.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 90
- 9.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 95

- 10.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 95
- 11.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 102
- 12.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 106
- 13. 남북청산결제관련 제1, 2 차 은행간
실무접촉 / 109
- 14.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113
- 15.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 118
- 16.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122

V.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27

- 1.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129
- 2. 용천재해 구호회담 / 134
- 3.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 139

VI. 경수로건설사업 145

부 록 151

- 1. 남북관계일지 / 153
- 2. 남북회담합의서 / 191

I. 2004년도 남북대화 개관

정부는 2004년도 남북대화의 목표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금년에는 총 25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회담에서 총 19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되었다.

금년도 남북회담에서도 북핵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작년에 이어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다.

이에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년 남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장성급군사회담」개최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근본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12월에 개최된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이외에도 장성급군사회담 2회,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2회,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1회, 장성급군사회담 군사통신실무접촉 2회 등이 개최되었다.

6월3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처음에는 서로의 이견이 컸으나, 수차례의 의견조율 끝에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남북합정간 상호교신이 이루어지고, 6월 15일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호 선전활동을 중지하는 등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경제분야 회담은 2003년 12월에만 회담을 4회나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2회를 비롯하여 임진강수해방지 관련 1회, 철도도로연결 관련 4회, 개성공단 건설 관련 1회, 경협제도 관련 1회, 청산결제 관련 접촉 4회, 해운협력 관련 1회 등 총 1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경추위에서는 개성공단 건설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개통일정 등 3대 주요 경협사업의 추진일정을 합의하였으며,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5월말부터 단독 현지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안정적인 남북경협 추진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조치도 강화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간 원활한 왕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도 청산결제 합의서」를 채택하여 청산결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상담 등 대북경협시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도·사회분야에서는 「남북적십자실무접촉」 1회, 「용천 재해구호

실무회담」 1회,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1회를 개최하였고, 제10차 이산가족 상봉(7.11~7.16)을 실시하였다

적십자실무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시범적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의 확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하였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복구지원을 위한 「재해구호실무회담」에서는 긴급구호품과 복구용 자재·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입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금년에도 남북회담은 점차적으로 전문화·실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간 현안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회담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7월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당국 간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북한은 7월 8일 김일성 10주기 민간 추모대표단의 방북이 무산된 데 대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7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5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개최를 거부하였다. 또한, 7월 19일 예정된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개최제외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이어서 7월 21일 북한인권법의 미국 하원 통과, 7월 27일과 28일 대규모 탈북자(468명) 입국 등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북한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8.3~6)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8.31~9.3)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측이 당국간 회담은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3대경협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적 문제 협의(실무협의, 문서교환 등)에는 응함으로써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관계의 기본틀은 유지되었다.

우리측의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개발업체간 실무협의」(8.17~18), 「제11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제의에 대해서는 「역사실시체계기술협의」(10.12~14), 「제6차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면회소건설 기술실무협의」(11.25~27)를 개최함으로써 일정범위 내에서는 기추진중인 교류협력사업을 진행시켜왔다.

또한, 판문점 직통전화 및 군사상황실간 직통전화도 이전과 다름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문점을 통해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운영 합의서」 등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 바 있다.

사회문화교류에서도 8.15남북공동행사 등 일부 무산된 경우도 있으나,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8.13)을 비롯하여 남북교육자통일대회(7.18~20), 고구려고분군관련 남북공동전시회 및 학술토론회(9.11~12) 등이 개최되었다. 또한 11월에는 남북 민간단체간 실무협의를 통해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6.15기념행사와 8.15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식량분배현장 확인 등 대북쌀지원,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 회담이 연기되는 일이 20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남북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남북경협, 민간급 사회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달라진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회담 개최현황('03.12~'04.11)>

분야	회담명	일자	장소
장관급회담	제13차 장관급회담	'04.2.3-6	서울
	제14차 장관급회담	'04.5.4-7	평양
군사분야 회담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03.12.23	판문점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04.5.26	금강산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04.6.3-6.4	속초
	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 회담	'04.6.10-6.12	개성
	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군사통신실무접촉	'04.6.25	경의선 군사분계선
	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군사통신실무접촉	'04.6.29	피주
	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04.6.29-6.30	피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04.7.5	개성
경제분야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회의	'04.3.2-5	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회의	'04.6.2-5	평양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03.12.2-5	속초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04.2.25-26	개성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 4차회의	'04.4.8-10	개성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04.6.30-7.2	금강산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2차회의	'04.6.24-25	개성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 4차회의	'03.12.17-20	평양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04.1.27-29	개성
	제1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03.12.17-20	평양
	제2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04.1.27-29	개성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04.4.20-22	피주
	남북청산결제관련 은행간 실무접촉	'04.5.18-19 '04.6.24-25	개성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04.2.25-26	개성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 3차회의	'04.4.8-10	개성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 1차회의	'03.12.17-20	평양
사회문화 분야 회담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04.5.24-25	금강산
	용천재해구호회담	'04.4.27	개성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 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04.6.23-25	북경

II. 남북 장관급회담

1.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3차 장관급회담은 2004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회담인 만큼 한 해의 남북관계 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참여정부가 2004년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은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되었다. 노대통령은 남북간 기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2004년에도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북한측은 1월 10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스탠포드대학 존 루이스 일행의 방북(1.6-10)기간 동안 영변 핵시설을 돌아보게 하였다.

이에 따라 장관급회담이 남북간 현안문제 외에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중심협의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북한측은 1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장관급회담 북한측 대

표를 일부 교체한다고 통보해왔다. 최성익·허수림 대표가 교체되고 신병철 내각 참사와 김춘근 민족경제연합회 서기장이 새롭게 회담대표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13차 회담은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김령성(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신병철(내각 참사) 전중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춘근(민경련 서기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2.4)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2004년도 남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먼저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더 중

요한 것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2차 6자회담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핵문제에 관한 논의는 남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정치군사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구체적인 과제로 △3대 경협사업의 착실한 추진 △문화재 보존 및 고대사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운영, △이산가족상봉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제13차 회담이 올해 남북관계의 전도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동결 대 보상」제안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쌍방 당국간 공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며 남북경제협력을 당국이 책임지고 진척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등이 북한측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국호영문표기(COREA)문제를 금년중 UN에 남북이 공동으로 제의하는 문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문제, 전연지대 비난방송 중지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금년도에 남북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남북 화해협력의 내실있는 발전」을 제시함.
- 무엇보다도 먼저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2차 6자회담부터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하겠음. 핵문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함.
 - 이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금년에는 남북이 협력하여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할 일이 많음.
 - 첫째,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들을 합의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
 - 둘째, 고대사 연구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협력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셋째,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 넷째, 정치군사분야의 신뢰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본격 협의하기 위해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올해 북남관계의 전도를 가늠하게 하는 이번 상급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의를 가짐. 새해 북남관계의 획기적인 전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측의 원칙적립장과 당면한 실천적 제안들을 밝힘.
 - 첫째, 북과 남이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민족의 존엄을 떨쳐나가자는 것임.
 - 둘째, 쌍방당국사이의 공조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임. 현시기 북남당국사이의 공조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임. 우리는 남측이 진정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의 정당한 제안이 실현되도록 이를 지지하며 미국도 이에 응해나서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함.
 - 셋째, 민족공조의 립장에서 북남경제협력을 쌍방당국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진척시켜나가자는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2.6)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 후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군사당국자회담의 조기 개최, 제9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등에 합의하고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회담 초기 북한측은 우리민족 제일주의,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경제협사업에 대한 당국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했으나 수석대표접촉 등이 이어지면서 쌍방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에게 2월 25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2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고하고 설득하였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과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안전보장문제를 포함하여 경제협력이 진전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동 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우선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5-6월경 꽃게잡이철이면 되풀이 되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군사 분야에서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분야별로 균형있게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음으로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회담기간중 4개 경협합의서 발효절차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전달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제9차 이산가족 상봉 '04. 3월말 금강산 실시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04.5.4~7, 평양 개최

2.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요

제13차 장관급회담 이후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남북화해협력의 큰 흐름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제13차 회담에서 어렵게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 우리측이 2차례에 걸쳐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대통령 탄핵정국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측은 우리측 내부의 「정국불안」을 이유로 회의장소 변경을 고집함으로써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 등 3개 실무회담들이 제때 열리지 못하고 몇차례 연기되었다.

특히 북한측은 4월23일 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로 제14차 장관급회담을 연기할 것을 시사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반면 제14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4.18-21)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또한 북한측의 용천역 폭발사고(4.22)에 대한 우리측의 신속한 지원과 북한측의 사의표명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하였다.

결국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14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합의대로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제14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측 단장이 김령성에서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로 교체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오지철(문화관광부 차관) 신언상(통일부 실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신병철(내각 참사)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춘근(민정련 서기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5.5)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사회·경제분야에서는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오가는 등 크게 변하고 있으나 군사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북한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당면한 협의과제로서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한 협력방안, △질서 있는 민간교류 지원문제,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의 구성·운영문제, △제10차 이산가족상봉과 면회소 조기건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북한측도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흐름이 6·15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가져온 훌륭한 결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오늘의 시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우선적으로 중지되어야 하며, 이지스함의 동해배치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지난 제9차 이산가족상봉행사의 일부 차질을 가져오게 했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과 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측은 최근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시작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의 즉각 중지 등 상대방을 향한 방송 중지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 용천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북녘 동포들에게 남녘 동포들을 대신하여 깊은 위로를 전함.
- 제13차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아직 개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번 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함.
- 다음주에 북경에서 열리게 될 실무회의와 곧이어 개최될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반드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우리측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함.
- 이밖에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조속한 구성·운영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 △남북 민간교류가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문제 △이산가족의 상봉과 면회소 조기건설 등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문제 등 상호관심사를 협의할 것을 제의함.

<북한측 기본발언>

- 우리 민족앞에는 아직도 북남관계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적지 않음.
- 남측이 미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전반적인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며 북남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 있음. 남측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고 교류, 협력문제나 군사회담문제 같은 것을 협의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부합되게 민족공조의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임.
- 제9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시 남측 통일부관계자가 우리를 걸고드는

행위를 한 바 있음.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임. 남측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남측이 대화상대방을 비방하는 방송을 중지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를 심히 중상모독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까지 개시하였음. 대화상대방을 향한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를 중상모독하는 방송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함.
- 6.15공동선언에 따라 북남사이의 경제협력과 인도적문제해결 등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계속 성실히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음. 남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원칙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5.8)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남북은 수차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제13차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이 장관급회담 소관밖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측의 확고한 의사표명 없이는 다른 합의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여론에도 부응하기 때문이었

으며, 비록 제14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더라도 향후 대북협상을 위해서도 북한측에게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끝까지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은 차기 장관급회담 일정만 합의하고 일단 회담을 종료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 대표단의 귀환시각 20분전 긴급회담을 제의하면서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로써 제14차 회담에서 합의되었거나 의견접근을 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의·의견접근 사항 >

-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5월 중순경 개최
-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6.20경 개최
-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
-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와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사항들은 계속 협의
- 제15차 장관급회담 8.3~6 서울 개최

Ⅲ. 남북 군사분야회담

1.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가. 개 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04.2.3-6)에서 남과 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월 12일 우리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통지문을 통해 2월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측은 회담당일까지 아무런 응답을 보내오지 않아 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다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북한측은 5월 12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5월 26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기본 입장만 교환하였으며, 제2차 회담을 6월 3일 설악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정화(국방부 해군준장)	안익산(인민무력부 소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임인수(국방부 대령) 문성목(국방부 대령) 정영도(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김상남(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5.26 오전)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비함정간 공용 주파수 설정·운영, 시각신호 제정·활용, 불법어로행위 단속활동 관련 정보 교환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 소임을 다해야 함.
- 서해상에서 남북 함정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4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안함.
 - 첫째, 각측 서해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측의 2함대사와 북측의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를 조속히 설치함.
 - 둘째,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위해 모든 선박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선공통망(156.8MHz)을 공용주파수대로 지정 활용함.
 - 셋째, 유·무선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 경비함정간 시각신호를 제정·활용
 - 넷째, 쌍방간 불법어로행위 단속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함.

<북측 기본발언 요지>

- 현 시기 쌍방 군대들 앞에는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문제뿐만 아니라 방대한 무력이 침투하게 대치되어 있는 전연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음.
 - 전연일대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전면제거하는 것이 북남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진정한 신뢰를 조성하는데서 초미의 문제임.
- 전연일대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제의함.
 - 첫째, 6월 15일부터 전연일대에서의 모든 선전활동을 완전히 중지
 - 둘째, 8월 15일까지 확성기, 구호, 전광판 등 모든 선전수단을 전면 제거함.

(2) 제2차 전체회의(5.26 오후)

제1차 전체회의 후 쌍방은 두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쌍방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매년 꽃게잡이 철이 되면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꽃게잡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우선 협의·조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기본발언에서 제시한 중지 및 제거일정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제시한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만큼, 일단 돌아가서 쌍방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한 후에 6월 3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가. 개 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1차 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3일 설악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심야 협상을 진행하여 6월 4일 새벽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상기 합의는 1999년과 2002년 두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한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50여년간 침예하게 대치해온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 본격적인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정화(국방부 해군준장)	안익산(인민무력부 소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임인수(국방부 대령) 문성묵(국방부 대령) 정영도(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김상남(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6.3)

우리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1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4가지 충돌방지조치에 대해 우선 합의하여 6월 15일부터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난 다음 북한측이 제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대한 토의로 넘어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측과 차이를 보였으며, 1차 회담에서 제기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세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우리측이 제안한 네가지 방안들은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남북간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치들임.
 - 꽃게 성어기가 지나기 전에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네가지 조치를 6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을 공식 제의함.

- 북측이 우리측의 제의를 모두 수용한다면, 쌍방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활동을 6월 15일부터 완전히 중지하자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할 것임.
 -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수단을 제거하는데 북측이 동의한다면 8월 15일까지 이러한 선전수단을 모두 제거하고 검증하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오늘 회담에서 이미 상정된 전연에서의 선전중지 및 그 수단 제거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이룩하여 빠른 기간안에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첫째, 전연에서의 선전중지 및 수단 제거는 쌍방 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끝장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둘째,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철저히 막자면 잠정적으로라도 쌍방 함선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계선이 명백히 설정되어야 함.

(2) 제2차 전체회의(6.4)

제1차 전체회의 후 쌍방은 다섯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쌍방 입장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서 타결을 시도하였다.

먼저 북한측은 제1차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제시한 서해상의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다시 언급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4개 방안으로는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서해상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방한계선은 현재 남북 쌍방 모두 지난 50여년간 준수해 온 해상경계선임을 분명히 하고,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제시한 4개 조치는 모두 한 묶음으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측의 설득 노력의 결과 북한측은 더 이상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우리측이 제시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에 대해 합의한 후 쌍방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선전활동 중지 시기, 선전수단 제거 범위 및 일정, 제거결과에 대한 이견해소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해소되고 문안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남과 북은 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2.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 MHz)을 활용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교환
 -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어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이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
3.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
 -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단계로 나누어 제거
 - 1단계(6.16~6.3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제0100호
 - 2단계(7.1~7.20)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 제0640호
 - 3단계(7.21~8.15)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 제1292호
 -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
 - 어떠한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음.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

가. 개 요

6월 4일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동 합의서에 나타난 긴장완화 조치들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6월 7일 북한측은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합의서의 구체적인 실천문제와 관련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6월 10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이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6월 10일 개성시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실천방안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측이 제의한 서해상 통신수단의 사전시험운용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6월 14일 통신수단별 시험운용을 실시하는데 대해 합의하였다.

쌍방은 6월 14일부터는 합의사항이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담 기간을 이를 연장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하였고, 6월 12일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권용술(국방부 대령) 오남섭(국방부 대령)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된 통신수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6월 15일 전에 반드시 사전 시험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상 5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공용통신망을 점검하고 기류 및 발광신호를 시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사전 시험운용없이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이 계속하여 필요성을 설득하여 마침내 시험운용계획에 동의하였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조치 및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면에서 쌍방간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11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해 서로 양보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측은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을 1일 1회 실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은 꽃게잡이철에만 하면 된다는 입

장이었으나 결국 우리측의 제의를 수용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제의한 통신시 감도상태 확인과 8월 12일 통신연락소간 시험통화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하였다.

선전수단 제거를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지는 북한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하고, 사전목록교환 및 제거결과확인을 위한 실무대표 회담을 개최하지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수용하였다.

아울러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 접촉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문안정리를 거쳐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1.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조치 문제
 - 국제상선공통망(주 156.8MHz, 보조 156.6MHz)을 활용, 해당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두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
 -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
 -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시간, 위치, 척수)를 1일 1회 교환
 - 8월 12일 새로운 통신선로 연결 및 시험통화 실시
 -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 실시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
 - 제거대상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 중상, 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산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
 - 단계별 제거완료 7일 이전에 제거대상목록을 교환하여 제거결과를 검증
 - 육안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시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
 -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

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 및 수석대표접촉

가. 개 요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및 동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6월 14일 공용통신망 및 기류·발광신호 시험운용을 실시하였다. 남과 북은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서 선전활동을 모두 중지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작업에 착수하였다.

선전수단 제거결과 확인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는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6월 29일 파주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2차 실무대표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 결과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쌍방은 7월 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개최하여 이견사항에 대해 정리를 한 후 7월 6일부터 2단계 제거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권용술(국방부 대령) 오남섭(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회담에서 쌍방은 6월23일 상호 교환한 상대측 1단계 지역의 선전 수단 제거목록을 기준으로 제거결과를 확인하였다. 쌍방은 먼저 짧은 기간에 1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작업을 양측이 모두 성실하게 진행한데 대해 평가하였다.

쌍방은 8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쌍방의 제거대상과 제거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사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7월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조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한편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긴급연락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으며, 북측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다.

7월5일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

표접촉에서 쌍방은 지난 제2차 실무대표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 모두 합의서대로 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6일부터 2단계 지역에 대한 선전수단 제거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제1차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실무대표회담에서 채택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6월25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연결지점에서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통신실무자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에서는 길강섭 중령 외 5명이, 북한측에서는 엄창남 상좌 외 4명이 참석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통신연락소의 기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통신연락소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문제와 관련한 연락사항만을 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그 외에 남북간 통행관련 연락업무 및 남북관리구역내 작업과 관련한 연락사항도 함께 담당하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통신선 연결과 관련한 자재지원을 요청하였다. 쌍방은 상호 입장을 밝힌 만큼, 검토 후 6월 29일 제2차 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2차 통신실무자접촉은 6월 29일 파주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길강섭 중령 외 2명이, 북한측은 엄창남 상좌 외 2명이 참석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공사 및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현장군사상

황실간 통신선로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가 기능상 서로 분리된다는 데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6월 12일 새로운 통신선로 연결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6.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가. 개 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02.9.17) 제1조 6항은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은 건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경비초소의 건설 및 운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쌍방은 두 차례의 남북군사실무접촉 및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를 통해 쌍방 입장을 조율한 후, 2003년 12월 23일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으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이순진(국방부 대령) 이명훈(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중령) 김동서(건교부 남북교통과)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김상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남과 북은 2003년 11월 28일 개최된 제10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쌍방 기본입장을 확인한 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합의서(안)을 교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초병의 임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승인되지 않은 차량을 확인한 후 미승인 차량에 대해서는 탑승인원들과 함께 돌려보내는 것에 한정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차량 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해서도 초병이 확인하며 확인과 함께 단속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초소의 설치 및 운영시기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004년 1월말 설치하여 2월초부터 운영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6차례의 문서교환을 통한 협의과정에서 초소의 설치 및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초병의 임무와 관련하여서는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명시하는데 대해 쌍방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2004년 12월 23일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서 최종 문안을 확인한 후,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1. 초소의 임무

- 관리구역내 철도·도로의 안전상태 관측, 통과차량의 안전운행 보장
- 관리구역 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여부 감시
-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

2. 초소의 설치

-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초소 설치
-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03.11.28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름.
- 쌍방은 경비초소를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 개시
-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 등을 설치하지 않음.

3. 초소의 운영

- 근무인원 : 쌍방 각각 3명
-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
-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 휴대
- 근무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 유지, 100m 내로 진입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

4.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
- 필요시 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 사이에 협의 해결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 합의서는 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간 서명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

IV. 남북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가 2004년 3월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진행중인 경협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시범단지 부지조성을 올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서명·교환하기로 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진(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위 원	박홍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박성희(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3.3)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료, 지장물 보상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경의선 도로를 6.15 공동선언 발표 4주년에 즈음하여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특구 개발이 상반기 중 착수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조기 확정과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하였다.

그 외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단독조사를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고, 단독조사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상류지역부터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남북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개성공단은 올해 상반기안에 1만평 규모의 시범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토록 협력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하부구조 건설도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올해안에 철도 시범운행을 하고 상반기 안에 동·서해 도로

포장공사도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 전력협력을 위한 분과회의 개최와 민간급 경협이 활성화 되도록 상반기 안으로 경협협의사무소 개설을 촉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경협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뢰구축 노력과 함께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함.

- 첫째, 개성공단 건설
 - 이달중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착수, 하반기에는 공장 입주가 시작되어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 토지임대료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사업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들이 빠른 시일내에 공포되어야 하며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귀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둘째,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및 개통 문제
 - 경의선 도로를 6.15 4주년에 즈음하여 개통하고 사용할 것을 제의함.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도 가급적 금년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완공되는 대로 개통하면 됨.
 -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물류비가 낮아지면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임. 육로개통 이전이라도 인도적 물자 등을 임시도로를 통해서 수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셋째,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적정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측 사업자는 특구개발계획을 수립, 조만간 귀측에 제시할 것임
 - 금강산 관광의 여건을 갖추고 이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귀측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임.

- 넷째,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우기전에 추진되어야 함.
 - 이번 회의 기간 중 단독조사 기간과 공동조사 순서 등 몇 가지 이견 사항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람.
 - 임진강뿐만 아니라 북한강 등 공유하천의 수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람.

- 다섯째,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경험협의사무소 조속 개설
 - 개성공단개발사무소가 완공되는대로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음.

- 그 외 경제시찰단 방문 일정, 남북경제연구기관간 회의개최문제도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경험의 안정적 추진,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세안정과 평화 증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 아울러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 제3 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함을 강조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남경제협력의 성과적인 발전을 위하여 쌍방이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공동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고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협력다운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첫째, 북남 철도 및 도로연결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다그쳐야 함.
 -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올해중에 동해선 온정라-저진 사이, 서해선 개성-문산 사이 철도시범운행을 진행하며 동·서

해선 도로포장을 상반기 안으로 끝내자는 것을 제기함 .

- 개성공업지구건설과 관련하여 이미 합의한 대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적인 공업지구 개발을 끝내고 생산을 시작하는 것과 함께 올해 안에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하부구조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다음해부터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다시금 제기함.

○ 둘째, 전력협력 문제

- 전력협력문제가 해결되어야 철도 및 도로연결과 개성공업지구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일련의 다른 협력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음.
- 동북아 지역전력망 형성과 동북아지역 에너르기 개발과 이용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며, 동북아지역 전력망 형성을 위한 국제대회에 함께 참가하여 전력협력 방도를 적극 탐구해 나갈 것을 제기함.
- 개성공업지구 건설 및 철도시범운영과 관련한 전력협력과 동북아지역 전력망 형성에 필요되는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남전력분과 제2차 회의를 열자는 것을 제기함

○ 셋째, 해운협력, 청산결제, 임진강수해방지 문제

- 제4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해운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부속합의서 채택과 발효를 위한 사업을 늦추지 말고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난해 6월부터 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합의서는 해결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음.
- 청산결제실무분과 제4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가지고 합의서를 채택하며 그에 기초하여 상반기 안으로 시범적인 물자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제기함.

○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며 이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지레대임.

-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충실하려는 자기의 입장과 의지를 명백히 보여 주어야 할 것임.

(2) 위원장접촉(4회) 및 위원접촉(9회)

양측은 위원장접촉과 위원접촉을 통해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하부구조 공사를 금년내 완료 시범단지(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측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토지임차료, 지장물 철거보상비 우선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철도 시범운영에 관련하여 북한측은 올해안에 시범운영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역사건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우리측이 기자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역사건축은 원칙적으로 북한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나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철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재제공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전력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기연구원주최 국제세미나에 쌍방 당국이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건설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전기연구원 세미나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측이 정부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며, 개성공단 전력은 우리측이 송전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임진강수해방지 사업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

였다. 다만 북한측은 단독조사 기간을 4월부터 3개월(북한측은 6개월)로 하자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면서 대신 필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 우리측이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경제시찰단 방문, 장성급 군사회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문제, KEDO 물품 반환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나 북한측이 소극적으로 대응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 제2차 전체회의(3.5)

남북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으로 1만평 개성공단 시범단지 부지 조성완료, 금년 중 철도시범은행 진행 등 7개 항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합의문 요약>

- ① 개성공단 개발
 - 상반기안으로 1만평 시범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
 - 1단계 100만평 내부기반시설 적극추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 입주
 -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
- ② 철도·도로 연결
 - 올해안에 경의선(개성-문산), 동해선(온정리-지진) 구간에서 철도 시범운행 진행, 경의선·동해선 도로포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
 - 철도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계역사 설계 및 기자재 제공협력문제 협의
- ③ 금강산관광
 - 금강산관광특구개발계획 빠른 시일안에 확정,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협력
- ④ 직거래 활성화
 - 상반기 안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한 경험협의사무소를 개성공단 개발 사무소와 동시에 개설·운영, 민간차원의 경험 활성화에 적극 협력
- ⑤ 임진강 수방사업
 -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서 채택, 4월부터 현지조사 착수
- ⑥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 남측경제시찰단 북측 방문,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 ⑦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등
 - 제9차 회의는 6.25까지 평양에서 개최
 - 제3차 청산결체실무협회는 3월 중순 파주, 철도·도로연결실무협회의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회의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문 요지>

1. 임진강유역의 현지조사를 4월부터 진행

① 현지조사는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를 나누어 진행

- 단독조사는 4월부터 3개월간 실시, 단독조사 완료 1개월 안으로 공동조사 진행

② 단독조사는 조사항목이 확정되는대로 자기측 지역 조사, 결과는 상호교환하고 공동조사시 확인

- 북측은 단독조사 착수 10일전에 기상·수문 등의 자료 우리측에 제공
- 우리측은 북측의 단독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수립안 통보

③ 공동조사단

- 국장급을 단장으로 15명 범위로 구성, 북측부터 각각 7일간 공동조사 실시
- 공동조사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각각 해결, 조사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공 요청

2. 현지조사보고서 작성

- 현지조사후 조사보고서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에 제출
- 실무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 경추위에 보고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가 2004년 6월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3~4, 설악산 과 동시에 열리게 됨에 따라 각 회담진행상황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일명 “쌍끝이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남북경제협력이 군사당국 간 신뢰를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북 쌍방은 주요 경협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추진일정, 쌀차관 제공, 경의선·동해선 도로 10월 개통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위 원	박홍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호홍(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6.3)

남북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하고 합의문 초안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개성공단건설 진전을 위한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공급 문제에 대해 합의된 대로 북한측이 협조해야 하며, 남북간 도로 이용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 개성공단 통신·검역·통관 합의서와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의 발효 문제 등 경협제도화와 관련한 문제와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북한측의 협조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측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건설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제품생산에 들어갈 것과 금년 10월 안에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범운행을 주장하였다.

또한 평양-개성-서울간 통신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전력협력에 대해서도 실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경협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겠음.
- 첫째, 개성공단 문제
 - 개성공단에 필요한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을 우리측 공급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귀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 둘째, 남북간 도로 적극 활용문제
 - 개성공단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의선 도로를 우선 개통할 필요가 있음.
 - 남북대표단 왕래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촉구함.
- 셋째, 남북경협제도화와 관련한 사항
 - 개성공단 통신·통관·검역합의서와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몇 가지 기본적인 합의서의 발효절차 진행중, 귀측도 상응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이번 회의 기간 중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운영방안 협의·타결하고,
 - 원산지 발급내역 통보 재개 및 원산지확인 세부기준 등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협의도 제의함.
- 넷째,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문제
 - 합의한 대로 기상·수문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 금년 우기중 우리측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남댐 수위와 방류 계획도 통보해 주기 바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진행중에 있는 협력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올해에는 경제협력의 첫 창조물을 거래앞에 내놓아야 함.
 - 경제협력의 고삐를 다잡고 박차를 가하여 이미 시작한 사업들을 조속히 결속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첫째,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북남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 올해말까지 시범공장건설을 완료,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 올해 10월안으로 동·서해선 철도시범운영 진행, 내년 상반기 안으로 철도연결구간 개통하자는 것임.
 - 또한 저진-금강산-두만강-유림간 시범열차운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임.

- 둘째,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통신문제
 - 평양-개성-서울사이 통신 전송로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확정하자는 것임.

- 셋째, 전력협력, 해운협력, 청산결제거래 등
 - 발전소 설비 제공문제, 발전설비 효율제고 문제 등을 토의하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함.
 - 빠른 시일내에 5차 북남해운실무접촉을 가지고 영해통과와 항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6월안에 청산결제거래를 위한 회사를 선정·통보, 거래품목 확정을 완료하고, 은행간실무접촉에서 합의서를 채택해야 할 것임.

- 넷째, 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합의서 채택
 - 6월안으로 경협협회사무소가 개설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위원장접촉 및 위원접촉(6.3~5)

북한측은 위원장접촉과 위원접촉 등을 통해 쌀지원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신망 구축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감안하여,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합의문에 반영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 통신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연결 주체 및 연결방법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큰 관계로 일단 개성공단 통신망 연결방법을 문산-개성전화국-공단통신센터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쌍방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북한측이 동·서해선 동시 추진·동시개통을 제의함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도로는 2004년 10월에 개통하고 철도는 2004년 10월 시범운행후 2005년말 개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업사무소 관련 쌍방은 민관 합동 구성, 직거래 주선 및 지원 등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우리측이 제기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지기술지도, 선적전 검수 등 민간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6.5)

남북 쌍방은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04년말까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제품생산에 들어가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를 2004년 10월까지 동시개통하기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7월부터 남북 당국간 회담이 소강상태로 접어듬에 따라 8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8.31~9.3)가 연기되었으나, 개성공단, 철도도로 관련 공사 등 기합의한 경제협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합의문 요약>

- ① 시범단지 조성공사 완료,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 착수
 -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통신 등이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협조
- ② 철도·도로 개통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개통을 2005년에 동시 진행
 - 열차시범운행은 2004년 10월경에 진행
 -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는 2004년 10월 까지 개통
- ③ 경협협회사무소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채택·발효
- ④ 기합의, 가서명된 합의서 조속 발효절차 진행 및 후속조치 마련
- ⑤ 북측에 쌀 40만톤 차관방식으로 제공
- ⑥ 경추위 제10차 회의
 - 8.31~9.3 서울에서 개최

3.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가. 개 요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3년 12월 2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이어서 속초에서 제8차 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였다. 경의선 공사현장 방문은 2003년 12월 8일 이루어졌다.

이번 실무접촉은 동해선 교량상판에 대한 기술협약과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문제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12.3)

우리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와 동해선 교량상판 설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6차 접촉시 전달한 열차운행합의서에 관한 북한측의 검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문서교환 등을 통해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에 대한 우리측 설계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호·판문역에 입환표지를 추가하고 궤도회로 설계에 전철운행을 고려할 것과, 각역마다 근거리 통신망 등 현대화 장비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아울러 동해선 교량상관 제공이 늦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작업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 설계일정을 확정하자고 주장하고, 공사에 필요한 휘발유(100톤), 냉·온풍기(6대), 발전기(6대), 버스(3대)등 추가 자재·장비도 요청하였다.

(2) 제2일차 접촉(12.4)

우리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입환표지판 설치 등 북한측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동해선 교량상관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의 조속한 제공과 현장실사 등에 북한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본격적인 착공을 고려하여 열차·차량운행사무소도 조속히 개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폭약, 휘발유, 난방기 발전기 등 추가 자재·장비 제공에 따라 전체분 품목과 수량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측

에 기합의된 자재·장비중 일부 품목과 수량을 삭감하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열차운행합의서는 대부분 의견이 접근된 만큼 문서협의를 거쳐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타결하고, 열차·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는 우리측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겨울철 공사를 위해 필요한 휘발유와 냉·온풍기, 투광등 및 공사용 소모품(레일 절단날, 전기드릴날 연마기 등)을 반드시 제공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과 △신호·통신·전력계통, 교량상관 기술협의를 등 실무접촉을 병행하여 협의 결과를 정리한 후 8차 실무접촉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합의서 요약>

-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
 -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
 -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결정
-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회가 이루어지도록 협력
-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 실시
 - 경의선 : 2004. 1.27 ~ 2. 5, 동해선: 1. 8 ~17
- 쌍방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

4.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가. 개 요

남북쌍방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당초 우리측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3월 2일부터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접촉을 개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이 경추위 개최이전에 협의를 할 것을 강하게 희망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동·서해선 도로포장문제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착수문제, 분계역사 건설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제9차 실무접촉부터 수석대표가 조명균(통일부 교류협력국장)에서 김경중(건교부 남북교통과장)으로 바뀌었으며, 실무접촉 시에는 김경중 수석대표와 문대근(통일부 경협지원과장) 대표만 참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 표	문대근(통일부 경협지원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2.25)

우리측은 열차운행합의서는 지난 제8차 실무접촉에서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 마무리하고,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고장장비와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8차 기술지원 및 암반제거용 자재 사용현장 참관일정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남·북·러 「TKR-TSR 사업 공동연구를 위한 3자 철도 전문가회의」에 관한 북한측 입장을 타진하고, 남북간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금년중 열차시범운행을 위해서는 이번 접촉에서 역사 건축 관련 기자재 제공문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건축문제에 대해 협력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규모·대상 등 구체적인 문제는 차기 실무협의회나 경추위에서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6월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아스팔트 등 도로 포장재를 신속히 제공해 줄 것과, 우기전에 북강·남강 교량상판을 제공해 주길 요청하였다.

열차운행합의서는 쌍방간 의견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역사건축문제만 해결되면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서명·교환하고,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러 3자 철도전문가 회의」에 관해서는 협의의 제가 있으면 환영하지만,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 및 북한 철도 실태 조사문제는 회담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제2일차 접촉(2.26)

제2일차 접촉에서 쌍방은 역사건축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철길뿐만 아니라 역사건축까지 감안한 것으로, 이번 접촉에서 제공 여부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며, 역사건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제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역사건축 협력문제는 경추위 제8차 회의에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역사건축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인 만큼 돌아가서 북한측의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하였다.

한편 쌍방은 역사건축문제 이외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주요내용 >

-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 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 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
 - 제8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동해선을 3월 4일 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
 -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선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
 - 동해선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이 끝나는데 따라 2일간 자재 사용현장 방문 진행
-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 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가. 개 요

남북쌍방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제4차 회의는 당초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자고 북한측이 먼저 제의하였다. 그러나, 개최일자과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진행하던 중 북한측이 우리측의 독수리합동군사훈련과 한·미 전시증원훈련을 이유로 회담을 4월 초로 연기하게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북한측 분계역사건축 관련 기자재 제공문제와 열차 운행합의서 채택,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 등 남북간 철도·도로 개통에 필요한 제도적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우리측	북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교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대표	문대근(통일부 경협지원과장) 유복환(재경부 지역협력과장)	최진택(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장식(철도성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4.8)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측이 남북철도 연결의 역사적 의미 등을 감안하여 역사건축용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기로 한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열차운행합의서에 가서명하고, 차량운행사무소의 개설시기와 운영방안도 확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동·서해 철도 연결구간의 역사를 비롯한 운영건축물들의 공사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로 포장공사, 철도·도로공사에 제기되는 설비·자재 보장 문제들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지난 3월 하순 개최되기로 합의되었던 실무협의회가 귀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연기되었던 점은 유감스러운 일임.
 - 이와 같은 일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는 물론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만히 진행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

- 철도 개통을 위한 분계역사 등 기자재 제공문제
 - 이번 회의에서는 쌍방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조사 후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면 될 것임.

- 북측은 우리측이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적극 협력해주길 바람.
- 열차운행합의서와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에 관한 사항
 - 이번 회의에서 열차운행합의서를 가서명하여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겠음.
 - 차량운행사무소는 도로 포장공사와 통행상황에 맞추어 5월 중 우선 약식으로 개소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음.
- 제공된 장비의 기술지원과 관련한 사항
 - 경의선·동해선 추가 기술지원 일정 확정해야 할 것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과 남은 이미 시작한 민족단합, 민족공조의 궤도에서 잠시도 이탈하지 말고, 조국의 동·서해선에서 화해와 단합의 궤도가 힘차게 뻗어 나가도록 의지와 노력을 더욱 합쳐나가야 할 것임.
- 동·서해선 우리측 지역 철도연결구간의 역사들을 비롯하여 필요한 운영건축물들의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확정하자는 것임.
 - 앞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수와 규모를 잘 협의 확정해야 함.
- 동·서해선 도로 포장 및 철도·도로공사에서 제기되는 설비·자재 보장 등의 문제들을 협의 대책해나가야 함.

(2)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접촉

북한측은 수석대표접촉에서 먼저 이번 회의를 연기한 이유는 남측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이며, 북한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건축대상수와 규모」, 「동·서해선 건축(평면 배치도)」 자료를 전달하며 이번 회담에서 건축대상·규모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지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역사건축 관련 기자재는 철도 개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규모확정을 위해 건축평면도 등 자료 제공에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쌍방은 열차운행합의서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운영문제를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차량운행사무소를 5월중 약식으로 개설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필요한 통신케이블, 전화, 팩스 등 관련 기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측은 차량운행사무소는 우선 약식으로 개소하는데 동의하나 추후 통검·세관 등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4.10)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 7회, 실무접촉 9회를 통해 분계역사 등

건축 설계 대상 확정과 열차운행합의서 채택 등 총6개조에 이르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합의서 주요 내용>

-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문제들을 적극 협력
 - 설계대상은 관문역·손하역(경의선), 감호역·삼일포역 동해선 온 신 설, 개성역과 금강산역은 보수로 하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
 - 이와 관련 복측은 관련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편의 보장
-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
 - 현장조사와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합의서 부록에 따름.
-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 빠른 시일안에 교환 발효
-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
-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다음과 같이 진행
 -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용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4월말부터 각각 2~3명씩 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제9차 기술지원 : 경의선 5.28~6.6, 동해선 5.13~5.22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결정

<합의서 부록 주요 내용>

-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는 경의선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동해선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
 - 추가 현장조사는 쌍방 합의에 따라 실시
-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을 포함한 남북철도 연결구간으로 하며, 현장조사시 조사대상은 분계역사 설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진행
 - 현장조사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
- 남측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과 설계전문가를 포함하여 9~10명으로 하며 분계역사 등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일정과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 북측은 남측 현장조사와 기술지원을 위한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 보장

6.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가. 개요

남북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금강산(김정숙 휴양소)에서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쌍방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분계역사 설계도면초안을 작성하여 북한측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우리측은 기술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면을 6월 23일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나. 진행 경과

(1) 제1일차 접촉(7.1)

우리측은 △분계역사 건축설계 및 기술지원 사항,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 제공문제, △도로 개통과 관련한 추가 자재제공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역사건축 설계문제는 실시설계에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이번 접촉에서 마무리하자고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기전달한 역사건축 설계도면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8월초에는 기초도면을 전달해서 동·서해선 역사기초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도로 개통을 위해 필요한 중앙분리대(5km)와 빛반사안내주(400개), 도로표지판(20개)과 경영용물자(컴퓨터, 복사기 등) 및 기술지원용 스타렉스 등을 추가로 제공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제2일차 접촉(7.2)

우리측은 8월초 추가 기술협의를 통해 기초도면을 북한측에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철도·도로 개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용물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측은 공사용 디젤유가 7월말이면 다 소진되므로 공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귀환 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영용물자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접촉과 종결회의를 진행하여, 삼, 곡괭이, 중앙분리대 등 추가 자재제공에 따르는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조정하고, 총5개조에 이르는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합의서를 채택, 가서명·교환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합의서 주요 내용>

-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 완료
 -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
 -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
-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과 관련한 편의 보장
-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① 분계역사 등 건축 관련 : 8월 초순부터,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
 -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 관련
 - 7월 하순부터(자재·장비 설치와 시공 부분),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 관련 :
 - 제10차 : 경의선 7.28~8. 6, 동해선 7.13~7.22
 - 제11차 : 경의선 8.26~9. 4, 동해선 8.12~8.21, 각각 7명 정도
-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 본합의서 부록
 - 삼(6,500개), 곡괭이(1,500개), 가로등(570주), 중앙분리대(5km), 업무용 차량(2대) 등 추가 제공
 - 유제혼합기(2대), 금망(510m), 철근망(220m), 아스팔트(200톤) 삭감
- 차기 회의는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결정

7.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전력·통신 공급문제와 통신·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4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은 통신·통관·검역 및 전력·용수시설 문제 등 부문별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통신사업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여부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결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홍렬(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현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성수(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상훈(정보통신부 협력기획과 서기관)	김인철(체신성 전기통신국장) 박성일(세관총국 심의원) 최정남(중앙위생검역소 소장) 전승주(체신성 과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6.24)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먼저 「개성공단 통신·통관·검역 부속 합의서」 및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조속한 채택을 제의하고,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공급과 용수시설·폐기물시설 설치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 안에 시범공장건설을 끝내고 올해 안에 제품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부지면적(북한측 주장 250만평) 확정과 담당개발업체를 선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의 통신보장문제와 통신·통관·검역 기본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 통신·통관·검역 합의서들에 대한 부속합의서 마련해야 함.
-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채택해야 함.
- 기반시설 건설 문제
 - 전력·통신사업은 우리측 공급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용수시설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용수공급용 터널 및 저수지댐 축조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100만평당 2만평)에 대한 무상제공 협조를 바람.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개성공업지구건설과 관련한 추진일정
 -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 안에서 시범공장 건설을 끝내고 올해 안에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함
 - 100만평 개발구역의 하부구조건설을 올해중에 기본적으로 완료하는데 따라 다음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부지면적 확정과 담당개발업체를 선정하며 기술준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 개성공업지구의 통신보장문제
 - 통신연결은 빛섬유케이블에 의한 전송로를 구성하되 전송로는 개성(전신전화국)-문산으로 직접 구성하며 공업지구의 통신연결은 개성(전신전화국)의 전송장비를 통하여 구성하면 될 것임.
 - 개성공업지구 통신운영과 통신건설에서 제기되는 설비자재보장, 기술봉사 등은 9월 안에 끝내도록 협의확정토록 함.
- 이미 맺은 합의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충하는 문제
 - <개성공업지구의 세관통과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의 검역합의서>를 이행적 견지에서 검토하여 일부를 수정·보충토록 함.

(2) 수석대표접촉 및 분야별 실무접촉

【통신 공급 문제】

남과 북은 개성공단 통신공급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실

무접촉과 7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가졌다.

여기서 북한측은 그동안 세차례 진행된 사업자간 협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통신사업에 대한 북한측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북한측은 남측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측이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합작방식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단독으로 통신망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통신망 연결(문산-개성전화국-공단통신센터) 방식에 대해서는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여 연결하고, 전송장비는 남측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측의 지정사업자가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남북간 합의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측에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이 통신사업 참여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북한측구간과 공단내 통신사업을 분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타결을 시도하였다. 우리측 수정(안)은 공단내 통신망은 우리측 사업자가 단독 설치·운영하되, 북한측구간(MDL-개성전화국-공단경계)은 우리측 설계·기술지원 조건으로 북한측이 시공·유지·보수를 책임지며 필요시 우리측 기술진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단과 남측 지역간 통신망은 개성전화국의 전송장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우리측 지역 통신설비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송장비는 우리측이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통신사업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

남과 북은 통관·검역 부속합의서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5차례, 4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졌다.

북한측은 기합의된('02.12) 통관·검역 기본합의서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는 수정·보충된 합의서를 먼저 시행해보고 나서 6개월~1년 후에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기본합의서 발효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정·보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제시한 수정·보충사항은 부속합의서에 반영 가능함을 설득하였으나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전력·용수공급 및 폐기물 처리장 문제】

남과 북은 제2차 수석대표접촉시 전력·용수공급과 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력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우리측 사업자의 직접 설계·시공·운영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시공단계에서는 북한측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남측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단내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측 건설·유지보수 인원의 출입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용수공급을 위한 「월고저수지-개성공단」간 송수관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우리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측도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우리측은 당초 1단계 100만평 부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 처리장이 누락된 점을 들어 1단계 지역 밖에 별도로 2만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을 무상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처리장 부지가 1단계 지역 밖임을 이유로 거부하다가 회담 말미에 무상제공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규모 확정문제】

남과 북은 제2차 수석대표접촉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규모에 대해서도 쌍방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 2단계 250만평(1단계 100만평 포함 총 350만평) 건설계획을 현대와 이미 협의했다고 하면서 이를 실무협에서 확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동 사항은 사업자간에 논의할 사항으로 당국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6.25)

이들간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개성공단 통신문제와 부속합의서 채택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6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소한의 협의내용이 담긴 공동 보도문만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7월 이후 당국간 대화가 지연되는 등 남북관계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통신공급 협상,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등 당면과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과 북은 200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
- 쌍방은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통신·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검역 협의서 이행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추후 실무 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함

8.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및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었다. 4차 회의에서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와 남북간 통신협력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나흘간의 회담에서 쌍방은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남북간 통신망의 직접연결 원칙에 합의하고 경제관련 법령집의 상호교환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임영록(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최정원(출입국사업국 처장) 황철풍(조선체신회사 사장)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8)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이 시급하다는 점과 남북간 통신협력문제 등을 공동의제로 제기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측은 경제관련 법령 교환과 산업재산권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개발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행합의서의 채택이 필수적임.
 - 간편한 출입절차와 구체적인 신변안전보장 방안이 필요함
- 다음으로 원산지 확인과 청산결제 기관 및 개발사무소간 연락 등을 위해 필요한 남북간의 통신협력문제도 필수적인 문제임.
 - 개성공단 협의사무소, 청산결제 등 당국 관련 통신은 기존의 남북 직통전화 회선을 통해 연결하고, 민간차원의 통신은 개성공단의 상업적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밖에도 산업재산권 협의나 경제 관련 법령의 상호교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첫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과 체류에 관한 문제

- 북측 주권이 미치는 령역에서의 신변안전은 법적으로 담보될 것임
- 둘째, 북남간에 진행되는 통신문제임
 - 기본통신선송로는 평양-개성-서울로 정하고 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2) 수석대표 · 실무접촉

남과 북은 수석대표접촉과 실무접촉을 동시에 진행하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와 남북간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였다.

【통행합의서 채택문제】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이 필수적인 만큼 ‘구속·체포 등 금지’, ‘강제송환 원칙’ 등의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 북한측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북한측이 판단하여 강제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위법행위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법질서 위반시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거나 강제송환하며 향후 남북이 형사사건에 대한 별도 합의를 채택하면 그에 따라 처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기본적으로 형사사법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특히 반국가적 중대범죄의 경우는 반드시 형사강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남북간 통신연결문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우선 기본통신 전송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통신선을 누가 관리·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도 새롭게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통신은 평양-개성-서울로 이어지는 기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연결하고 개성공단 통신도 개성전화국을 거쳐 남측지역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민간통신의 경우 서울-개성공단(남측 통신센터)-개성전화국(북측)-평양간 통신선로를 구성하여 연결하고 당국간은 기존 남북직통전화 회선을 통해 연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개성공단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통신합의서에 입각하여 공단과 남측지역을 직접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통신주권을 내세워 우리측 입장을 수용을 거부하고 개성전화국을 통한 연결주장을 고집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추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종결회의(12.19)

쌍방은 통행·통신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와 3일간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3개항의 공동보도문으로 정리 발표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
-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함.
 - 구체적인 연결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
 - 차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하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

9. 제1 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가. 개 요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흘간 7차례의 접촉을 통해 쌍방은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가서명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호년(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이승섭(법무부 특수법령과장)	김춘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서기장) 최정원(출입국사업국 처장)

나. 진행 경과

1일차(1.27)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2회씩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지구내 법질서 위반시 활동중지, 경고 및 범칙금 부과,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통보 및 강제송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접견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법질서 위반시 단속·조사하고 벌금부과나 남측 통보, 출입 및 체류 취소, 남측으로의 추방 등을 주장하였다. 다만, 엄중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남북이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며, 변호인 조력권 등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보장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일차(1.28)에서도 우리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되었다.

우리측은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특별히 엄중한 주권침해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남과 북이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체류연장 승인 및 합의서 서명권자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남측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체류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합의서 서명은 국회동의절차의 필요성과 합의서의 중요성 등을 들어 장관급회담에서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체류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일연장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명권자는 경제실무회담인 만큼 경추위위원장인 서명하고 장관급회담에서 교환하자고 주장

하였다.

3일차(1.29) 회의에서 남과 북은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남겨두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승인기관 및 서명권자는 우리측 제의를 북한측이 받아들여 체류기간 연장승인기관은 남측 당국과 지구관리기관이 담당하기로 하고 합의서 서명권자는 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하기로 하였다.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개성·금강산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
- 지구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도착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나 1년 이상 거주시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
-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개인 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범죄 행위 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남측은 송환된 인원을 처리 후 결과를 북측에 통보하며, 피해보상에 협력
- 출입·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남과 북은 관련 문제들의 협의·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

10.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 1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제1차 실무협의에서는 남북간 청산결제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쌍방은 3박 4일간의 회담기간중 9차례의 접촉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청산결제 거래방식, 신용한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응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이성한(재경부 국제경제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나. 주요쟁점 사항 협의 경과

【청산결제에 대한 기본입장】

북한측은 청산결제 거래의 당사자는 당국이 되어야 하며 쌍방 당국이 개별기업들의 수요를 종합해서 직접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북한측은 거래할 물품들의 규격, 수

량, 가격, 납기 등도 쌍방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직접 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청산결제 거래 당사자는 개별 민간 기업이며 당국이 개별기업의 거래에 개입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청산결제한도 및 신용한도·이자율】

청산결제한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쌍방의 입장이 비교적 근접하였다.

북한측은 청산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2004년도 결제한도를 1천만~3천만 유로 범위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화폐기준에 대해 다소간 논란이 있었으나 북한측이 달러기준으로 하자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용한도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청산결제한도의 20%로 하고 이자율은 민족내부거래인 만큼 무이자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연말 차액 청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청산결제한도의 10% 수준으로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자율도 국제금리와 남북경협 특성을 감안하여 2%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청산결제 대상품목】

청산결제 대상품목은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각기 상대측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쌍방 당국이 협의하여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기본적으로 쌍방 당국간에 합의한 품목과 수량이 실제 거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기업들간의 판단에 따라 구매여부가 결정되는 우리 경제체제 특성상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쌍방이 반입·반출을 희망하는 품목을 교환하여 검토한 후 대상품목을 결정하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정된 품목들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품목 중 가격이나 품질, 납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별기업들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쌍방 당국이 청산결제 대상 품목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일반결제은행 지정문제】

우리측은 일반결제업무는 「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2차회의」에서 합의한대로 당분간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국책은행인 무역은행이 개별기업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반결제와 청산결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약의 공동보도문 요지>

-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청산결제 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 ~3천만 달러 범위 내로 함
-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 (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약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11.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가. 개 요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약」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 쌍방은 2004년도 청산결제 시범 실시를 위한 청산결제 거래방식, 신용한도, 이자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차기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용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이성한(재경부 국제경제과장) 정진대(산자부 무역정책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나. 진행 경과

【청산결제 거래방식】

청산결제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품목과 품목별 한도에 대한 당국간 협의를 토대로 개별 기업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거래기업의 정보제공, 개성사업소를 통한

협의 지원 등 청산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국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우리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당국의 책임 하에 청산결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청산결제 대상품목】

우리측은 제1차 실무협의를 북한측이 제시한 반출·입 품목에 대해 ①가능, ②유보, ③불가로 구분하여 문건으로 제시하고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반입 희망품목 23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양·규격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우리측에서 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36개 품목 중 불꽃가공반, 고주파열처리 설비 등 13개 품목에 대해 우리측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용한도·이자율】

북한측은 제1차 실무협의 때와 동일하게 신용한도는 청산결제한도의 20%로 하고 이자율은 민족내부거래인 만큼 무이자로 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신용한도 10%는 청산결제거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며 이자율도 2%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신용한도와 이자율에 대해 상호 융통성을 발휘하여 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신용한도를 총적거래한도(청산결제한도)의 15%로 하고 연이자율을 0.5%로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의 1% 입장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일반결제업무 및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

일반결제은행 지정문제도 북한측이 청산결제실무협약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하였다.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상품결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2000년 채택한 청산결제합의서에서 달러로 합의한 바 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가격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으로 결제할 것을 고집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결제의 편의성은 물론 상품결제시 차액잔고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 차기년도 청산결제 거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공동보도문 요약>

남과 북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개최

- 쌍방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남북 양측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채택하기로 함
-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함

12.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가. 개요

남과 북은 2004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청산결제 실시를 위한 제3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제1, 2차 실무협에서 논의된 미합의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쟁점사항들을 타결하고 총 12항에 이르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웅희(통일부 교류총괄과장)	윤선호(무역성 국장)
	유복환(재경부 지역협력과장)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김경원(산자부 무역정책과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나. 진행 경과

우리측은 2/4분기 중 차질없는 시범실시를 위해 청산결제 거래방식, 신용한도·이자율 등 주요 쟁점사항 타결을 목표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측은 회담초반 청산결제 거래방식, 이자율 연말차액잔고 청산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타결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과정에서 가장 의견접근이 어려웠던 분야는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이었다.

북한은 상품결제방식이 아닌 현금결제 방식일 경우 차라리 청산결제 거래를 포기하겠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결국 우리측이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차액잔고 청산방식을 “상환측이 상품반입대금 또는 미달러화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수정제의하였고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회의 막바지에 타결되었다.

연말 차액잔고 청산방식과 함께 의견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는 대상품목 선정문제였다.

쌍방 각기 희망하는 반입·반출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측이 품목선정시 수량한도까지 결정하지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난항이 계속되었다.

결국 이 문제도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의 설득으로 대상품목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남북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4차 청산결제실무협의」개최를 제의('04.8.9)하고, 대상품목수정(안)을 발송('04.3.13)하는 등 청산결제조기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북한측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2004년도 남북간 청산결제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 >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이 합의서의 부록1과 2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는 기업들간에 계약의 방식으로 진행
 - 당국이 정한 경제단체가 청산결제 거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상호 통지
- 청산결제에 의한 거래기간 : 2004년도 2/4분기 중 합의되는 시기 ~1월 31일
- 청산결제한도 ;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내
- 신용한도 : 청산결제한도의 15% , 이자율 : 연 1%
- 청산결제 대상품목 : 남북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위탁가공 교역은 제외)
- 2004년도 청산결제 대상품목을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확정하고 이 합의서의 부록 1, 2로 첨부
-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이 밖에 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
- 2004년도 청산결제 차액잔고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또는 미달러화 중 상환측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청산하며 2004년 4/4분기 내에 「남북사이의 청산결제 이행을 위한 2003년도 합의서」 체결
- 남과 북은 적절한 시기에 쌍방이 정한 장소에서 남북기업들이 이 합의서의 대상품목에 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

13. 남북청산결제 관련 제1, 2차 은행간 실무접촉

가. 개요

남북청산결제 관련 거래은행간 실무접촉은 5월 18일 ~ 19일, 6월 24일 ~ 25일간 두차례에 걸쳐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제1차 접촉에서는 합의서 명칭, 이자계산 방법, 차액잔고 청산방법 등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나, 제2차 접촉에서는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가서명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천헌철(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박유환(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최정식(조선무역은행 부국장) 오성철(조선무역은행 실무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실무접촉(5.18 ~ 19)

은행간 협의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은행명칭 문제, 이자계산 방법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북한측은 합의서 명칭과 전문 서명란에 들어 있는 은행명칭에서

각기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부분을 삭제하고 ‘수출입은행’, ‘무역은행’으로 명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자계산방법과 관련해서도 우리측은 청산결제기간 종료후 이자계정 기장금액에 대한 복리적용과 지연배상금을 1%를 제시한데 대해 북한측은 단리계산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은행공식 명칭 사용-이자율 단리계산’을 내용으로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밖에 지급거절 사유통지, 서류송달방법(경협협회사무소 개소 전까지 판문점 이용)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2) 제2차 실무접촉(6.24~25)

2차 접촉에서는 1차 접촉시 남아있던 쟁점사항들에 대해 비교적 쉽게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합의서 제목 등에서 은행간 공식명칭을 사용한다는데 합의하고 이자계산 및 차액잔고 청산과 관련해서도 지연배상금 없이 단리계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쌍방은 연말 미결제 차액잔고 발생시 원금 및 이자가 청산될 때까지 다음연도 청산결제 업무가 정지된다는 것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합의서 체결 후 청산결제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환거래 협정(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은행간 통신 및 서류송부 문제도 우리측이 판문점 통로를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서류송부는 DHL을 이용하면 되고 통신은 당국이 보장할 문제라며 논의를 회피하였다.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청산결제대상 : 남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청산결제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 남북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 청산 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신용한도 :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2004년도 신용한도는 3,000만달러의 15% 이내인 미화 450만달러 이내)
- 대금지급 및 기장절차
 - 대금지급 절차
 - ①반출대금 청구 : 반출자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 ②반출서류 송부 : 반출자(청산결제은행)→반입자(")
 - ③대기통지서 통지 : 반입자(청산결제은행)→반출자(")
 - ④반출대금 지급 : 반출자 청산결제은행 →반출자
 - 청산계정 기장 절차
 - 반출대금 지급일에 반입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대기하고, 반출자 청산결제은행은 상대방 은행계정에 차기
- * 대기 : 상대방 은행의 채권임을 기장
차기 : 상대방 은행의 채무임을 기장
- 이 자

-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로부터 실제 이자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이자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방 은행에 지급
- 이자율 : 연 1%

○ 청산

-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 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의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 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에 대한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 체결

-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을 합의서 서명 후 체결

○ 통지·송부

-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14.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개 요

「제4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이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2003년 11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개최일정을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쌍방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지난 제3차 실무접촉에 이어 협의하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고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상호(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배광복(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최정남(육해운성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2.25 오전)

북한측은 제2차 접촉에서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표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안)」협의를 앞서 해운합의서의 서명·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해운합의서가 남북해운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간 선박운항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규정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해운합의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 바, 조속히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발표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쌍방이 준비한 부속합의서(안)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쌍방간 구체적인 토론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2~4차 전체회의(2.25 오후~2.26 오전)

쌍방은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교환한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조문별 협의를 진행하여 해상항로대 설정, 통신보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 무리없이 의견일치를 도출하였다.

북한측은 해상항로대 설정과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항로대(안)보

다 영해쪽으로 근접한 항로대를 제시하면서 북측 항구에서 정박중 직접통신은 “빠른 시일내”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경제성과 안전성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상항로대(안)을 마련했음을 설명하고, 통신문제는 안정적인 선박운항의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기 전에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우리측이 제시한 해상항로대(안)를 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측 항구에서 정박중 통신이 빠른 시일내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쟁점사항을 타결하였다.

(3) 제5차 전체회의(2.26 오후)

남북은 회담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문안조정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의견일치를 본 부속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최종 확정·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음.
-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하였음.
-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다. 이후 동향

남북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문안조정을 완료하고 5월 28일 최종 합의된 「부속합의서」를 가서명하였다.

이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를 완료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남북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7월 9일 오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예정대

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동 접촉은 연기되었다.

남북이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남북간에 교환하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가. 개 요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단독조사항목, 북측의 사전자료 제공목록, 우리측의 현지조사용 기자재 제공 목록,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통보체계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사흘간 진행된 회의에서 쌍방은 단독조사항목, 기자재 제공 명세, 북측 임진강 유역의 기상·수문 등 사전자료 목록에 합의하고 합의서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통보체계와 관련해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김병철(국토환경보호성 국장)
대 표	심용창(통일부 회담 과장) 심완섭(총리실 과장)	진병환(국토환경보호성 처장) 최태룡(기상수문국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4.8)

남북 쌍방은 기초발언을 통해 경추위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에 따라 쌍방 지역 단독조사에 필요한 협의 의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단독조사의 성격과 취지를 감안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해야 하겠음.
 - 우리측은 임진강 유역의 지역특성과 하천현황, 임진강 상류지역의 수문, 산림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홍수예보시설설치와 관련한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 문제도 협의해야 함.
 - 우리측은 임진강 상류지역에 총 36개소의 수위관측소 및 기상·우량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또한 관측자료를 남과 북이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통보체계는 위성을 이용한 방식을 계획하고 있음.

- 수차례에 걸쳐 쌍방이 합의한 대로 귀측 지역의 기상·수문자료와 기존 수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단독조사 착수 이전에 최대한 제공해 주기 바람.

- 단독조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는 합의된 기간안에 제공할 것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는 이 일대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단순한 협력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분열로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북과 남의 오해와 불신을 털어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의 숭고한 사업임.

- 첫째, 현지조사항목과 관련한 문제임.
 - 유출형성을 조절하는 인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진강 유역산림의 현황실태조사와 강하천 실태조사 그리고 저수지 실태조사를 진행해야함.
 - 큰물통보체계수립을 위한 조사에서는 기상수문관측망 형성 및 관련 조사를 진행하며
 - 큰물위험을 막기 위한 대상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절저수지건설대상들과 큰물위험대상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 둘째, 현지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장 문제임.
 - 짧은 기간에 현지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과 수송기재를 비롯한 기자재가 요구됨.

(2)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

단독조사 항목과 관련하여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방야계공사 및 댐신축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하고 댐신축 등은 홍수예방을 위한 최후의 협력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제외한 산림실태 및 하천실태 조사항목에 합의하였다. 기자재 부분에서도 북

한측은 댐신축 등에 필요한 조사용시추차, 지반탐사기구를 요구하였으나 댐신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자재임을 들어 조정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컴퓨터 및 관련 물품을 끝까지 요구 하였지만 우리측은 반출불가품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제공 품목에서 제외하고 43개 품목에 합의하였다. 기상·수문 등 사전자료에 대해서도 기존 관측소 현황과 위치, 기상·수문 관측자료 뿐만 아니라 기존 및 건설 중인 댐 등 수리시설 현황을 우리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수예보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는 우리측의 위성방식 주장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고, 우리측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 (4.10)

남북은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2개항의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쌍방은 단독조사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기자재 제공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부록으로 첨부
- 쌍방이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결정

16.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가. 개 요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원산지 확인 세부기준 마련과 원산지 확인제도와 관련한 상호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나흘간 진행된 회의에서 쌍방은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고, 원산지 확인사업 시범실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정기통보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손병조(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김응섭(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참사)
대 표	정승훈(통일부 교역과장) 심성근(산업자원부 수입과장)	김철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나. 진행 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8)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원산지 확인사업의 시범실시, 원산지 확인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의제로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별도의 기초발언을 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효력에 대한 우리측 통일부 경과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경련의 권한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첫째, 원산지확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음.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과 가공공정기준 등을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임.
 - 남측이나 북측에서 생산된 물품이 상대측 지역에서 재료로 이용된 경우 상대방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여 남북간에 원산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또한 남북간에 직접 운송되는 경우로 원산지 인정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원산지확인제도 시범실시 등 원산지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야함.
 - 북측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중 일부를 12월중으로 귀측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예정임.

- 11월 5일 이후 1주일 단위로 통보해주는 귀축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내역은 매우 유용하게 이용됨. 우리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103개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통보주기를 1개월 단위로 할 계획임.
- 셋째 원산지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남북간이 협력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하겠음.
 - 귀축이 사용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귀축이 확인하는 주요내용 등을 우리측에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임. 우리측도 귀축이 원산지제도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임.

(2) 수석대표 접촉

쌍방은 수석대표접촉을 7차례 진행하고 세부기준마련 등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합의서」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측은 쌍방 당국이 인정한 발급기관이 있는 만큼 그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신뢰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우리측이 세부관정기준으로 제시한 세번변경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일부 고시 경과규정에 대한 북측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교역업체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써 12월말로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원산지확인 사업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민경련이 발급한 증명서의 일부에 대하여 우리측이 2003년 12월중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북한측이 2004년 1월중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구두 합

의 하였다. 통신연결문제는 남북 원산지확인기관간 직접 통신선이 연결되기 이전까지는 민경련 북경 또는 단동대표부를 통해 연락하기로 합의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12.20)

남북은 수석대표접촉과 분야별 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4개항의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방식등을 통해 계속 협의
-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
-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 교환할 자료목록은 계속 협의
- 제2차 회의는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결정

V.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가. 개 요

우리측은 2004년 5월 14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17일 대남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0차 이산가족상봉문제와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4.20~24) 협의하였던 인도적 지원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5월 21일부터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한적 총재 평양 방문시 북한측 적십자회는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과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접촉 일자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자고 수정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해움에 따라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이병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최성익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총재특보)	최성익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유종렬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유광수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위원)	김경애(북한의약협회 부부장) 황 철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위원)

남과 북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2회를 열어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생사주소확인 문제,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을 협의하였으나 쌍방 입장 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접촉을 종료하였다.

나. 진행상황

(1) 제1일차 접촉(5.24)

남과 북은 2004년 5월 24일 오후 5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쌍방 기본입장을 교환하고,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 지원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적십자 접촉은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를 제시하고,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확인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는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에서 제의한 대

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로 하고, 설·6.15·추석 등을 계기로 쌍방이 각기 300명씩의 명단을 교환해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6.15를 계기로 우리측 전쟁시기 행불자 100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0차 이산가족상봉과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 한적 총재 방북시 협의하였던 식량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은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문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내시경 및 초음파 장비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인도적 지원문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북한측이 인도적 지원문제를 이산가족상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우리측이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기조발언」 내용이다.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설과 추석, 6.15를 계기로 하여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을 위한 명단을 각기 300명씩 교환하고, 생사가 확인된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교환할 것을 제의함.
- 이와 함께 남북적십자사 최고 책임자들간에 합의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사업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의하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6.15에 우리측이 10명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고자 함.

- 제10차 이산가족상봉은 지난 제 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의한대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이와함께 금강산면회소가 합의된 일정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귀측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북한측의 첫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제10 차 이산가족상봉 날짜는 여러 가지 실무적 준비단계를 고려하여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진행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함.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 명단교환은 5월 28일에, 회보서 교환은 6월 13일에 최종명단교환은 6월 16일에 하지는 것임
- 지난 4월 한적총재 방문시 지원의사를 밝힌 평양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접촉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함으로써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이를 계기로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임.
- 평양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병원건설문제임. 우리는 한적 총재 평양방문시 내시경설비와 초음파 설비부터 우선 현대화하는데 남측 적십자사가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접촉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여 좋은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남과 북은 전체회의에 이어 한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쌍방 기본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제1일차 접촉을 종료하였다.

(2) 제2일차 접촉(5.25)

남과 북은 2004년 5월 25일 수석대표 접촉과 전체회의를 각각 한 차례씩 더 가지고 쌍방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4차 적십자실무접촉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인식하면서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등 인도적 지원문제에 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2가지 사안을 포괄하는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제10차 이산가족상봉 일자 등 절차문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용천재해 구호회담

가. 개 요

2004년 4월 22일 북한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로서 할 일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어 4월 24일에는 용천지역 재난에 대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면서 피해지역 시설 복구 등 이재민 지원문제 협의를 위해 당국간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한다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4월 25일에는 유관부처 합동의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대북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북한측은 사고발생 이틀후인 4월 24일 용천역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도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어 4월 26일에는 우리측이 24일 제의한 당국간 접촉을 27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용천지역의 재난구호를 위한 회담이 4월 27일 개성에서 열리게 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긴급구호품과 의료품 전달계획을 북한측에 설명하였으며, 응급의료진을 피해지역에 파견할 것과 시설복구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지원의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용천지역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자재·장비 명세를 우리

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을 통해 북한측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협의에 임한만큼, 별도의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용천 재해 구호회담에 참가한 남북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재형(통일부 인도지원국장)	최성익(내각참사)
대 표	김헌주(건교부 주거환경과장) 한창섭(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삼(국가계획위원회 책임참사) 황 철(내각과장)

나. 진행상황

남과 북은 4월 2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접촉을 가지고 용천지역 재난 지원문제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우선 북한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에서 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용천지역에 우선적으로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호물품은 육로, 해로, 항공로 등 경로를 다양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긴급의약품은 항공편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응급 의료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범적·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우리측 의료진을 용천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우리측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거둬들임 사의를 표시하면서도 우리측의 전달경로 다양화 제의에 대해서는 1984년 우리측 수재민 구호사례를 들어 북한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의 의료진 파견 제의에 대해서는 용천지역에 북한 의료진이 충분히 파견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측 의료진의 현지 파견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용천 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공공시설 복구는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응급사업 위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측에 피해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것과 시설 복구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필요 기술인력의 파견 등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미 국제기구의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실상을 알린 만큼 우리측의 추가 실태조사 및 기술인력 파견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긴급구호품이나 의료품 지원보다 이재민 생활안정 및 학교, 주택 등 공동시설의 복구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시멘트·샤시 등 자재, 불도저·포크레인 등 장비, 유류·식량 등을 요청하였다.

다음은 쌍방이 회담에서 밝힌 기초발언 내용이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용천지역의 사고가 보도된 이후 우리측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의 지원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리이나 우리측은 귀측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여 우선 시급하며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함께 용천지역에 우리측 의약품이나 장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익숙한 우리측 의료진을 파견할 것을 제의함 .
- 귀측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용천지역 피해상황을 세부적으로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보다 정확한 피해실상을 알려주기 바람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우리는 귀측이 긴급구제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측이 요구하는 물자들이 하루빨리 인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긴박한 것은 파괴된 살림집과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을 빨리 건설하여 피해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임. 이로부터 우리측은 귀측에 피해복구용 물자들을 시급히 제공하여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임,
- 우리는 오늘 중에 이 물자들의 인도인수방법과 절차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고 내일부터를 이를 집행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

회담에서 우리측은 용천재해 구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북한측은 이에 대한 사의를 거듭 표시하면서 북측이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요청 사항에 대해 회담 종료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전화통지문 등으로 통보하겠다고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회담은 종료되었다.

우리측은 회담종료후 5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긴급구호물자와 시설복구를 위한 자재장비 지원을 실시하였다. 주요 지원품목은 의약품 등의 긴급구호물자와 중장비, 시멘트, 유류 등의 건축자재·장비 등으로 수송비를 포함하여 총 41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국민성금 170억원과 협력기금 38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4억원, 기타 기증물품 137억원으로 조달되었다.

3.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가. 개 요

정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시드니올림픽 이후의 남북체육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자,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4년 1월 30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앞으로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과 체육교류 협의 등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이어 제13차 장관급회담('04.2.3-26, 서울)에서는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이 공동입장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에서는 남북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만나,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북한측은 먼저 4월 28일 전통문을 보내 5월 말부터 6월 초경에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5월 11일 서한문을 통해 북한측의 회담제의에 동의하고 일정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5월 28일 전통문에서 일정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우리측은 박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를 수석대표로 하는 9명의 대표단을 베이징 실무회담에 파견하였고, 북한측은 조상남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기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방양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조상남 (조선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겸서기장)
대 표	김승곤 (대한올림픽위원회 사무차장) 정기영 (대한올림픽위원회 국제부장)	윤용복 (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

우리측은 시드니올림픽 이후 이미 4차례의 국제체육대회에서 개·폐회식 공동입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 진행경과

(1) 제1일 회의(6.23)

우리측은 먼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전례에 따라 공동입장안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선수단 호칭은 KOREA(코리아)로 하며 깃발은 한반도기, 선수단가는 아리랑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종래 공동입장 방법과 달라진 것은 선수단 복장으로 남자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래에는 남녀 공통으로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을 착용해 왔으나 정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아테네올림픽 선수단 복장을 위해 대국민 디자인 공모과정을 거쳐 새로운 복장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우리측은 또한 이번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과는 별도로 2008년에 있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협의를 위해 9월 중에 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제28 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이번 실무접촉에는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된 두가지 실무적인 과업이 주어져 있음.
- 첫째, 공동입장에 관한 실무문제로 이는 이미 여러차례 전례가 있는 만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는 지난 2월 아테네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향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 단일팀 구성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이를 위해 오는 9월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체육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우리 체육계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에 맞게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여 나아가야 함.
-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임.

북한측은 공동입장 문제가 이미 전례가 많이 쌓여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측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해 왔다. 단, 복장과 관련하여 남자 상의의 청색 색조를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우리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자 회담종료 후 판문점을 통해 복장과 관련한 최종입장을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개·폐회식 때 선수단이 소형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것과, 남북간의 경기시에는 응원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논의를 위한 체육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으며, 대신 아테네올림픽 기간 중 남북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선수단 복장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우리측 디자인에 동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개폐회식때 소형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문제도 전례에 따라 두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북간 경기시에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원문제는 주민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우리측 기본입장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의 합의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남북은 의견일치를 본 선수단 호칭, 단기, 단가, 공동입장 순서 등

의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합의서 문안조율을 하고 제1일차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제2일 회의(6.24)

우리측은 전일 북한측이 이견을 제기한 선수단 복장과 관련하여 이번 회담기간 중에 최종 동의를 해줄 것을 북한측에 강하게 요구하였다. 복장은 이미 우리측 내부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기에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북한측도 선수단복과 관련한 우리측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종 동의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측이 불가의사를 표명한 소형 한반도기와 남북간 경기시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남북은 공동입장 실무문제에 관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사항 요지 >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 ‘코리아’, 영어로 ‘KOREA’
2. 선수단 단기: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
3. 공동입장시 음악 시드니올림픽때 사용한 아리랑
4. 공동입장 순서: ①선수단 표지판 ②단기 ③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④남북 선수단장 ⑤남북 임원 ⑥남북 선수의 순서
5. 선수단 복장: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

VI. 경수로건설사업

2003년 11월 21일 KEDO 집행이사회가 북핵문제 대두에 따른 경수로건설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동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경수로건설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에서 일체의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2호기 원자로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도방수로 법면 보호, 기 완료된 시설물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인 안전성 및 품질검사 등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원칙과 비용최소화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호·관리 조치를 시행중이며, 품질확보 및 작업연속성 등을 고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일정시점까지 공정을 완료한 후 보관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지현장과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한 관리·유지를 위해 부지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와 품질보증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각 9회)하고 있다

한때 1,500여명에 이르던 현장인원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철수를 개시했으며, 2003년 12월에 우즈벡 인력이,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명이 전원 철수하여 2004년 11월 현재 금호부지에는 KEDO 금호사무소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

2004년 11월말 현재 투입된 경수로건설비용은 약 15.3억불이며 우리측이 11.1억불, 일본이 4.0억불, EU가 0.2억불을 분담하였다. 우리 정부가 분담한 공사비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는데 1999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국채발행 규모는 총 2조 3,527억원이며 이중 7,147억원을 상환하여 순국채발행액은 1조 6,380억원이다

한편, 사업의 일시 중단에 따른 보존·관리활동 및 인력과 장비 철수 등 중단기간중 KEDO-북한간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KEDO 사무총장이 방북(2003.11월 및 2004.11월)하였고, 2004년 11월까지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회의(2회)와 실무회의(5회)가 개최되었다.

당초 북한측은 KEDO측의 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관련 장비 등에 대한 반출을 금지(2003.11월)하고 2003년 12월에는 출입국절차 강화 등 중단기간 중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KEDO와 북한은 양측간 협상을 통해 북한이 제기한 ‘잠정조치’ 문제를 협의하여 2004년 3월 23일 「양해각서」 체결로 마무리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측의 의정서 준수 및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KEDO 인원의 부지출입절차 일부수정, 물양장(부지해안에 KEDO측이 설치한 부두시설) 사용절차 합의 등이며, 이로써 중단기간중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 6월 잠정조치 문제와 별도로 ‘북한 관련법 존중 및 상호협조 문제」를 「특권·면제 의정서」 제21조 이행차원에서 한 차례 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나 양측간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측의 장비반출 금지조치 철회를 위해 KEDO측은 사무총장단 방북(2003.11월, 2004.11월)과 잇따라 개최한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측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우리측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주요 계기시동 조치의 부당성 및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손실보상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200여대의 장비가 부지내 일정 장소에 통합되어 보관·관리되고 있다.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는 집행이사국들이 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할 당시(2003.11월) 1년간의 중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중단기간 만료전(2004.11월)까지 북핵문제의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 경수로사업의 「중단조치 1년 연장」 방안을 집행이사국들에 제시하고 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KEDO 집행이사회는 2004.11.26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12.1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발표하였다.



1. 남북관계 일지

<12월>

- 12. 1 러, 시베리아-한반도 철도연결현장조사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두만강 남쪽의 북한측 철도 56km 구간에서 1개월간 3차 현장조사 실시
- 12. 2 제8차 남북철도도로실무접촉(12.2 ~5, 속초)
 - 남북, 철도·도로 동해선 공사현장 상호방문(12.2)
 -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착수, 차량운행 사무소 설치·운영 등 합의
- 12. 5 남북, 동해선 軍하 라인 개통
- 12. 6 北, 日 위성발사(11.29)에 대해 ‘군사대국화 책동’이라고 비난
- 12. 8 통일부, 이산가족면회소 2005년말 완공계획 발표
- 12. 9 부시 美대통령-원자바오 中총리 회담(워싱턴)
 - 부시, 北 核동결 제안 거부
- 12.10 KEDO-北 전문가회의(12.10~11, 北함남 신포시 금호지구)
 - 북측은 경수로 부지에 대한 북한 인력의 출입 및 북한 국내

법 적용 방침을 통보

- 북-아일랜드 국교 수립

- 12.11 中 외교부대변인, 6자회담 3국 공동문안 北에 전달 확인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채택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채택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채택
- 12.12 韓-中, 2차 6자회담 연내 개최방안 협의(中 베이징)
EU, 북한에 핵개발 계획 해체 촉구
- 12.14 김영대 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IT분야에서 국제
협력 강조(정보화사회정상회의, 스위스)
케리, 부시에 대북 직접대화 촉구
- 12.15 北-러, 블라디보스토크-청진 송전선 건설 문제 논의
- 12.17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청산결제실무협의,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개최(12.17~20, 평양)
- 12.18 中, 북핵대사에 닝 푸쿠이 임명
- 12.19 한적, 새 총재에 이윤구 인제대 총장 선출
전경련,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설립
日,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 정식 결정
- 12.21 통일부, 금강산 육로관광객 2007년도 1백만명 전망

- 12.22 개성공단 중기관리사무소 개소
- 12.23 제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 경의선·동해선 경비초소 설치 합의
- 12.24 국군포로 전용일씨 중국 억류 41일만에 입국
 - 北 내각 부총리, 올 국방비를 0.5% 초과 집행했다고 언급
- 12.25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6자회담 논의(12.25~27)
 - 北, 인민생활공채 첫 추첨
- 12.29 中, 6자회담 내년초 개최에 북한도 동의했다고 표명
- 12.31 한적, 연탄 5만장 대북 지원

【 2004년 】

<1월>

- 1. 1 北 신년공동사설, 국정목표로 3대전선 제시
- 1. 3 현대아산, 겨울철 관광객 급감으로 금강산 해로관광 일시중단 결정
 - 北 인민군, 군사력 강화 궤기 모임
 - 中 대표단, 6자회담 협의차 러시아 방문
- 1. 5 조선북권합영회사, 남측 개인홈페이지에 공개질의 게시

정부, '통일교육 기본계획' 확정, 발표

주한EU상의, 평양에 협력사무소 공식 개설

1. 6 美 민간대표단 방북, 영변 핵시설 방문(1.6~10)

러, 6자회담 실무그룹 구성 제의

1. 7 美, 북한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사실
확인

1. 8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발표

1. 9 정부, (주)훈넷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방침 통보

1.10 北외무성,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미국 교수 일행에게 '핵 억
제력'을 보여줬다고 주장

1.11 영변 핵시설 참관 美의회 방북팀, 방북결과 설명차 방한

1.12 北 외무성, '동결 대 보상' 합의시 핵동결 용의 표명

1.13 韓-美-中, 워싱턴서 북핵문제 논의(1.13~14)

러시아-몽골, 북핵 6자회담지지 공동성명 발표

日외무성대표단 방북, 남북자 송환 교섭(1.13~17, 평양)

1.15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남북 실
무자간 접촉(1.15~17, 금강산)

프리처드 전 美대북교섭담당 대사, 방북시 北 폐연료봉 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표

- 1.16 故문익환 목사 서거 10주년 추모행사 참가 北대표단 입국
- 1.17 韓-美, 용산기지 이전 완전 합의
 - 한·미동맹정책구상 6자회의에서 용산기지 내 모든 시설 및 병력을 평택·오산 지역으로 옮기는데 합의
 中공산당 대외연락부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방북(1.17~20)
 北·日 남북자 송환 교섭, 진전없이 종료
- 1.19 정부, (주)훈넷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문익환목사 추모 北대표단 출국
 北,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개최(평양 인민문화궁전)
- 1.21 韓-美-日, 워싱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국 정책협의회 개최(1.21~22)
 - 6자회담 조기 재개 협력 합의
- 1.22 北, 훈넷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관련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 답변 요청
- 1.23 佛외무, 주변국들의 북핵 대화 활성화 촉구
- 1.24 법원, 北공증기관 공증서 첫 효력 인정
- 1.25 IAEA사무총장, 대북 핵사찰의 지속 필요성 강조
- 1.27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및 제2차 청산결제 실무협약(1.27~29, 개성)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28 나이지리아, 北과 불특정 미사일 기술 공유 합의 발표
- 1.29 北 한민전 중앙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실천 관련' 시국선언 발표
- 1.30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노무현 대통령,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윤광웅 국방보좌관 임명
北노동신문, 美에 동시행동원칙에 의한 일괄타결안 수용 촉구

<2월>

- 2.1 제임스 켈리 美차관보 방한(2.1~2)
외교통상부장관, '先 북핵동결, 後 상응조치' 입장 표명
- 2.2 北 김영일 외무성 부상, 호주 외무부 대표단과 회담
韓-美, 북핵 CVID식 해결 의견일치
- 2.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2. 3~6, 서울)
 - △2차 6자회담 협력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1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임진강수방사업 및 해운합의서 발표 문제 등의 계속적 협의 △제9차 이산가족상봉행

사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 등 합의

- 2. 4 北 아·태평화위, 남한당국에 금강산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中 국가부주석, 일본인 납치문제 6자회담에서 거론 부적절
표명
- 2. 6 美 국방장관, 미군의 재배치에 한국이 명확히 포함될 것임
을 표명
- 2. 7 北 사민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평양)
김계관 北 외무성 부상 중국 방문(2.7~10)
- 2. 8 北 조평통 서기국, 한나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난
- 2. 9 北-러, 두만강 국경선 확정 합의
韓-터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공감
- 2.11 日 외무성대표단 방북(2.11~14)
통일부, 첫 '열린 통일포럼' 개최(대전)
北-美, 미군유해 송환 재개 합의
- 2.12 정부, 北에 장성급회담 개최 제의
- 2.13 中 외교부 부부장, 2차 6자회담 대책 협의차 방한(2.14~15)
- 2.14 北 외무성, 2차 6자회담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제기시 일본

- 의 회담 참가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강조
부시 대통령, 美 안보위협 종식 의지 강조
- 2.15 노무현 대통령, 북핵 등 5대 전략과제 적극 추진 의사 표명
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 4.25문화회관)
- 2.17 한미 4자 고위협의회의(2+2회의) 개최
이수혁 차관보, 6자회담 협의차 방일(2.17~18)
고이즈미 총리, 대북 압력 행사 의지 표명
- 2.18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추가 의정서에 대한
국내 비준 완료 사실 IAEA에 통보
美, 북한의 HEU부인 상관없이 6자회담 참여 의사 표명
- 2.19 한적, 금년도 제2차 대북구호물자 지원계획 北에 통보
美,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미국의 목적임을 강조
한국기자협회, 평양과기대 건립기금 전달
- 2.20 北, 미군 유해·발굴장비 美수송기 운반 거부
- 2.21 유럽의회 정당대표단(단장 자크 샤타르 의원) 방북
통일부장관, 미국에 유연한 북핵 협상 촉구
- 2.23 韓·美·日 6자회담 대표단 3자협의회의 개최
탈북자 8명, 베이징 소재 독일학교 진입

- 2.24 北,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국제연대협의회 조선위원회’
결성
러 외무차관, 北안보보장 선언 문서채택 가능성 언급
- 2.25 제2차 6자회담 개막(2.26~28, 中 베이징)
- 한국, 6자회담서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 및 6자회담 주기
적 개최 제안
北,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총18조) 및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총22조) 채택
제4차 해운협력 및 제9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2.25~
26)
- 남북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를 최종 확정·채택 등 합의
- 이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차량운행사무
소 개설 등 합의
남북,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발표
- 2.26 통일부장관, 북핵 폐기 전제로 핵동결시 에너지 지원 입장
발표
中, 대북 원조 6자회담과 무관함을 강조
北, 전당 사상일꾼대회 개최(2.26~27, 평양)
- 2.27 美·獨,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논의(워싱턴)
日외상, 北의 핵개발 계획 포기 촉구

2.28 제2차 6자회담 폐막

-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그룹 설치, 2/4분기 내 3차회담 개최 등 7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2.29 이수혁 차관보, 2차 6자회담 성공적이라고 평가

北 냉동운반선, 서해 NLL 월선

北,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 요구

제5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2.29~3.2)

러 외무차관, 북핵사태 연내 해결 부정적 전망

<3월>

3. 1 北 민화협·조선종교인협의회와 南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3.1 민족자주선언」 공동 발표

佛 외무장관, 북핵문제 포괄협약 촉구

3.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3.2~5, 서울)

- 개성공단 건설 등 주요 경제추진과 관련한 7개항의 합의문 타결

육군, 9월말 완공예정인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재개

부시, 북한·이란에 핵개발 포기 촉구

3. 3 조계종, 단청안료 北에 지원

고이즈미, 대북 경제제재 신중 강조

3. 4 정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종합정리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발간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북핵문제 중점 논의

3. 6 탈북 문예인 중심의 '통일문예인협회' 출범

中외교부장, 북핵문제 북미간 신뢰부족으로 장기화 전망

3. 7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안전한 식수' 대북지원 계획 발표

韓·日 외교장관, 북핵문제 등 양국관계 현안 논의

3. 9 전북, 北과 농업기술 협력사업 추진 합의

러, 새 외무장관에 라브로프 유엔대사 임명

美, 북한이 핵 전면 폐기 방식으로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

- 3.10 韓-스웨덴 정상회담 개최(서울)

사단법인 선한사람들, 北에 공기름 공장 건설 계획 발표

前 북한 축구대표 감독 입국

北 외무성, 미국의 베이징 6자회담 결과 발표 관련 부시행 정부 비난

- 3.11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6자회담 실무회의 개최 추진 의사 표명

- 3.12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 北 민화협, 남한의 '안보정책 4대 전략기조' 비난
- 3.13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개정판 발간
남북 대학생 공동행사 개최(금강산)
유엔아동기금 총재 일행 방북(3.13~15)
- 3.14 北,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장소 변경 요구
南, 北에 합의 일정대로 회담개최 촉구
- 3.15 제9차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생사·주소 확인서 교환
감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검 결과 발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3.15~4.23, 스위스)
- 3.16 북한산 모래 국내 반입
北,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무산 유감 표명 및 개성 개최 거듭 강조
中,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핵 실무그룹 구상안 전달
유엔아동기금 총재, 대북지원 요청차 방한
- 3.17 정부, 北에 청산결제실무협의 합의된 대로 차질없는 이행 촉구
통일부장관 유니세프 총재 면담
北방송,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관련 비난 보도
美國방부, 가상 北미사일 격퇴 시험 실시

- 3.18 남북, 9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 교환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차질 우려 표명
 北, 청산결제협의 무산 책임 관련 전통문 발송
 평양교예단 금강산 공연 1천회 돌파
 英, 北대표단에 인권·핵문제 우려 전달
- 3.19 탈북자 지원 사진작가 석재현씨 귀국
- 3.22 정부, 북한김치·음료 남북협력사업 승인
 北,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및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
 회 연기 제의 전통문 발송
- 3.23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평양 방문(3.23~25)
 ‘2004 북한인권법안’ 미국 하원 상정
 韓·日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서울)
- 3.25 北, 최고인민회의 제11기 2차회의 개최(평양 인민문화궁전)
 남북지자체간 과수원 조성 협력사업 승인
- 3.26 北-KEDO, 경수로 근로자 안전문제 협력 합의
- 3.29 제1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3.29~4.3)
 中총리, 한-중관계 4대원칙 제시

美, 북한의 6자회담 실무그룹 조속 합의 희망

北, 원산지증명 인터넷서비스 실시

3.30 한적, 비료 20만톤 지원계획 북에 통보

<4월>

4. 1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공사에 단청 지원 계획 발표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씨 별세

북적,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4. 2 北 민경련, 관세청에 ‘인터넷 원산지 증명 협조’ 공문 전달

北, 철도도로 및 임진강실무협의회 동시 개최 제의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남측 행사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공식사과 요구

4. 3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차질에 대해 사과

4. 4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28명,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참가차 방북(4.4~6)

4. 5 北 천도교 창건 144주년 기념식(평양)

4. 6 北, ‘마지막 빨치산’ 故 정순덕 추도모임 개최(평양)

신계사 복원불사 착공식(금강산)

日여당, 北선박입항금지법안 제출

4. 7 韓·美·日 3국 북핵정책협의회(4. 7~8, 샌프란시스코)
 - 북핵문제를 CVID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남북장성급회담 개최 역점 강조
4. 8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회의(4.8~10, 개성)
 -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위해 우선 임진강유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항목과 세부조사 내용에 합의
 北-체코, 항공료에 관한 협정 체결
4. 9 남북공동기획 ‘고구려문화전’ 개막(南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민화협) 주최, 北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후원)
 통일부, 통일고문회의(의장 이홍구) 개최
- 4.10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 개성공단 건설 협의차 방북(4.10~
 12, 금강산)
- 4.13 남북, 개성공단건설 1단계 1백만평 부지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한적, 비료 20만톤 대북지원계획 복적에 통지
- 4.14 日, 北선박 겨냥 해양오염보험법 개정
- 4.15 딕 체니 美부통령 방한(4.15~16)
 - 고건 총리와 만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이
 라크 추가 파병,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

상호관심사 논의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4.16 조선신보, 남한의 4.15 총선결과에 대해 정치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

4.17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 개최(4.17~18, 아일랜드)

4.18 제6차 ASEM 외무장관 회의, 18개항의 의장성명 채택
-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지지 등

4.19 北-中 정상회담 개최(4. 19~21 , 中 베이징)

北 외무성 대변인, 유엔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

4.20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4.20~22, 파주)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2004년도 합의서' 채택

한적 대표단(단장 : 이운구 한적총재), 평양 방문 (4.20~24)

- 조선적십자병원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적십자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김정일 위원장, 장쩌민 국가주석 등 中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

-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방안과 경제교류강화 방안 등을 논의

탈북자 설립 인터넷 방송국(자유북한방송) 개국

- 4.22 北 평북 용천역에서 폭발사고 발생
- 4.23 통일부장관, 용천역 사고 관련 위로 표명
 통일부,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남북협력사업 승인
 北, UN에 용천역 폭발사고 관련 지원 공식 요청
 北, 南에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할 것을 촉구
- 4.24 정부, 北에 100만 달러 긴급 지원 결정
 - 통일부장관, 한적에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한적, 용천역 폭발 사고 관련 남북접촉 제의
- 4.25 北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JSA 안전관련 합의사항 전면 검토” 담화 발표
 - 미군이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를 한국군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4.26 북적, 용천재난 구호 관련 남북 대표접촉 개성 개최 제의
 국제적십자연맹(IFRC), 국제사회에 125만 달러 긴급지원 요청
- 4.27 남북, 용천재난구호 남북간 대표접촉 개최(개성)

- 남측은 응급의료진 파견 및 시설복구 지원 등을 제의, 북측은 피해복구용 자재장비를 시급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용천동포돕기본부’ 출범

러시아 무상제공 구호품 평양 도착(의약품, 천막, 모포 등 1,360만 루블 분량)

4.28 南-北-러, TKR-TSR 연결회담(4.28~30, 모스크바)

-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4.29 北,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참가의사 표명

美,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간 직접대화 거부 의사 표명

美, 北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4.30 용천동포돕기본부, 의약품 등 100억원 규모 지원물품 北에 전달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4.30~5.3, 평양)

<5월>

5. 1 의학토론회 참석 南의료진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석차 방북

5. 2 北 외무성 대변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對美 비난

5. 4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5.4~7, 평양)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및 차기 장관급회담일지(8.3'6) 등 합의

한적, 용천재해지원 제3차 긴급구호물자 지원

北-쿠바; 2004~2006년 문화교류 계획서 체결

北-日, 일본인 납치문제 비공식회담(中 베이징)

5.5 한적, 제4차 용천 구호물자 지원

南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北 '민족화해협의회', 용천 복구 합의서 체결

- 금년 안으로 용천소학교, 탁아소, 유치원 각각 1개를 공동으로 재건 등 합의

5.10 한적, 용천재해 복구 제2차 자재장비 지원

전남-北평남 남북교류협력 합의

- 평남에 있는 농기계 수리공장 운영장비 지원 등 5개항에 합의

5.1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건설 협의차 방북

北 조국전선 중앙위, 미국의 '북한자유법안' 비난 성명 발표

5.12 한적, 5차 용천 긴급구호품 복송

제1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5.12~14, 中베이징)

- 제3차 6자회담을 6월말 이전에 열되 그 이전에 실무그룹회의

를 한번 더 개최기로 합의

5.13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남북대표단 양자접촉

- ‘핵폐기’ ‘동결 대 보상’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존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北 조국전선과 조평통,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5.14 현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

정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시행

北 조평통 대변인, 이라크 파병 결정 비난 담화 발표

5.18 모리스 스트롱 유엔사무총장 특사 이행, 평양 방문(5.18~22)

北 적십자대회,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5.18~19)

5.19 北 조평통 대변인, 제3땅굴 도보관람 중단 촉구

英·北 외무차관, 6자회담 논의

5.21 국제연대협의회 北대표단, 위안부문제 제소·서명운동 제안

시민단체, ‘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 발족

KEDO, 경수로 사업중단 방침 불변 표명

5.22 北·日 정상회담 평양서 개최

- ‘북·일 평양선언’ 재확인 및 이행 문제 등을 논의

5.2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5.24~25, 금강산)

- 양측간 입장차이로 성과없이 종료

5.26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금강산)

- 남측은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의 우선적 해결과 향후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방안을 강조한 반면, 북측은 전선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와 그 수단들을 제거하는 문제 협의를 주장, 동 문제들을 제2차 장성급회담(6.3, 설악산)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금강산관광 운영관련 3개규정 채택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29 결정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등 3건의 규정을 채택

5.28 통일부, 북한산 모래 육로 시범운송 승인

5.29 「총련」 제20차 전체대회 새 중앙의원 선출 및 폐막

<6월>

6. 2 남북경추위 제9차회의 개최(6.2~ 5, 평양)

- △개성공단 건설 관련 6월중 관리기관 구성 △9월 전력·통신을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 △경의선·동해선 도로 10월말 동시 개통 등 7개항에 합의

한국 국방연구원,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남북한 군사력 평가 결과 공개

6. 3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6.3~4, 설악산)

-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 합의

北 조평통 서기국, 남북 군사회담 중에 국방연구원의 '동북아 군사력에 관한 보고서' 발표는 북과 군사적 대결을 고취하고 대화 상대방을 자극했다고 비난

日 중의원, '北 선박입항금지법' 통과

6. 4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최초로 상업적 물자 통과

- (주)CS글로벌은 北 사천강에서 모래를 채취, 약 1,000톤의 모래를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시범운송

제4회 남북공동학술회의, 정신문화연구원서 개최

北 경비정 2척, 연평도 서해 NLL 월선

6. 5 남북,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를 서명·교환

한적총재, 국제적십자사연맹 대표단 일원으로 北 용천 방문

北-독일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의회 의원) 방북

6. 6 美, 주한미군 1만 2500명 2005년까지 감축 통보

6. 7 제9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개최

6. 8 韓·獨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北 조평통 서기국, 65 국방부장관의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내용 비난
中·美, 제3차 6자회담 개최관련 실무협상
6. 9 남북, 제10차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北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의 군사훈련 비난
- 6.10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개최(6.10~12, 개성)
- △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 공통망 운
용 △ 6.14 서해상 통신 시험운영 실시 △ 6.15 0시 군사분계
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활동 중지 △ 6.15부터 8.15까지 3단
계로 나누어 선전수단 제거 등에 합의
- 6.11 北, '6.15 남북공동성명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참가 대상자
명단 통보
日, 대북불법수출업체 4개월 금수 조치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핵무기 개발에 전용가능한 부품을 북
한에 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니가타현 '아이디 서포트
사에 대해 4개월간 수출금지 결정 통보
- 6.12 국제태권도연맹 장웅 총재 일행, 평양 방문
- 6.13 제3차 6자회담의 공동대책 논의를 위한 한·미·일 3자협의
회 개최(6.13~14, 워싱턴)

- 6.14 남북 경비정, 서해 NLL 해상서 첫 시험통신 실시
우리민족대회 참가 北대표단 입국
- 6.15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개최(서울)
남북, 우리민족대회 진행(6.15~16, 인천문학보조경기장)
- ‘민족대단합 선언’ 채택
경남대, 「통일관」 개관
유엔, 北인권결의안 승인
- 6.16 국제감자과학토론회 개최(6.16~18, 평양)
- 6.17 ASEM 철의 실크로드 심포지엄 진행(6.17~18, 서울)
-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 등 북측대표단 6명 참여
최수현 北 외무성 부상, 77그룹 창립 40주년 특별 각료회의
에서 개발도상국간 경제협조 강화를 강조(브라질 상파울루)
- 6.18 北-러, ‘2005-2007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 체결
- 6.20 北, 황북 신계군 대평청년발전소 준공
- 6.21 북핵 2차 실무그룹회의(6.21~22, 中 베이징)
- 6.22 日-EU 정상, 北에 협상에 의한 핵무기문제 해결 촉구
- 6.23 제3차 6자회담 개막(6.23~6.26, 中 베이징)
- 6.24 개성공단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및 청산결제 거래를 위한
제2차 은행간 접촉(6.24~25, 개성)

北-美, 제3차 6자회담에서 첫 양자협의 진행

-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핵계획을 포함 모든 핵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HEU 핵계획 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미국이 北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 촉구

6.25 남북,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 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 군사분계선상)

제3차 6자회담 北 대표단, 미국이 北 보상방안 수용시 核동
결·폐기 표명

6.26 제3차 6자회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종료

- 조속한 시일 안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 개최하여 핵동결의 범
위와 기간, 검증방법과 상응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

6.27 남북 농민통일대회 개최(금강산)

6.28 북적, 한적 비료지원에 사의 표명

철도청, '남북철도운영준비단' 발족

北 외무성 대변인, 제3차 6자회담 관련 담화 발표

- 선 핵포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안은 동시행동원칙이 결
여되고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주장

6.29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및 제2차 통신자실무접촉
(6.29~30, 파주)

- 北분계역사 건설일정 등 5개항 합의

北-中, 국경협력협정 체결

6.30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개최

제10차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6. 30~7.2, 금강산)

<7월>

7. 1 정동영 통일부장관 취임

남북, 외교회담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제1차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 국제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
제무대에서 계속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데 합의

7. 3 韓-러 외교장관회담 개최(서울)

- 제4차 6자회담과 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7. 4 北-러 외무장관 회담 개최(평양)

- 양국 친선협조 강화방안과 국제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연방 외무부 사
이의 2005-2006년도 교류계획서를 조인

7. 5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개최(개성)

-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 '무선 통신망 상시 운

영' 및 7.6부터 2단계 선전수단 철폐 작업 실시 등 합의

- 7.8 정부, 개성공단 방문·협력사업 관련 특례 제정
-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제정·시행하고 협력사업 처리규정과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규정을 개정
- 北 조평통, 南의 김일성 10주기 조문단 취소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7.9 통일부, 조평통 대변인 담화(7.8) 관련 유감 표명
- 北,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연기 통보
- 7.11 제10차 이산가족상봉 개최(7.11~16, 금강산)
- 7.14 北 경비정 1척,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NLL 월선 남측 경고사격 받고 퇴각
- 7.16 北 해군사령부, 7.14 南의 北 경비정 NLL 침범주장 비난
- 7.17 김원기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의사 표명
- 北조평통·조국통일연구원, 南측 민간급 조문대표단의 방북 취소와 관련 '공개질문장' 발표
- 7.18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및 남북작가대회 3차 실무접촉(7.18~20, 금강산)
- 7.19 볼턴 美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방한(7.19~22)
- 7.20 대북지원 쌀 첫 육로수송

- 대북식량차관 쌀 40만톤 가운데 국내 쌀 10만톤의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통한 북한 수송이 시작

- 7.21 美 하원, 北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 7.24 8.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7.24 ~26,
금강산)
北외무성 대변인, '리비아식 선택포기 방식' 거부입장 표명
- 7.25 北어선 2척, 백령도 인근 서해 NLL 침범
- 7.27 동남아 체류 탈북자 1진 입국
北 외무성 대변인, 美 하원 북한 인권법안 통과 관련 대미
비난
北 국가올림픽위원회(NOC)부위원장 조상남 심장마비로
사망
- 7.28 동남아 체류 탈북자 2진 입국
- 7.29 北 조평통 대변인, 대규모 탈북자 입국 관련 비난 성명
발표
- 7.30 한적, 용천재해 복구용 자재장비 추가지원 계획 대북통보

<8월>

8. 3 南,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무산 관련 北에 회담 재개 촉구

- 8. 4 자크 디우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평양 방문
 (8.4~8.6)
- 8. 9 남북 올림픽위원장,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관련 논의(그리스 아테네)
- 8.10 한승주 주미대사-리근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뉴욕서 북핵
 문제 논의
- 8.11 北-日, 中베이징서 일본인 납치 실무회의 개최
- 8.13 北 민화협, 성명을 통해 8.15통일행사 무산 관련 남한당국
 비난
- 8.14 남북, 2004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 8.17 南,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제의
- 8.20 北 방송, 통일부장관 기자회견 발언 비난
- 8.23 北 외무성 대변인, 부시 대통령의 北 최고수뇌부 모독발언
 관련 강력비난
- 8.24 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이수혁 차관보, 6자회담 논의차 中·日 방문(8.24~27)

 北 조평통 대변인, 을지포커스렌즈-04 연습 비난 담화
- 8.25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7.29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채택 결정 발표

- 8.26 현재, 국보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처벌) 합헌 결정
- 8.30 통일부장관, 남북문제관련 한미고위정책협의 위해 방미(8.30~9.3)
- 8.31 정부, 남북경추위 제10차 회의 연기 관련 北에 유감 표명 및 회담재개 촉구

<9월>

- 9. 1 탈북자 29명, 中 베이징 日학교 진입
- 9. 2 과기부, 우라늄 분리실험 관련 기자브리핑 브리핑
 - 과학기술부는 국내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1~2월 자체적으로 극소량의 우라늄(0.2g) 분리실험이 포함된 과학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월 IAEA에 신고 했다고 발표
- 9. 5 北, 남측 정부의 조문불허조치 및 탈북자 처리문제를 이유로 민노당 대표단 방북 불허
- 9. 8 北, 공화국 창건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4.25문화회관)
- 9. 9 北, 공화국 창건56돌 경축행사 진행(인민문화궁전)
 - 北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

- 9.10 中 당·정대표단, 北 공식 방문(9.10~ 13)
- 9.11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등록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금강산 9.11 ~12)
- 9.13 IAEA사무총장, 한국 핵관련 실험에 우려 표명
- 9.14 개성공단 5개합의서 국회 통외통위 통과
- 9.15 日, 북한에 조속한 6자회담 참가 촉구
- 9.17 고이즈미, 대북관계 정상화 정책 불변 표명
- 9.18 정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사가 없음을 재차 천명 △핵 투명성 원칙의 확고한 유지 및 국제협력 강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범위 확대
- 9.19 송호경 北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사망
- 9.23 北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동북방 NLL 침범
- 9.24 산자부, 국산 청화소다 북한 유입 확인
- 9.25 北-日, 中 베이징서 납치실무협약(9.25 ~26)
- 9.28 美 상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 9.29 탈북자 44명, 中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 진입
- 9.30 정부, 「북한산 모래 반입 활성화 조치」시행

中,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 인도요구

<10월>

10. 1 北 조평통 서기국,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1주년 즈음
한미동맹관계를 비난하는 진상공개장 발표
10. 2 北 조평통 대변인, 남한 핵물질 실험관련 비난 성명 발표
10. 3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 제54차 퍼그워시 총회 참석차
방한
10. 4 통일부장관, '대북정책 4대방향' 천명(신뢰, 평화, 실용, 참
여)
北 조평통 대변인, 南 측의 DMZ 세계유산 등록 추진 비난
담화 발표
北 외무성 대변인, 美상원 '북한인권법안' 통과 비난
10. 5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美 하원, 북한인권법안 재통과
10. 6 韓-美, 주한미군 감축계획 합의
10. 7 남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군사실
무책임자 접촉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인원·차량의 통행과정에

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장 교환

10. 8 韓·獨 정상, 남북문제 협의(베트남 하노이)
- 10.11 北최고인민회의 상임위, 9.21 결정 제35호 「개성공업지구보협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규정」 채택
- 10.12 경의선·동해선 철도역사 실시설계 기술협의 (10.12~14, 개성)
北 조평통 대변인, KCNA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의 비상계획 백지화 요구
- 10.13 닝푸쿠이 中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 북핵협약차 방한
- 10.14 北 외무성 대변인, 남한 핵문제 관련 IAEA 의 이중적 기준 비난
- 10.15 이해찬 총리, 제2차 진보정상회의서 북핵 협조 요청 (헝가리)
- 10.16 北 조평통 대변인,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 4개 대안 관련 담화 발표
-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내용은 4개 대안은 본질상 제2의 보안법이라고 비난
- 10.18 부시 美대통령, 2004북한인권법안 서명
- 10.20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건설착공식 개최 (개성)

- 10.21 美 백악관, 북한인권법 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탈출한 사람들과 북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두를 돕고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처할 유용한 새 도구들을 제공할 것임”
- 10.22 北 외무성 대변인, 중동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 관련 3대조건 제시
-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
- 10.23 파월 美국무부장관, 6자회담 北재개조건 일축
- 10.25 파월 美국무부장관, 방한(10.25~26)
- PSI 다국적 해상합동훈련 실시(10.25~6)
-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2개국 참여
- 10.27 韓-美-러, 6자회담 재개방안 논의(서울)
- HEU(고농축우라늄)문제, 동결 대 상응 조치 등에 대해 의견 교환 및 4차 6자회담의 금년 내 조속한 개최에 대해 합의
10. 29 한적, 북적에 추가 비료지원 계획 통보

<11월>

11. 1 北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및 연평도 인근 NLL 침범, 南

해군 함정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

- 11. 2 北 인민군 해군사령부, 북 경비정 서해NLL 침범 관련 보도 발표
 - 11. 4 조지 W.부시,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
 - 11. 9 北 경비정 1척 서해 백령도 부근 NLL 침범
납치 의혹 일본인 실종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차 北日 실무회의개최(11. 9~15, 평양)
 - 11.12 한적, 이산가족 사망자 107명 기일 대북통보
 - 11.15 정통부, 친북사이트 31개 접속 차단
 - 11.16 北, 南 정전협정 위반 주장
 - 남측이 군사분계선까지 장갑차를 끌어들이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
 - 11.18 韓·러 외무장관, 6자회담 관련 양자회담(칠레, 산티아고)
 - 11.19 북적, 금강산면회소 건설관련 실무접촉 제의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6주년 기념행사(금강산)
 - 11.20 韓-美, 양국 정상회담(칠레, 산티아고)
 -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 北 조평통 서기국, 친북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 규탄 보도

발표

- 11.23 남북, 해외 통일단체 대표 실무접촉(11.23~24)
- 6.15공동선 실현을 위해 통일운동의 적극 전개 등 3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11.25 금강산 면회소건설 실무협의 개최(11.25~27)
-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10~12.21 금강산 현지에서 갖기로 하고 면회소 착공일정을 이 기간중 협의해 결정키로 합의
- 11.26 KEDO, 경수로사업 중단조치 1년 연장 결정
北 조평통, 남측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 비난 담화 발표
- 11.27 韓·中·日 3국 외무장관 회의(라오스 비엔티엔)
- 6자회담 실질진전 협력강화 합의
국경없는 기자회(RSF), 한국정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철회 요구
- 11.29 韓·中·日 정상, 6자회담 진전위해 공동노력 합의(아세안 +3 정상회의, 라오스)
- 11.30 남북, 개성공단 통신협의 재개 (11.30~12.1)



2. 남북회담 합의서

- 남북장관급회담
- 남북군사회담
- 남북경제분야회담
- 남북인도사회문화분야회담

합의문 목록

□ 남북장관급 회담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4.2.6) / 195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4.5.7) / 197

□ 남북군사분야 회담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 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03.12.23) / 198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04.6.4) / 201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04.6.12) / 204

□ 남북경제분야 회담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04.3.5) / 215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04.6.5) / 218
-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03.12.5) / 221
-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04.2.26) / 225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04.4.10) / 227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기본합의서('04.4.13) / 231
- 제10차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접촉 합의서('04.7.2) / 246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04.6.25) / 248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공동보도문('03.12.20)
/ 249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04.1.29) / 250
-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공동보도문('03.12.20) / 258
- 제2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공동보도문('04.1.29) / 260
-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04.2.26) / 261
- 남북해운합의서('04.5.28) / 262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04.5.28) / 271
-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04.3.5) / 289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04.4.10)
/ 291
-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 차 회의 공동보도문('03.12.20)
/ 292

□ 남북사회문화분야 회담

- 제28 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
(‘04.6.24) / 293

□ 남북장관급 회담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 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

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 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양

□ 남북군사분야 회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 ① 남북관리구역내 철도, 도로의 안전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 ② 남북관리구역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측이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화점) 등을 설비하지 않는다.
- ⑤ 초소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의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

결한다.

-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간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대령 문성묵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대좌 유영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소장 안익산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과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합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파수는 156.8Mhz, 보조주파수는 156.6 Mhz로 설정·운영하되, 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파수로 넘어와서 1~16 채널 범위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쌍방 합정들이 상대측 합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합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합정 호출부호는 ‘백두산’으로

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남측 :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에 사용한다.
-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또는 점멸 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

여 송신한다.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AA AA AA(·-·
-·-)로, 응답시 TTTTT(-)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 ①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 ② 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 ③ 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 운영

-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 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5) 통신 운영

-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한다.
 -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까지 군사분계

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을 포함한다.
-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선전수단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 보충 및 발효

-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준장 박정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소장 안익산

[부록 1]

NO	신 호 내 용	신호 방법	기류 및 발광 표시	
			기류(깃발)	발광(불빛)
1	아측은 변침, 남 하(복귀)중이다.	2		· · · · ·
2	아측은 변침, 북 상(복귀)중이다.	3		· · · · ·
3	아측은 적대행위 의도는 없다.	4		· · · · ·
4	항로미실된 선박 을 확인(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5		· · · · ·
5	조난된 선박을 확 인(구조)하기 위하 여 간다.	6		- · · · ·
6	함정의 기관이 비 정상이다.	7		- · · · ·
7	함정의 조종성능 이 나쁘다.	8		- · · · ·
8	아측은 너의 신호 를 이해, 수신하였 다.	9		- · · · ·
9	귀측의 신호를 수 실했으나, 이해하 지 못하겠다.	0		- · · · ·

[부록 2] 전화교환통지문

통 지 문 No.	
<p>① 일시: 년 월 일 시 분</p> <p>② 발신 :</p> <p>③ 수신 :</p> <p>④ 불법조업어선 자료</p> <p> ○ 조업시간:</p> <p> ○ 위 치:</p> <p> ○ 척 수:</p>	
송신 담당자	(계급) (성명)

[부록 3]

시험통신계획

1. 대 상

- 1) No.1 대상 : 연평도 1구역 합정 ↔ 육도 합정
- 2) No.2 대상 : 연평도 2구역 합정 ↔ 등산곶 합정
- 3) No.3 대상 : 대청도 3구역 합정 ↔ 기린도 합정
- 4) No.4 대상 : 대청도 4구역 합정 ↔ 월래도 합정
- 5) No.5 대상 : 백령도 서남 5구역 합정 ↔ 장산곶 합정

2. 일 자 : 2004년 6월 14일(월)

3. 시 간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 ① No.1 대상 : 09:00 ~ 09:15
- ② No.2 대상 : 09:30 ~ 09:45
- ③ No.3 대상 : 10:00 ~ 10:15
- ④ No.4 대상 : 10:30 ~ 10:45
- ⑤ No.5 대상 : 11:00 ~ 11:15

2) 기동하면서 통신

- ① No.1 대상 : 09:15 ~
- ② No.3 대상 : 10:15 ~

4. 주파수

국제상선공통망 주주파수 제16번 채널 (156.8Mhz),
보조주파수 제12번 채널 (156.6Mhz)

5. 호출부호

- 1) No.1 대상 : 남 (한라산-1) ↔ 북 (백두산-1)
- 2) No.2 대상 : 남 (한라산-2) ↔ 북 (백두산-2)
- 3) No.3 대상 : 남 (한라산-3) ↔ 북 (백두산-3)
- 4) No.4 대상 : 남 (한라산-4) ↔ 북 (백두산-4)
- 5) No.5 대상 : 남 (한라산-5) ↔ 북 (백두산-5)

6. 통신방법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에서 먼저 교신하고, 신호에 따라 보조주파수로 전환하여 교신한 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시험을 완료한다.

《예》

남 → 백두산 - 1, 백두산 - 1, 여기는 한라산 - 1 감명도?
북 → 한라산 - 1, 한라산 - 1, 여기는 백두산 - 1 감명도 좋음
남 → 채널 12번 전환
북 → 수신완료

② 신호 호출순서

- 주주파수에서

- 보조주파수에서

- No.1 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1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2 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2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3 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3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4 구역:남측이 먼저 호출 No.4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5 구역:북측이 먼저 호출 No.5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2) 기동하면서 통신

쌍방 함정들은 현 경비위치에서 교신설정을 끝낸 후 상대측 함정 방향으로 5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류 및 발광시험을 한 다음 즉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 ① 제1구역에서의 시험은 09시 15분부터 남측이 먼저 호출하면 북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 ② 제3구역에서의 시험은 10시 15분부터 북측이 먼저 호출하면 남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③ 함정들은 국제상선공통망을 지속 유지하며 어느 일방 함정이 기류를 계양하고 발광신호를 보내면 상대측 함정은 응답신호를 하고 통신기로 식별상태를 통보한다.
- ④ 쌍방 함정들은 시험도중 어느 일방이 시험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7. 유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시험계획

1) 일시 : 2004년 6월 14일 09시

2) 내용

합의된 정보교환양식에 기초하여 제3국어선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한다.

□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해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데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협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를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안의 시범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도록 하며, 2004년 6월까지 개성공단 관리기관을 구성·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전력, 문산-개성(전신전화국)-개성공단 통신센타간 구성되는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한 통신 등을 9월부터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1단계 100만평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전되는데 따라 다음 구역 개발에 대한 내부 준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개통을 2005년에 동시에 진행하며, 이에 앞서 이미 합의한 가능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열차 시험운행을 2004년 10월경에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에서 연결도로를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2004년 10월까지 개통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에 관한 합의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채택·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간에 합의하였거나 가서명된 합의서들을 조속히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 마련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이미 서명·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부속합의서 포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며,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 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민간급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6. 남측은 동포해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는 6월중 개성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5차 해운실무접촉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각각 진행하며, 그 밖의 필요한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들은 차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2003년 12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부록 1]

신호 · 통신 · 전력계통 합의사항

구 분		합 의 사 항
신호	입환표지	○ 감호역, 판문역 입환표지를 추가하여 설계
	연동도표	○ 개성, 손하, 판문역 연동도표를 보완하여 설계
	궤도회로	○ 전철운행을 반영하여 설계
	장내신호기	○ 유도신호를 포함하여 설계
통신	통신케이블	○ 통신케이블 선종 변경(0.65×25P⇒0.9×15P)
	증폭기	○ 금강산역사 증폭기에 콘솔(CONSOLE)을 추가하여 설계
전력	전력케이블	○ 배전선로 케이블 규격 변경(100mm ² ⇒150mm ²)

[부록 2]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 조정

구분	조 정 전			조 정 후			비고
	순번	품목	수량	순번	품목	수량	
1차분 자재	16	강 재	3,550t	16	강 재	3,300t	공여
1차분 장비	39	업무용 승용차	8대	39	업무용 승용차	10대	공여
케 도 자재	2	PC 침목 (50kg PCT 코일식)	96,903 개	2	PC 침목 (50kg PCT 코일식)	96,903 개	공여
					일반형	77,937 개	
케 도 자재	5	콘크리트침목 체결구	399,241 개	5	콘크리트침목 체결구	399,241 개	공여
					50kg용 8mm	342,693 개	
케 도 장비	4	발전기	8대	4	발전기	12대	공여
	7	원형디스크날	100개	7	원형디스크날	200개	공여
	26	전기그라인드	4대	10	전기그라인드	8대	공여
				27	난방기기	6대	공여
도 로 자재	13	디젤유	4,480 톤	13	디젤유	4,380 톤	공여
	14	휘발유	41톤	14	휘발유	90톤	공여
	24	아스팔트	9,850 톤	24	아스팔트	9,750 톤	공여
				37	뉴마이트플러 스(50, 25 mm)	352.8t	공여
				38	전기뇌관 (6M)	246,960 개	공여
				39	발파기 등 부속장비	4조	임대
			40	조명등(일식)	30조	공여	
도 로 장비	17	지게차	2대	17	지게차	0대	임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4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완공을 위하여 도로 포장용 자재·장비를 3월부터, 동해선 교량상판을 5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 및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제8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동해선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7명씩으로 한다.
- ② 아스팔트혼합장 설치·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은 경의선을 3월 9일부터 4월 4일까지, 동해선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10명 내외로 한다
- ③ 동해선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이 끝나는데 따라 2일간 자재 사용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1(암반제거용 자재 수량 및 제공 절차와 방법)에 준한다.

3.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 설치·운영문제와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는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2004년 2월 26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설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철도 개통에 필요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합의한데 따라 철도 개통에 필요한 분계역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 문제들을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설계대상은 경의선에서 판문역·손하역과 동해선에서 감호역·삼일포역 신설, 개성역과 금강산역 보수로 하며,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관련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현장조사와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합의서 부록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교환, 발효시키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약식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용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위한 남측 인원들의 기술지원은 4월말부터 각각 2~3명씩 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제9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동해선은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 인원은 각각 7명으로 한다.

6.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 합의서는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4월 1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부 록]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기술지원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철도 개통에 필요한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와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는 경의선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동해선은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하며 추가 현장조사는 쌍방 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2. 현장조사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을 포함한 남북철도 연결구간으로 하며, 현장조사시 조사대상은 분계역사 설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진행한다.

현장조사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3. 남측 현장조사 인원은 단장과 설계전문가를 포함하여 9~10명으로 하며 분계역사 등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일정과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문서교환 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한다.

4. 북측은 남측 현장조사와 기술지원을 위한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5. 이 합의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목 차

- 제1조 정 의
- 제2조 기본 원칙
-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 제10조 운 임
- 제11 조 통신설비 및 이용
- 제12 조 상호 통보
- 제13 조 부속서
- 제14 조 적용 범위
- 제15 조 수정 및 보충
- 제16 조 효력발생 및 폐기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

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 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며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

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월 1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부록 1]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No.	직 명
1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부록 2-1] 임시출입증

8cm

임시출입증	
사진 (2×2.5)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10cm

<앞 면>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뒷 면>

[부록 2-2] 상시출입증

8cm

상시출입증	
사진 (2×2.5)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가	
발행기관 (인)	

10cm

<앞 면>

발행번호 : 제 호
출입지역
가 : 전지역
나 : 플랫폼
다 : 보세구역
라 : 일반대합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뒷 면>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철도직원
인명
따른다.
부여한
사항
개최
정산
일일
입환작업
체류하는 동안
인도·인수
조정
운송수단
상호
명시된
상시출입증
탑승인원
적재화물
총포류
운전정리실
사실
상황
시행
부속서

북측

총칙
철도일군
사람
준한다.
있는
문제
진행, 조직
청산
일간, 일
차같이작업
머무르는 기간
인수도
조절
운수수단
호상
지적된
고정출입증
열차에 싣는 인원
싣는 화물
총기류
운전지휘실
정형
정황
집행
부록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남측은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이에 따라 기 자재를 제공한다.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한다.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2.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 ① 분계역사 등 건축과 관련한 기술지원은 8월 초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와 관련한 장비 설치 및 시공부분 기술지원은 7월 하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10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11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동해선에서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협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전체 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본 협의서 부록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차기 회의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4년 7월 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립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4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개성공단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통신·용수 및 폐기물 처리와 통관·검역 등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4년 6월 25일

개 성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양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고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

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29일에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1월 29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책임참사 김 령 성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측>	<북측>
통행차량등	수송수단
교통수단	운수수단
출입심사	출입검사
출입장소	출입지점
훼손	오손
상황	정황
주거	주택
벌칙금	벌금
부과하거나	물리거나
상호	호상
구성	조직
발생하는	제기되는
문본	문건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사이의 청산 결제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4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제2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2004년 합의서와 “수출입은행과 무역은행 사이의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를 빠른 시일안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 1월 29일

개 성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4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성에서 제4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부속합의서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부속합의서를 최종 확정,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26일

개 성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 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합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예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 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구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 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 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시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	해상수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임차	용선
어획물	물고기
소지	소유
해사당국	해운당국
통관	통과
해역	수역
항행경보	항해경보
하역	상하선
용역	봉사
해양사고	해상재난
전복	침몰
보호조치	구원조치
방제	제거
구조·구난	구조
무사귀환	안전송환
대리점	대리인
관행	관례
준용	적용
교류·협력	협력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 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

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 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

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세현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부록 제2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서

		접수번호		
회사(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 항 노 선				
운 항 목 적				
운 항 허 가 유효 기 간				
운 항 구 분	정 기		부 정 기	회
<p>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운항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p>				

[부록 제3호 양식]

20 년 월 일

해양사고통보서 보고자 :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 인명 : ○ 선박 : ○ 화물 : ○ 오염 : ○ 기타 :
조치사항	
협조사항	

[별표 1]

해상항로대

1. 외곽항로대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①	41-29-00N, 130-14-00E	⑦	35-02-00N, 129-22-00E
②	40-00-00N, 130-10-00E	⑧	34-19-00N, 128-58-00E
③	37-10-00N, 130-00-00E	⑨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⑩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⑪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⑫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⑬	36-00-00N, 124-25-00E
④	36-08-00N, 130-00-00E	⑭	36-48-00N, 124-19-00E
⑤	35-29-00N, 130-00-00E	⑮	38-03-10N, 123-57-00E
⑥	35-13-00N, 129-40-00E	⑯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2. 입·출항 항로대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로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홍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 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 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 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 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 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⑭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 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⑯과 38-43-06N, 125-00-24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3.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홍남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

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홍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홍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4.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항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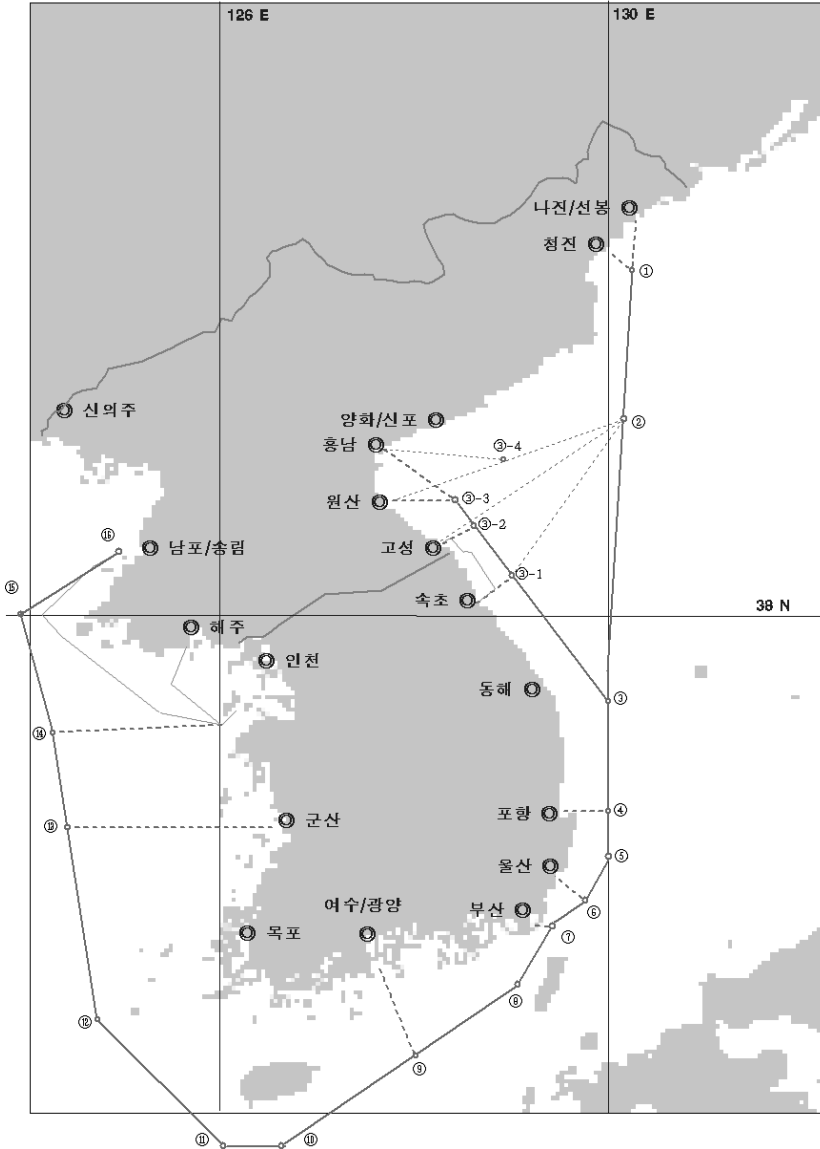
5. 항로대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해역	수역
근무일	로동일
다음의 사항을	아래의 조항을
해사당국	해운당국
다만	그러나
일시	날자, 시간
상호	호상
명시하여	담아
원거리	먼거리
항행통보	항행경보
무기부품	무기부분품
양·적하	양도, 상하선
훼손	피해
기상 악화	일기 불량
검색	검열
사후처리	차후처리
항계	항경계선
도선사	수로안내원
항비	항만비
선식 배정	배자리 선정
피난	대피
해양사고	해상사고
구조·구난	구조
방제	방지
대응	대책
탐재	적선
구난	구조
소요	소비

남북 해상 항로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당면 대책을 문서교환으로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지역의 현지조사를 2004년 4월부터 진행한다

- ① 현지조사는 단독조사와 공동조사로 나누어 진행하되 단독조사는 2004년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며 단독조사가 끝난후 1개월 안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 ② 단독조사는 조사항목이 확정되는 데 따라 각기 자기측 지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그 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공동조사시에 확인한다.

남과 북은 단독조사 착수 10일전에 북측은 기상·수문 등 남측이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남측은 3개월간북측의 단독조사 가능한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상수문망 형성 및 통보체계수립안을 통보한다.

- ③ 공동조사는 각기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 지원인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범위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사전합의된 쌍방지점들을 북측지역과 남측지역 순서로 각각 7일 동안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남과 북은 공동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자기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공동조사 착수 전에 해결하도록 하며 조사와 관련한 자료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현지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협의회에 제출하며, 실무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홍수예보시설 설치 및 묘목 제공 등 구체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 광 립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 영 건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4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단독조사 항목과 세부조사내용 및 조사용 기자재 제공 목록, 북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항목에 합의하고 이를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4. 4. 10

개 성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양

□ 남북사회문화분야 회담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2004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28회 올림픽경기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남북공동입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은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로 한다
2. 선수단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로 한다.
3. 선수단 공동입장시의 음악은 제27회 시드니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아리랑’으로 한다.
4. 공동입장 순서는 ①선수단 표지판 ②단기 ③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④남북선수단장 ⑤남북임원 ⑥남북선수의 순서로 하며 공동기수는 남측은 여자, 북측은 남자로 한다.
5. 선수단 복장은 동일한 것으로 하되,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 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으로 한다.

2004년 6월 24일

남측 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하여
명예총무 박 양 천

북측 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하여
서기장 조 상 남

남북대화

제71호

('04.12~'05.11)

통 일 부



I. 2005년 남북대화 개관	1
II. 남북차관급회담	11
1. 남북차관급회담 / 13	
III.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19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 21	
2. 「6.17 면담」 / 25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 30	
IV. 남북장관급회담	35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 37	
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 45	
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53	
V. 남북 군사분야 회담	63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 65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 67	
VI. 남북 경제분야 회담	69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 71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 80	
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 87	
4.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94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 99	

- 6.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109
- 7.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 114
- 8.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 118
-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121

VII.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25

- 1.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 / 127
- 2.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 133
- 3.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 136
- 4. 제2차 및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10.5, 10.7) / 143
- 5.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 150
- 6. 인종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154
- 7.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 161

부 록 163

- 1. 남북관계 일지 / 165
- 2. 남북회담 합의서 / 203

I. 2005년 남북대화 개관

정부는 2004년도 7월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2004년 1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부터 본격화되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무력행사와 봉쇄정책을 반대하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개혁개방을 통해 지금의 곤궁을 벗어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우리측의 노력은 2005년 들어 구체화되었다. 2005년 1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베를린 연설과 다보스 연설을 통해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3대 평화전략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한 실질협상의 조속재개, 북한의 핵폐기 결단 그리고 미국의 포괄적 접근과 전향적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북핵 포기시의 포괄적 구체적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해찬 총리는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북한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2005년은 광복 60년, 분단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대립과 불신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5월초부터 판문점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문제를 제기하였고, 북측도 마침내 2005년 5월 14일 권호웅 남북장관급 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5.16~17 양일간 개성에서

남북대화재개문제 협의를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10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6.15 통일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한다는 것과 제5차 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인사 4명이 참가하였다. 우리측 단장으로 방북한 정동영 장관은 6월 17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핵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정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노력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반 실질적 조치들에도 합의하였다.

「6.17 면담」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남북차관급회담을 시작으로 진행된 금년도 남북대화는 남북장관급회담 3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회 및 위원접촉 3회 등 총 33회 개최되었고, 총 19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되었다.

정치·군사분야 회담은 장관급회담 3회,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2회 등 총 6회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세차례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은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공동번영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는 8.15 통일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고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농업협력위원회 등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과 군사당국자회담 조속개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발전,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총 9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군사분야에서 남북은 7월 15일과 8월 12일 판문점에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열고 2004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2005년 7월 25일부터 재개하여 8월 13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에 대해 8월 13일 운영을 개시하기로 함으로써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마무리 하였다.

다만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백두산에서 개최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제분야 회담은 두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3차례의 위원급 준비접촉이 개최된데 이어,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1회,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1회, 해운협력실무접촉 및 해운협력협의회 각 1회, 농업협력위원회 1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실무협의 1회 등 총 11회가 개최되었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쌍방은 양측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협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등 12개항의 합의문을 타결 유무상통·상생의 경제협력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어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수산분야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경협을 통한 서해상 긴장완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해운협력실무접촉 및 협의회에서는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을 연결하고,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는 등 남북 해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북측 지역 시범농장 선정 및 협력, 산림협력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회의에서는 쌍방이 경제 요소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원칙에 접근하였으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지하자원개발 개발 협력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입장 차이는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좁혀

지지 않았다.

인도·사회분야의 회담은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3회,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회,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2회,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1회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1회 등 총 9회 개최되었다.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화상상봉 추가실시, 서신교환 확대 등 주요의제에 사실상 합의하였으나, 우리측이 국군포로·남북자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북측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합의서 채택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

이밖에도 인도분야 회담을 통해 제1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및 화상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이밖에 남북은 6.15,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 총 5회의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금년도 남북대화는 「6.17 면담,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거치면서 중단된 남북대화를 완전히 복원하고, 남북관계의 재도약과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는 등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갔다는데 특징이 있다.

남북대화를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그 구체적 추진방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했다는데 있다.

「6.17 면담」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하였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확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도 유무상통, 호혜적 협력방식의 경제협력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이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경협사업의 추진구도를 확립하였다.

인도분야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동안 북측의 미온적 태도로 적극 추진되지 못했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남북회담 개최현황('05.1~'05.12)>

분야	회담명	일자	장소
정치분야 회담(10)	남북차관급회담	5.16~19	개성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6.21~24	서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9.13~16	평양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12.13~16	제주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제1차 실무접촉	5.24	개성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제2차 실무접촉	5.27	개성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제3차 실무접촉	5.28	개성
	대통령 특사회담	6.17	평양
	8.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제1차 실무접촉	7.22	개성
	8.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제2차 실무접촉	8.2	개성
군사분야 회담(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7.20	판문점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8.12	판문점
경제분야 회담(1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7.9~12	서울

	경추위 제11차 회의 관련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	10.20~21	개성
	경추위 제11차 회의 관련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	10.25~26	개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10.28	개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11.23~24	개성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8.18~19	개성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7.25~27	개성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7.28~30	개성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8.8~10	문산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9.29~30	개성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8.24~27	평양
사회문화 분야 회담(10)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	4.22	개성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8.23~25	금강산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7.12~13	개성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10.5	개성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10.7	개성
	제1차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7.26	개성
	제2차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7.28	개성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위한 제1차 실무접촉	9.7	개성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위한 제2차 실무접촉	11.22	개성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12.7	개성

II. 남북차관급회담

1. 남북차관급회담

가. 개 요

2004년 7월 이후 조문 불허 탈북자 대량 입국 등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05.2.10) 등으로 북핵상황까지 악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환경은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북한측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세차례에 걸쳐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해찬 총리는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북한측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5월초부터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남북대화 재개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5월 14일 북한측은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한측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5.16~17 양일간 개성에서 차관급(부상급)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해 동의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차관급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예정보다 이틀 연장되어 5.16~19 간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봉조(통일부 차관)	김만길(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 표	한기범(통일부 국장) 김응희(통일부 부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박용일(아태위 참사)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 (5.16)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먼저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우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히 제4차 6자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이 합의한 한 반도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측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북한측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향후 남북관계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

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측 입장

○ 금년은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남과 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화체계를 복원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 나가야 함.

①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겠음.

-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우리측의 거둬들인 대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협의체인 남북장관급회담부터 우선 개최할 것을 제의

② 6.15 공동선언 5주년의 의의를 빛낼 수 있는 사업으로서, 쌍방 정부·민간이 함께 참가하는「6.15 통일대축전」 개최 및 6.15 공동선언 5주년 계기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식, 철도 시험운행 추진 등을 제의

③ 비료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원물자 수송을 해로수송과 함께 남북간 철도를 통한 수송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

- 아울러 광복 60주년 계기 제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이산가족 면회소의 조속 착공 제의

□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

○ 우리측은 동족으로서, 비핵화선언의 일방이자 화해협력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6자회담의 일원으로서 그 동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

- 그럼에도 북한측이 핵보유를 주장하는가 하면, 5MW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했다고 발표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켜 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음.
- 우리 민족 모두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지체없이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북한측에 촉구
 - 북한측은 조속히 6자회담에 호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 북한측이 제4차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측은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임.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북한측은 이번 회담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며 현 시기 남북관계의 동결상태를 해소하고 적극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언급
 - 우선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축전을 보다 의의있게 장식할 것을 제의하고
 - 아울러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마련한 것을 제안

(2) 제2차 전체회의 (5.19)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점 협의하여,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 합의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
-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21~24일, 서울에서 개최
-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5.21부터 북한측에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 제공

다. 성과 및 의의

남북차관급회담은 우리측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신뢰와 원칙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실을 거둔 것이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회담 체계를 복원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차원 높은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였다.

Ⅲ.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가. 개 요

남북차관급회담(5.16~19, 개성) 합의에 따라 6.15 통일대축전(평양)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6.15 통일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이 참가하게 된 것은 금번 5주년 기념행사가 처음이었다.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김응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가, 북한측에서는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은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당국대표단 규모, 일정 등 실무절차문제에 합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응희(통일부 회담운영부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과장) 안진용(통일부 과장)	정금철 김성혜

나. 진행경과

(1) 1차 접촉(5.24)

1차 실무접촉(5.24,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쌍방은 당국대표단 구성 및 규모, 체류일정, 방북경로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대표단은 70명 내외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대표단은 체류기간 민간행사 일정에 참여하며, 당국공동기념식 등 당국대표단에 걸맞는 별도 행사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행사준비 관계를 들어 대표단을 30명으로 하지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민간측 공동행사준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당국대표단들도 기본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당국차원의 별도 행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 우리측은 경의선 육로를 통한 방북과 귀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될 것라는 점을 강조하고 당국간 별도의 오만찬 및 참관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민간이 비행기로 오는데 이와 다른 이동경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오만찬 및 참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남북은 5.27 2차 접촉을 개최하여 당국대표단 규모, 별도 행사 등 쟁점사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조율키로 하고 제1차 접촉을 종료하였다.

(2) 2차 접촉(5.27)

쌍방은 1차 협의시 개진된 쌍방 입장을 기초로 준비해 온 합의서안을 서로 교환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진행하였다.

대표단 규모와 관련 북한측은 대표 20명으로 하되, 우리측 대표단에 대해선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더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명단을 빨리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70명내외 입장을 견지하면서 규모가 정해져야 명단을 건내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국간 별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북한측도 대체로 공감을 하였으나, 우리측이 제시한 공동기념식의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대축전 테두리내에서 당국간 별도의 공동상봉모임을 가지자고 주장하였다.

민간행사 참여와 관련 북한측은 모든 대축전행사에 당국대표단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족대행진 및 야회 참가 개막식·폐막식에서 당국대표단장 연설 등을 지속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행사일정안을 제시하면서, 민간행사에 대체로 참여하겠지만 민족대행진 및 야회에는 불참하며, 개막식, 폐막식에서의 연설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 밖에 쌍방은 별도 오·만찬 및 참관, 이동경로 등 기타 실무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일부 행사일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명일 3차 협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3) 3차 접촉(5.28)

남북은 그간의 협의를 토대로 3차 접촉을 진행, 남아있는 쟁점사안 타결에 주력하였다

오전회의에서 북한측이 개막식 당국대표단장 연설, 대행진 일부인원 참가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협의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오후회의에서 북한측이 우리측 입장을 수용, 협의가 도출되었다
쌍방은 협의내용을 담아 9개 항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 남측은 대표단에 지문단, 지원인원, 기지를 50명 더 포함
- 체류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별지 첨부와 같이 함.
 -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를 가짐.
-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왕래
-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자 취재활동, 기타 실무절차 문제 등

2. 「6.17 면담」

가. 개 요

6월 14일에서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6.15 통일대축전은 개·폐막식, 민족통일대회 등 민간행사와 함께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당국공동행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단독예방 등 당국간 별도행사도 진행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단장)을 비롯, 임동원 고문, 박병원 재정부차관 등 40명이, 북한측에서는 김기남 비서 단장, 임동옥 조평통 부위원장 등 대남분야 및 내각 주요인사 25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우리측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6월 17일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하였다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반 실질적 조치들에도 합의하였다.

남북관계가 10개월여만에 정상화되고,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에 놓여있는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6.17 면담」은 남북 상호 신뢰증진과 남북관계 도약 발판 마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있는 자리였다.

나. 주요 내용

①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

정동영 장관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신념과 철학,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노대통령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의 평화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감사의 뜻과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달을 요청하였다.

② 김정일 위원장, 우리측 대북지원에 사의 표명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에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대해 남쪽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전해주십시오”라고 언급하였다.

③ 북핵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대화를 통한 유익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6.11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

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6자회담의 조속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체제안전보장 관련, 북미간 양자 안전보장보다는 다자 안전보장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도 중요하지만 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대 제안’을 설명하였다. 북미간 신뢰와 관련, 부시대통령이 6.11 한미정상회담시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경칭(‘미스터 김정일’)으로 호칭,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졌음을 전하며, 최고 지도자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 협상에서 중요함도 설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6자회담을 포기·거부한 적도 없음을 밝히면서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7월중이라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으나, 미국과 좀 더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핵문제 해결시 NPT 복귀 IAEA의 철저한 사찰 수용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다자안전보장의 유효성에 대해 수긍하고 ‘중대 제안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도 피력하였다.

④ 김정일 위원장, 장거리 미사일 폐기 용의 표명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일반적으로 1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은 다 폐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합의

<8.15 남북공동행사에 북한측 당국대표단 파견>

정동영 장관은 금번 6.15 행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광복 60주년인 금년 8.15 행사에 북한측 당국대표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비중있는 인사를 북한측의 당국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임을 표명하면서, 6.15행사에 이어 8.15 행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및 수산당국회담 개최>

정동영 장관은 장성급군사회담을 재개하여, 서해상에서의 불안정한 평화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함께 어업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산당국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특히 서해상 평화정착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언급하고, 수산당국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 및 화상상봉 실시>

정동영 장관은 광복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1년여간 중단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을 8.15 계기에 실시할 것과 12 만명에 달하는 상봉대기 자중 매년 5천여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 정보화시대 등을 고

려, 화상상봉 방식을 제의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금강산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면서, 화상상봉과 관련 “매우 흥미있고 흥분이 되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8.15에 첫 화상상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언급하였다.

<남북간 철도 연결 문제>

정동영 장관은 남북간 철도 연결과 관련, 동해선 구간의 경우 우리측 일부 구간(강릉-고성)에 철도가 부설되어 있지 않으며, 동해선 해안선 철도 건설의 난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기존의 동해선 우선 연결 제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가. 개 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 서울) 합의에 따라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7월 22일과 8월 2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김용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가 북한측에서는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은 1차 실무접촉에서 당국대표단 규모, 체류기간, 이동경로 문제 등을 협의하고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로 2차 접촉을 진행, 행사 세부일정을 협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용희(통일부 회담운영부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과장) 김진홍(통일부 과장)	정금철 김성혜 * 2차 접촉시 김성혜 대표 불참

나. 진행경과

(1) 1차 접촉(7.22)

1차 실무접촉(7.22,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쌍방은 대표단 규모, 체류기간, 행사일정 왕래수단 등 당국대표단 파견에 따르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호 교환하였다.

먼저 대표단 규모와 관련 우리측은 6.15 통일대축전 행사 경우를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북한측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동의함에 따라 쌍방은 대표단 규모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하고, 단장은 6.15 행사시와 같은 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체류기간은 쌍방이 민간측 공동준비위원회에서 합의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행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민간행사의 주요행사에 참석하되 통일대행진 및 전야제 참석여부는 6.15 행사시와 상응하게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당국간 별도 행사로 국회의장 예방, 남북당국자간 면담, 남북당국공동기념행사, 오·만찬, 참관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모든 민간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대행진에 참가하고, 개막식에서 당국대표단 단장이 연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별도 행사와 관련 공동기념행사는 6.15 행사시와 같이 간단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당국자간 면담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우리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참

가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 북한측은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밖에 쌍방은 이동경로,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기타 실무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쌍방은 행사 세부일정 이외의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6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행사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합의문 요지 >

- 쌍방은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함.
- 체류기간은 2005년 8월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
-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짐.
- 왕래수단은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함.
-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름.

(2) 2차 접촉(8.2)

1차 접촉 합의에 따라 체류 세부일정에 대한 우리측안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일정협의를 위해 민간측의 일정이 확정된 후 당국자간 실무접촉을 추가로 가질 것을 제의하

였으며, 이에 따라 8월 2일 2차 접촉이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수정된 행사일정안을 재차 제시하면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일정안에는 북한측의 입장을 반영, 대행진 참가, 개막식시 당국대표단장 연설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일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하였으나 일부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남북당국자간 면담에 대해 체류기간중 만날 기회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별도 면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아울러 남북당국공동 기념행사의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측 구상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쌍방은 북한측 대표단의 도착 계획, 참관지, 숙소, 편의보장 등에 대한 세부 협의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행사일정 대해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가운데, 접촉 말미 쌍방은 협의결과를 반영한 각각의 세부일정 재수정안을 상호 교환하였다. 남북은 이를 토대로 추후 판문점 및 서울 현지 도착후 일정 협의 등을 통해 이견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IV. 남북장관급회담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5차 장관급회담이 남북차관급회담(05.5) 합의에 따라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개최 1주일여 전인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서 의의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동 행사기간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6.17)하여 북핵문제와 정치·경제·군사 및 인도적 분야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측은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6.17 면담」 시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제2의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구상을 가지고 임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용(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천식(통일부 국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김만길(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신병철(내각 참사)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6.22)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 이 세 가지를 추구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우리 민족문제임을 지적하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이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6.17 면담」 결과를 이행하는 문제를 중점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측 구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을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남북관계도 실용, 실리, 실적을 추구하는 3실주의 및 호혜주의와 실천 중시의 정신에 따라서 추진·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준비된 기조발언을 통해서 「6.17 면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기측 입장을 밝혔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 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측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8.15 민족공동행사에 북한측의 비중있는 당국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고,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한편 이번 회담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원탁회담 등 새로운 진행방식을 도입하였고, △회담내용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의제별 실천적 합의 도출에 주력함으로써 “실사구시”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회담문화의 변화는 양측의 일치된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기본 입장

- 6.15 공동선언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앞으로는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
- 오늘날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7월중에는 반드시 제4차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조

□ 세부협의사항

- ①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 7월중에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2004년 「6.4합의서」의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협의
- ② 수산협력회담 개최 : 공동어로 수역 설정, 제3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활동 근절, 양식단지 조성, 수산분야의 기술교류 등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수산협력회담 개최를 제의
- ③ 광복 60주년 행사에 북한측 당국대표단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 개최
- ④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화상상봉 실시 제의

□ 새로운 회담문화

- △장관급회담 정례화, △실사구시: 실용·실리·실적 「3實주의」, △호혜주의와 실천중시를 강조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6.15통일대축전은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년간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북남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의 승리를 확신하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한 뜻 깊은 회합이었음.
- 이번 회담을 북과 남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리 있는 대화마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실천적인 현안문제들에 대한 제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재확인하며 그를 북남관계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둘째, 북과 남이 조국광복 60돌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공동의 계기로 뜻깊게 기념해나가야 하는 바, 서울에서 진행하는 8.15민족공동행사에 비중 있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고 8.15를 계기

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금강산 상봉과 화상을 통한 상봉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셋째,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을 맞으며 이 조약의 비법성과 무효화를 북남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침략행위와 역사교과서 왜곡책동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데 대해서 지적함.
- 넷째, 북남 사이의 협력사업을 동포애와 인도주의,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북남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부상금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남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문제와 서해해상에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을 위해 수산협력분과를 내오고 수산회담을 여는 문제를 제기함.

(2) 제2차 전체회의(6.23)

회담기간 동안 수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상호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북한측 대표단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6.23)도 이루어졌다.

남북은 「6.17 면담」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12개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월중 개성에서 진행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8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10경 개성 개최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6. 제3차 장성군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협의·결정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제 6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9. 북한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측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 제10차회의에서 처리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 개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 ~16 백두산에서 개최 제7 차 장관급회담을 2월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다. 성과 및 의의

첫째, 제15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2004년 7월이후 정체되었던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제2의 6.15 시대」가 개막되었다. 남북 쌍방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임을 확인하였다. 확고한 북핵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을 높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정착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수산협력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

넷째, 이산가족문제 해결 진전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번에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8.26-)와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실시(8.15 계기)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화상상봉은 상봉인원의 증대, 재상봉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산

가족 상봉의 새로운 풍속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다섯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경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남북 경주위 제10차 회의 개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기 합의된 9개 경협 합의서 조속 발효 등 제도적 환경적 여건을 조속 마련에 합의하고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광복 60주년 기념 등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여, 당국과 민간이 공동 협력하는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을사 5조약 원천무효,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이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민족 동질감을 제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일곱째, 새로운 남북 회담문화를 창출하였다. 우리측은 6.15 공동선언 5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게 남북회담도 보다 건설적·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담문화 개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원탁으로 교체하고 회담을 실질협의 중심으로 진행하며 회담 결과 발표 방식을 공동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회담이 비난과 정치선전을 넘어 실질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5차 회담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남북관계도 8.15 공동행사의 성공적인 진행,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연락소 설치, 농업·수산업·경공업·광공업 등 남북경협이 확대·발전, 화상상봉 실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질적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우리측은 이러한 점을 감안,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등 장관급회담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천식(통일부 국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장) 신병철(내각 참사) 전중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9.14)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2 단계 4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고비를 넘어 반드시 공동문건을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난 「6.17 면담」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평가하고 4차 6자회담 2 단계회의에서도 이러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측의 송전제안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우리측의 입장과 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고, 4차 6자회담이 성과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군사당국자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당면한 인도적 과제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지난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기한 2천명의 인사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들 중에서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이 늦어지고, 북한측이 임남댐 물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조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항공분야 협력과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도 준비된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기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쌍방이 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서 평가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광복 60년 기념행사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6.15 통일대축전」 → 「제15차 장관급회담」 → 「8.15 민족대축전」 등을 통해 이룩된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 「제2의 6.15시대」가 개막된 지금, 「한반도 평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지적하면서
 -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음.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핵문제를 지

- 적, 이를 위해 남북이 소통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함을 강조
 -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 우리측이 송전방안을 제안한 것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지적하면서
 - 현재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공동문건을 채택해야 함을 강조
-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과제 제시
-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상주대표부 설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중, 우선 우리측이 제기하는 2천명의 인사들에 대한 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음 .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상호 이해제고와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들도 제기하였음.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항공분야 협력, △보건 의료분야 협력,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원 등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뜻깊은 올해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촉진하는 데서 쌍방 당국이 응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의 새로운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함 .
- 첫째로 북남 당국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 제의함 .
 - 둘째로 북과 남이 6.15시대에 배치되게 어느 일방이 외세와 함께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중지할 데 대하여 제의함 .
 - 셋째로 북과 남이 동족으로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통일적 발전에 저해로 되는 장벽들을 허물어버릴 데 대해서 제의함 .

- 북남 사이에 반세기 이상 존재하여온 오해와 불신이 뿌리깊은 조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는 어렵지만 가능하고 필수적인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우선 북남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것을 실현

(2) 제2차 전체회의(9.16)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회담 기간중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측 핵심관계자를 별도 면담(9.14) 하여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 일측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1.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낮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 실천
2.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
 -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3.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①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경추위 제 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
4.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회상 상봉 실시
 - ②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
5.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
6.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13~16 제주도에서 개최

다. 성과 및 의의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하였다. 전체회의시 기조발언 등을 통해 2단계 4차 6자회담 타결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을 위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북한측 핵심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이번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는 반드시 공동성명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핵문제를 베이징 회담을 통해 타결하고, 평화체제 협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가 심화되었다. 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와 군사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인식을 갖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셋째, 남북간 새로운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향이 설정되었다. 남북이 제2의 6.15 시대 등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협의·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계속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넷째,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진전과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및 올해 내 2차례의 화상상봉 실시에 합의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6차 적십자회담(8.23~25)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력 촉구하여 국군포로문제를 계속 협의 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 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광복 60주년, 6.15 5주년인 2005년도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천식(통일부 국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최영진(건설경제공업성 부상)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장) 신병철(내각 참사) 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4)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6.15공동선언 이후 5년간의 남북관계를 평

가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사업,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켰으며, 광복 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한 금년 한해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 등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군사분야회담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가면서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국면에서 발생한 난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산가족문제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가시적인 진전도 촉구하였다.

남북간에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리고 경의선·동해선철도의 조속한 이용, 개성역 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실천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기조발언을 통해서 6.15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해에 남북이 추진해야 할 자기측 구상을 밝혔다.

북한측은 금년 한해에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 공동기념행사와 「6.17 면담」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었다면서,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철폐, 서해 합대간 직통전화개설 등 남북 사이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실시,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개성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내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지, 상대방을 방문하고 있는 자기측 주민들에 대한 방문지 제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과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협력사업을 적극적

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상봉과 화상상봉을 실시 하자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상황·평가
 - 지난 5년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협력 사업과 이산가족 문제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목과 갈등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켜왔음을 평가
 - 특히 금년에는 「6.17 면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발전함으로써, 「제2의 6.15 시대」가 개막
 - 그러나 군사분야 회담 등 합의사항 일부가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
 - 평화와 경제협력은 균형적으로 진전될 때 상호 상생보완 작용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
 - ①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
 -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을 표명
 - ②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야 함을 강조
 - 지난 60년동안 깊어진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는 것은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과제를 지적
 - ③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갈 것을 제의
 - 3대 경협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야 함을 강조

-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 제의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빠른 시일내에 속개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제의
 -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를 재강조하고,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정례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및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
 - 이와 함께, 공동번영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제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통행·통관·통신 및 법제도 정비, △경의선·동해선 철도 이용,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이번 회담의 의의
 - 올해 북남관계 총화평가 및 새해를 설계하는 계기 마련
- 올해 북남관계 평가
 - 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뚜렷히 확증되고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
 - △6.15 및 8.15 계기, 민족통일대축전 개최, △「6.17 면담」을 통해 북남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단을 내림.
 - ②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
 - △군사당국 사이 여러차례의 실무대화 및 접촉 진행, △군사분계선 전역의 선전수단 철거, △서해함대사이 직통전화 개설
 - ③ 북남대화·협력·교류도 활성화
 - △3차례의 상급 및 2차례의 경추위 등 많은 대화·접촉 진행, △화상상봉 진행, △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실현, △개성시범관광 진행, △북관대접비 반환 및 안중근열사 유해발굴 협력

④ 그러나 올 상반기 북남관계의 단절과 침체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김 .

○ 새해에 해결해야 할 문제

① 정치 분야에서 체제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허물기 위한 결정적 조치 마련

-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당한 의사표시,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박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기측 인원들의 참관지 및 대상을 일체 제한하거나 문제시하지 말 것

②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

③ 북남경제협력사업을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것

④ 음력설 계기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3월말)과 화상상봉을 진행

(2) 제2차 전체회의(12.16)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핵문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 경협확대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 업종 규모 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 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 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 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28 ~31 평양에서 개최

다. 성과 및 의의

첫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6.15 공동선언에 부합되게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등 ‘제2의 6.15 시대’를 개막하였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개시되었다.

새해들어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측은 핵이외의 다른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과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의 조속 속개를 위해 북한측을 적극 설득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넷째,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인도적 고통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측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함께 남북자·국 군포로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선적으로 이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추진을 설득하여,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지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다섯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키로 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남북 경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체육·역사 등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태권도 단체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체육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편, 북관대첩비 복측 인도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최근 역사문제에서의 남북간 협력의 흐름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V. 남북 군사분야 회담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가. 개 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 ~24)에서 합의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대표회담이 7월 20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2004년 6월 4일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완전한 이행문제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일정 및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 (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진영(국방부 대령) 엄현성(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회담에서 쌍방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04.6.3 ~4, 설악산)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선전수단제거가 합의된 2004년 8월 15일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쌍방이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2단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된 것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2005년 7월 25일부터 재개하여 8월 13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에 대해 북한측은 8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8월 10일 오전 9시에 통신선로를 연결하여 10시에 시험통화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우리 측이 수용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백두산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 일정은 삼지연 일대의 도로공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3단계 선전수단 제거결과 확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실무대표회담을 8월 12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가. 개 요

7월 20일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2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이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3차 실무대표회담('05.7.20, 평화의 집) 합의에 따라 이행된 3단계 선전수단 제거결과를 확인하고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 (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진영(국방부 대령) 엄현성(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엄장남(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상대측을 향한 3단계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제4차 실무대표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서로 상대측 지역에서 이행된 3단

계 선전수단 제거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6.4, 설악산)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하기로 합의한 이후, 3단계에 걸친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선전수단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기로 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음을 언급함에 따라, 쌍방은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차후 회담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VI. 남북 경제분야 회담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가. 개요

당초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북한측의 회담중단으로 일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다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등 12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채택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서명·교환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심호진(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진 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7.10)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은 평화를 바탕으로 한 번영에 목표를 두고,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철도시험은행, 도로개통식 △수산협력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후속조치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시행 △경제시찰단 상호방문과 경제연구소간 교류 △과학기술협력 △남북간 직선항공로(서울~평양) 이용 문제를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북남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북과 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제품생산용 원자재 제공 및 아연·마그네사이트·린정광·석탄 부분의 협력 문제 △수산부문 협력 문제 △개성공업지구건설 및 철도연결공사 △쌀제공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문제를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때,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남북간 경제협력에 평화를 바탕으로 한 번영을 위해 「경추위」에 주어진 임무는 막중함. 경제협력 사업들의 일정을 재점검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첫째,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 2003년 11월 경추위 제7차 회의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를 7월중 준비기간을 거쳐 8월중 개성공단내에 개소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남북 공동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할 것을 제의함.
 - 앞으로 이 사무소를 남북 경협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둘째, 도로 개통식과 철도 시험운행
 - 광복 60주년인 8월 15일을 계기로 도로개통식으로 개최하고, 빠른 시일내에 철도 시험운행을 남북이 함께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제11차 철도·도로 실무접촉을 8월에 개최, △남북 도로운영 공동위원회 구성 △차량운행 부속합의서 채택 등을 협의
 -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함.
- 셋째, 수산협력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평화정착에 최우선 목표를 두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할 것임.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25~27까지 개최, △서해상 제3국어선 위법조업 방지 △서해지역 양식단지 조성 △수산양식 기술교류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을 기대함.

- 넷째,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후속조치
 -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인 경협 관련 합의서가 조속히 발효되어야 할 것임.
 - 제2차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을 9월중 개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문제 △산업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의함.

- 다섯째, 개성공단 사업
 -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매우 중요함.
 - △「초청장」 방식에서 「출입증」 체제로의 전환 △수시 차량 운행 등 관련 절차를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며 △노동력 알선기관 설치 △임금 직접지불의 조속한 시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성공단 실무접촉을 8월중 개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당국차원에서 협의, 해결할 것을 제의함.

- 여섯째,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 8월중에는 공동조사에 착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독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를 7월중에 상호 교환해야 할 것임.
 -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8월에 개최, 공동조사 일정과 홍수예보 체계 구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일곱번째,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시행
 - 원산지 확인 세부기준 마련과 청산결제의 대상품목 확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들은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면 될 것임.

- 여덟번째,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과 경제연구소간 교류
 - 우선 우리측 경제시찰단이 북한측지역을 9월중 방문하고, 귀측 실무 경제시찰단이 10월중 우리측을 방문하기를 기대함.
 - 또한 남북 경제 연구소간 상호 방문과 교류도 추진하고, 공동 학술 세미나 등도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아홉번째, 남북과학기술협력
 -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인 심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출기세포 공동 연구 △자생식물과 해양자원 분야 공동조사·연구 △S/W 공동개발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을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9월중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함.
- 남북간 직선항공로(서울~평양) 이용
 - 서울과 평양간 하늘길을 서해를 경유하여 먼 길로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ㄷ”자 형태의 직항로를 “1”자 형태의 직항로로 이용하여 서울과 평양을 보다 쉽고,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북남경제협력사업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동원 리용하면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더 큰 힘을 키워나가는 민족공동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야 함.
- 첫째,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북과 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자는 것임.
 - 북과 남이 서로 필요한 원료들을 공급해주고 생산능력을 높여 나간다면 경험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봄.
 -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경공업제품 생산용 원료, 자재를 5년간 학생의 교복이나 근로자들의 작업복, 신발, 비누 등 경공업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도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의함.
 - 남측이 제공하는 물자들에 대해 능력이 조성되는 데 따라 남측이 요구하는 물자들을 내보내려고 함. 남측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전기아연, 마그네사이트, 린정광 같은 것을 보내줄 수도 있음.

- 수산부문에서의 협력사업
 - 서해에서의 어장들을 공동 이용하고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우선 서해에서부터 공동어로사업, 양식사업, 현대적인 수산물 가공공장 공동투자 건설 문제 등을 협력하기를 바람.
- 개성공업지구건설과 북남철도연결공사
 - 이미 계획된 5만평 구역을 조성하고, 2007년까지는 1단계 100만평 구역을 완공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 역사건설과 신호통신시설 사업 등 진행중에 있는 공사를 빨리 끝마치고 올해안으로 시범운행을 진행할 것을 제의함.
 - 북남철도도로분과 제5차 회의를 곧 열어 실무적 문제 협의를 제의함.
- 넷째, 쌀제공 및 해운협력실무접촉 문제
 - 관례대로 쌀차관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중 개최하여 뱃길을 열어나가자는 것을 제의함.
- 다섯째,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경추위 본회담에서는 방향만 그어주고 분과회의들에서 필요할 때마다 제기된 문제들을 즉시즉시 협의 대책해 나갔으면 함.

(2) 위원장 접촉(3회) 및 위원 접촉(5회) : 7.10~7.12

양측은 위원장접촉과 위원접촉을 통해 쌍방이 제시한 협의의제에 대해 충분히 토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견을 좁혀나갔다.

특히 북한측이 새로운 경제협력방식으로 제기한 경공업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신발생산자재 6천만켤레, 화학섬유 3만톤, 종려유 2만톤을 요구하는 한편 남측에게는 아연, 마그네사이트와 그 가공품 린회석, 석탄 생산부문의 투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이 제시한 협의의제에 대해 우리측은 그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험사업을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우리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주고 북한측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우리측에 보장해주는 ‘상호보완적 협력 구도를 제시하여 합의문에 반영하였고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 모두 중요한 협의 의제로 제기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수산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9월중 개성에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경추위」 산하에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중 제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합의 사항인 철도·도로 연결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경제시찰단 방문 문제 9개 경험 관련 합의서 발효 문제 등도 관련 세부일정 등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새로운 협력사업인 과학기술협력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한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8·15 계기로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쌀 지원 문제는 북한측의 식량난을 감안하고,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종결회의(7.12)

남과 북은 전체회의와 위원장접촉, 위원접촉 결과를 토대로 12개항으로 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공식 회담일정을 종료하였다.

<합의문 요지>

1.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측은 '06년부터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 북한측은 이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검토
 - 이와 관련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2.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9월초부터 구성, 개성공단으로 파견하여 실무적 문제처리
3.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4.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이와 관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25~27 개성에서 진행
- 5.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 진행
 -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실시
 - 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7.28~30 개성에서 개최
- 6. 북한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8~10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
- 7. 빠른 시일내 임진강 수해방지 단독조사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한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경제협력의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를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까지 발효
- 9. 남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교환
- 10.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11.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28~10.1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
 -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함.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가. 개 요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이 9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 만큼 동 사무소 개소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월 하순경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하여 회의 개최 일정이 조정되었다.

또한 북한측은 10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회의에 앞서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토의의제 협의를 위한 위원급 준비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제11차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새로운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사전 토의의제와 위원급 준비접촉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10월 17일 제11차 회의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2차례의 위원급 준비접촉(1차 : 10.20~21, 2차 : 10.25~26, 개성 자남산 여관)을 거쳐, 10월 28일 개성공단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한 2차례의 위원급 준비접촉은 기존의 회담운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교환한 토의의제를 중심으로 자기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위원급 준비접촉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

지하게 협의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① 위원급 준비접촉

구분	우리측	북한측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② 본회의

구분	우리측	북한측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신동식(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준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서기장) 주동찬(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나. 진행경과

(1) 토의의제 사전 교환(10.17)

쌍방은 합의한 대로 10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경추위」 제11차 회의

에서 토의할 의제를 문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철도·도로 등 기 합의 협력사업 이행문제 △협의되었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위원회 및 실무접촉 개최문제 등 총 17개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경공업 협력 △지하자원 투자문제 등 총 4개의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2)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10.20 ~21)

우리측은 준비접촉을 통해 10월 17일 북한측에 전달한 토의의제에 대한 취지, 이행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철도시험운행·도로개통식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개발사업(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추위」 산하 실무접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등 기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으로 실천만 하면 되는 문제로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관련 규모와 유무상통에 입각한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북한측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쌍방은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좀더 진전된 입장을 가지

고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2차 위원급 접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을 종료하였다.

(3)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10.25 ~26)

우리측은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표명한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제2차 준비접촉에 임하였다. 특히 북한측이 지원을 거듭 요청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관련 제공 가능 규모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남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상환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형태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는 우선 관련 정보 파악과 전문가 및 기업인이 현장을 실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철도·도로연결 사업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건설 사업 등은 군사적 보장조치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도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과 마찬가지로 우선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를 확정짓고 나머지 사안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경추위」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군사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2차례에 걸친 위원급 준비접촉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11차 회의는 합의문 보다는 향후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자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10.28)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2층 회담장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1차 회의 본회의는 위원장 접촉을 먼저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차례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위원장 접촉을 통해 2차례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경협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건설(「통행·통관 절차간소화」 등) 등 사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상호 보완적 협력이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르는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시시키

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현대-아태 문제에 대해 남북 사업자간 합의가 준수되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당국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입장을 경청하는 한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문제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현안 위주로 필요하다면 위원장 접촉 또는 위원급 접촉 등을 개최하자고 하였다.

쌍방은 위원장 접촉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요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차례 합의한 바 있는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 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와 산하 실무접촉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개 성

3.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가. 개 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출퇴근 방식으로 개최 되었으며, 회의 기간중 전체회의 2 회를 비롯, 위원장 접촉(2회) 및 위원접촉(4회) 등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당국 차원의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 되었으며, 특히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논의의 장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금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방적·단순구호성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적 농업기반 조성단계로 본격 돌입하는 계기는 물론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쌍방은 당국간 농업협력의 추진방향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이명수(농림부 차관)	문응조(농업성 부상)
위 원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장태평(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정광수(산림청 산림지원국장) 김성대(국무총리실 심의관)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류상봉(농업과학원 부원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8.18)

쌍방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에 대한 각각 기본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남북 당국간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동영농단지 조성, 산림녹화 협력사업, 농업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남북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의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번 회담이 농업분야에서 당국간 처음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우선 농업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내용부터 협

의·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자 생산·가공·보관시설 현대화 및 육묘 공업화, 비료·농약·농기계 등 물자 및 시설 제공, 축산·과수·잠엽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 남북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
- 첫째, 남북공동 영농단지 조성·운영 방안
 - 북한측 지역의 각 도별 1개 정도의 협동농장을 선정, 총 10개의 협동농장을 공동영농단지로 조성·운영할 것을 제의
- 둘째, 산림복구 시범사업
 - 시범사업으로 평양부근 20ha 규모의 2개소 양묘장 조성과 방제가 시급하고 가시적 효과가 큰 금강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제시
- 셋째, 농업전문인력·기술 교류 및 다수확품종 공동연구
 - 남북농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농업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실시 강조
- 넷째,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추진계획 공동수립
 -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며 추진하기 쉬운 협력사업 분야를 검토·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남북이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제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남과 북이 그동안 마련하여 놓은 기술과 경험 농업 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들을 이용하여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첫째, 종자생산 및 가공, 보관시설의 현대화와 모기르기 공업화 등 당면한 영농사업에서 호상 협력
 - 감자, 벼, 강냉이, 콩 등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시설 현대화 추진
- 둘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알곡생산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영농물자와 설비생산 제공분야에서 협력
- 셋째, 축산, 과수, 남새, 잠업, 공예 등 농업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
- 넷째,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
 - 우량한 유전자원 교류와 재배기술 분야,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관리체계 형성 등에서 호상 협력

(2) 위원장 접촉(2회) 및 위원접촉(4회)

제1차 전체회의 후 쌍방은 위원장 접촉 2회와 위원접촉 4회 등 총 여섯 차례의 접촉을 갖고 쌍방 입장에 대한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서 타결을 시도하였다.

특히 우리측이 남북공동 협력사업으로 제기한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운영 방안이 양측간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북한측은 동 시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운영의 목적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데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 영농단지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적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내부적으로 토지정리, 관개용수 확보, 협동농장 등 토대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만큼 북한측 입장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방향에서 남북간 협력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측에서 농기계 몇 대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기자재 생산·보장” 조항은 향후 남북 농업협력위원회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로서 합의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 사안은 남북공동영농단지 속에 포함시켜 검토할 수는 있으나, 북한측이 요구하는 “생산”이라는 조항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쌍방간 이견으로 합의서 작성에 난항이 거듭된 가운데 우리측은 북한측이 독립 조항으로 요구한 “현대적인 종자 정선시설”을 별도 조항으로 독립시키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북한측 요구로 명칭 변경을 반드시 북한측이 수용할 것과 “우리측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육묘시설과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기자재 생산 및 보장 문제는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조항 속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우리측 입장을 밝히고 북한측이 이를 수용함

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밖에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기술인력 교류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등도 심도있게 논의 되었으며, 쌍방간 큰 이견이 없어 비교적 쉽게 합의를 이루었다.

(3) 종결회의(8.19)

이들간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종자생산,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축산, 과수, 채소, 잠엽 특용작물 등의 분야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합의문 요지〉

1.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 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
 - 이를 위해 북한측은 남측 전문가와 기술자의 필요한 시기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
2.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
3.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IPM)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
4.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5.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
 - 북한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구체적인 장소는 향후 결정
6. 상기 명시된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 개최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확정하기로 함.

4.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남북쌍방은 전체회의(1회), 수석대표접촉(5회), 종결회의(1회) 등 총 7회차례의 접촉을 갖고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어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이루기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제3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문제,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였다.

사흘간의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상에서의 공동어로 수역설정,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 문제,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포함한 6개항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심호진(해수부 어업자원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대 표	이재호(통일부 회담2차장) 박규호(해수부 어업교섭과장)	정용호(수산성 국장) 김명찬(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7.25)

양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공동어로 수역 설정, 수산물가공·유통분야 협력문제 등을 공통의제로 제기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측은 서해상에서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 방지를 통한 평화정착과 무차별적 남획 금지를 통한 우리측 어민들의 이익보호, 서해 북한측 수역에서의 양식단지 조성, 남북 왕래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공동조사와 우량품종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고기배와 어구, 자재, 연유보장과 생산물처리를 지원해 줄 것과, 남북이 공동으로 3국어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서로 협력할 것을 추가로 제의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과 무차별적 남획 방지하고 남북 당국간 수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서해상에서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을 방지하고 제3국 어선이 북한측 지역에 입어하는 것을 제한해 나갈 것을 제의함.
 - 북한측 지역에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귀측 지역에 수산물 저장·가공·유통시설 시범지원단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면 규모와 범위를 점차 늘려 갈 것임.

-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공동조사와 우량 품종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해야 함.
-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조업할 수 있도록 서해상에 일정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함.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북한측은 서해 연평도부근어장을 남측에 제공하여 고기잡이를 보장해주며 남측은 어장리용과 관련한 보상을 해야 함.
 - 공동어로수역에서 물고기잡이는 어종별 어로금지시기를 제외하고 년중으로 함.
 - 공동수역에서 쌍방 고기배수와 어구리용은 제한하지 않음.
 - 남측은 어장리용에 대한 보상을 입어로 지불형식으로 하며 입어료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함.
 - 공동어로수역과 공동어로 시작시기는 북남군사당국사이에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함.
- 수산물가공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며 이를 위해 남측이 우리측의 동·서해지역에 각각 1개 이상의 수산물가공공장을 제공할 것을 제의함.
- 수산협력에 필요한 고기배와 어구, 자재, 연유보장과 생산물처리 3국 어장 진출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제의함.

(2) 수석대표접촉(5회)

쌍방은 수석대표접촉을 5차례 진행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과 불법어로 활동방지에 대한 문제 등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2차 수석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공동어로수역은 군사당국간에 합의

가 될 것이며 대상어장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합의서에 구체적 인 어장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군사당국회담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기본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구체적 어장의 명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어로 활동방지에 대해서 우리측은 이번 수산회담에서 최대의 당면과제는 서해평화정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 방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남측은 남측대로, 북한측은 북한측대로 자기쪽에서 방지하면 되고, 그 틈새인 공동어로 구역에서만 차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제기한 수산기술협력, 연구소간 기술교류, 수산자원 공동조사, 우량품종 공동연구 등은 남북이 우량품종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소간에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접근하였다.

3,4차 수석대표접촉에서 양측은 서해상의 공동어로 설정과 불법어로 활동방지 등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쌍방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논의하였다.

양식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 및 남북 어민들의 기대감 증대 등을 위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합의서 명시 필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차기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량품종의 개발,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진출 협력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었다.

5차 수석대표접촉에서 쌍방은 서해상의 공동어로 수역설정은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법어로 활동방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3) 종결회의(7.27)

남북은 5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토대로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6개항의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 ①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 ②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로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쌍방은 전체회의(6회), 수석대표접촉(3회), 자재장비 및 문안정리의 부문별 접촉(4회) 등 총 13차례의 접촉을 갖고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올해 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 위해 8월중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실시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남북 공동행사로 동시에 개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구자명(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표	최영준(통일부 남북경협2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남북경제팀장)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7.28)

우리측은 첫 발언을 통해 2000년 7월부터 추진된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가 금년안으로 개통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합의한 대로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이 실시되어야 하고, 철도·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철도연결공사에 추가되는 자재장비와 역주변정리 및 인입도로 포장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협의하여 확정하자고 제의하는 한편, 경의선·동해선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설과 철길 안전그물망 설치를 요구하고, 철도연결구간의 북한측 구역 철도전철화공사대상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8월중 공동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우선 공동 점검 인원을 각각 10~11명으로 구성하여 경의선은 8.16(화)부터 20(토)까지 문산역-캐성역 구간을, 동해선은 8.23(화)부터 26(금)까지 송현라-금강산역 구간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
- 10차 경추위에서 금년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해야 하겠음.
 - 우선 우리측은 경의선·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10.

18(화) 동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상호 연락을 위해 「남북차량운행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 이와 함께 철도·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 현재의 군사적보장 관련 잠정합의서를 항구적 형태의 군사적보장합의서로 대체하고 차량운행 가능시간을 연장하는 등 남북철도도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철도·도로를 통한 남북간 인원과 물자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놓고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동·서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미진된 공사를 협의 확정하며 그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대책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역구내 형성안에 따르는 역 주변정리와 인입도로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제공, 동·서해선 철도 종업원들의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제공 문제, 개성역 구내 자동화 공사를 위한 배수로 공사 문제 동·서해선 철도 안전그물망 설치와 도로 가로등 전원보장에 필요한 설비, 자재제공 문제, 열차시범 운영을 위한 북남사이의 통신망 구성문제 등임.
- 북남철도 연결구간 북한측 지역 철도전철화공사 대상을 협의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와 설계를 위한 공동답사 문제에 대해 토론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철도 운영건축물 건축공사 및 신호, 통신 전력계통공사와 관련한 기술 봉사 조직과 방법문제와 동·서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절차와 방법문제에 대해 토론해 나갈 것을 제안함.

(2) 제2차 전체회의(7.28)

쌍방은 상호 교환한 합의서를 토대로 합의서 문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쌍방 합의서의 공통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및 열차시험운행의 일정, 방법과 연결구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통신망 주파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실무협의를 성격을 벗어나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여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과 결부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일정 협의는 대표접촉에서 하도록 하고, 먼저 제1차 전체회의시 제의한 추가 자재제공, 철도종업원살림집 및 역사 부대시설·설비, 자재제공, 북한측 지역 철도연결구간의 전철화 공사 등에 대해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제3차 전체회의(7.29)

북한측은 1일차 회의에 이어 북한측 지역 철도연결구간의 전철화,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설이 철도도로 개통을 위한 ‘근본문제’라고 하며 이러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0차 경추위 합의사항을 이행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철도전철화 문제는 이미 2003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제외하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이번 실무협의의 성격에 맞게 공사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과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에 대해 협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4) 제4차 전체회의(7.29)

우리측은 북한측 지역 철도연결구간전철화 문제는 이미 전철화가 되지 않아도 철도를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북한측도 충분히 인식하였고, 또한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설, 철도연변 가설올타리 역 인입도로 포장 등은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만, 철도연결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 자재, 장비 제공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일정 및 방법,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연내 철도 개통식 등 제10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사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실질적으로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전철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철도종업원살림집 역시 철도운영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또한 이러한 내용은 「경추위 제10차 회의」 합의서에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설치 작업 등”의 문구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제5차 전체회의(7.30)

우리측은 철도전철화 및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축 문제는 수석대표 접촉에서 협의하고, 나머지 합의서 문안은 상호 교환한 합의서 수정안을 토대로 자재장비 부문, 문안정리 부문으로 나누어 대표접촉에서 협의하고자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이에 대해 철도전철화 문제는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부문별 접촉을 갖고 협의하기로 동의하였다.

(6) 제1~2차 자재장비 부문 대표접촉(7.30)

북한측은 자재 요구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며 우리측이 불가입장을 밝힌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설, 인입도로 및 역사광장 포장관련 자재, 철도연변 가설울타리 등을 포함하고 또한 역사 옹벽공사, 역 육교공사 등에 대한 자재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불가입장을 재차 확인시키고 추가제공은 열차운행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제1차 전체회의시 북한측이 요구한 철도전철화 관련 자재와 철도종업원살림집 관련 자재·설비의 8개 품목, 철도연결공사 관련

자재·설비의 19개 품목에 대해 철도연결공사와 관련이 있는 12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수량을 조정하여 지원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철도전철화 및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축자재를 포함시켜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우리측 제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수석대표접촉으로 미루었다.

(7) 제1~2차 문안정리 대표접촉(7.30)

우리측은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일정을 먼저 경의선, 후에 동해선 순으로 각기 3일로 하고, 공동점검시 도보 및 궤도검측차 운행 병행,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10월 중 날짜를 구체화할 것 철도·도로운영공동위원회 설치, 철도연결구간내 공용주파수 선정, 「제1차 남북철도·도로실무접촉 개최」 일정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먼저 동해선, 후에 경의선 순으로 각기 2일로 하고, 공동점검시 모터카만으로 할 것 합의서에 연결구간내 공용주파수 문제는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등 다소 입장을 달리하며 전체적인 문안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합의서의 전체적인 문안정리를 수석대표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8) 제1~3차 수석대표 접촉(7.29~30)

우리측은 철도전철화와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축을 위한 자재, 장비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철도전철화와 철도종업원살림집 건축은 모두 남북철도연결공사의 '근본문제'라고 되풀이 하였다.

자재장비 부문별 접촉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품목과 수량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우리측 제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철도전철화 문제에 대해 '남측이 합의서에 포함하기 곤란하다면 향후 협의하겠다는 의사표시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안정리 부문별 접촉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제시안인 공동점검을 먼저 경의선, 후에 동해선 순으로 각기 3일간 실시하지는 안을 수용하는 한편, 공동점검시 궤도검측차 운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열차시험운행에 대해서는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10월경 실시하기로 한 것을 우리측의 제시안대로 보다 구체화하여 10월 하순경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북한측이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라는 문구를 단서로 넣을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이 제의한 연결구간내에서 사용할 통신망 공용주파수 선정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요구한대로 합의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기술 지원에 대한 편의보장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수석대표접촉에서 부문별 접촉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토

대로 주요쟁점에 대해 상호 절충하여 협의하고, 이를 합의서에 반영함으로써 합의서와 부록이 확정되게 되었다.

(9) 종결회의(7.30)

남과 북은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 하순경 열차 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 등 총 6개항에 이르는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 회담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하며, 남측은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을 제공
-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경의선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에 따름
-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은 계속 협의
-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
-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 필요한 시기마다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가지며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부록 요지(공사상태에 대한 공동점검 절차와 방법)>

- 공사상태에 대한 공동점검
 - 경의선(개성역-문산역 구간) : 8.18~20
 - 동해선(금강산역-저진역 구간) : 8.23~25
- 공사구간에 대한 철길부설상태와 일반 구조물 및 교량 운영건축물 신호통신, 전력부문 공사진행 상태를 공동 점검
- 공동점검 인원은 남북철도 및 도로실무협의회 수석대표를 책임자로 각각 10~15명으로 하고, 공동점검 실시 결과를 상호 교환
 - 점검결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열차시행 운행 전까지 각측이 보완하고
 궤도부분에 대한 기술점검(궤도검측차 운행 등)은 공동으로 실시
- 공사구간 공동점검시 운송수단은 쌍방이 각기 자기측 지역내에 모터카를 이용하도록 하고, 공동점검에 필요한 휴대용 검측장비 및 기자재는 각측이 준비

6.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가. 개 요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이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 서울)에서 “북한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고 이후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05.7.9~12, 서울)에서 “북한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04.6.3~5, 평양)에서 2004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으나, 북한측이 2004년 7월 9일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음에 따라 접촉이 연기되었던 것이다.

쌍방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제주해협 통과를 위한 해상항로대 추가,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 등 6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으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타결짓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균(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윤미량(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한명철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8.9 오전)

남과 북은 기조발언문과 공동보도문(안)을 중심으로 상호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통신문제와 관련해서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을 8월 25일까지 연결하여 8월 29일부터 운용하고 북한측 항만에서의 장거리 직접통신도 8월 29일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를 신청·허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8월 11일에 연결하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장거리 직접통신은 북한측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 설정을 위한 해운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제주해협 통과는 이미 제15차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0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수정·보충합의서 없이 항로대를 설정하는 문제만 실

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1~3차 수석대표접촉 및 제1~3차 대표접촉(8.9 오후~ 8.10 오후)

쌍방은 전체회의 이후 각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통해 장거리 직접통신 보장,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제주해협통과 항로대 설정 및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 서로 입장을 주고 받으며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리측은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을 거듭 촉구하였고 북한측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믿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북한측의 주장을 우리측이 수용하여 8월 15일경 제주해협 통과가 가능하도록 8월 11일 연결 12일부터 운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는 해당 수역이 우리 해역인 만큼 우리측 안으로 설정하여 이를 반영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남과 북은 몇 차례의 공동보도문(안)을 교환

하며 논의를 거듭한 끝에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최종 공동보도문을 도출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8.10 오후)

남북은 전체회의에서 북한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제주해협통과 관련 항로대 설정을 위한 부속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고, 쌍방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서명 절차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05.8.1)에 따른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남북해운협력협의회」라 명명하고 제1차 회의 개최 일자는 추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 공동보도문 요지 > —

- 북한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 부터 개시
 -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
-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15부터 개시
-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연결
 -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11 연결, 8.12부터 운용 개시
- 정박중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도록 노력
-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교환 실시
 - 문서교환 방식
-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명명
 -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7.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가. 개 요

2005년 8월 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제13조) 및 부속합의서(제6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05.8.8~10, 문산)에서 이 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정하고 그 1차 회의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5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은 9월 12일 통지문을 통해 제1차 회의를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여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전인 9월 7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안을 문서교환방식으로 체결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측은 이를 1차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내부적으로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10월 중에 개최하자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통지문을 주고 받으며 최종적으로 9월 29일부터 30일간 개성 개최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

남과 북은 남북해운협력협의회라는 새로운 명칭하에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남북해운항만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남북 해난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남북은 유선통신망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 원

직적 합의를 이루었으나, 장거리 직접통신의 보장 등 몇가지 문제는 제 2차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균(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윤미량(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윤판용(해양경찰청 과장)	한명철 정금철 최일선 허영준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9.29 오전)

남과 북은 쌍방 기조발언문을 통해 회의 의제 및 의제 관련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의를 시작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북한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그 동안 남북해운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이 출범한 남북해운협력협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남북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논의하였고 대표접촉 등을 통해 지구 수정 등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해운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해운항만관계자 상

호 교환 방문 및 남북해난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Hot-line) 구축을 제의하였고, 북한측 항만에서 장거리 직접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0월 31일부터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한측은 최근 남측 선박이 북한측 해역에서 호출시 응답의무를 어기는 등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말미에 준비된 합의서(안), 공동보도문(안) 등을 서로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검토한 후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오전 전체회의를 종료하였다.

(2) 제1~2차 수석대표접촉 및 제1~3차 대표접촉(9.29 오후~9.30 오후)

남북은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3차례의 대표접촉을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측은 전체회의에 이어 해운항만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해난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의 새로운 의제와 함께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북한측은 새로운 의제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며 계속 논의해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 항만에서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을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측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금년중 보장을 약속한 만큼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이 제기한 합의서 이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측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적절한 합의서 위반 사례가 있을시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9.30 저녁)

남북은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남북해운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명·발효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8.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가. 개 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2005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1회), 단장접촉(3회), 신발부문 토의(3회) 섬유부문 토의(3회), 비누부문 토의(3회), 지하자원개발(2회) 등 총 15차례의 접촉 갖고 경공업 생산공장 5곳을 방문 하였다.

이번 제1차 협의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원자재 품목, 용도, 규격, 생산공장의 공정 설비,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는 문제와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지하자원개발 협력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의 채택 없이 회의를 종료 하였다.

그러나 금번 회담은 남북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유무상통과 상생의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사업으로써 그 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험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하여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남북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단장		김영탁(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대 표	경공업	문대근(통일부 과장) 김경종(산자부 무역정책과장) 박규식(통일부 과장)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한명철(민화협 부원) 리광후(신발연합소 사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지하 자원	이재호(통일부 과장) 윤상흠(산자부 자원협력팀장)	진철(국가계획위 국장)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나. 주요쟁점 사항 협의 경과

< 경공업 원자재 제공문제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2006년부터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만, 구체적 품목·수량은 북한측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이번 실무협의를 현장실사를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안)를 제시하면서 원자재 품목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과 남북 당국의 쌍방 회사간 계약체결 보장, 해로수송(남포, 홍남) 등을 주장하였다.

< 부문별 토의 및 참관 내용 >

신발부문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신발 종류, 신

발원자재 품목, 용도와 규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측의 신발생산공장 방문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협의단에게 류원신발공장, 평양구두공장 두 곳을 안내해주었고 우리측 협의단은 신발 생산공장의 공정, 사용설비, 사용원자재, 생산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북한측은 신발의 품질보다는 우선 수량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섬유부문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섬유 원자재 품목 규격 및 명칭 등을 확인하면서 섬유공장에 대한 관련 실태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섬유공장의 전체 생산능력에 대한 자료만을 구두로 제시하였다. 우리측 협의단은 평양방직공장을 방문하여 섬유공장의 방직 설비, 완제품 견본실 등을 둘러보면서 북한측의 생산가능능력 등을 타진해 보았다.

비누부문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평양비누공장을 방문하여 세수비누 생산공정을 둘러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협의단은 비누 원자재 품목의 용도와 규격을 확인하였고 연간 비누 생산량과 원자재 재고 등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현재 원자재가 부족하여 적정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자재 제공시 남포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의 광산 현장 실사를 보장하여 줄 것과 광산 관련 자료를 우리측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차 실무협의시 참관지로 북한측 광산 2곳을 우리측에게 보장하고, 우리측이 요청한 광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가.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통하여 남북은 「경추위」 제10차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개설을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측은 11월 1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하순경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하고자 제의 하였다.

우리측은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정신에 따라 북한측 제의에 수용하는 한편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를 구체적인 협의의제로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앞서 진행된 「경추위」 위원급 준비접촉과 같이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회담운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 관련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1차 회의 연장선상에서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 철도시험운행· 도로개통식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개발사업(통행·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이행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측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실무접촉의 최우선 협의과제는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문제라며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도· 도로 등 기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으로 전제조건(군사적 보장조치)만 충족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실무접촉 기간 내내 남북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강조하는 한편 북한측이

요청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규모문제와 협력방식은 제1차 회의 위원급 준비접촉과 위원장 접촉을 통해 제시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방북 초청장 △원산지 확인서 등은 기본적으로는 同 사무소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추위」와 경제분야 실무회담은 가급적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지원과 당국간 경제분야 회담 장소 제공 등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대응하였다.

쌍방은 이틀간 당국간 경제협력관련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이번 실무접촉에서 확인된 입장을 바탕으로 연구·검토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VII.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

가. 개 요

2005년 3월 15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최근 북한측 언론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보도가 몇 차례 있었던 점에 유의하면서 지난해(2004년) 가금육 반입 위생조건 제정시 쌍방 관계 당국이 양해한 점에 기초하여 북한측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및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동년 3월 17일 전화 통지문을 통해 북한측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사실을 일체 부정하고, 우리측이 북한측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의혹을 가지거나 다른 억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평양시 하당 닭 공장을 비롯한 2~3개 닭 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북한측 전 지역으로 확산 될 조짐이 있어, 우리측은 2005년 3월 29일 북한측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이 북한측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약품·장비·기술인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4월 8일 국가수의방역위원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측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사실을 시인하고 우리측에

조류인플루엔자 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우리측은 4월 9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협의 없이도 제공 가능한 방역약품 및 장비는 긴급 제공할 수 있으나, 격리실험실, 바이러스 유전자 장비세트 등은 기술협의 후 전달 할 수 있음을 통보하자, 북한측이 4월 11 일자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관련 실무협의 개최를 요구해 옴에 따라 쌍방은 2005년 4월 22 일 북한측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제공품목 규모, 정확한 발생상황 정보요청, 방역전문가 현장 방문, 장비 기술지원 전달경로 및 절차 등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북한측 요구 품목 중 방역 장비 등에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리경군(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서기장)
대 표	이재호(통일부 과장) 김재홍(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권정혁(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상무위원) 성기철(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총회사 사장)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나. 진행경과

남과 북은 4월 22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전 1차례와 오후 4차례 등 총 다섯 차례 접촉을 갖고 북한측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모두 발언 등을 통해 북한측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관련 바이러스 유형, 인체감염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북한측에 요청하자 북한측은 4월 8일자 우리측에 통보한 수준의 발생 경위 등에 언급하고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2003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퇴치 경험 전수 및 효과적인 방역과 퇴치를 위해 전문가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국제기구(WHO, FAO)에서 이미 현장을 방문하여 분리된 바이러스를 검사한 만큼 그 결과를 보면 된다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컸던 분야는 북한측에 제공할 품목으로 우리측은 북한측 요구 품목중 제공가능 품목 및 별도 추가 제공 품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검토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번 실무접촉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그들이 제시한 품목 확정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방역보다는 예방약 생산시설 확보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북한측은 예방약 제조시설 지원과 나머지 품목을 연계시키는 태도로 일관함은 물론 전문가 현장 답사 등을 거부함으로써 합의를 이

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측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전달하고, 북한측은 모두 발언 등을 통해 긴급약품 등 제공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협력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실무접촉 이후에도 몇차례 쌍방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며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측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남포항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귀측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측은 귀측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퇴치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먼저 귀측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및 상황 정보 요청(3.15)에 대해 “일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3.17)”고 우리측에 통보한 사실에 유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퇴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함으로 우리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방역 전문가 현장답사 문제
 - 질병 퇴치를 위해서는 방역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보고 실태를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아울러 향후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여타 질병발생에 대비해 남북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약품·장비 품목 문제
 - 우리측은 귀측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퇴치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것임 .
- 장비운용 기술지원 문제
 - 우리측이 제공하는 약품 및 장비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작동 운용 방법에 대해 우리측 전문가들이 귀측 관계 인원에게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함.
- 약품·장비 전달경로 및 인도·인수절차 문제
 - 제공하는 약품·장비 물품은 신속성을 고려, 경의선 도로를 이용하여 개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편리함.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우리는 귀측이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및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인도주의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현재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측 지역에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남측을 포함한 여타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남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 조류 인플루엔자는 평양시 외곽에 있는 하당 닭 공장에서 당시 전기 사고로 인하여 암모니아 가스와 유화수소 가스 함량이 높아지면서 닭들에서 호흡기병이 발생하자, 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수단들이 불충분하여 진단 확인과정까지 거의 한달이 걸렸음 .
- 현재까지 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닭 21 만여 마리를 전부 매몰처리 하였고, 병이 발생한 닭 공장 종업원들에 대한 격리 및 위생감시 조직을 한 결과 사람들에게는 이상 없었음.

- 귀측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한 진단 및 방역 수단과 약품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현 단계 사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며, 향후 재발 방지와 타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동 약품이 조속히 우리측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램.

2.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가. 개요

우리측은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5년 8월 3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적십자 총재(위원장)급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8월 4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적십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으로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러한 제의를 수용하여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명의 대표단을, 북한측은 최성익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이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장) 유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이교식(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황 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이호람(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남북 양측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1)국군포로 및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2)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지속 실시 3)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대면상봉의 정례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리측은 이러한 핵심 의제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국한하여 생사주소 확인을 하되 일반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지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화상상봉은 8.15 시범화상상봉 이후 2003년 내에 2차례를 더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화상상봉 전용설비를 이용한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양측은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 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제6차 적십자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진행경과

남북 양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으나, 대상범위 및 실시방안에 대해 이견을 노정하였다. 우리측은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불자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추진할 것을 제의한 데 반해, 북한측은 전쟁시기 행불자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기존 이산가족 문제로 일반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기본방향과 상봉방식 등에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구체적 상봉규모, 횟수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여서, 우리측은 9월중 시범적 화상상봉 후보자 중 미상봉자 대상 실시한 후 10월중 매주 2회 각기 200 가족씩 상봉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제의하였지만, 북한측은 8.15 시범화상상봉을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사업”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금년 내 화상상봉은 2차례에 걸쳐 각기 40가족씩만을 실시하지는 데 머물렀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서신교환 및 이산가족 대면상봉의 정례화(매분기별 1회 실시) 등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화상전송설비를 이용한 새로운 서신교환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남북 양측은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 공동보도문 전문 >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8월 25일

금 강 산

3.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가. 개 요

2005년 6.15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당국대표단장 겸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17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에서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우선 8.15 화상상봉 실시에 기본 조건이 되는 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6월 29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술실무자접촉을 진행하였다.

실무접촉일자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7월 6일 전통문을 통하여 7월 12일과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7월 12일과 13일에 개성에서 남북이산가족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정승훈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고, 북한측은 황철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각기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황 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관계자)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을 3회, 기술실무자접촉을 1회 진행하여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일부 입장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추가협의를 갖고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나. 진행경과

(1) 제1일차 접촉(7.12)

남과 북은 2005년 7월 12일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및 기술실무자접촉 각 1회를 통해 쌍방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동 접촉에서 우리측은 화상상봉의 정례화·지속화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으며, 북한측은 ‘8.15 시범화상상봉’의 실시에만 우선적 관심을 기울였다.

남과 북은 이미 두 차례의 기술실무자 접촉을 거친 뒤라 화상상봉을 위한 기술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난히 의견 접근을 보였다. 그러나 쌍방은 상봉규모, 상봉시간, 상봉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정하였다. 상봉규모에 대해 우리측이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남북 각

기 50가족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8월 15일 당일에 한하여 남북 각기 20가족을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을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기존의 ‘상봉자 대 가족’ 개념을 고수하였다. 상봉시간과 관련 우리측이 충분한 상봉을 보장할 수 있도록 3시간 정도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1시간을 고집하였다.

다음은 남과 북이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기본입장이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시범화상상봉날자는 8월 15일로 하며, 장소는 평양과 서울로 정함.
- 시범화상상봉규모는 북남 각기 20명이 상대측에 있는 5명 정도의 가족, 친척들과 만날 수 있게 정하며, 이를 위하여 화상상봉후보자는 북남이 각각 100명씩으로 선정
- 시범화상상봉시간은 가족당 1시간정도로 하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에는 북한측 상봉자 20명이 남측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오후에는 남측 상봉자 20명이 북한측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상봉하도록 함.
- 화상상봉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평양과 서울의 화상상봉장소에 이미 쌍방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평양-서울 직통전화 2회선을 설치·리용함.
- 본합의서와 함께 전송로문제, 단말기 문제, 화상상봉전송방식문제 등 2차례의 기술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도 채택함.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번 실무접촉은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 8월 15일 계기 첫화상상봉이 의미있게 실시되도록 보장하자는 문제, 화상상봉이 취지에 맞게 계속 이어가면서 보다 확대해 가는 문제, 시스템구축관련한 문제가 그것임.
- 첫 화상상봉의 규모는 남북각기 50가족씩 총 100가족으로 하며,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8월 15일, 16일까지로 함.
 - 상봉은 '가족 대 가족상봉' 방식으로 하고, 상봉후보자는 상봉자의 세 배수를 제시함.
 - 상봉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예정된 가족이 모두 상봉이 끝나는 시간까지로 하고 원칙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편성해서 충분한 상봉시간을 보장함.
- 화상상봉의 정례적 운영을 위한 규모와 절차문제로서,
 - 초기에는 올해 9월부터 남북 각기 200가족씩의 상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나갈 것을 제의함.
- 화상으로만 상봉하면 쌍방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면회소를 완성을 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고, 그 전이라도 가급적이면 대면상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부분을 상호연구할 필요가 있음.
- 상봉시스템 구축 문제로서,
 - 남북간에 상봉실을 10개이상 설치·운영하며
 - 광케이블 전송로를 이용하되, 10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을 보장함.
 - 화상상봉 관련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상대측 지역에 쌍방의 기술인원이 2명 정도 파견
- 화상상봉추진 및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화상상봉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함.

남과 북은 제1차 전체회의 후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제1일차 접촉을 종료하였다.

(2) 제2일차 접촉(7.13)

2일차 접촉에서도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2회 등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서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먼저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전일 북한측이 제기한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화상상봉의 규모와 시간 등을 수정하여 제기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8.15 첫 화상상봉의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상봉 가족규모를 남북 각기 30가족씩 총 60가족이 8월 15일과 16일에 실시하고 상봉운영 시간은 9시부터로 하며 충분한 상봉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화상상봉의 지속실시에 관한 문제는 「남북화상상봉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해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측 수정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종결하였다.

이후 남과 북은 수석대표간 접촉을 통하여 화상상봉의 일정과 규모(8월 15일 당일에 남북 각기 20가족씩 총 40가족) 등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가족대가족 상봉방식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화상상봉 실무접촉을 종결하였다.

(3)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 협의

실무접촉 이후 남과 북은 7월 15일, 18일, 19일에 가족대가족 상봉방식, 상봉순서,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등의 문제에 대해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7월 19일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 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합의문 요약>

- ① 올해 8월 15일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 ② 시범화상상봉의 규모는 남과 북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상대측 가족 5명정도를 만남
 - 상봉후보자는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 회보서는 7월 27일,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교환
- ③ 시범화상상봉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 ④ 시범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해 가족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보조
- ⑤ 화상상봉의 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 운영
- ⑥ 기술적 보장을 위한 일정
 -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
 - 남과 북은 7월 20일전까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고,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
 -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 ⑦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문제를 협의

4. 제2차 및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10.5, 10.7)

가. 개 요

8월 15일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이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9.13~16, 평양)에서 남과 북은 연내에 화상상봉을 두 차례 더 실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9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통하여 10월 5일 개성에서 화상상봉 추진일정에 대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제1차 실무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승훈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였고 북한측도 황철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하였으나 기술적 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대표가 각기 1명씩 추가되어 4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제2차 실무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황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강철성(조선 컴퓨터 센터)

남과 북은 10월 5일 접촉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10월 7일 다시 접촉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는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된 탓에 우리측에서 2명의 대표가 불참하였다.

남과 북은 양일간 전체회의 5회, 수석대표접촉을 6회, 기술실무접촉을 1회 진행하여 제 4차 화상상봉 11월 24일과 25일에 제 4차 화상상봉을 12월 8일부터 9일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제3차 실무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황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나. 진행경과

(1) 제2차 실무접촉 (10.5)

당초 제6차 적십자회담(8.23~25, 금강산)에서 비록 합의는 안되었지만 상봉규모, '가족대 가족' 상봉방식, 제2·3차 상봉 후보자의 규모와 교환방식 등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되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의견이 접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안을 제시하였다.

화상상봉의 규모는 매회당 2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남과 북이 하루 각기 20가족씩으로 하여 이틀간 총 40가족씩 상봉하며, 상봉방식은 가족대가족 상봉방식으로 하되 가족당 참가인원은 5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시한 제2·3차 화상상봉 후보자의 규모 총 300명)와 그 명단 교환방식(300명을 한꺼번에 교환)에 대해서 북한측은 제16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된 규모와 방법대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북한측은 제2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때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으로 할 것과, 제3차 화상상봉후보자는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교류지속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상상봉을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들에 대해 화상상봉 설비를 이용한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서신교환은 복잡성을 조장하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에 화상상봉을 한 가족들 중 현금을 보내고자 희망하는 가족들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서 현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남과 북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밝힌 양측의 기본입장이다.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시범화상상봉의 규모와 형식, 방법, 일정 문제
 - 규모는 한 번에 북남 각기 40가족씩 하되, 가족대가족 상봉으로 함
 - 가족당 참가인원수는 2~5명으로 하며, 화상상봉 시간은 한 가족당 두 시간 이내
- 화상상봉 진행방법
 - 지난 시범화상상봉때와 같이 1회에 북한측 5가족, 남측 5가족 모두 10가족씩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의 방법으로 2일간 진행
- 화상상봉 진행 날짜
 - 1차 화상상봉은 11월 25일과 26일에, 2차 화상상봉은 12월 9일과 10일
- 화상상봉 명단교환 일정
 - 1차 화상상봉후보자 명단은 따로 교환하지 않고 지난 시범화상상봉때 생사가 확인되었으나 상봉에 참가하지 못했던 대상으로 하며, 그 최종명단은 11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
 - 2차 화상상봉 후보자는 100명으로 하고, 그 명단은 10월 11일에 교환하며, 회보서는 11월 1일에, 최종명단은 11월 29일에 교환하고 최종명단을 교환할 때 가족 명단도 교환
- 화상상봉 설비를 상봉시작 5일전에 가동해서 시험통화 실시
 - 시험통화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북남사이에 이미 가설되어 있는 북남직통전화 2회선을 이용
- 화상상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바람.

<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 오늘 주된 논의 사항은 추진 일정, 인원규모와 상봉방식, 그리고 비용 문제, 그리고 상봉 후에 우리 이산가족들이 교류지속 등임.
- 2차 화상상봉(북한측은 '1차'로 표현)은 12차 상봉행사 후 11월 24일에서 25일, 3차(북한측은 '2차'로 표현)는 12월 1일, 2일 개최
- 인원규모는 매회 남북 각기 40가족씩, 80가족, 2, 3차 합쳐 총 160가족이 상봉
- 생사확인의회는 지난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한대로 한번에 남북 각기 300명으로 일괄해서 교환
- 명단교환일정은 10월 21일에 300명의 생사확인의회자 명단교환, 11월 14일에 회보서 교환, 11월 16일에 최종명단 교환
- 비용보전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찾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그리고 화상상봉 전용통신망 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일부 보전한다는 차원임.
- 교류지속 문제로서 화상상봉을 통해서 상봉하거나 생사확인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의

오후에는 기술실무접촉을 1회 개최하여 관리운영프로그램 등 시범화상상봉때 나타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이날 3차례의 전체회의,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여 화상상봉일자, 상봉방식,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후보자 규모 경비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10월 7일 다시 접촉을 갖기로 하고 이날 접촉을 종료하였다

(2) 제3차 실무접촉 (10.7)

이날 남과 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10월 5일 접촉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날 접촉에서 화상상봉의 후보자 규모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은 제2차 화상상봉의 후보자는 북한측 안대로 하되, 제3차 상봉자의 후보자 규모를 150명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제의하였다. 북한측 안대로 100명으로 할 경우 실제로 화상상봉이 가능한 대상자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제의였다. 북한측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몇 차례의 실무접촉 끝에 120명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서신교환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지속교류를 위해 서신교환을 거듭 강조하였지만 북한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신에 화상상봉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프로그램을 통한 사진교환을 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화상상봉을 위한 경비보전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합의서 요약 〉

- ① 올해 2회 추가 화상상봉 실시
- 1차 11.24~25, 2차 12.8~9 각각 양일간 실시
- ② 매회 남북 각기 40가족(1일 남북 각기 20가족씩 상봉, 4일간 남북 총 160가족)
- 가족 대 가족 상봉 방식으로 가족당 2~5명씩 참여
- ③ 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시 생사확인자중 미상봉자 대상 실시
- 2차 화상상봉은 쌍방 각기 120명 후보자명단을 교환하여 선정
- ④ 1차 최종명단 교환은 11.16, 2차 상봉후보자명단은 10.21, 회보서는 11.14, 최종명단은 11.16 교환
- ⑤ 화상상봉 참가 대상자의 사진을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환
- ⑥ 상봉 시작일 7일전에 남북간 전송로 및 화상단말기 운용시험을 진행
- ⑦ 기타 화상상봉 진행에 따른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 전례 준용
- ⑧ 남측은 북한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5.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가. 개 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면담('05.7.16)시 8.15를 계기로 남북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의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북한측에서 7월 19일 우리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 남북축구경기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7월 26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해왔고 7월 20일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무접촉이 성사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조중연(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리히연(축구협회 서기장 대리)
대 표	김동대(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임병철(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1) 1차 실무접촉(7.26)

경기의 명칭, 선수단의 명칭, 선수단 규모, 왕래경로, 선수단복, 입장 시 단일기 사용, 심판 등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북한측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데다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녀경기의 일자와 장소를 8.15 민족대축전의 개막식·폐막식 행사와 연계하여 정하는 문제와 통일축구경기의 향후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의 정례화(매년 1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번 실무접촉이 8.15 통일축구경기의 실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한 자리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논의를 이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8.15 민족대축전의 개막식(8.14) 행사와 남자경기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폐막식(8.16)에는 행사장과 경기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은 여자경기도 폐막식 당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쌍방은 7월 28일 후속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나머지 쟁점사항들을 협의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조국광복 60돌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이번 통일축구는 북남축구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개와 슬기, 우수성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통일로 나아가는 온 겨레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에 과시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임.
- 체류기일을 남자선수단은 무박1일, 여자선수단은 다른 8.15민족대축전 대표단과 같이 3박4일로 하며, 경기는 14일 8.15민족대축전 개막식때 남자경기를 진행하고 16일 폐막식때 여자경기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미 남북은 3차례의 통일축구경기를 개최한 경험이 있지만, 해의 통일 축구경기는 남과 북의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 하는 「8.15 민족대축전」 기간에 맞추어 열리게 되었으므로, 뜻 깊은 축전 행사를 한층 빛나게 하리라 기대함.
- 이번 경기를 계기로 매년 남북의 남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축구경기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2차 실무접촉(7.28)

북한측이 8.14 민족대축전 폐막식(8.16) 당일 여자경기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2002년 남북통일축구경기 이후 3년만에 남북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게 되었다. 한편 우리측은 북한측 선수단에 축구화 등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명칭: 경기 -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선수단 - 남측 선수단 북한측 선수단
- 기간: 북한측 선수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2005.8.14~8.17
- 일정: 8.14 - 남자축구경기, 8.16 - 여자축구경기
- 응원: 경기 응원은 공동
- 규모: 북한측 선수단은 총 63명(지원인원 8명 남자 선수 27명 여자 선수 26명)
- 경로: 북한측 선수단의 왕래경로는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한 서해직항로
- 복장: 선수경기복장(단일기, 회사상표, 선수이름, 등번호), 선수단복(단일기, 회사상표)
- 심판: 경기의 주심과 선심은 남측 심판원들이 맡음
- 비용: 북한측 선수단의 체류기간 필요한 모든 비용은 초청측인 남측이 부담
- 통산: 경기장과 평양 사이 직통전화 1회선 경기장과 8.15 민족대축전 북한측 상황실 사이 직통전화 1회선
- 협력: 양측 축구협회는 축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6.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가. 개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성에서 2차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8월 18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대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9월 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9월 7일 개성에서 1차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 양측은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식 등 대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의 개최 시기와 장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 차이로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9월 7일의 실무접촉을 일단 마무리 지었다. 이후 양측은 판문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9월 15일 최종 합의서(서명일자는 9월 7일)에 서명하였다.

2차 실무접촉은 그동안 쌍방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진행해 온 연구 자료들을 상호교환한 가운데 11월 22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완근(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임병철(통일부 과장) 이창민(통일부 과장) * 2차접촉: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나. 진행경과

(1) 1차 실무접촉(9.7)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1986년에 중국에 직접 고찰단을 파견하여 안중근열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일제의 조선침략 100년, 안중근열사의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도 년초부터 유해발굴 및 송환사업을 결속하려는 일념으로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첫째, 지난 기간 쌍방이 안중근 열사의 유해안장조치에 대한 조사사업 결과를 서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세워야 함.
- 둘째, 이에 기초하여 북남 각기 필요한 수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발기조사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여 10월부터 공동조사발굴단을 조직하여 사업을 시작하며, 남측은 발굴에 필요한 임의적 설비와 비용부담을 하고, 북한측은 발굴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동발굴조사단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 양측이 그동안 각자 축적해온 조사 및 연구자료들을 교환·공유하고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우선 남북 공동의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전문가회의”를 금년 10월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자료 수집과 현지 확인 등의 조사 작업에 착수하고, 이러한 조사 작업 이후에 공동발굴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음.
- 유해 공동발굴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거장소 기념물 건립, 안중근의사 전기의 공동편찬,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가 등 가능한 기념사업들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회담에서 남북은 사업의 성격과 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의견 접근을 하였으나, 전문가회의 개최 장소, 운영방식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이 전문가회의의 개최 장소를 참석인원 규모,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로 제의한 데 비해 북한측은 현지에서 발굴작업과 함께 하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향후 사업의 추진순서에서도 우리측이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확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검토 및 의견수렴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 비해 북한측은 바로 공동발굴단을 발족하지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합의서 문안조정이 대체적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단 실무접촉이 종료되었다.

이후 남북 양측은 실무접촉에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정, 9월 15일에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3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함.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함.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함.

(2) 2차 실무접촉 (11.22)

우리측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한 자료를 10월 21일 북한측에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측의 발굴 및 연구자료와 함께 우리측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공동추진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가급적 11월 중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11월 3일 전통문을 보내와 ‘안중근유해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해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

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필요한 의견교환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11월 17일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으며, 우리측에서는 이 날이 “순국선열의 날”임을 감안, 11월 22일로 일자를 변경하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1월 14일 북한측은 우리측의 수정제의에 동의를 하면서, 1986년 여름 중국 여순에 파견하였던 유해발굴조사단의 사업결과를 요약·정리하여 보내왔다.

2차 실무접촉은 예정대로 11월 22일에 열렸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유해위치가 북한측에서 이전에 조사했던 곳과 일치하여 발굴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절기 동안 일본측으로부터 좀 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내년 봄에 발굴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측이 제기하는 위치가 북한측이 이전에 답사했던 위치와 다를 수 있음을 설득하면서, 현재 최선의 대안으로서 추가 자료수집을 하기 보다는 현지답사를 겸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끝까지 현지답사와 전문가회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실무접촉은 양측 자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는 것을 성과로 삼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의 의의 및 양측의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2차 실무접촉을 마무리 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우리측안에서 주장한 위치와 북한측이 1986년에 조사한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북한측의 전문가가 과거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두 위치가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데 의구심이 있으며, 우리측안을 작성한 학자가 일본측 자료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 수집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료수집 명목으로 시간을 끌기 보다는 하루속히 현지답사를 겸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며 대표단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만약 북한측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구성하여 가급적 조용히 현지답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남측의 자료를 우리측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전에 이미 조사했던 곳(고구미밭으로 개간된 공동묘지)과 일치하여 발굴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고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할 것을 제의함.
- 동절기에는 유해를 발굴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번 겨울 동안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봄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의사의 유해위치 변동사항에 관한 일본측 자료는 남측에서 맡아서 수집해주기를 바람.
- 그동안 남북 양측이 유해위치에 관한 자료를 교환했던 것은 신뢰형성에도움이 되었으며, 아직 사업이 시작에 불과한 만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함.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음.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7.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북한측은 10월 21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제4회 동아시아경기대회(05.10.29~11.6, 마카오) 기간 중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10월 24일 전통문을 보내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것과 실무접촉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안에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안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11월 1일 마카오에서 이루어진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12월 7일 개성에서 단일팀의 선수선발과 구성 및 훈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적정수의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북한측은 11월 17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와 12월 7일 개성에서 열리는 체육회담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11월 18일 이에 호응하는 전통문을 전달하였으며, 대표의 수는 남북 양측 각기 5명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12월 7일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담은 기초발언을 통해 단일팀 구성의 의의와 함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오후에 이루어진 4회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원칙 및 임원구성 훈련 등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각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단일팀 구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성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리동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상우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안민석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임병철 (통일부 과장) 오영우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장)	손광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정혜남 (조선올림픽위원회) 박일남 (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김영철 (조선올림픽위원회/이태 참사)



1. 남북관계 일지

【 2004년 】

<12월>

12. 1 동해선 남북연결 본도로 이용시작 및 도로이용대상 확대
日학교 진입 탈북자 중 15명 중국 출국
12. 2 韓·英 정상,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12. 3 남북, 개성공단 전력 공급방식 합의
 - 한국전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전력공급방식에 대해 개성에서 최종 합의
12. 4 NSC, 일반 탈북자 해외여행 제한 없기로 결정
北외무성 대변인,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립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6자회담 무용론 제기
12. 5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 회의, 모사전송 방식으로 진행
12. 6 韓-佛 정상,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
南 「KBS」와 北 「민화협」, 드라마 “사육신” 제작관련 협의 (12.6~9, 개성)
12. 7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개점식
美國무부, 북한 공격의사 없음을 표명
12. 8 통일부차관, 남북경협과 북핵해결 병행 추진 강조

- 12.9 北, 금강산면회소 지질·측량 조사 연기 요청
- 12.10 통일부, 개성공단 왕래절차 간소화 입법예고
- 12.13 北 외무성, 6자회담 참가 재검토 주장
北-中, 경제장관 회담(베이징)
- 12.14 日 참의원, 대북제재 검토 결의안 채택
- 12.15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리빙아트」 준공식 및 첫 제품 생산
- 12.16 한완상 신임 한적 총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北과 협의 의지 표명
日외무성 부대신, “北, 日에 유골감정 결과 불인정 통보”
- 12.17 韓·日 정상, 북핵 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에 합의
- 12.21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대통령 방북(12.21~22)
한적, 하반기 대북지원 비료 10만톤 지원완료 발표
北,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 12.20 결성
- 12.23 정부, ‘탈북자수용대책 개선안’ 발표
中, 탈북자 외국공관 진입 엄중 대처 입장 표명
- 12.24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평양)
북적, 비료 10만톤 추가지원 사의 전달
日, 북한에 납치문제 재조사 공식 요구

- 12.26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가능하다면 시기·장소 불고려 입장 표명
- 12.27 조평통 서기국, '참여정부 2년간 반통일행적 결산서(10개항) 발표
한국교총, 북한에 교육용 TV 전달
- 12.28 日, 납치문제관련 6개항의 대북방침 결정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SJ테크」 준공식
- 12.29 개성공단 전력·통신협상 진행(12.29~30, 개성)
- 남 「KT·한전·토공」과 북 「특구총국·조선체신회사」간 협의
동해상 표류 북한 선원 2명 구조, 송환
- 12.30 KT-조선체신회사, '개성공업지구통신공급에관한합의서' 체결

【 2005년 】

<1월>

1. 1 北, 당·군·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발표
한미연합사령관,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역할 불변할 것임을 강조
1. 3 유엔, 2004년 대북지원모금 계획대비 61% 수준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
1. 7 IAEA 사무총장, 핵시설 건설의 5년간 동결안 제안 의사 표명
1. 8 미하원 렌토스 의원 일행 방북(1.8~11, 평양)
- 1.10 정부,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입법예고
- 1.11 톰 렌토스 등 美하원의원단 방북(1.11~14)
- 1.12 中, '한나라당 의원단 탈북자문제 기자회견' 저지
- 1.13 정부, 중국의 한나라당 의원 기자회견 저지 관련 유감 표명
中, 한나라당 의원 기자회견 봉쇄의 적법성 주장
美헤리티지재단, 부시2기 행정부 정책방향 제안서 발간
- 1.14 웰던 美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방북성과 설명차 방한

- 1.15 정부, 한나라당 의원 기자회견 저지 관련 중국의 공식입장 지켜본 뒤 대응방안 강구 계획 표명
- 1.17 외무성, 일본정부에 과거청산 결단·조치 요구하는 성명 발표
- 1.20 北, 북한수역 침몰 남한 화물선 「파이오니아호」 구조선박 진입 허용
부시 미 대통령 집권 2기 공식출범
남북공동행사 관련 남북준비위간 실무접촉
(1.20~22, 금강산)
- 1.21 北 해군사령부, 남한 함정의 서해상 북한 수역 침범 주장
- 1.23 동해 표류 北선원 해경에 구조, 속초항 도착
- 1.24 통일부,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 관련 북측에 유감 표명
동해 구조 北선원 판문점 통해 귀환
- 1.25 北, 화물선 구조 해경 경비정 北수역에 재투입 허용
南 한전 - 北 특구총국, 개성공단 전력공급 실무협의
(1.25~26)
- 1.27 北 해군사령부, 남한 함정의 서해상 북한 수역 침범 주장
南 해군본부, 북측 보도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
개성공단 통신·용수 실무협의(1.27~28, 개성)
- 1.28 통일부, 북측의 ‘海難 구조협조’ 관련 사의표명 논평 발표

- 1.29 통일부장관, 호주총리와 북핵문제 등 논의
- 1.31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출범
(상임대표 : 백낙청)
美, 일본의 대북제재시 사전 협의 필요성 표명

<2월>

2. 1 南 「천태종」과 北 「민경협」 실무접촉(2.1~3, 북경)
- 개성 「영통사」 낙성식 개최문제 협의
南 「조계종」과 北 「조불련」 실무접촉(2.1~4, 금강산)
- 금강산 「신계사」 복원문제 협의
2. 2 동북아 전력망 연계 제4차 3자회의 개최(2.2~4, 러시아)
철도연결 관련 신호·통신·전력계통 대북 기술설명회
(2.2~4, 금강산)
2. 3 정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환영
인천시, 시장 방북 및 아시아 육상대회 北 초청 협의
(2.3~5, 금강산)
2. 4 北 해군사령부, 남한 함정의 북한 수역 침범 거둬 주장
남북공동행사 남북준비위 실무접촉(2.4~5, 금강산)

- 2. 5 한미 정상, 전화통화 통해 북핵문제 등 협의
해군,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은 군사적 도발로 간주 의사 표명
- 2. 6 日 외상, 대북 제재시 한국 등과 협의 의사 표명
- 2. 7 통일부장관, 당국간 대화통해 비료지원 논의 계획 언급
北 해군사령부, 남한 함선의 북측 서해 해상 침범 지속 주장
- 2. 8 대북 식량차관 40만톤 인도 완료('04.7.20 ~ '05.2.8)
- 2.10 北 외무성, 「核 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중단」 선언
정부, 북한 핵무기 보유 불용 입장 재천명
日, 가짜유골관련 반박문 북한에 전달
- 2.11 南 「KT」 北 「특구총국」간 개성공단 통신협상(개성)
남북 민화협 관계자 KTF 이동통신사업 등 논의
(2.11~12, 심양)
통일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판문점)
- 2.12 한나라당·北 민화협 광복절 행사 논의
- 2.13 호주 외무장관,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핵확산 우려 표명
한나라당 박진의원 등, 대북 압박수단 위해 주한미군 감축
재검토 주장
- 2.14 노무현 대통령, 북핵문제 면밀히 대처할 것을 지시

- 2.15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北의 6자회담 복귀 촉구
美 국방부 대변인, 금년 4월부터 北서 미군유해 발굴작업 실시 계획
- 2.16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회의 3.9 소집결정
- 2.18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남북합작으로 세워지는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내년 4월 개교예정 발표
- 2.19 美·日 외교·국방장관, 북핵문제 관련 공동기자회견 발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출범식(2.19~21, 금강산)
中 공산당 중앙위 왕자루이 일행, 핵문제 논의위해 평양 도착
- 2.20 김대중 전대통령, 북이 초청하면 방북하여 여러 현안들을 중재할 용의 표명
北 홍석중(조선작가동맹), 임격정 등 북한 출판물 저작권 주장
- 2.21 「발해 뗏목 탐사선」 연락두절 협조요청 관련 북측은 항공기 수색은 동의하였으나, 경비정은 북측 수역을 우회하여 수색할 것을 통보
- 2.22 北 김정일, 중국 왕자루이 일행 접견 및 만찬 진행
- 2.24 美-러시아 정상 정상회담 후 북핵 저지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2.25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사 통해 일관성 있는 대북

관계 추진 표명

고구려연구재단, 北과 고구려고분 남북공동조사 원칙 합의
(2.24~25)

美 국무부, '탈북자 실태와 미국의 정책보고서' 의회 제출

日 국토교통상, 북한선박 16척 입항 허용 발표 기자회견

2.26 韓-美-日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서울)

2.27 상하이 협력기구,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지지
성명 채택

2.28 통일부장관, 대북 비료지원은 당국간 회담재개시 논의 가능
표명

美 국무부, 2004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日, 北 선박 입항규제 위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 3.1
시행

통일농수산사업단 관계자,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협력사
업」 합의위한 협의(2.28~3.2, 금강산)

<3월>

3. 2 北 외무성, 6자회담 관련 비망록 발표

- 美의 믿을만한 성의와 6자회담 조건·명분 마련되면 회담개

최 가능

한·미연합사, 「RSOI 독수리연습」 3.19~25 실시 발표

북측, '04년 대북식량차관 4차분 10만톤 분배결과 통보

3. 3 남·북·해외공동준비위, 남북공동행사 일정 협의

(3.3~5, 금강산)

- 결성식 및 6.15행사는 평양에서, 8.15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키
로 합의

3. 4 美-北간 유해 발굴작업 관련 제1차 실무접촉(판문점)

北,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연기발표

美,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

3. 7 WFP·UNICEF, 北 아동 영양상태 진단 발표 기자회견

KBS, 北 민화협과 개성촬영 관련 실무협의(3.7~10, 개성)

3. 8 관세청, 개성공단판매제품의 한국산 표시결정 고시(3.10 부터
적용)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대통령의 승전 60돌 기념메달
수상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로만손」 공장 착공식(개성)

정부, 3월중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문에서의 군검색 폐지

결정

- 3. 9 송민순 차관보, 북핵논의차 러시아 방문(3.9~13)
- 3.10 EU의회, 'EU의 6자회담 참가' 촉구 결의안 채택
- 3.13 민족종교협의회 등 4개 민족진영단체, 북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측과 단군 관련 행사 실무협의
(3.13~15, 심양)
- 3.14 통일부장관, 미 하이드 위원장 부적절 발언 정면 반박
- 3.16 한전은 3.16부터 개성공단에 전력공급 시작
美·日·中·韓·러 북핵 5개국 전문가 회의 개최
(3.16~17, 상하이)
SBS, 조용필 평양공연 사전협의 방북(3.16~18, 금강산)
- 3.17 정동영 NSC상임위원장, 일 독도주장 단호대처 대일 신독트린 발표
- 3.18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北 민화협·민경련과 저작권 등 협의(3.18~20)
겨레말큰사전 북측편찬위원회, 우리측의 '2차회의 남측지역 개최' 요구에 대해 불가입장 통보
- 3.20 민족문화작가회의, 北 홍석중 작품 '황진이 영화제작 판문문제 협의 관련 실무접촉(3.20~22, 금강산)

- 3.21 개성주민 월동용 연탄(1.5만톤) 2차 지원 개시
미 국무장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않을 경우 다른 선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북경 기자회견)
- 3.22 박봉주 北 총리, 중국 방문(3.22 ~27)
북측,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 발족을 우리측에 통보
- 3.23 양대노총과 北 연총 노동분야 교류협력문제 협의
(3.23~24, 금강산)
개성공단 통신공급 부속합의서(KT-조선체신회사) 및 용수시 설합의서(토공-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체결(3.23~24, 개성)
- 3.24 北 수역 우리측 선박 표류관련 우리측 구조합정 진입 허용
中 외교부 대변인, 김정일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북을 공식 초청 언급
- 박봉주 北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 면담시 의사 전달
- 3.25 태창, 「금강산샘물」 동해선 육로이용 반입 재개
- 3.27 北, 조류독감 발생사실 발표(평양 하당닭공장 등)
- 3.28 남북 불교계, 日 약탈 북관대첩비 北에 복원 합의(북경)
- 3.29 금강산지역 전염병 환자발생 예방·관리 등 체계적인 공중 보건·위생대책 마련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금강산 3.29~31)

<4월>

4. 1 민화협 조성우 상임의장 등 14명, 체육 및 문화교류 등 사업협의차 방북(4.1~2, 개성)
北, 최고인민회의를 4.11 평양에서 개최 재공고
4. 2 금강산 일원 남북 공동 식목행사(4.2~3)
- 평화의숲 주관으로 남측 신혼부부 80쌍 등 남북 200여명 참여
4. 3 北 조선사회민주당, 민노당에 남북정당간 교류 실무접촉 제의
4. 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남북공동학술대회 및 고구려 유적 보존 실무협의차 방북(4.5~6, 개성)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관련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서 발표
4. 7 남북해외공동행사 북측준비위, 평양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산하 12개 분과위 구성
4. 8 제도도지사,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8.30~9.3, 제주) 참가 초청 대북서한 발송(판문점)
4. 9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접촉(4.9~11, 심양)
- 4.11 겨레말큰사전 남북편찬위원회 제2차회의 개최(4.11~12, 개성)
‘철도분계역사등설계및기자재제공에관한합의서안’ 우리측

서명본 북측에 전달

北 최고인민회의 제11기 3차회의 개최

4.12 경기도, 北 민화협과 대북 교류사업 실무협의(개성)

- 평양시 교외지역에 벼농사 시범공장 공동추진 합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문창기업 착공식 개최(개성)

4.14 서울대공원-북 평양중앙동물병원간 첫 공식 동물교환
(개성)

4.17 평화문제연구소와 북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간 1999년부터 공동 시작한 「조선향토대백과」 공동발간

4.18 北, 동해상 월북한 어민(황홍련)·선박(황만호) 우리측에 인계

北 철도역사 건축지원합의서 서명·교환(판문점)

4.19 KEDO-북한간 실무회의 개최(4.19~23, 향산)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협의차 방북

(4.19~21, 금강산)

4.20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저작권사업 관련 실무협의

(4.20~22, 개성)

4.2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고구려 유물전시회 유물 인수차 방북(4.21~22, 금강산)

- 4.21 민노당·北 사민당, 독도문제 및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 4.22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남북실무접촉(개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남북협력 관련 실무협의
(4.22~24, 금강산)
- 4.23 이해찬 국무총리과 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회동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개최중인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 중
- 4.25 금강산 임시도로 CIQ 개설·운영과 북측 구선봉 임시 출입사무소 설치
통일농수산업단 관계자,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관련 물자반출 일정 및 향후계획 협의차 방북
(4.25~27, 금강산)
北 예술가무단, 금강산호텔 공연장에서 매일 1회 공연 시작
- 4.26 6.15 공동행사 관련 남북해외준비위 실무접촉
(4.26~28, 금강산)
- 4.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 용천지역 방문(4.27~30)
- 4.28 남북농민대표자회의 개최(4.28~30, 금강산)

- 농민단체(전농, 한농연, 농근맹)가 만나 교류일정 협의 및 결의문 발표

KT, 삼천리총회사와 05년 S/W 공동연구개발 계약체결

(금강산)

대한석탄공사와 북 민경련 단동대표부간에 北 석탄광산 공동개발 관련 협의(4.28~30, 단동)

4.29 부시 대통령,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 시사

<5월>

5. 3 국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토공, 용수시설 및 문화재 관련 대북협의(5.3~4, 개성)

5. 4 통일부, 남북간 수송통신장비운행 승인절차 간소화방침 발표

현대아산-아태 금강산특구 개발 관련 선진관광제도 조사위한 「해외공동시찰」 실시 협의

몽골정부대표단, 최근 몽골유입 탈북자 급증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

5. 6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촉구 기자회견

5. 9 北 외무성, 기자회견 통해 '북은 6자회담과 별도의 북-미회담을 요구한 적 없다'고 언급

- 5.11 인천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9.10~13) 북 참가 등 협의
위한 방북(5.11~16, 남포)
- 5.12 북관대첩비 반환관련 남북문화재당국회담 대북 제의
- 5.13 북핵·6자회담 관련 北-美 뉴욕 접촉
- 5.16 남북차관급회담 개최(5.16~19, 개성)
- 3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5.20 北 조류인플루엔자 퇴치 약품·장비 추가지원 관련 대북조치
- 5.21 봄철비료 20만톤 지원관련 육로분 1만톤 수송 개시(개성
봉동지역)
개성공단 시범단지 주변도로 포장공사 완료
- 5.22 南 청학본부-北 조선학생위,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5.22~24, 금강산)
비료수송 북측선박(백두산호, 보통강호, 원산2호) 南 항구
입항
- 5.23 기독교장로회, 北 조선기독교연맹측과 공동기도회 협의
(5.23~25, 금강산)
- 5.25 6.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제1차 실무협의(개성)
美 국방부, 6.25 참전 미군유해발굴작업 중단발표
- 5.26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신원」 준공식 개최

농업관계자, 남북공동모내기 행사 진행(5.26~28, 금강산)
부산시장,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6.8~11, 부산) 관련 북
측 초청 대북서한 발송(판문점)

- 5.27 6.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제2차 실무협의(개성)
- 5.28 6.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제3차 실무협의(개성)
- '6.15공동선언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
대표단 파견하기 위한 실무 협의서'(9개항) 채택
- 5.30 안상수 시장 등 인천시 대표단 방북(5.30~6.2, 평양)
- 5.31 안동대마방직, 공장설비 기술지도 등 협의차 방북
(5.31~6.11, 평양)

<6월>

6. 7 금강산관광객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6.7~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 정성제약 수액제공장 준공식
관련 방북
- 6.14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진행(6.14~17, 평양)
- 규모 : 민간(南-300, 北-200, 해외-100, 당국(南-40, 北-25)
- 6.17 대통령 특사(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6.2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6.21~24, 서울)

- 12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6.29 굿네이버스, 평양 정성제약 주사제공장 준공식 관련 방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1차 기술실무자 접촉 개최(개성)
- 6.30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TS정밀 공장 착공
국회사무처,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제2차총회 복측초청 서
한발송
美 하원 국제관계위, 북한의 한국과 일본인 납치·억류를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

<7월>

7. 2 北 당중앙위·중앙군사위, 당창건 60주(10.10) 계기 당구호
145개항 발표
7. 5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2차 기술자 실무접촉 개최(개성)
7.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 개최 (7.9~12, 서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 합의문'(12개항) 채택
美-北간 6자회담 수석대표접촉(북경)에서 7월 마지막 주에
제4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 7.10 北, 6자회담 재개 합의 발표
- 7.12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개최(7.12~13, 개성)

- 8.15 민족통일대축전 공준위 1차 실무접촉(7.12 ~13, 개성)
한국관광공사-北 아태위간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
(7.12~14, 금강산)
- 7.16 제2차 남북대학생 상봉모임(7.16~18, 금강산)
- 8.15 공동준비위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280명 참가(북 100명)
통일교육원 주관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7.16~8.15, 동
교육원)
- 7.18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측량·지질조사 실시(7.18~30,
금강산)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남북 광케이블 연결(군사분계선)
- 7.19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남북직통전화 설치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합의서 교환(판문점)
- 7.20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개최(판문점)
민족문화작가대회 개최(7.20~25, 평양)
- 7.22 8.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실무접촉 개최(개성)
-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하기 위
한 실무접촉 합의서'(6개항) 채택
- 7.25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개최(7.25~27, 개성)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합의서'(6개항) 채택

- 대북식량차관 차관계약서 최종 합의(문서교환방식)
- 7.26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제1차 실무접촉 개최(개성)
제4차 6자회담 개최(7.26~8.7, 북경)
동아시아축구경기(7.31~8.7) 관련 북측대표단 방남(7.26~8.8)
대북식량차관 육로 수송 시작
- 7.28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제2차 실무접촉(개성)
-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합의서' 채택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회의(7.28~30, 개성)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회의 합의서' 채택
한국전력 개성사무소 개소식 개최(개성공단)
새청년생명운동, 아궁이 개량사업 관련 취사용 화덕 2,000개 등 대북지원차 방북(7.28~30, 금강산)
- 7.29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기술 실무접촉 개최(개성)
8.15 민족통일대축전 공준위 2차 실무접촉(7.29~30, 개성)
北, 「9개 경협합의서」중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제외한 8개 합의서 발효 통보(판문점)

<8월>

8. 1 토지공사,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8. 2 8.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2차 실무접촉(개성)
한적 부총재단 방북(8.2~6, 평양)
우리측, 9개 경협합의서 발효조치 완료를 북측에 통보
(판문점)
8. 3 화상상봉 관련 최종명단 교환 및 서울-평양간 화상 시험통
화 실시
8. 4 한-싱가포르 FTA 양국 관계장관 서명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8. 5 토지공사,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투자설명회 개최
(코엑스)
「9개 경협합의서」 발효 최종 서명본 교환 판문점
8. 7 제4차 6자회담 관련 차기회담은 8.29 개최를 결정하고 종료
8. 8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8.8 ~10, 문산)
-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8.10 남북통신연락소(南 도라산 군상황실-北 개성시) 개통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우리측 단독조사 결과 대북통보
(판문점)
- 8.11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주)「로만손」 협동화공장 준
공식(개성)

-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공준위 실무접촉(개성)
제1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참가 최종명단 교환
- 8.1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개최(판문점)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센터 개소식(대한적십자사)
「해운협력」 관련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설치·운영
- 8.14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8.14~17, 서울)
8.15 행사 참가 북측 당국·민간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
8.15 남북통일축구 남자경기(서울월드컵경기장)
-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 2가족)
- 8.16 8.15 남북통일축구 여자경기(고양종합운동장)
8.15행사 당국대표단 경주 참관(8.16~17)
- 8.18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8.18~19, 개성)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문’(7개항) 채택
현대-북 아태위, 개성 시범관광 대사협상 타결
경의선 남북철도연결 공사실태 남북 관계자 공동점검
(8.18~20)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신청 접수 완료
- 8.22 SBS 주관 조용필 평양공연 실시(8.22~25, 평양)

- 8.23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8.23~25, 금강산)
 - 공동보도문 발표
 동해선 남북철도연결 공사실태 남북 관계자 공동점검
 (8.23~25)
 민노당 김해경 국회의원 등 20명 방북(8.23~27, 평양)
- 8.24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8.24~27, 평양)
- 8.26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8.26~31, 금강산)
 제1차 개성 시범관광 실시(당일관광, 500명)
 평화자동차 후원 평양 골프대회 개최(8.26~30, 평양)
 최수현 北 외무성 부상, 유엔인도주의조정국과 WFP 평양사
 무소장관 면담시 금년말까지 인도적 지원사업 종료를 요구
- 8.27 MBC 최문순 사장 등, 방송제작 협의위한 방북(8.27~31, 평양)
- 8.28 제16차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북측선수 방한
 (8.28~9.5, 인천)
 - 북한 선수단 20명, 응원단 124명 참가
- 8.30 농기계 수리 및 점검차 통일농수산사업단 방북
 (8.30~9.3, 금강산)
 통외통위 등 국회 전문위원 7명 개성공단 시찰

- 8.31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금강산)
 보건복지부장관, 「전통의학발전위한 정부포럼」(10.20~23,
 대구) 북측 초청 대북조치(판문점)

<9월>

9. 1 북측, 제16차 장관급회담 장소변경(백두산→평양) 전통문
 발송
9. 3 북한적십자사, 미 남부 카트리나 태풍피해 발생관련 미국
 적십자사에 위문편지 발송
9. 4 南 방송위원회와 북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간 「남북방송인토
 론회」 개최(9.4~6, 금강산)
9. 5 뉴서울오페라단, 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태왕」
 공연(9.7)차 방북(9.5~8, 평양)
9. 6 정부, 북측 9.2 임진강댐 무단방류 관련 유감표명 대북조치
 (판문점)
 제16차 장관급회담 관련 일정 등 협의 연락관 실무접촉
 (판문점)
 국방부 등, 개성현지 암반매장물량 합동점검 실시(9.6~7, 개성)
9. 7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제1차 실무접촉(개성)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4개항) 채택
- 9. 8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설관련 제1차 실무접촉(개성)
- 9. 9 귀환납북자지원법안 국회공청회
- 9.10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9.10~14, 평양)
- 9.12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입주업체 선정·발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 선원(김규호) 북측에 송환
- 9.13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9.13~16, 평양)
- 6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9.14 대북식량차관 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 고성지역)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1주년 국제
심포지엄 (11.9~11, 서울) 북측초청 대북 전통문 발송
北 선박(구봉령호) 제주해협 통과 운항(9.14~20, 남포-제
주해협-청진)
- 9.19 4차 6자회담 관련 6개항 공동성명 채택·종료
- 9.20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서중석 공동대표 등 19명), ‘일
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대회’ 참가
(9.20~24, 평양)
- 9.21 「경추위 제11차회의」 일자 수정제의 대남 전통문 접수

- 9.22 제3차 일본의 과거청산 요구 국제연대협의회 개최
(9.22~23, 평양)
개성공단 보험제도 관련 남북 보험사간 협의(9.22~23, 개성)
- 9.2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최종본 북측 전달(판문점, 합의완료)
- 9.27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공동준비단 제2차 접촉(개성)
강원도 김진석 지사 등,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행사
(9.27~29, 금강산)
평화항공여행사, 10.6부터 일일 150여명 규모로 9회 평양관광
광 개시한다고 발표
南 한국권투위원회와 北 아태간 세계여자프로권투대회 2차
대회 개최 합의(10.21,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 9.29 남북해운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9.29~30, 개성)
북측, 백범 김구선생 사진2매 백범기념관 기증(판문점)
- 김구선생이 1948년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장에 입장하는 사진
- 9.30 통일부, 전향장기수 ‘정순택’(84세) 위독에 따른 재북가족
방문요청

<10월>

10. 1 北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남측 기업대상 투자설명회(평양)

북측 선박 4척, 대북차관 쌀 수송차 남측 항구 입항

10. 2 비전향장기수 정순택 유해 대북 인도(판문점)

10. 3 전라북도(강현욱지사 등)·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황남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참석차 방북 (10.3~4, 평양)

10. 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개성)

10. 6 남북 「공동준비위원회」간 실무접촉(개성)

부산상공회의소장, APEC 상공회의소 총회(10.12~15, 부산) 초청 북 민경협위원장 앞 초청장 발송(판문점)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14차 시베리아횡단철도 국제운송협의회 총회(10.27~28, 서울) 북 철도 관계자 초청서한 발송(판문점)

10. 7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개성)

-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10개항) 채택

10.11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판문점)

북적, 방북중인 황선(31, 통일연대 대변인)의 딸 출산사실 통보(판문점)

북한올림픽위원회, 「제4차 동아시아경기대회」(10.29~11.6, 마카오) 남북공동입장 제안 대남서한(판문점)

10.12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인도·인수 서명식(日 야스쿠니 신사)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운여건 변화 반영한
북한산 모래반입 활성화 조치 시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선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 준공식
참가(10.12~15, 평양)

- 10.13 경추위 남측 위원장(박병원 재경부차관),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합의이행 촉구 대북 전통문 발송(판문점)

제4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입장 동의 대북서한 전
달(판문점)

- 10.14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北 사민당 교류사업 일환 방북
(10.14~15, 평양)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 공동준비단 제3차 실무접촉(개성)

제2차 개성공단 보험협상(개성)

북관대첩비 환수 실무접촉(10.25, 개성) 제의 전통문 발송
(판문점)

- 10.15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양 수지연필공장 개원식 참가
(10.15~18, 평양)

- 10.17 남북경추위 제11차회의 토의의제 및 대표단 명단교환(판문점)

국제기아대책기구 26명, 평양 정성수액제공장 및 수자원개
발사업장 모니터링차 방북(10.17~18, 평양)

제15차 국제적십자자연맹 총회(11.11 ~18, 서울) 참가 대남

전통문 접수(판문점)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워크숍(10.17~21, 북경) 남북
환경 관계자 참석

- 10.19 제11차 경추위 관련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10.19~20, 개성)
제2회 평양여자권투대회 참가차 선수단 및 방송관계자 69
명 방북(10.19~22, 평양)

환경부장관, 「서울이니셔티브 제2차 네트워크회의」 (11.1
0~11, 서울) 복측 초청서한 발송(판문점)

- 10.20 北 아태위, 현대아산의 김윤규 부회장 해임관련 현대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주장

- 10.21 北, 제4차 동아시아대회(10.29~11.6, 마카오) 기간중 남
북단일팀 구성위한 남북 체육인간 실무회담 개최제의
(판문점)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생사확인 회보서(200명) 및 화상
상봉 후보자(120명) 명단 교환

- 10.22 한국관광공사 주관 평양관광단 방북(10.22~25, 평양)

- 10.24 통일부, 北 연형묵 국방위부위원장 사망 관련 조문 대북조
치(판문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100명) 교환(판문점)

기상청장, 「제6차 겨울철 한·중·일 장기에보전문가 합동

회의」(11.16~17, 서울) 북측 관계자 초청서한 발송(판문점)

천태중, 北 조불련과 최종 실무협약에서 10.31 영통사 낙성식 및 11.1 개성참관에 합의

10.25 제11차 경추위 관련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

(10.19~20,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공동준비단 제4차 실무접촉(개성)

북측의 남북단일팀 구성 실무회담 개최동의 대북조치

(판문점)

방북기간중 출산한 황선(통일연대 대변인) 판문점 귀환

윤이상평화재단(신계륜 의원 등), 「제24차 평양 윤이상음악제」 참가(10.25~29, 평양)

통일부, 「남북협력사업에관한고시」·「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고시」·「남북회담대표단방북절차에관한훈령」 등 개정

10.26 대북식량차관 육로 수송분 10만톤 수송완료

통일부,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 고시」 개정

10.28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회의 개최(개성공단 협회사무소)

- 공동보도문 채택

- 10.30 「'06년 아시안게임 및 '08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 체육인 실무접촉(10.30~11.3, 중국 마카오)
- 10.31 경북도지사, 「2005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12.1~3, 경주)
북한측 초청서한 발송(판문점)

<11월>

11. 1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삼덕통상' 준공식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채택
11. 2 「북관대첩비 환수」 남북 민간급 실무협의(개성)
EU 상공회의소(EUCCK) 개성공단 시찰
인천시(김동기 행정부시장 등), 남포항 지원사업 협의 및
경제인 교류차 방북(11.2~5, 평양)
KT 주관 남북공동 정보통신 심포지엄(11.2~4, 금강산)
- 南 KT·정통부 등, 北 삼천리총회사·조선컴퓨터센터 등
참가
11. 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
보충 합의서' 최종 교환(판문점)
11. 5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진행(11.5~10, 금강산)

11. 7 개성공단 관리위한 북측 세무·회계인력(10명) 중국 연수
개시(11.7~12.20, 개성)
11. 9 제5차 6자회담 개최(11.9~11, 북경)
- 의장성명 채택
- 11.10 국제적십자자연맹총회(11.11~14, 서울) 북측대표단 방남
(11.10~19)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서
명·발효

현대(현정은)-아태(리종혁)간 개성접촉(11.10~11, 개성)
- 11.14 한국관광공사-북 아태간 실무접촉(개성)
- 11.15 개성공단 입주업체 「태성산업」 준공식
- 11.16 제2-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최종명단 교환(판문점)
- 11.17 북관대첩비 환국기념 「북관대첩비 맞이 국중대회」 개최

공준위, 을사늑약 100년 남북공동사진전(11.17~18) 개최

- 南 국회 헌정기념관 전시(80점), 北 평양 역사박물관 전시
(100점)
- 11.18 금강산관광 7주년 기념행사(11.18~20, 금강산)

EU 등 제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유엔총회 통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위원장 강만길), 개성 역사

-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
(11.18~21, 개성)
- 11.22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관련 제2차 실무접촉
(개성)
- 5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직원 근무 시작(개성)
- 11.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11.23~24, 개성)
오마이뉴스 평양 마라톤 개최(11.23~26, 평양)
北 「북관대첩비 되찾기 대책위원회」, 우리측 「북관대첩비환
수추진위원회」 앞으로 12.15 이전 碑를 北에 인도해 줄 것
을 요구
- 11.24 제2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11.24~25, 남 40가족, 북 39
가족)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11.24~26, 개성)
KT, 북 조선체신회사·개성총국과 통신망 개통 협의
- 11.25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남북실무접촉 개최(개성)
- 11.28 고구려연구재단, 남북공동학술회의 참가(11.28~30, 금강산)
- 11.29 광업진흥공사-北 국제민간평화협력추진협회간 광물자원 공

동개발 협의(11.29~12.3)

KT-北 조선체신회사간 연내 개성공단 통신개통 협의

KBS, 北 민화협에 역사극 비디오테이프 전달 판문점

<12월>

12. 1 민족문화작가회의,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 위한 접촉
(12.1~2, 개성)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관련 연락관 실무협의(판문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문창기업」 준공식(개성)

12. 3 제3차 화상상봉 추진 관련 명단 교환(판문점)

백두산지구 도로포장공사 현장답사(12.3~8, 백두산)

12. 6 제17차 장관급회담 제2차 연락관 실무협의(판문점)

12. 7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위한 남북체육회담(12.7, 개성)

12.8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12.8~9)

- 남측 40가족, 북측 40가족 상봉

제17차 장관급회담 제3차 연락관 실무협의(판문점)

12. 9 6.15공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 개최(12.9~10, 심양)

12.11 현대아산-北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 실무협의

(12.11~13, 금강산)

12.1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2.13~16, 제주)

- 9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철도공사, 北 삼천리총회사와 '06년 화차 임가공 계약체결

12.14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감귤·당근 대북지원 출항식

12.16 월드비전, 北 민족경제협력연합회측과 제5차 농업과학 심포
지움(12.16~19, 개성)

6.15민족공동위 청년학생본부, 北 청년학생분과위원측과 남
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개최(12.16~17, 개성)

12.23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사무소 개소식(개성)



2. 남북회담 합의서

- 남북차관급회담
-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 남북장관급회담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합의문 목록

□ 남북차관급회담

- 남북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5.19) / 207

□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 6.15 공동선언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05.5.28) / 208
-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05.7.22) / 213

□ 남북장관급회담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6.23) / 215
-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9.16) / 218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05.12.16) / 221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05.7.12) / 224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05.10.28) / 228
-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05.7.27) / 229
-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05.7.30) / 231
- 제5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05.8.10) / 233
-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05.11.3) / 235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05.8.19) / 238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05.7.19) / 240
-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05.10.7) / 243
- 8.15 남북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합의서('05.7.28) / 245
-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05.8.25) / 247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05.9.7) / 248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05.11.22) / 250

□ 남북차관급회담

남북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회담(차관급)이 2005년 5월 16일부터 19일 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올해에 온 겨레의 염원과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월 21일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5월 19일

개 성

□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대축전으로 함)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규모와 구성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남측은 대표단에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시킨다.

2. 행사일정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구체적 세부일정은 별지 첨부와 같이 한다.

② 남과 북은 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를 가진다.

3. 왕래절차

-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 직항로로 한다.
- ② 남측은 당국대표단의 명단을 방문 10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고,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4.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숙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5.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 - 평양간 직통전화와 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다.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 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한다.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김 응 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 전 종 수

행 사 일 정

□ 6월 14일 (화요일)

오후 서울 출발

개막식 참가

만찬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환영만찬

□ 6월 15일 (수요일)

오전 민족통일대회 참가

예술공연 관람

오찬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오후 당국대표단 공동행사

기념연회 참가

□ 6월 16일 (목요일)

오전 당국대표단 별도 참관

오찬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오후 폐막식 참가

만찬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답례만찬

□ 6월 17일 (금요일)

오전 평양 출발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2일 개성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
2.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3. 남과 북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
4.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22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 김 응 희

단장 전 종 수

□ 남북장관급회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남북사에 이룩된 성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0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

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앞으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중순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0.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1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2. 남과 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2월 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23일

서 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축전이 당국 대표단의 참가하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과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 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을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9월 16일

평 양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제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

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 남북 경제분야 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우선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쌍방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9월중에 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에 따라 9월초부터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구성·파견하여 개성공단 현지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전력, 통신, 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하며 이미 계획된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내고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각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분계역사 건설과 기술설비설치 작업 등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 안으로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8월중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며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 개통식을 한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한다.

6.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를 계기로 실현시키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한다.

7.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들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 교환하기로 한다

10.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과학기술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

11.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내에 새로 개설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과 이미 여러차례 합의한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 및 당국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문제들을 신속하게 지원 또는 협의 추진하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와 산하 실무접촉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개 성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과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의 원칙에서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한다.

① 공동어로 수역과 공동어로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② 공동어로에서의 어로기간, 어선 수 및 어구이용, 입어료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서해상의 정해지는 수역에서 쌍방의 어선이 아닌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수산물생산, 가공 및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

행해 나가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해 우량품종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를 진행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어장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 영 건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2005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하며, 남측은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을 본 합의서의 부록 1과 같이 제공한다.

제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의선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쌍방은 상대측 점검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의 부록 2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6 남과 북은 필요한 시기마다 쌍방이 합의하여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가지며, 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고,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5년 7월 30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 영 건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해운합의서 및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한다.

2.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월 15일부터 개시한다.

3.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관문점 선로를 통하여 8월 11일 연결하며 8월 12일부

터 운용을 시작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8월 14일까지 교환한다.

6. 남과 북은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하며,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 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앞으로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0일

문 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5월 28일에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남과 북은 외곽항로대 참조점에 ⑩-1(33-45-00N, 127-41-00E)과 ⑪-1(33-40-00N, 125-06-00E)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외곽항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참조점 ⑨ ~ ⑫ 구간은 ⑨ ~ ⑩ ~ ⑪ ~ ⑫를 연결한 선과 ⑨ ~ ⑩-1 ~ ⑪-1 ~ ⑫를 연결한 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참조점 ⑩-1과 ⑪-1을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1마일씩 2마일의 외곽항로대 폭을 설정한다.

4.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박운항허가 신청시 ⑨ ~ ⑫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항로대를 이용할지를 선박운항 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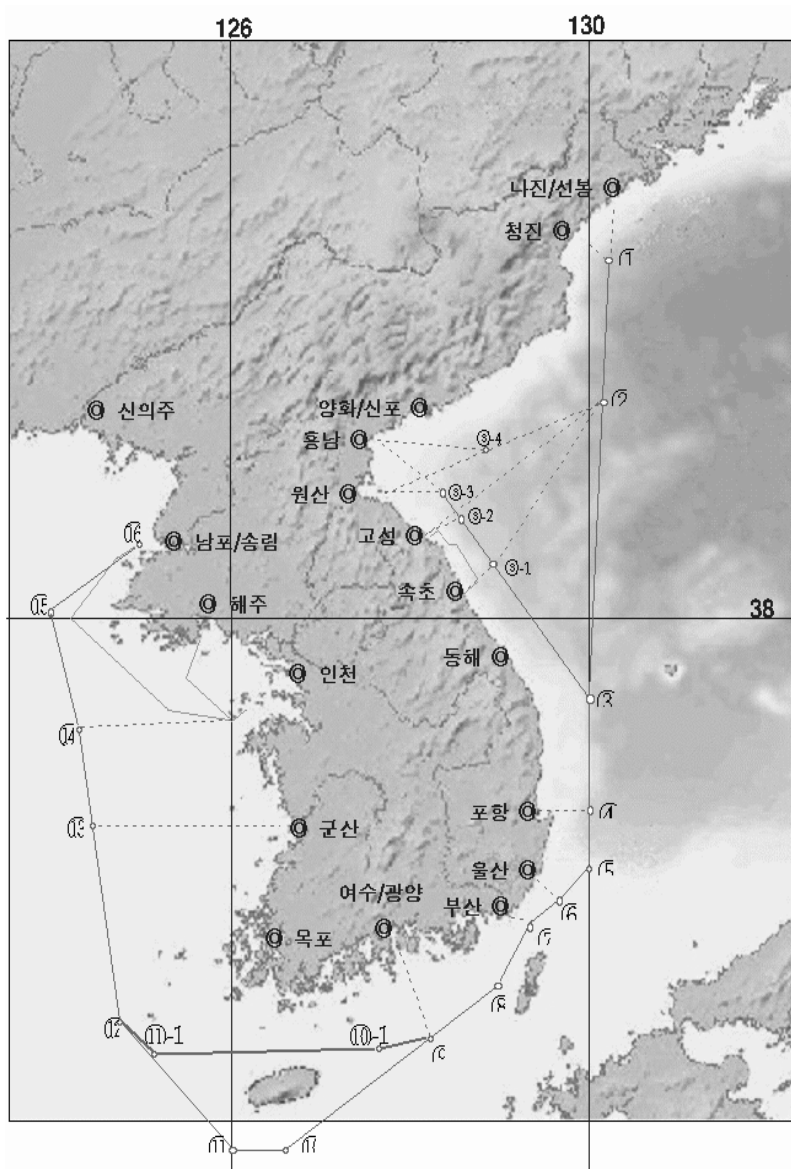
5. 이 수정·보충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1월 3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남상급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권호웅

남북 해상 항로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쌍방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농업협력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남측은 협력하는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북측은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한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축산, 과수, 채소, 잡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and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위에 명시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각각의 실무접촉을 가진다.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농림부 차관 이명수

북남농업협력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부상 문응조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 서 올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 규모를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만나는 상대측의 가족·친척은 5명 정도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후보자를 쌍방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에, 회보서는 7월 27일에,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을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

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 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6. 남과 북은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한다.

② 남과 북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하되 7월 20일전으로 각각 완료하며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을 진행한다.

③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을 진행한다.

⑤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남북 화상상봉을 위한 화상단말기 운용방법을 완성한다.

7. 남과 북은 8.15 시범화상상봉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1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북남적십자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정 승 훈

단 장 황 철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10월 5일과 7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올해에 두 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되 제1차 화상상봉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한다.

2.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규모를 가족 대 가족 상봉 원칙에서 남북 각기 40가족씩 정하며, 1가족당 상봉참가자 수는 2~5명 정도로 한다.

3. 제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 때에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으로 하고 그 최종명단은 11월 16일에 교환하며, 제2차 화상상봉 후보자는 쌍방 각기 120명씩으로 정하고 그 후보자 명단은 10월 21일에, 회보서는 11월 14일에, 최종 명단은 11월 16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상봉 때와 같이 정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을 교환할 때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상봉에 참가하는 가족명단은 성명, 성별, 나이, 가족 및 친척관계를 밝힌다.

5.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화상상봉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6.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7. 쌍방은 상봉시작 7일전에 화상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며 시험통화 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8. 기타 화상상봉과 관련한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의 전례에 따른다.
9.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0월 7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 승 훈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 장 황 철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절차 합의서

남측 축구협회와 북측 축구협회 대표들은 2005년 7월 26일과 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 사이의 통일축구경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경기 명칭은 『8.15 남북통일축구경기』로 한다.
2. 북측 선수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2005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한다.
3. 남자 축구경기는 8월 14일 『8.15 민족대축전』 개막식 때 하고, 여자 축구경기는 8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하며, 경기 응원은 공동으로 한다.
4. 선수단 명칭은 남측은 남측 선수단 북측은 북측 선수단으로 한다.
5. 북측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외 지원인원 8명, 남자 선수단 27명, 여자 선수단 26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으로 한다.
6. 북측 선수단의 왕래경로는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로 한다.

7. 선수 경기 복장에는 단일기와 함께 회사상표, 선수이름, 등번호를 새기며, 선수단복에는 단일기와 회사상표만 붙인다.
8. 경기의 주심과 선심은 남측 심판원들이 맡아서 한다.
9. 북측 선수단의 체류기간 필요한 모든 비용은 초청측인 남측이 부담한다.
10. 남측은 북측에 경기장과 평양 사이 직통전화 1회선 경기장과 8.15 민족대축전 북측 상황실 사이 직통전화 1회선을 보장한다.
11. 남과 북의 축구협회는 앞으로 축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5년 7월 28일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조중연

8.15 북남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 리히연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8월 25일

금 강 산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9월 7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해나가기로 한다.

2005년 9월 7일

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최 완 근

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 장 전 종 수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1월 22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제2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개 성

남북대화

제 72 호
('05.12 ~ '06.12)



- I. 2006년 남북대화 개관
- II. 남북 장관급회담
- III. 남북 군사분야회담
- IV. 남북 경제분야 회담
- V.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VI. 남북당국 공동행사
- VII. 기타

□ 부 록

- 남북관계 일지
- 남북회담 합의서



통일부

남북대화

제 72 호
('05.12 ~ '06.12)



통일부

목차

Contents

I. 2006년 남북대화 개관 / 7

II. 남북장관급 회담 / 11

1.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 13
2.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 20

III. 남북 군사분야 회담 / 27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 29
2. 제3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30
3.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 35
4.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 39

IV. 남북 경제분야 회담 / 41

1.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43
2.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45
3.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47
4.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제12차 회의 / 49
5.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56
6.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57
7.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 60
8.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62

V.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65

1.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 67
2.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 / 72
3. 대북수해복구 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74
4.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76
5.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 78
6.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 83

VI. 남북당국 공동행사 / 87

1. 6.15 남북공동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 89

VII. 기 타 / 95

1.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 97

부 록

1. 남북관계 일지 / 103
2. 남북회담 합의서 / 123



제1장

2006년 남북대화 개관



제1장

2006년 남북대화 개관

2006년도 남북대화는 참여정부 하반기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난해 6.17 면담이후 정상 복원된 남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남북관계의 여러 분야에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회담을 진행해 나갔다. 이에따라 상반기에만 총19회의 회담이 개최되어 정치·군사·경제·인도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진전이 있었다.

4월에 개최된 제18차 장관급회담(4. 21~24, 평양)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 과거청산·인도주의 문제의 실천, 남북협력의 저변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 및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남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한강하구 골재채취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호혜적 경협구조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 회담에서 북측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6월 방북동의'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5월중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을 위한 실무협의도 2차례 개최되었다.

군사분야에서는 2004년 2차 장성급군사회담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이 3. 2~3, 통일각에서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이 5. 16~18간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등 경협외 군사적 보장문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측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우선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회 및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 3회를 비롯하여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2회,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1회,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1회 등 총 8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상반기에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과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유기적으로 개최하여 그간 남북간 현안이었던 열차시험운행 일정을 확정(5. 25)하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도 사실상 타결시켰으나, 북측이 열차시험운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동 행사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6. 3~6, 제주)에서,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를 조건부로 타결하고, 한강하구 골재채취,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인 차원의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에도 노력하였다.

인도·사회분야에서는 제7차 남북적십자사회담과 이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과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실무접촉도 진행되었다.

한편, 하반기 들어 북한이 우리 및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 미사일 발사 단행(7.5)함으로써,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미사일 발사 직후 개최된 제19차 장관급회담(7. 11~13, 부산)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설득하였으나, 북한측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측의 대북지원 유보방침에 대한 불만으로 회담의 종결을 요구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당초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게 되었다. 또한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10.9)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회담의 소강국면이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한반도 주변 환경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간 판문점 및 군당국간 연락채널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남북간 상황관리에 주력하였고, 특히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실무접촉(8. 16, 금강산)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에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개최된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10. 2, 통일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11. 30~12.2, 카타르 도하) 등 남북간 대화와 접촉도 추진하였다. 한편, 미·중·북간 6자회담 재개 합의(10.31)이후 정세변화 속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남북회담 개최 현황(2006. 1~2006. 12)

분 야	회 담 명	일 자	장 소
정치분야 회담 (5)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4.21~4.24	평양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5.16~5.17	금강산
	6.15 공동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5.23	개성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5.29	개성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	7.11~7.13	부산
군사분야 회담 (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 3차 수석대표접촉	2.3	판문점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3.2~3.3	판문점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	5.16~5.18	판문점
	군사실무접촉 수석대표 접촉	10.2	판문점
경제 분야 회담 (8)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1.19~1.20	개성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27~2.28	개성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5.3~5.4	개성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5.11~5.12	개성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5.18~5.19	개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6.3~6.6	제주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 접촉	6.20~6.21	개성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6.26~6.27	개성
사회·문화 분야회담 (6)	제7차 남북적십자 회담	2.21~2.23	금강산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접촉	3.17~3.22	금강산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 접촉	3.20	개성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6.29	개성
	대북 수해복구 지원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8.19	금강산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11.30~12.2	카타르

제2장

남북장관급 회담



제2장

남북장관급 회담

1.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요

제18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2006년 3월 2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동 군사훈련이 끝난 후인 4월 6일 회담개최 의사를 통보해 왔고 이에 우리측이 동의함으로써 연기된지 20여일만인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 들어 열리는 첫 번째 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측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회담에 임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협사업 추진과 군사당국자 회담개최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을 제의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참관지 제한 및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소위 「근본문제」의 해결

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쌀, 비료 등 대북지원과 경험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대책 마련, 공동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실현 등 8개항에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중석(통일부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본부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맹경일(조평통서기국 부국장) 박진식(내각 참사) 전중수(조평통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4.22)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상호 호혜적 경험구조 구축, 인도주의 문제 해결 그리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의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므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서해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민족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경

제협력 구조와 남북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분단이 초래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북한측의 대범한 조치가 있으면 우리도 상응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미디어를 통한 상봉기회의 확대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여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들도 제시했다.

반면 북한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항의하고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외세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낡은 대결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나가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측은 정치, 군사, 경제분야에서 제도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즉,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중지, 제한 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6·15 6주년 행사에 남북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강탈 책동 저지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끝으로 남북장관급회담을 1년에 2회 정도 개최하고, 수시로 남북대표 접촉을 통해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19 공동성명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6자회담을 개

최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하고,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서해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제의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공동번영의 토대를 넓히기 위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험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

-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민족 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홍수 피해 완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추진 등을제안

○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올해 8.15부터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우편물 교환, 영상물 교환사업 등 일반 이산가족 교류의 대규모 실시등을 제안

○ 이외에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경제관리인력 양성과정 개설, 연구기관간 교류활성화, △남북 공동방재 협의체 구성, △비무장지대 청소년우주체험센터 설립 등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6.15 시대에 어긋나게 미측과 벌이는 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18차 상급회담을 앞둔 시점에 다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 비난
- 북과 남은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귀중히 여기고 하루속히 낡은 대결 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 나가야 할 것임
 - △6.15 6돌 계기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6.15 7돌을 맞는 2007년 1월부터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지역·업종·규모에서 제한 없는 투자와 경제협력 실현
-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기념하며, 금년 6.15 6돌 공동행사에 쌍방 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과 일본의 과거사 왜곡, 독도강탈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
- 북남상급회담을 1년에 2차례정도씩 개최하며 그 사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은 쌍방대표 접촉을 수시로 가지고 협의·해결

(2) 제2차 전체회의(4.24)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호혜적 경험 확대 및 인도적 문제해결 등 8개항의 합의 내용을 공동 보도문으로 채택했다.

회담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 존중, 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으나 수석대표 및 대표접촉 등을 통한 우리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남북공동의 이익이 되는 경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측이 철도·도로 연결 마무리와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 그리고 한강하구 골재 채취 등에 대한 협력과제를 제기한데 대해 북한측은 공감을 표시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회담초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하였으나 우리측의 집중적인 설득 결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한다는데 합의하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측은 납북자 김영남(메구미 남편)씨와 관련 우리측의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밖에 6·15 공동행사를 남북당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자연재해 보건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담기간 중 남북은 남북해운부속합의서 수정·보증합의서의 발효문본을 상호 교환했다.

〈 공동보도문 요지 〉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건설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7.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8. 제19차 장관급회담을 2006. 7. 11~14까지 부산에서 개최

2.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가. 개요

제19차 장관급회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회담이었다. 8개월째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7.5)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제19차 장관급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개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회담개최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결국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회담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회담 복귀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고, 이들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 및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강조하면서 참관지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근본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었다.

회담진행과정에서 쌍방 주장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결국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했던 회담일정(7. 11~14)보다 하루 앞당겨 조기 종결되었다. 비록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측의 명확한 답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 필요성에 대해 북한측에게 설명하는 등 상황타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종석(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맹경일(조평통서기국 부국장) 박진식(내각 참사) 전종수(조평통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7.12)

우리측은 먼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을 상세히 지적하였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 진전되고 있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던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일 추가 발사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태가 건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6자회담 복귀는 북측이 국제사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만약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 질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끝으로 지난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하여 우리 내부 문제와 관련된 북한측 인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의 고수·이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제시했던 의제를 중심으로한 기초발언을 내놓았다.

우선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를 제한 없이 방문할 것을 주장하며 8·15 평양통일대축전때 남측 대표단이 방문할 것을 제의했다.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보장을 위해 6·15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외세와 합동군사연습을 완전 중지할 것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선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군이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국가보안법 철폐, 식량제공,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협조를 요청했다.

쌍방 기초발언이 있는 후 우리측은 북한측의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전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누가 귀측에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측 국민들 중에는 선군정치가 남측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측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핵개발

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 전달
 - △진전되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지지하던 국내 여론 악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도전을 받게 되었음.
 - 유관국기들이 미사일 발사를 적극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임
 - 우리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 발사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무색케 하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움.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측에 지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 6자회담이 문제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틀이며, 북한측과 유관국기들의 이익에도 부합됨.
 - 6자회담 복귀는 국제사회와 건강한 협력관계 구축과 신뢰회복의 디딤돌이 됨.
 - 6자회담 복귀하면 금융문제 포함 북한측의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6자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 질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 지난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전후한 북한측 인사의 우리 내부 문제 관련 발언에 유감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북한측 기초발언 요지 〉

-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하는 제 반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고 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제의
 - 성지, 명소, 참관지 제한 철폐와 8·15 평양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 단방문
 - 6·15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을 기해 일체 외세와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 국가보안법 철폐
 - 식량 및 경공업원자재 제공 요청
 - 추석명절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 대면 상봉과 화상상봉

(2) 제2차 전체회의(7.13)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측의 “선군정치” 발언으로 회담분위기는 경색되었고, 잇따라 개최된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여러 사안들에 대한 쌍방의 대립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었다. 우리측은 미사일 위기관련 심각한 긴장 상태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측은 기초발언에서 제안한 4개 의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쌍방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북한측은 7월 13일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하여 우리측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지원의 연계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담의 조기 종결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조속 복귀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달한 상태에서 논의를 반복하기 보다는 회담을 종결하는 것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북한측의 제의를 받아 들여 회담을 조기 종결하였다.

제3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제3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2005. 12. 13~16)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2월 3일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단장 대리)
대 표	엄현성(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대령)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전창재(인민무력부 상좌)

회담에서 쌍방은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의제, 개최 일자,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담의 의제는 지난 2005. 11. 3 접촉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나, 회담장소와 개최일자에 있어 의견차이가 있었다. 회담장소와 관련하여 남북당국은 이미 제15차 장관급회담(2005.6.21-24)에서 백두산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현지

시설 등 여건문제를 이유로 백두산 개최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개최일자도 북한측 내부 정치일정과 대외정세 등을 고려하여 3월말에 개최하자고 주장 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회담장소 변경 제의는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수용하였으나, 회담 개최일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2월 중순 경으로 개최일자를 확정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쌍방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간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철도·도로 개통식 및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의 조속한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쌍방군사당국은 동 문제를 상호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가. 개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2.3, 판문점 통일각) 이후, 남북 쌍방 군사당국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3월 2일부터 3일까지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 9개월만에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한편 북한측은 2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를 기존 1성급(우리측: 준장, 북한측 : 소장)에서 2성급(우리측 : 소장, 북한측 : 중장)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의 본격 논의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군 당국자간 대화의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측의 제의를 수용,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부터는 2성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북한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록(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3.2 오전)

우리측은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조치들의 미흡한 점을 보완 차원에서 충돌방지 개선조치를 제시하고, 공동어로수역 설정 관련 우리측 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철도·도로를 이

용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문제와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협의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도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와 함께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서해상 우발충돌방지 조치 마련 및 군사분계선지역 선전수단 제거 등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수준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 뿐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우선, 서해해상에서 우발충돌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국제상선공통망 주파수 변경, △1일 정기시험통신 실시,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설치·운영 등의 개선조치를 제시함.
 - 공동어로수역은 남북 어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 남북관리구역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통행을 지원·보장하기 위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여

야 함.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을 위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국방부와 인민무력부간 직통전화 개설 등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 협의·추진해 나가야 함.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오늘 상정된 ‘조선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에 대하여’는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가장 큰 군사적 충돌위험을 안고있는 것이므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쌍방 군당국자들이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막고 북남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담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서해해상문제를 북과 남의 군당국이 주체가 되어 해결, △서해해상 충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서해해상문제를 하루빨리 공정하게 해결
-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함.
 - △민족의 공영·공리 도모, △통일조선의 영해기산선을 확정하고 새로운 서해영해권을 선포, △쌍방의 모든 주장들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 △내외가 공인하는 법적·제도적 요구 준수

○ 이러한 원칙과 립장에서 이번회담에서는 북남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 △서해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 △서해해상수역에서 민간선박들의 안전한 항해 보장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룩하여야 함.

(2) 제2차 전체회의(3.3 오후)

우리측은 1일차 회의에서 제기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조치 개선방안과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충돌방지 개선조치 문제도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공동어로 실시, 충돌방지 개선 등 서해상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간에 경의선·동해선 동시착공, 동시완성, 동시운행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직 동해선 일부구간, 역사 건설 등이 미진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공사들이 완료되어 상기 원칙이 충족되면 군사보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가. 개요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3. 2~3, 판문점 통일각)이 개최된 이후, 2개월이 지난 5월초 우리측이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회담개최를 수용함에 따라, 5. 16~18까지 3일간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쌍방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5.16 오전)

우리측은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5. 11~12, 개성)에서 5월 25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통

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3차 회담에서 제기한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남북이 관할하여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지난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와 같이, 서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협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로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제1·2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에서는 물론 비무장지대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6.15 정신에 걸맞게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진전 등 군사분야에서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함.
-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과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5월 25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먼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문제를 우선 타결해야 함.
 - 지난 회담에서 귀측이 제기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남북간 관할하여 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 존중·준수, △기본합의서상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등의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동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밝힘.
- 아울러 지난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서해 충돌방지 개선조치,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오늘 제3차 장령급회담에 이어 다시 ‘조선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에 대해 토의하게 됨.
- 지난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쌍방 사이에는 근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음.
- 우리측은 다시금 쌍방군 당국이 주체가 되어서 하루빨리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민족의 공영과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북남 쌍방의 서해 령해권을 호상 존중한다에 대한 원칙, 충돌을

일으키는 쌍방의 모든 주장들을 대범하게 포기한데 기초하여 내외가 공인하는 법적, 제도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원칙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함.

○ 지금 우리 앞에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가장 예민한 서해해상의 충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어로실현이라는 통일지향적인 중대사를 성사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온 민족의 지향과 직결된 이 과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비상한 책임성과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제2차 전체회의(5. 17 오전) 및 제3차 전체회의(5. 18, 오후)

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당국간에 합의한 열차시험운행 실시 일자(5. 25)가 목전에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담기간 중 또는 회담 종료 직후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장성급 회담에서 동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제의한 서해해상충돌방지 개선조치, 공동어로수역 실현문제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아울러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문제인 만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근본문제(해상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한 수용이 없으면 군사보장합의서 채택문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3차 전체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별도의 합의 없이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을 종료하였다.

4.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북한측이 9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간에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10월 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이 10월 2일 판문점 북한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단장 대리)
대 표	심용창(통일부 과장) 길강섭(국방부 대령)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회담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분

계선 일대에서 체제 비난 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휴대폰, GPS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근무초병에 대한 자극 등 통행질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오고 있으며 북한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측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이미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해서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보장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실시되지 못하였던 열차시험 운행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를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4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제4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1.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가. 개요

2005년 11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2005. 11. 23~24,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의제로 하여 개최되었으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북한측은 같은 해 12월 19일 전통문을 보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만큼 연내에 합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남과 북은 2차례의 문서협의 과정을 통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안)」을 조율하고, 2006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가졌다.

남북은 동 실무접촉에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의 규모와 상환방

식에 대해 상호 입장차이를 좁히기는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나. 진행 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4회, 수석대표 접촉 등을 가졌으며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기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조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자기측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을 좁혀나가기는 어려웠다.

이외에도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 △임진강 수해 방지 △수산협력 등 진행 중인 경협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군사적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남북은 쌍방간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필요시 추가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가. 개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북한측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한 협의를 수차례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동 사업을 전반적인 남북관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4월에 개최하기로 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남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는 5월 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자원개발 특구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 △개성공단 건설 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북한측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직후인 4월 2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보내 5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이 일정을 수정 제의하여 5월 3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 회담에서도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 본부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5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먼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타결하고, △열차시험운행을 비롯한 철도·도로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이전에 개최되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진 만큼 △한강하구 골재채취 △자원개발 특구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개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험 현안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와 관련,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 및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기존 입장(유무상통)을 유지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으며, 결국 동 실무 접촉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3.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가. 개요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개최된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2006. 5. 11~12,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는 그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열차시험운행을 2006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은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남북은 동 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 행사계획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및 장소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그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나. 진행 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 접촉 4회 등을 진행하고 그 동안 3차례 진행된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계속 쟁점이 되어온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 기념행사를 5월 25일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주빈은 장관급¹⁾으로 하고, 참석자 규모는 총 500명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역시 △제공규모 △상환방식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합의서 최종문안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는 5월말 또는 6월초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 경의선은 우리측은 통일부장관(이종석)이, 북한측은 장관급회담 북한측 단장(권호영)이 참석하고, 동해선은 우리측은 건설교통부 장관(추병직)이 북한측은 철도상(김용삼)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가. 개요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2006. 5. 11~12, 개성 남북경협 협의사무소)에서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이에 우리측은 5월 25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통문을 보내 북한측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 △열차시험운행 연기 관련 우리측 입장의 확고한 전달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동 회의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쌍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도 서명하였다.

〈 쌍방 위원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박병원(재경부 차관)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위 원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나도성(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원인희(건교부 수자원기획관) 강계두(기예처 행정재정기획단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경협 실장) 방강수(민경협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나. 진행 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위원장 접촉 2회, 위원접촉을 7회 진행하고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 열차시험운행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민족공동 자원개발 △개성공단 건설 등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무회담의 추진일정도 협의하였다.

북한측은 회담기간 내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으나, 열차시험운행 연기와 관련 우리측에게 △서해 NLL 문제에 호응하고 △상대방의 사상 및 체제모독을 중지하며 △군사적 보장을 위한 결실 있는 경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남과 북의 기초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연기된 열차시험 운영을 7.4 실시하고, 8.15 계기로 철도를 완전 개통할 것을 제의
-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
 -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8월부터 경공업 원자재가 귀측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
-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 「남북 한강하구 공동 사업단」을 구성, 7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현지조사 방법 △이익 배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군사당국간 협의도 진행
- 민족공동 자원개발특구 추진
 - 「민족공동 자원개발특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공동조사 △사업성 평가 △특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보장 문제 등을 협의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
 - △개성공단 출입제도의 간소화 △근로자 임금 직접지불제 도입 △공

단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열차 운행 △기반시설 건설 등에 적극 협력

○ 자연재해 공동방지를 위한 협력

- 「남북 자연재해 방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전 경보체제 구축
△산불방지 공동대응 △기상·황사관측 장비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함.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

- 6월 중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쌍방
간 단독조사 결과 검토 △공동조사 방법 △홍수에보체제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결

○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 7월 중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상에서의
수산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 합의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산분야 기술협력 문제 논의

○ 기타, △경제시찰단 상호 교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항공분야 협
력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기능활성화 등 제의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사업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위원급 실무
접촉에서 합의한 합의서에 수표하고 발효시켜 하루빨리 이행해야 함.

-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비료공장건설 △인정광생산 △축산분야 협력을 제안함.
- 개성공단 건설관련 1단계 입주기업들을 빨리 선정하고 공장을 건설하며, 2단계 개발사업에 앞서 노동력 보장을 위해 근로자 살림집과 편의 시설 건설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함.
- 제3국의 자원개발분야 공동 진출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석탄과 목재를 이용하기 위한 협력사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
- 이밖에 제도적 보장 문제(통행·세관통과절차 간소화, 상사중재위 구성, 원산지확인 세부규정합의), △수산협력문제, △민족공동자원개발 문제, △임진강하구 모래채취문제 등도 협의

무엇보다 제12차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열차시험은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은행 및 철도개통식 일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였고, 회담기간 내내 동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합의를 우선 채택, 발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열차시험은행 실시’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발효」를 조건부로 연계하여 최종 합의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6월 6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서를 서명·채택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도 최종 서명하였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요지 〉

1.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를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
2.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3. 제2차 개성공단 실무접촉(6. 20~21, 개성)을 개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및 숙소 문제 등 협의
4. 제1차 임진강 수방 실무접촉(6. 26~27, 개성)을 개최, 공동조사 방법 등 협의
5. 자연재해 공동 방지에 적극 협력,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6. 경제·자원개발 분야의 제3국 공동 진출 문제 협의(7월중 개성 실무접촉 개최)
7. '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 합의서' 발효 시점에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8. 문서교환방식으로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상사중재위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 및 회의 일정 협의
9. 9월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요지 〉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 북측은 지하 자원 생산물,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 경로 등은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2006년 중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슘크링카 등으로 상환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함.
4. 북측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영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링카 등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
6. 북측은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보장
7. 북측은 현지 공동조사, 투자효과성 평가, 시설설치와 기술지원, 기반시설,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영 등 보장
8. 남과 북은 합의서 발효 1개월 이내에 이행 기구를 지정하여 통보

5.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가. 개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 7. 9~12, 서울)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2003. 6. 7~9, 개성)남북경제협회의사무소를 통해 합의된 열차시험운행과 철도 및 도로개통식 문제 협의를 위해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200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문제 △추가 자재·장비 지원문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 징구 △시험운행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개통식 개최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남북경협회의사무소를 통하여 차기 접촉일자를 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경협2과장)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부원)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3회, 대표접촉 2회 등 6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은 이미 남북간에 수차례 합의한 사항인 만큼, 행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우리측에 자재장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해왔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개통식 개최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경협협회사무소를 통하여 차기 접촉일자를 정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6.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가. 개요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2006. 2. 27~28, 개성)남북경협협회사무소과 제3차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2006. 5. 3~4, 개성)남북경협협회사무소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남북은 200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

지 개성에서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 문제를 계속 협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그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열차시험운행 일정을 5월 25일로 확정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경협2과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부원)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김태이(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3회, 비공식 수석대표면담 1회 등 총 6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개통식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25 열차시험운행 실시 △6.14 철도·도로 개통식 개최 △철도·도로 운영 관련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 △철도·도로 자재장비 사용 내역서 통보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열차시험운행과 궤도검측차 운행 일정에 대해 우리측이 제시

한 5월 25일 안을 수용하는 등 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철도개통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위한 세부계획 △자재장비의 추가지원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였으며, 일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담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밤새워 협상을 진행하였다.

결국 쌍방은 '5.25 열차시험운행 실시'를 비롯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못한 세부 문제들은 추후 문서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요지 〉

-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 1에 따르며,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로 협의, 확정
-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전 1~2시간에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
-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① 남측은 북측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역사건축 마무리 및 개성역 배수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재를 본 합의서 부록 2와 같이 제공
제공된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 9. 19)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
 - ② 북측 철도연결구간에서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장비 기술지원이 계속 진행되도록 협력
 - ③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내 남측에 통보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영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MHz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MHz로 하기로 함.
 -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
 -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

7.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가. 개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2006. 6. 3~6, 제주)

합의에 따라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을 2006년 6월 26일부터 27일 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2005년 실시한 쌍방의 단독조사결과 검토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실시방안 △홍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세부대책 등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원인희(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고상복(기상수문국 부국장)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경협2과장)	김태이(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박정순(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나.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4회, 전문가접촉 1회, 대표접촉 2회 등 총 8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우리측은 △미진한 단독조사결과와 보완요구 △공동조사 실시계획의 협의·확정 및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홍수피해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임진강 유역댐 및 임남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 제도화 △황강댐·구룡댐 건설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홍수예보체계 수립과 산림조성사업이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대책의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고 산림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묘목제공 방안과 수량을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단독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공한 것이며 △공동조사는 군사적 보장조치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고 △홍수예보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측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 제도화에 대해서는 북한측 지역의 댐들이 모두 ‘무늬만 언제’ (수문이 없는 댐)들이므로 현재로서는 통보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이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제공과 양묘장 조성 협조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임진강 유역의 공동조사 실시에 대한 쌍방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웠다. 남북은 결국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8.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가. 개요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2006. 6. 3~6, 제주)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조

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2006년 6월20일부터 21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출입증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노동력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과 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며,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고경빈(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박철수(개성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대표	박 철(통일부 개발기획팀장) 서명교(건교부 주거환경팀장)	한명철(민화협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지도총국 3처장) 김태이(내각사무국)

나.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2회 등 총 3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통행·통관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시 외부로부터의 인력조달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편의시설 등의 건설문제를 남측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출입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연중 상시통행보장을 위해 양측 CIQ를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환전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통근열차 운행과 개성공단 방문 확대, 기반시설 건설 협조 등도 제기하였다. 북한측이 제시한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노력, 공동 해결 원칙’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향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

남과 북은 200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1일

개 성

제5장

남북인도 ·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5장

남북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가. 개요

우리측은 2005년 12월 16일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6년 1월 12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1월 16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북한측은 최성익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남북 양측은 1) 국군포로 및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2) 화상상봉·대면상봉행사의 정례화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확대 실시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화상상봉 실시 등 7개항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유종렬(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2.21)

남과 북은 2006년 2월 21일 오후 7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쌍방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 지원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도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의 우편물 교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적 실시,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사업의 본격적 실시문제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15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특별상봉과 6.15 및 8.15 계기 특별화상상봉을 제의하고,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의 폭넓은 해결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전쟁시기부터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생사· 주소를 확인했거나 상봉한 이산가족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매 주 1회 우편물교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매회 화상상봉의 상봉규모는 종전대로 하되, 그 횟수는 올해 4월부터 매월 2회씩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함.
- 아울러 지금까지 불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상봉행사도 면회소 완공이 전에는 연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올해 4월부터 이산가족 생사· 주소 확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고령 등 시급한 이산가족들을 중심으로 1만명 규모로 추진할 것을 제의함.

〈북한측 기초발언 요지〉

-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 계기 이산가족들의 금강산특별상봉을 진행하되, 규모를 지금까지 남북이 각각 100명씩 해오던 것을 200명씩으로 할 것을 제의함.

- 6.15 및 8.15 계기 이산가족 특별화상상봉을 진행하되, 지금까지 남북 이 각각 40가족씩 해 오던 것을 60가족으로 늘릴 것을 제의함.
-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의 폭넓은 해결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 요인인 보안법을 제거해야 함.

(2) 수석대표접촉(7회) 및 대표접촉(3회)

남북은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수시로 가지면서 인도적 문제와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을 활발히 하였다.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6차 적십자회담 및 장관급회담(제15차~제17차)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생사·주소확인사업을 빠른 시일내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의 설득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편물교환 및 생사주소확인 정례화 문제는 북측의 전제조건으로 인해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6.15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과 6.15 및 8.15 계기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설치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3) 제2차 전체회의(2.23)

남북은 회담기간중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7개항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을 채택·발효하였다.

〈 합의서 요지 〉

1.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으로 함).
2.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 진행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
4.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중 개최)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 발생

2.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

가. 개요

북한측은 2006년 3월 8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면서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접촉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지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측의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는 문제 등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당초 예정된 회담기간을 연장하여 3월 22일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이산가족사업 확대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구입비용 지원, 화상상봉센터 설비자재 지원 및 현장방문,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남북 쌍방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6월 13일 화상상봉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지원 등을 위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나. 진행경과

남북은 6일간의 회담기간을 통해 대표간 접촉을 수시로 가지면서 화상 상봉센터 준비 등을 위한 자재·장비지원 문제를 포함한 이산가족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이산가족사업 확대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구입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물품구입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화상상봉센터 설비자재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설비자재의 구체적 사용내역 확인과 더불어 우리측 인원의 현장방문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현장방문을 구두로 약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6.15 계기 상봉은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생사확인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 상봉하지 못하는 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수를 확대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고, 북측은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간에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로서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에 필요한 자재설비를 지원하는 만큼 5월부터 월 1회 화상상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사안 이 아니라고 대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3. 대북수해복구 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가. 개요

2006년 8월 14일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 지난 7월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수해 복구자재·장비, 응급구호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8월 1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006년 8월 1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대북수해복구 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북한측의 미사일발사(7.5) 이후 개최된 제19차 장관급 회담을 끝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문제 협의를 통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쌍방은 실무접촉에서 지원품목 및 규모, 전달시기, 전달경로, 우리측 인원의 분배 현장방문 문제 등의 현안문제를 협의하였고, 별도의 합의서 체결 없이 북한측의 피해상황에 대한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해 지원 물자가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임용훈(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황정무(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나. 진행경과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쌀 10만톤, 복구자재·장비 등 지원품목 및 규모에 대해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분배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분배지역 방문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당초 복구 후 방문을 주장하다가,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였다.

수해지원 시기와 전달경로와 관련해서는 북한측이 수해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쌀 등의 지원품목이 조속한 시일내 전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한 전달을 요청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북한의 수해규모, 지원 품목 및 규모, 전달시기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실무접촉결과 등을 토대로 북한측의 수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해복구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하고, 8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은 쌀 10만톤, 시멘트·철근·덤프트럭 등 복구자재 및 장비, 모포,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및 기타 의약품 등이었다.

대북 수해지원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 쌀(89,500톤), 시멘트(29,585톤), 철근(3,800톤), 트럭(50대), 굴삭기(50대), 페이로더(60대), 모포(2만장), 긴급구호세트(1만개), 의약품 등 약 522억원 상당이 전달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후 전달 예정이었던 물품에 대한 지원이 보류되었다.

4.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가. 개요

지난해 두차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05. 9. 7, '05. 11. 22)시 합의한 바대로 안중근 의사 순국기념일(3.26)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측은 2006년 3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공동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제3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북한측이 3월 1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3월 20일 개성에서 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일본 현지 조사 자료를 북한측에 전달하였으며, 안중근의사 유해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남북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제의하고, 조사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4월중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완근(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이성원(통일부 과장)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북한측에 1986년 중국 현지 답사시 확보한 자료 및 추가 확보 자료가 있으면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측은 2005년 11월 14일에 전달한 자료 외에는 더 이상 넘겨줄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5년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수집 조사단이 일본 현지에서 확보한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 관련 추가자료를 북측에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남북 공동조사단을 3월 중 구성, 판문점을 통해 명단을 교환하고 4월중 중국 현지답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자, 북한측은 공동조사단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의 사항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지답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4월중 제4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현 정세를 등을 이유로 실무접촉은 어렵다고 언급하며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을 제의하였다.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으나, 양측은 큰 틀에서 이견 없이 실무접촉의 의의 및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 보도자료 요지 〉

- 남과 북은 2006년 3월 2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제3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음.
-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남측이 제공한 일본현지조사 자료를 상호 검토한 후 위치확인을 위해서는 현지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하였음.
- 남과 북은 현지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 조사방법, 조사시기에 대해 4월중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또한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추가자료들을 정리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음.

5.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가. 개요

2006년 4월 13일 우리측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4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2006년 6월 16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6월 29일 개성에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회담을 제의, 우리측이 동의함으로써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박성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

단을, 북한측은 손광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안민석(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원(통일부 사회문화교류2팀장) 오영우(문광부 국제체육팀장)	정해만(내각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체육지도위) 정금철(민화협 참사) 이영국(조평통서기국 부원)

나. 진행경과

남과 북 양측은 기초발언문을 통해 상호입장을 제시하고 이견사항을 중심으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전체회의 3회, 실무 접촉 3회를 갖고 △선수단 명칭 △단기 △단가 △공동훈련 △공동위원회 설치 △단일팀 선포식 등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핵심사항인 선수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선수선발원칙에 대해 공개선발전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일반만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연맹 랭킹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집단경기(축구, 배구 등)는 선수선발전 없이 5:5 동수로 선발하고, 개별 및 기록경기는 자격경기전(예선전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한 남북 선수 모두를 참가시키는 이중적 선발원칙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경기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종목이 있음을 설명하고 5:5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있는 선발원칙”을 북측이 받아들일도록 설득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출전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과 자체 선수훈련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불가하다고 주장, 협의되지 못함으로써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는 각각 참가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이견을 보인 선수선발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담을 7월 중순 금강산에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마무리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 남북의 대표단이 시대적 소명과 남북체육사에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혜를 다하면 그토록 바라던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임.
- 선수선발은 전 종목에서 남북의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아 내보내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며 공개적인 선발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
- 선수단 단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맡으며, 본부 임원은 양측 선수 비율

에 따라 배분하고, 경기임원 종목별로 선발된 선수가 많은 측이 감독을, 적은 측에서 코치를 맡은 것이 합리적임.

- 대회 시작 2개월 전까지 단일팀 선수선발을 완료하고 그 전까지 적어도 5-6개월 동안 선수선발을 위한 합동훈련을 거쳐야 할 것임.
- 남북단일팀 구성과 참가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남북 공동추진기구 설치
- 선수단 관련 비용은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

〈 북한측 기초발언 요지 〉

-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는 체육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하나된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 민족의 기대를 자각하고 획기적인 방도들을 찾아냄으로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임.
- 북남유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원칙적 입장
 - 북남유일팀은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기여하는 원칙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북남유일팀은 북과 남이 동등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는 원칙

에서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북남유일팀은 철저히 쌍방이 호상존중과 협력 리해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임.

o 유일팀 구성방안은

- 유일팀 명칭은 우리말로 <코리아>, 영어로 <KOREA>, 약자는 <KOR>
- 유일팀 기발은 흰색바탕에 독도를 포기한 하늘색의 우리나라지도를 그려 넣은 것
- 유일팀 노래는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아리랑>
- 유일팀 선수는 집단경기종목에서는 선수선발경기를 하지 않고 북과 남에서 5:5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 및 개별종목들은 경기대회 참가자격을 받는데 따라 구성
- 공동훈련은 북과 남, 제3국에서 진행하며, 북과 남이 합의하여 훈련장소와 기간을 정함
- 유일팀 공동단장, 종목별 공동조장은 북과 남에서 각각 1명씩
- 유일팀 공동훈련 및 국제경기 참가와 관련한 비용문제는 북과 남이 합의하여 처리

〈 부 록 〉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공 동 보 도 문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2006년 6월 29일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의 근본 정신에 부합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단일팀 구성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앞으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번 회담을 7월 중순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9일

개 성

6.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가. 개요

2006년 11월 10일 북한측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5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카타르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해 왔다. 아울러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을 제의하면

서 실무문제들은 현지에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양측 수석대표를 NOC위원장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3차 체육회담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한측은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 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이성원(통일부 사회문화교류2팀장) 오영우(문광부 국제체육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내각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체육지도위)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 /이태 참가)

나. 진행경과

남과 북은 2006년 11월 29일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담일정에 합의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3차 체육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실무접촉 2회, 수석대표 수시 접촉 등을 통해 단일팀 구성의 핵심 쟁점사항인 선수선발 원칙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 선발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측은 경기력 우선 선발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우수선수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단일팀의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고, IOC 등 국제기구에서 엔트리를 확대할 경우 남북간에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기준이 부족하며, 남과 북 전체인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5대5 동수선발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적인 선수선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측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진전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최종 합의서 체결에는 응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대표간에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계속 협의하고 금년 내 제4차 체육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을 종결하였다.

한편, 전체회의 개최전 실무접촉을 갖고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단일기 독도표기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국제경기대회에서 통산 8번째로 공동 입장하였다.

제6장

남북당국 공동행사



제6장

남북당국 공동행사

1. 6.15 남북공동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가. 개요

2005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과 북의 당국이 최초로 참가한 데 이어,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06. 4. 21~24, 평양)에서는 2006년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과 북의 당국대표단이 적극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당국대표단의 구성과 행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실무접촉에는 우리측에서 김남중 통일부 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가, 북한측에서는 황철 내각사무국 과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하였다.

남북은 당국대표단 규모, 일정 등에 합의하고 구체적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중(통일부 과장)	황철(내각사무국 과장)
대 표	백원필(통일부 사무관) 김혜경(통일부 사무관)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리영국(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원)

나. 진행경과

쌍방은 네 차례의 회의를 갖고 쌍방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이날 협의는 남과 북의 민간 준비위원회간에 일정협약이 완결되지 못한 관계로 세부적인 일정 협의는 판문점을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대표단 구성과 기본적인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시켰다.

당국대표단의 구성과 관련, 우리측은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급을 단장으로 20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2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행사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국간 공동기념행사·당국자간 면담·당국자간 오만찬 등 당국간 별도행사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기본적으로 쌍방 당국이 이번 행사에 주역으로 참가할 것을 강조하면서 개폐막식·6.15공동선언실천민족통일대회·체육유희경기·예술공연·연회·참관 등 민간이 합의한 행사일정에 당국이 모두 참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국대표단의 광주체류기간·왕래수단·경로·숙식도 민간과 같이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국간 공동행사는 당국

대표단간 상봉모임을 갖고 간단한 연설을 교환하자는 것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모두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당국대표단의 규모, 일정 등 6개 항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일정협의를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남과 북은 판문점을 통해 일정협의를 진행하여 남북당국간 면담 및 오만찬 등 세부일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대표단의 구성 및 규모

-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전례를 감안하여 우리측은 장관급을 단장으로 대표, 자문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 체류일정 및 주요 행사내용

- 일정은 남북「공동위」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로 함.
- 행사내용과 관련 제18차 장관급회담시 합의한 바에 따라 민간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며, 전례대로 당국간 별도행사를 제의함.
 - 당국공동기념행사는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하며, 행사내용은 지난해와 유사

- 오·만찬은 통일부장관 주최 만찬 및 당국자간 공동오찬 등을 계획
- 당국자간 분야별 별도 면담도 검토
- 참관은 「공동위」의 합의내용에 따르되, 당국간 별도 참관도 검토

□ 숙소 및 편의보장 관련 사항

- 숙소는 귀측대표단의 안전과 격을 고려하여 민간대표단과 같은 장소 (무등파크호텔)로 하며, 편의보장은 최선을 다할 것임.

< 북한측 기초발언 요지 >

□ 북한측의 기본 원칙

- 쌍방당국이 6.15 공동선언발표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 쌍방 당국이 이번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민족적 화해와 대단합에 이바지하는 의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기여해야함.
- 쌍방 당국이 민간급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에 대해 적극 협조함.

□ 대표단의 규모와 일정 등

- 북측 당국대표단은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20명으로 구성할 것임.
- 북측 당국대표단의 체류기간, 왕래수단, 경로, 숙식은 민간대표단과 함

께 함.

- 행사일정은 민간급에서 합의한 개폐막식, 6.15공동선언실천민족통일대회,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과 참관 등의 행사에 당국대표단이 모두 참가하며, 쌍방 단장들이 개막식에서 축하연설을 함.
- 당국공동행사는 쌍방이 간단한 연설을 교환하는 것으로 함.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작년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함.
-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함.
-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기간 중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대표단간 공동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함.
-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름.

제7장

기 타



1.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가. 개요

2005년 8.15 남북공동행사시 북측 당국 대표단장으로 서울에 왔던 김기남 당비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6년 4월 중·하순경 방북희망의사를 표명하고, 이같은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북한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측은 방북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북시기를 6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20) 이에 대해 북한측이 4. 21~24,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6월중 방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방북절차와 관련된 실무협회가 2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리종혁(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대 표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최경환(김대중 전대통령 비서관) 천해성(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리 현 김창규 현창건

나. 진행경과

(1) 1차 실무접촉(5. 16~17, 금강산호텔)

동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금번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방북과 관련한 제반실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회 진행) 2차 실무접촉은 5.29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 실무접촉 결과 설명 내용 (5.17) 〉

- 방북 시기와 관련, 남북 양측은 6월하순, 3박 4일 일정으로 한다는데 의견 접근
 -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 편리한 날짜를 추후 협의·결정하기로 함.
- 왕래 경로와 관련, 우리측은 열차를 통한 방북을 희망한다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측은 여러 가지 준비 등을 이유로 직항로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으나,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방북단의 경우, 남북 양측은 특별수행원, 경호·의전·의료지원단, 정부지원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고, 구체적인 규모는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다음 실무접촉은 5.29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음.

(2) 2차 실무접촉(5.29, 개성 자남산 여관)

1차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5.29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평양방문을 위한 2차 실무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1차 접촉시 제기 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방북경로 및 방북단 규모 등 주요 쟁점사항을 타결하고 방북을 위한 세부 절차사항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 결과, 6.27부터 6.30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북 경로, 방북단 규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무접촉 결과 설명 내용 (5.29) 〉

- 방북일정을 6. 27~30까지 하기로 의견접근을 했으며, 방북경로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육로를 이용하여 방북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했으며, 철도가 될지, 승용차가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될지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하였음.
- 우리측은 방북단 규모로 90명선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답변을 얻지 못하여 다음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다음주 중 재접촉할 것이며 날짜는 차후 교환하기로 하였음.

한편, 2차 접촉 이후 6.14부터 광주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기간 중 우리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한측 관계자 사이에 동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측이 확답을 미룸으로써 쟁점 사항이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정세변화가 있었고, 김대중 전대통령측이 "돌출상황 때문에 지난 5월달에 합의했던 6월말 방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방북 연기 결정을 공식 발표(6.21)함에 따라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을 위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부 록

1. 남북관계일지

2. 남북회담합의서

- 남북장관급 회담
- 남북당국 공동행사 관련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남북관계일지

2005년

〈12월〉

- 12. 1
 - 민족문학작가회의,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위한 접촉 (12. 1~2, 개성)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관련 연락관 실무협의를(판문점)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문창기업」 준공식(개성)
- 12. 3
 - 제3차 화상상봉 추진 관련 명단 교환(판문점)
 - 백두산지구 도로포장공사 현장답사(12. 3~8, 백두산)
- 12. 6
 - 제17차 장관급회담 제2차 연락관 실무협의를(판문점)
- 12. 7
 -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위한 남북체육회담(12. 7 개성)
- 12. 8
 -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12. 8~9)
 - 우리측 40가족, 북한측 40가족 상봉
 - 제17차 장관급회담 제3차 연락관 실무협의를(판문점)
- 12. 9
 - 6.15공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대표자회의」 개최 (12. 9~10.심양)

- 12. 11 • 현대아산-북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 실무협의(12. 11~13, 금강산)
- 12. 13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12. 13~16, 제주)
 - 9개항 공동보도문 발표
- 12. 16 • 철도공사, 북 삼천리총회사와 2006년 화차 임가공 계약체결
- 12. 16 • 월드비전, 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측과 제5차 농업과학 심포지움(12. 16~19, 개성)
 - 6.15민족공동위 청년학생본부, 북 청년학생분과위원측과 남북 청년학생대표자회의 개최(12. 16~17, 개성)
- 12. 23 •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사무소 개소식(개성)

2006년

<1월>

- 1. 2 • 북한 신년사설 발표
 - '경제현대화', '민족공조' 강조
- 1. 3 • 통일부장관에 이종석 NSC 사무차장 내정
- 1. 5 • 남북합작 '경기-평양미' 첫 반입
- 1. 8 • KEDO 남측인력 北지역서 철수
- 1. 9 • 김원기 국회의장과 中 후진타오 주석 회담
 - 6차회담 재개 협력방안 등 논의
- 1. 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1.10~13)
- 1. 11 • 경상남도, 북과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 개성 자남성과 평양시 강남군에 벼 육묘공장 건설

- 1. 17 • 北 · 中 정상회담
- 1. 18 • 노대통령 신년사설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 · 시행
- 1. 19 • 韓 · 美 국방장관회담
•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美 국무장관 전략적 대화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1.19~20)
- 1. 20 • 한국관광공사 · 北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백두산 도로포장
추가지원 합의
- 1. 23 • 경의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 25 • 노무현 대통령, 신년 내 · 외신 기자회견
- 1. 27 • 동해선 도로출입사무소 개소
- 1. 29 •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컨테이너 인천항 첫 출항

<2월>

- 2. 1 • 김대중 전대통령 4월중 방북의사 북측에 전달
• 부시 美 대통령 국정연설,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비
민주국가”로 언급
- 2. 2 • 대북지원단체 ‘평화의 숲’ 금강산에 밤나무단지 조성
- 2. 3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 2월말~3월말 이틀간 남북장성급회담 통일각 개최 합의
- 2. 4 • 北 · 日 수교회담(2.4~8, 북경)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 일행, 북 관통 월드컵 열차운행 논의

차 방북(2.4~8)

- 2. 7 •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4명, 남북학술교류사업 협의차 방북
 - 남·북올림픽위원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동시입장 합의
- 2. 9 • 개성공업지구 신원 제1공장 주관 ‘기업투자설명회’ 개최
 - 북 조선적십자사 중앙위 위원장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45만톤 지원 요청
- 2. 10 • 이종석 통일부장관 취임
 - 방북 임채정 의원(열린우리당) 북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회동·환담
 - 한민족복지재단, 대북 급식지원 논의차 방북
- 2. 11 •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
- 2. 13 • 북관대첩비 3월1일 北 귀환 합의(개성)
 -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100명,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
- 2. 14 • 이종석 통일부장관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
 -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유엔사무총장 출마 선언
- 2. 15 • 이종석 통일부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출석 첫 업무보고
 - <통일노력 60년 -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출간
 - BDA, ‘북한과 거래중단’ 발표
- 2. 18 • 재외공관장 99명 개성공단 방문
- 2. 20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초당적 지지’ 모임 발족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6월로 연기
 - 6자회담 수석대표 천영우(외교부 외교정책실장) 임명
- 2. 21 • 제7차 적십자회담(2.21~23, 금강산)

-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 7개항 합의
- 2. 23 • 통일부, 課 폐지 57개 팀으로 조직 개편
- 2. 27 • 제4차 이산가족(80가족 575명) 화상상봉(2.27~28)
- 2. 28 • 북관대첩비 환송 告由祭
- 봄철용 비료 15만톤 대북지원 시작

<3월>

- 3. 1 • 북관대첩비 인도 · 인수식(개성)
 - 함경북도 김책시에 복원
- 3. 2 • 남북장성급회담(3.2~3, 판문점 자유의 집)
- 3. 3 •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전(춘천 의암실내빙상장)
- 3. 7 • 위폐관련 북 · 미 접촉(뉴욕)
- 3. 12 • 북한, 18차 남북장관급회담 4월중 일방 연기 통보
 - 한 · 미 군사합동훈련 유감 표명
- 3. 14 • 미, 북 위폐문제 관련 4개 제안 거부
- 3. 15 •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준공
 - 미 반대속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안 통과
- 3. 16 • 조지부시 美대통령, 북한 · 이란을 비롯 6개국을 '暴政' 으로 지목
- 3. 17 • 한반도 종단철도(TKR) 북 통과 건설기로 남 · 북 · 러 합의
- 3. 20 • 제13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3.20~25, 금강산)
 - 남 · 북, 안중근 의사 유해위치 공동조사 합의
 - 장성택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 경제사절단 30명 중국 방문
 - 경기도, '남북협력 북한농촌 현대화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

- 미 하원 더글러스 앤더슨(국제관계위원회 자문위원)과 주한 미 대사관 직원 개성공단 첫 방문
- 3. 22 • 3차 북한인권 국제대회(3.22~23, 벨기에 브뤼셀)
- 3. 23 • 노동부,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건립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 3. 27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30여명 개성공단 방문
- 3. 28 • 개성공단제품 인천항 첫 선적
- 정부, 북한의 영·유아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 약정서 체결
- 3. 30 • '산업계 민·관합동 개성공단 시찰단' 개성 방문
 - 180여개사 참가 '투자설명회' 개최

<4월>

- 4. 1 • (주)유한김벌리,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개최(개성)
- 4. 2 • 서울대 성광호 교수 등 남측과학자 26명 민족과학기술대회(평양) 참가차 방북
-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총회 개최(4.2~4, 서울코엑스 컨벤션센터)
 -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2006 도하아시아게임 및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방안 논의
- 4. 4 • 중 국방장관 차오강찬 방북
- 4. 5 • 남북적십자사 소속 청소년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 개최(금강산)
-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4.5~8, 중국 상하이)' 개최
 - 개성공단 생산제품 전시 소개

- 4. 6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6개국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시작
- 4. 7 • 북, 비료 30만톤 추가지원 요청
- 4. 10 • ‘동북아시아협력대회’ (4.10~11, 일본 동경) 개최
 - 6자회담 남·북·미 수석대표 참가
- 미얀마, 23년만에 북한과 국교 재개선언
- 4. 12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시아횡단철도망(TAR) 건설을 위한 정부간 협정 촉구’ 결의문 채택
- 4. 13 •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신설
 - 외교분야 분야 장관급, 고위인사 등 참여
- 4. 14 • 한국 노바티스,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을 통해 2억 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북에 기증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총회에서 62개 회원국과 지역대표 아시아횡단철도(TAR) 노선·일정 합의(11월 부산서 조인식)
- 4. 15 • 北, 군장성 37명 승진인사
- 4. 17 • 한·중 국방장관 회담
- 4. 18 • 한국경제연구소(KEI)와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주최 ‘개성공단토론회’ 개최(워싱턴)
- 4. 19 • 한민족복지재단 관계자 및 복토직파영농법개발자 박광효 교수(한국농업 학교) 등 8명 복토직파영농법 전수차 방북
- 4. 20 • 미·중 정상회담(워싱턴)
- 4. 21 • 제 18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4.21~24, 평양)
 - ‘남북은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하

기로 합의하는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

- 4. 26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남북인사 270여명 참석
- 4. 27 • 정병하 공안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6명 북한 개성공단 방문
- 4. 27 • 제 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북한에 대한 비료 20만톤 지원안’ 등 의결
- 4. 28 • 남북 첫 합작 정촌 흑연광산 준공
- 4. 28 • 한국국적 취득 북한군 장교출신 서재석에 대해 미국 법원 최초로 정치적 망명 허용
- 4. 30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북한 개성공단 방문
- 4. 30 • 제이 레프코위츠 美 대북 인권특사 “개성공단 노동착취 우려”, “개성공단 북 근로자 일당 받는지 의문” 등의 주장 담은 기고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게재(통일부, 美 인권특사 발언은 ‘내정간섭’, ‘개성공단 노동착취’는 ‘왜곡’이라고 반박)

<5월>

- 5. 1 • ‘서울-워싱턴 포럼’ 개최 (5.1~2, 세종연구소·브루킹스 연구소 공동주관)
- 5. 2 • 中, ‘6자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동’ 제안(교토통신 보도)
- 5. 3 • 이종석 통일부장관, 관훈클럽 토론회 참가
- 5. 4 • 북·중, ‘국경무역구’ 온성·투먼 접경지대 신설 합의
- 5. 5 • 美, ‘북한인권법’ 적용 탈북자 6명 첫 난민 수용
- 5. 9 • ‘제7차 북한 인권·탈북자 국제회의’ (5.9~11, 노르웨이)에 박

- 경서 인권대사와 김영석 駐노르웨이 대사 참석
- 북 인권 관련 NGO 국제회의에 정부대표 첫 공식 참석
 -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정부 고위관계자 40명 개성공단 방문
 - 노무현 대통령 몽골 방문중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때 “북의 융통성있는 기대”와 “북에 많은 양보할 것” 언급
 -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에 선임
 - 中, 압록강변 고구려 고분 2360기 발견
5. 10
- 통일부,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약
 - 개성공단 본단지 57만평 6월부터 단계별 분양 예정 설명
5. 11
-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식량지원 재개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
 - ‘제12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5.11~12, 개성) 개최
 - ‘경의선 열차 5월25일 시험운행’ 합의
5. 15
- 대북 추가 20만톤 비료지원 시작
 - 기업·정부부처 인사 72명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관
 - 코피 아난 UN사무총장 반기문 외교부장관 면담
5. 16
- 한-아세안 FTA 최종타결
 - 개성공단 생산 100개 품목 한국산 인정
 -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5.16~18,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5.16~17, 금강산)
5. 17
- 민단·조총련 반세기만의 만남
 - 민단·조총련, ‘화해·협력 6개항’ 공동성명
5. 19
- ‘제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5.18~19, 개성) 개최

- '5월 25일 열차시험운행 세부안', '운행전 양측 장관급 참석 공동행사' 등 합의
- 5. 22
 - AP 계열사 APTN 평양지국 설립
 - 서방언론 첫 北 상주
 -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선 평화체제, 후 핵포기' 주장(리비아식 해법 거부)
- 5. 24
 - 북, '군사보장 조치 미합의'와 '남측 정세 불안정' 이유로 '열차시험운행' 일방 취소
- 5. 27
 - 현정은 현대그룹회장과 전금렬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서기장 내금강 공동답사
- 5. 29
 -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2차 실무접촉(개성)
 - '6월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육로이용 평양방문' 합의
 - 5월 30일 예정된 南 언론인 200명 개성 방문 北 돌연 취소
- 5. 30
 - 북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월드컵 중계방송 한국방송위원회에 협조 요청
- 5. 31
 - 북한 신포 경수로 사업 공식종결 선포

<6월>

- 6. 1
 - 북 외무성,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평양 초청
- 6. 2
 - 캐서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개성공단 방문
- 6. 3
 -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3~5, 제주 롯데호텔) 개최

- 손학규 지사 등 경기도팀 100명 방북
 -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30만평 규모 농업협력장서 모내기
- 6. 4 • ‘금강산 가극단’ 첫 남한 단독공연
- 6. 5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북 해외송출 근로자 노동착취 의혹 제기
- 6. 6 • 中 대변인, 북·중 ‘황해 원유 공동개발’ 합의 발표
- 6. 7 • 자크 로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장 남북정상에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참가 요청 친서 전달
- 6. 8 • 北, 6.15 행사때 남북 김영남씨 모자 상봉 마련 통보
- 6. 10 •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 “한나라당 집권시 남북교류 파탄” 언급
- 6. 12 •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등 주한 외교관8명 개성공단 ‘현장체험’
- 6. 14 • ‘6.15 통일대축전’ (6.14~17) 광주서 개막
 - 북 대표단 148명 직항로 입국
- 6. 19 •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 (6.19~30, 금강산)
 - 반기문 외교부장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대화” 북에 촉구
- 6. 21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무기한 연기 발표
- 6. 22 • 굿네이버스, 북 남포 사료공장 준공
 - 개성공단 외국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6. 23 • 반기문 외교부장관 방중, 북 미사일문제 협의
 - 이명박 서울시장 개성공단 현지업체 방문
- 6. 28 • 김영남씨 모자 상봉
 - 中,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비공식 6자회담’ 제안

- 6. 29 •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파견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개성)

<7월>

- 7. 3 • 북,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연락장교 접촉제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의 ‘민화협’,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7.3~9.2) 합의
- 7. 4 • 북, ‘메구미’ 납치 논란 해명 위해 日 언론인 초청(7.4~8)
- 7. 6 • 북한 미사일 7기 발사
• 미·일, 북 제재 논의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
• 북 외무성, 미사일 발사 관련 공식 담화 발표
-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무관” 주장
- 7. 7 •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마카오 자금동결 해제 시 6자회담 복귀’ 시사
• 정부, 북미사일 발사 관련 ‘쌀·비료 제공 유보’, ‘장관급 회담 예정대로 개최’ 입장
- 7. 10 • 中 우다웨이 부부장 평양 방문
- 7. 11 •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예정 대로 개막
- 북대표단 하루 앞당겨 조기 귀환
- 7. 1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사일 수출 차단 대북 결의문’ 채택
- 7. 16 • G8 참가 각국 정상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및 핵 개발 계획포기’ 촉구
• 미 재무부 스텐턴 레비 차관 방한(7.16~18)

- 7. 18 • 남북피해자보상 관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7. 19 • 북 적십자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쌀·비료지원 중단 반발, 이산가족상봉 중단 및 금강산면회소 건설 중단 통보
- 7. 21 • 국내 은행관계자 개성공단 방문계획 취소
- 7. 22 • 中, 미영사관 진입 탈북자 3명 첫 난민 인정 미국행
- 7. 25 • 미 상원, ‘북한 비확산법안’ 통과
- 북한에 WMD 물자·기술 이전 땀 제재
- 7. 26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7.26~2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7. 28 • 북 주동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개성공단은 국제정세에 영향없이 안정적 추진되어야한다”고 언급

<8월>

- 8. 1 • 북, ‘8.15 민족대축전’ 수해로 취소 불가피 통보
- 8. 3 • 국제구호단체인 ‘한국 JTS’, 북 수해복구 첫 지원
• 한나라당, 정부에 북 수재민 지원 촉구
- 8. 7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북 수해로 844명 사망·실종 보도
- 8. 9 • 6.15 공동선언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대표: 백낙청)에 수해 복구지원 공식 요청
- 8. 10 • 여야 5당 북 수해 쌀지원' 동의
- 8. 11 • 정부, 북 수해 복구위해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100억원 제공
- 민간 100억원과 함께 200억원 규모 지원, 적십자사 통해 쌀·장비는

별도 제공

- 8. 18
 -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개성공단 생산품 FTA 협상 대상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북, WFP 식량지원 수용 의사 표명
 - 1만 3천여 주민의 30일분 밀가루와 식용유 150톤 전달
- 8. 19
 -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금강산)
 - 정부, 북에 쌀 10만톤 무상지원
- 8. 20
 - 북한 수해복구 쌀 10만톤 등 2,210억원 지원 발표
 - 임동옥 북 '통일전선부장' 사망
- 8. 21
 - 정부, 북 임동옥 통일전선부장 사망에 조건
- 8. 22
 - 북, 한·미 '을지연습' 비난 성명
- 8. 30
 - 美, 북 미사일 대비 MD(미사일방어) 실험
- 8. 31
 - 개성공단 출입 승인절차 간소화(출입신청 30일전→ 7일전)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남)·민족경제연합회(북), '남·북 수해구호 실무협약'(개성)
 - 밀가루, 의약품 등 지원합의

<9월>

- 9. 1
 - 영국계 투자전문회사 '고려아시아' 북 '대동신용은행' 인수
- 9. 6
 - 남북올림픽위원회 자크 로케 IOC 위원장 주재 3자 회동
- 9. 10
 -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북핵 포기 의장성명 채택 (9.10~11, 핀란드 헬싱키)
 - 북핵 대화해결 지지

- 9. 14 • 한·미 정상회담(워싱턴),
- 6자회담 복귀, 계좌 해제 등 일괄타결안 마련키로 하는 등 '대북 공동 포괄접근' 합의
- 9. 16 •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김영남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북제재 해제없이 북핵 6자회담 참가 불가" 천명
- 9. 20 • 국방부, 사거리 500Km 크루즈 미사일 '천룡' 10년 만에 개발 발표
- 9. 22 •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 무조건 6자회담 복귀 결의문' 채택
- 9. 23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개성 방문
- 9. 26 • 일본 아베 정권 출범
• 황해북도 개성시 덕암리 소재 남북 첫 합영회사인 '아리랑 태립석재공장' 준공식
• 북 최수현 외무부상 제16차 유엔총회 연설
- "금융제재 풀어야 6자회담 복귀" 주장
- 9. 27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치범 제재 철폐', '이주 자유 보장' 등 10개항 권고
• 한성열 유엔주재 북 차석대사 김명길 군축평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교체
- 9. 29 •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기업 개성코튼클럽(주) 남녀 내의 4만장 첫 출하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서울)
• 대한 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발간
- 9. 30 • 임정요인 후손 26명 첫 방북 성묘

<10월>

- 10. 1
 - 북 제의,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판문점 통일각)
 - 북 미사일 발사 및 19차 장관급회담 이후 당국간 첫 접촉
 -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남북통일말사전' 출간
- 10. 3
 - 미 하원,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법' 통과
- 10. 4
 - 북 외무성 핵실험 강행 성명 발표
- 10. 6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 핵실험 포기 촉구 의장 성명' 채택
- 10. 9
 - 한, 일 정상회담
 - '북핵경고', '한일 협조' 모색
 - 북 핵실험 강행 (9일 오전 10시 35경)
 - 박길연 북한 유엔대사 "북핵실험 미 적대정책에 대한 대응" 주장
- 10. 11
 - 북 외무성, "미압력 가중뎀 물리 대응" 담화 발표
 - 미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수정안 제출
- 10. 12
 - 中 탕자쉬안 국무위원, 북핵 중재위해 미.러에 특사 파견
 - 국회 북핵 규탄 결의문 채택
- 10. 13
 - 한중 정상회담 (베이징 인민대회당)
 - 효과적 대북제재 방식 집중 논의
 - 유엔안정보장이사회, '북한 핵실험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
- 10. 15
 - 정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관련 환영과 지지 성명
 - 금강산, 개성공단은 제재대상과 무관, 남북경협 지속 시사
- 10. 16
 - 미, 국가정보국 '북 핵실험 맞다' 공식 확인
- 10. 17
 - 북 외무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후 첫 반응 "미 동향 보며

조치 취할 것”

- 10. 18
 - 中, 탕자쉬안 특사 평양 방문
 -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정부보조금 중단 결정 (청와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 브리핑)
- 10. 19
 - 노무현 대통령, 라이스 미 국무차관 면담
- 10. 19
 -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10.19~20), 대북정책 조율
 - 한·미·일 외무장관 북 핵보유국으로 불인정 의견 일치
- 10. 20
 -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개최(미 워싱턴)
 - ‘핵우산 제공’ 공동성명 채택
 - 경의선·동해선 남측 기술지원팀 철수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개성공단 방문
- 10. 22
 - 中, 단둥-평양간 北 관광 중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공식 출범
- 10. 24
 - 中 외교부, “추가 핵실험 없다” 김정일 발언 공식 확인
 - 정부 소식통, ‘사정 1,000km’ 국산 크루즈 미사일 실전배치 확인
- 10. 25
 - 이종석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南 제재 가담 땀 비싼 대가 치를 것” 위협
- 10. 27
 - 외교부 차관, ‘한반도 수역서 PSI 불참’ 입장 발표
- 10. 2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후 북 선박 홍콩서 첫 해상 검색·억류
- 10. 30
 - 남북문인 ‘6.15 민족문화인협회’ 결성식(금강산)
 - EU 의원단 8명 개성공단 방문
- 10. 31
 - 북·미·중 이르면 11월중 6자회담 재개 합의

<11월>

- 11. 1 • 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관광 현물지급 불가” 경고
- 11. 2 •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북 민화협과 합작한 ‘대동강제약공장’, ‘삼석 닭공장’ 준공식(평양)
- 11. 3 • 北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민주노동당 방북단 면담에서 “핵은 자위수단이이지 南 겨냥 아니다”라고 언급
- 11. 5 • 번스(미 국무부 정무 및 군축담당 차관), 조지프(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등 포함한 대표단 6자회담 조율위해 日, 中, 韓 순방
- 11. 6 • 한완상 한국적십자사 총재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 제3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교통장관회의 개최(11.6~11, 부산 벅스코)
- 아시아 횡단철도 (TAR) 정부간 협정 조인식
- 11. 7 •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150명 개성공단 시찰단 파견
• 한·미 차관급 대화(서울)
- 번스(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조지프(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차관) 방한
- 11. 8 • 미, 립즈펠트 국방장관 경질
- 11. 9 • 독, 폴크스바겐 북 판매 중단
- ‘사치품 금수’ 유엔 제재 동참
- 11.13 • 정부, 대북제재 이행계획 발표
- ‘금강산 관광 정부지원 중단’, ‘PSI 정식참여 유보’ 등
- 11.14 • 日, 쇠고기, 차 등 24개 품목 33개 항목의 대북 수출금지 의결
- 11.16 • 북 인권결의안 정부 첫 찬성 투표

- 북 올림픽위원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및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 11.17 •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 11.18 • APEC 정상회담 참가중 한·미 정상, ‘핵 폐기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제공’에 의견 일치
 - 미, ‘핵 포기때 한국전 종료선언’ 제안
- 11.19 • APEC의장 ‘유엔 대북결의와 9.19성명 이행’ 촉구 구두성명
- 11.21 • 김계관 訪中, 북·중·미 3자회담
 - 미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차관 ‘한국-나토 협력’ 제안
- 11.22 • 정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북측 제의 수락
- 11.28 •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북경 회동
 - 러, 남북한에 철도회담 제의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 횡단철도(TKR) 연결논의
- 11.30 •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11.30~12.2, 카타르 도하)
 - 미 ‘대북 사치품 60여 품목 금수’ 공식 발표

<12월>

- 12. 1 • 민주당 소속 짐 맥더모트 미 하원의원 등 3명 개성공단 방문
- 12. 4 • 볼턴, 미 유엔대사 사임
- 12. 5 • 이종석 통일부장관 금강산 방문(12.5~6)
 - 정부, 국제 컨테이너 검색네트워크 ICSM 가입
- 12. 8 • 이종석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방문

- KEDO, 북 경수로 청산협약 승인
- 12.11 • 이재정 통일부장관 임명
- 12.14 •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파악차 방한(12.14~18)

2. 남북회담합의서

합의문 목록

남북장관급 회담

-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2006. 4. 24)

남북당국 공동행사 관련

- 남북당국 대표단의 6.15민족통일 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2006. 5. 23)

남북 경제분야 회담

-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2006. 5. 12)
- 남북 열차 시험운행 행사계획(2006. 5. 19)
-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2006. 6. 6)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2006. 6. 6)
-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6. 6. 21)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제7차 남북 적십자 회담 합의서(2006. 2. 23)

□ 남북장관급 회담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 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 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 양

□ 남북당국 공동행사 관련

남북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쌍방 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이 참가하여 대축전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촉진시키는 민족공동의 행사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번 행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해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명단은 행사 10일전에 교환한다.
3.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4.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 기간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의 상봉모임 등을 진행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계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5월 23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김 남 중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 측 대 표 단

단 장 황 철

□ 남북 경제분야 회담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제1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 1에 따르며,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 동해선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전 1-2시간에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① 남측은 북측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역사건축 마무리 및 개성역 배수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재를 본 합의서 부록 2와 같이 제공한다.

제공된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한다.

② 남과 북은 북측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 장비 기술지원이 계속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③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남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영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MHz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MHz로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006년 5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 병 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 이익의 견지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가지고,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필요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여, 단독조사 결과 검토와 공동조사 실시계획, 홍수예보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홍수, 산불, 황사 등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문제를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 일정,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명단 교환과 회의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6년 9월중 평양에서 진행하며, 날짜는 문서교환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2006년 6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슘, 크롬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 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 크롬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6.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 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7. 북측은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공동조사, 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도로·철도·항만·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

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

9.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0. 이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06년 6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1일

개 성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6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으로 한다.
2.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으로 한다.
3. 쌍방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야 한다.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하며, 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중에 가진다.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2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장석준	단장 최성익

남 북 대 화

제72호('05.12~'06.12)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 (02) 2076-1043 Fax : 2076-1230
<http://dialogue.unikorea.go.kr>

인쇄처 양동문화사 ☎ (02) 2272-1767
인쇄일 2006년 12월 19일
발행일 2006년 12월 22일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38-14

남북대화

제 73 호
(’07.1 ~ ’08.2)



- I. 2007년 남북대화 개관
- II. 2007 남북정상회담
- III. 남북총리회담
- IV. 남북장관급회담
- V. 남북 군사분야 회담
- VI. 남북 경제분야 회담
- VII.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부 록

- 남북관계일지
- 남북회담합의서



통일부

남북대화

제 73 호
(2007.1~2008.2)



통일부

목차

Contents

I. 2007년 남북대화 개관 / 7

II. 2007 남북정상회담 / 11

1. 남북정상회담관련 남북특사접촉 / 11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 12
3. 2007 남북정상회담 / 15

III. 남북총리회담 / 27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 28
2. 제1차 남북총리회담 / 29

IV. 남북장관급회담 / 39

1.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 39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 41
3.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 45

V. 남북 군사분야 회담 / 51

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52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7차) / 57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6차) / 66

VI. 남북 경제분야 회담 / 75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76
 -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접촉 / 76
 -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 78
 - 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 81
 - 라.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85
 - 마.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 87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 88
 -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88
 - 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 93
 - 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 97
 - 라. 개성공단건설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00
 - 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03
 - 바.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 105
 - 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07
 - 아.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111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 113
4.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 117
5.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 / 119

Ⅶ.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123

1. 남북적십자회담 / 124
 -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적십자실무접촉 / 124
 -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126
 - 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 129
2. 남북체육회담 / 132
 - 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 132
 - 나.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 / 133
 - 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 / 135
3. 북한 방역·방제지원 실무접촉 / 137
 - 가.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137
 - 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138
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 / 140
5.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 142

부 록

1. 남북관계 일지 / 147
2. 남북회담 합의서 / 155

제1장

2007년 남북대화 개관



제1장

2007년 남북대화 개관

2007년도 남북대화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55회 개최되었다. 이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연평균 회담개최 횟수(약 24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남북대화가 정치분야 13회, 군사분야 11회, 경제분야 22회, 인도분야 3회, 사회·문화분야 6회 등 남북관계 전 부문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된 점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도에도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비롯하여 군사분야 1회, 경제분야 3회, 사회문화분야 1회 등 2008년 2월 현재 총 5회의 남북대화가 개최되었다

2007년 상반기 남북대화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 추진하고 양자간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2006.7)와 핵실험(2006.10)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2007년 2월 「2.13합의」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이 시작되어 제20차,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 갔다.

하반기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기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한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총리회담으로 격상되는 새로운 회담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회담의제도 각 부문별로 다양화·구체화·전문화되었다.

정치분야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2.15)을 시작으로 7개월 간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고, 이후 개최된 제20차,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촉구, 경협사업의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분야별 추진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고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정상선언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군사분야에서는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제2차 남북국방 장관회담과 뒤이어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함으로써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분야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사업이 포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 등 부문별 8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한편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도 두 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및 실무접촉을 통하여 이산가족 상봉확대 실시 및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문제해결에 진전을 보였다. 또한 남북정상선언에서 백두산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응원단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등 새로운 협력사업들이 합의되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 사업들을 총괄할 협의체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도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협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화된 협상의제를 설정하여 논의와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한 단계 높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제2장

2007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장관급회담 등 주요 남북 접촉 계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의 의사를 지속 타진해 왔다. 이러던 중 2007년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고, 북한측은 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국정원장의 방북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8월 2일 방북하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협의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1. 남북정상회담관련 남북특사접촉(8.2~3, 8.4~5)

김만복 국정원장의 1차 방북시(8.2~3)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김만복 국정원장은 재차 방북(8.4~5)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8월 5일 쌍방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데 대해 합의하고, 국정원장과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화)~30일(목)까지 평양을 방문
-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내 개성에서 개최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가. 준비접촉(8.14)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8월 8일 공식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장관), 준비기획단 산하 사무처(처장: 통일부 차관)를 발족시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최승철(통일전선부 부부장)
대 표	김응희(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리 현(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전례를 준용하여 주요 쟁점을 신속히 협의하고 회담을 준비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 제반 절차문제들에 합의하였다.

〈 주요 합의내용 〉

- 대표단 규모 :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 회담의제 : 「8.5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협의
- 체류일정 : 참관 등 구체적 체류일정은 마련되는대로 북측이 전달
- 왕래절차 :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시 서해선 도로(개성경유) 이용
 - *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 선발대 파견 : 35명, 대표단 방북 7일 전 파견
- 편의보장·신변보장 :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 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나. 의전·경호·통신·보도 실무접촉(8.14, 8.16)

대통령 의전과 경호, 통신, 보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간 접촉이 8월 14일과 8월 16일에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의전분야는 대통령 방북에 따른 일정과 행사별 동선 등과 관련된 사항, 경호분야는 차량행렬과 숙소 및 행사장 경호 등에 관한 사항, 통신분야는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및 숙소 내 연락체계·무선통신망 구성 등과 관련한 사항, 보도분야는 생중계 문제, 행사장별 보도계획, 취재편의보장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두 차례 분야별 접촉 이후 미진한 부분, 현지답사가 필요한 부분 등은 문서교환방식이나 선발대 방북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을 부득이하게 10월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조정된 일정에 맞게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의전·경호·통신·보도에 따르는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선발대 파견(9.18~21, 9.27~10.1)

정상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8월 21일에서 8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정되었던 선발대 방북일정이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조정되었고, 1·2차로 나누어 선발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35명으로 구성된 1차 선발대(9.18~21)는 정상회담시 우리측 대표단이 이용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통해 방북하였다. 1차 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경의선 도로 이용 구간 점검, 참관지 및 행사장 답사 그리고 행사관련 세부 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1차 선발대 기간동안 남북은 의전·경호·보도·통신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가지며 대표단 숙소배치 문제, 평양 환영행사, 특별수행원 간담회 일정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다. 또한 1차 선발대는 서해갑문, 중앙역사 박물관, 백화원 영빈관, 목란관 등 정상회담 대표단이 참관할 시설 및 행사장 후보지를 답사하였다.

추석연휴 이후 방북한 2차 선발대(9.27~10.1)는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2차 선발대는 1차 선발대 활동시 점검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1차 선발대와 마찬가지로 남북은 분야별 실무접촉을 갖고 환영·만찬행사 특별수행원 간담회 등 주요 일정을 협의하고, 중앙식물원과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등 참관지들을 최종 점검하였다. 정상회담 개최 관련 모든 행사 준비를 마무리한 2차 선발대는 10월 2일 정상회담 대표단에 합류하였다.

3. 2007 남북정상회담(10.2~4)

가. 제1일차(10.2)

(1) 군사분계선(MDL) 도보 통과 및 평양 도착

분단 이래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하여 북한 땅을 밟은 노무현 대통령은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보행사를 마치고 탑승한 대통령 내외분과 대표단 일행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판문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서흥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환영행사는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승하여 무계차로 환영행사장으로 이동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4.25 문화회관」 앞에서 직접 영접하였으며, 인민군 의장대 동반 사열 및 분열을 받는 등 10여분간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2)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

정상회담 첫 일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수해관련 복구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상생을 위해 남북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3) 환영만찬(목란관)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로 목란관에서 환영만찬이 진행되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북남관계 발전은 6.15 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담보하고 있다”면서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임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하기에 따라서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만드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영부인 간담회

한편 영부인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박순희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측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남북 여성단체 교류 정례화, 교육문제, 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영부인은 여성·문화계 특별수행원 일부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였다.

나. 제2일차(10.3)

(1)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월 3일 오전 9시 30분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우리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기록)이, 북한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두차례에 걸쳐 총 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35분까지 두 시간 동안 제1차 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어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 제2차 회담이 진행되었다.

2박3일 동안 방북일정을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하였다.

〈 「2007 남북정상선언」 요지 〉

-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6.15 기념방안 강구
-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협의
-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3자 또는 4자 정상들 만나 종전 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
-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부총리급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투자 장려 및 특혜 부여,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문산~봉동 화물수송 개시, 통행·통신·통관의 제도적 보장,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등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분야 교류 협력, 백두산 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등
- 남북간 인도적 사업 협력
 - 이산가족 상봉확대,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재난발생시 협력 등
-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 총리회담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2) 분야별 특별수행원 간담회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북한측 관계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 정치분야 간담회(만수대의사당)

우리측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6명, 북한측에서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입법기관 및 정당간 교류가 타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남북국회회담 및 정당간 교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남북 정치인·국회가 「6.15 공동선언」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할 것을 주장하고 「6.15 공동선언일」을 민족 공동기념일로 제정·공포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 리 측(6명)	북 한 측(8명)
김원기(전 국회의장), 배기선(대통합민주신당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상(대통합민주신당 남북정상회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김낙성(국민중심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완수(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장),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주진구(민화협 부회장), 리경훈(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부장), 김지선(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박철룡(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과장), 림룡철(조명통 서기국참사)

(나) 대기업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6명이, 북한측은 한봉춘 내각참사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투자확대를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 개선과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반면, 북한측은 대기업의 전향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등 쌍방은 경험 확대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 리 측(6명)	북 한 측(6명)
정몽구(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LG 회장), 최태원(SK 회장), 윤종용(삼성전자 부회장), 이구택(포스코 회장),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한봉춘(내각 참사), 장우영(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 조현주(민경협 책임참사), 리 철(민경협 참사), 한인덕(민경협 참사), 계봉일(민경협 연구원)

(대) 업종별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등 12명, 북한측은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남북경협을 임가공 및 1차 산업에서 생산적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 리 측(12명)	북 한 측(10명)
김기문(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남상태(대우조선해양 회장), 경세호(한국석유산업연합회 회장), 이원걸(한국전력공사 사장), 이한호(대한공업진흥공사 사장), 이철(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재현(한국토지공사 사장), 권홍사(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연채(태광산업 회장), 이종구(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록(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승유(하나금융그룹 회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주동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량문범(건설건설공업성 국장), 김성일(전력공업성 국장), 류영수(수산성 국장), 김영철(무역은행 국장),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최인철(민화협 참사), 리경철(민경련 참사)

(라) 사회단체 · 언론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7명이, 북한측은 안경호 6.15북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당국차원의 「사회문화분과회의」 진전을 통한 교류확대를 제안한 반면, 북한측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기회의 확대,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언론 · 방송인간 상호 교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 리 측(7명)	북 한 측(8명)
한완상(대한적십자사 총재), 정세현(민화협 상임의장), 감상근(민주평 통자문회의 부의장), 장대환(한국신문협회 회장), 정연주(한국방송협회 회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정길(대한체육회 회장)	안경호(6.15북측위 위원장), 정덕기(민화협 부회장), 김금복(기자동맹 부위원장), 최성익(북한적십자회 부위원장), 조총환(6.15북측위 언론분과위 부위원장), 리경일(조선체육지도위원회 국장), 안홍식(민화협 과장), 김철은(기자동맹 과장)

(마) 문화·예술·학계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은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10명이, 북한측은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회를 통한 대화창구 단일화와 개성지역 내 문화단지 조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측은 우리말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며, 다양한 통일문화사업을 남북이 협력하여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 리 측(10명)	북 한 측(8명)
이세웅(예술의 전당 이사장), 조정래(작가), 안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성근(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 추진소위원회 위원), 신경림(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김근식(경남대학교 교수), 김용욱(세명대학교 석좌교수), 안병욱(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수훈(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리종혁(조국통일연구원 원장), 송국남(사회과학원 부원장), 장혜명(조선작가동맹중앙위 부위원장), 김석환(문화성 국장), 조희승(사회과학원 고려연구실 실장), 리영호(조선예술영화촬영소 단장) 최광일(조선작가동맹중앙위 과장), 립미화(사회과학원)

(바) 종교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에서 지 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등 4명이, 북한측에서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종교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상회담 합의이행 및 평화·통일을 위한 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북관대첩비 반환」 등 6.15 공동선언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반전평화운동 등을 강조하였다.

우 리 측(4명)	북 한 측(4명)
지 관(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장익(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원불교 교정원 원장)	유영선(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장지영(조선카톨릭협의회 중앙위 부위원장), 오경우(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서기장), 김영철(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 부원)

(사) 여성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

우리측에서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3명이, 북한측에서는 김경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우리측은 위안부 문제, 영유아 지원문제,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여성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고,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우 리 측(3명)	북 한 측(5명)
김화중(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김홍남(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김경옥(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서옥선(조선여성협회 상무위원), 정명순(중앙방송위 국장), 김인옥(6.15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 박영희(민화협 여성부장)

(3) 아리랑 공연 참관 및 답례만찬(인민문화궁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하여 우리측 대표단은 5.1경기장에서 오후 8시부터 진행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였고 이어서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측 주최로 진행된 답례만찬에 참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일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대해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만찬사를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걸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걸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다. 제3일차(10.4)

(1) 평화자동차공장 및 서해갑문 참관

대통령 내외를 포함하여 우리측 대표단은 10월 4일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시 45분 남포 서해갑문 기념탑에 도착, 서해갑문 건설과정을 담은 비디오물을 시청하며 북한측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했다.

(2) 서명식 및 환송오찬(백화원 영빈관)

양 정상은 전날(10.3) 채택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서명식 후 곧바로 김정일 위원장 주최 환송오찬이 진행되었다. 김영일 내각 총리는 건배사를 통해 선언문 채택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정상회담 개최 의의를 강조하고, 선언문 채택을 축하하였다.

(3) 남북공동 식수행사(평양 중앙식물원)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평양 중앙식물원에서 정상회담 개최 기념식수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한라산과 백두산 흙을 합토(合土)하고, 백록담과 천지의 물을 이용하여 우리측에서 가져간 소나무를 식수하였다.

(4)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 환영행사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하여 대표단 일부는 육로 귀환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입주기업들을 격려하였다. 개성공단 생산전시품을 시찰한 후 입주기업(신원)을 시찰하고 개성공단 현장에서 남북근로자 대상 격려 연설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를 개성공단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드는 주인공”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측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환영행사를 가졌으며, 정상회담 성과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제3장

남북총리회담



제3장

남북총리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 제501호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종합기획단」과 「이행사무처」를 두어 총리회담 대책과 협상전략을 준비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남북은 본회담 개최 전에 예비접촉(3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회담개최와 관련 전반적인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남과 북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정상선언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을 마련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과위원회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정상회담 → 총리회담 → 부총리급 회담(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장관급 회담(국방장관회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등으로 새로운 회담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10.26, 11.9, 11.11)

가. 개 요

우리측은 10월 19일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을 10월 26일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이 2007년 10월 26일 개최되었고, 이어 제2차(11.9) 및 제3차(11.11)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 표	홍윤식(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유형호(통일부 국장)	김정삼(내각사무국 참사) 박용일(아태위 참사)

나. 진행경과

당면한 총리회담 개최시기와 대표단의 구성, 왕래경로 등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다. 쌍방은 남북정상선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1차 예비접촉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어 제2차(11.9) 및 제3차 예비접촉(11.11)을 통해 절차문제를 매듭 짓고, 회담의제 등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결과 〉

-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총리회담 대표는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지원 인원은 40~50명으로 하되, 각기 편리한대로 구성
-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 회담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
-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를 이용
-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 문제는 남북 회담 전례를 준용

2.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가. 개 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쉐라톤위커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이행일정과 분야별 협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회담기간 중 정상선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의와 함께 각 분야별 사업방향과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간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북측도 남북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총리회담의 기본임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쌍방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박 3일 동안 전체회의를 2차례 진행하였고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면서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협의한 결과 8개조 49개항의 합의를 채택하고 종료하였다. 이와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덕수(국무총리)	김영일(내각총리)
대 표	이재정(통일부장관)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 오영호(산업자원부 차관) 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서 훈(국가정보원 3차장)	권호응(내각 책임참사) 백룡천(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건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정민(보건성 국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1.14)

우리측은 남북정상선언의 의의와 총리회담의 역할, 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이행방안 등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2007 남북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선언 실천을 위해 첫째,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 나가므로써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하며, 둘째,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셋째, 사회문화교류의 확대·발전을 도모하며, 넷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측은 기조발언 직후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별도로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지금까지의 어떠한 합의보다도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총리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공동이용, 조선협력사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등 정상선언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동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북한측은 남북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에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면서, 정상선언에 담긴 6.15를 기념하는 문제, 상호 내정 불간섭, 통일지향적 법·제도 정비 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 2007 남북정상선언 중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고 지속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체계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착실히 실천할 것을 강조
 - 군사적 보장조치 등은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며, 남북총리회담이 정상선언 이행의 중심 협의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첫째,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 촉진
 -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신·통행·통관 등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 개선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남북 공동이용 추진

- 조선협력을 남북 산업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고, 남북 경험의 범위를 자원개발, 농·수산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으로 확대·발전 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둘째,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경주
- 이산가족 면회소를 통해 상시적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산가족들간 우편물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
- 셋째,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 백두산관광과 서울~백두산간 직항로 개설과 경의선 열차를 통한 베이징올림픽응원과 관련해서도 세부적 문제를 조속히 협의 해결
- 넷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
- 해주경제특구 개발,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 진행
 -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경험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많은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본격 추진하고,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한 조선소 건설도 적극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화번영시대’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실현
- 개성공단과 관련 정상회담에서 3통 문제 해결과 문산-봉동간 화물수송 실시를 합의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
- 지하자원 개발, 농업, 수산, 보건,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
- 백두산 관광, 경의선 열차를 통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우리말 사전 공동편찬사업 등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정상화, 영상편지 시범교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협력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2) 종결회의(11.16)

쌍방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서 문안을 조율하고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쌍방 총리간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건의 부속 합의서(「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채택하였다.

우리측은 총리회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상호 결합, 선순환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통해 대결관념을 버리고 낡은 것의 도전을 과감히 극복하는 가운데 합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 통일지향적으로 발전
 -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필요한 절차 진행
 - 6.15 8주년 기념 공동행사에 당국과 민간이 참가
 - 국회회담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 활성화 적극 지원
 - 서해평화정착과 공동이익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
 -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개발 : 금년중 실무접촉·현지조사, '08년 사업계획 확정
 - '08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 해주직항로 : 12월중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 회의(부산) 통해 협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구성, 12월중 1차 회의(개성)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 '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 금년중 현지조사
 - 11.20~21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 11.28~29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도로협력분과위」와 「철도협력분과위」 구성·운영
 - 〈 조선협력단지 건설 〉
 - '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
 - 남포지역에 영남배수리공장 설비현대화, 기술협력, 선박블록공장 건설 추진
 -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등 법제문제 지속 협의
 -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구성, 12월 1차회의 개최
 - 〈 개성공단 건설 〉
 -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 '0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내 0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내 인터넷·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 * 12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 「경제공동위원회」 산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 '08년 상반기안 단천지구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금년중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 착수
-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 한의학 발전에 협력
-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협력
-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환경오염 방지 협력
-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 지하자원 개발 · 농업 · 보건의료 · 수산 · 환경보호 분야 분과위원회 구성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4~6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 교류 · 협력
-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구성
 -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 공동문화 행사 /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협력사업 추진
- 백두산 · 개성관광 적극협력, 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 12월중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 이용) 실무접촉 실시
- '08년 상반기중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2월중 기상협력 실무접촉 실시

-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 적극 추진
 - 12.7 금강산면회소 준공식, '08년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 11.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 협의

-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적극 지원

- 총리회담 6개월에 1회 개최, 제2차 남북총리회담 (2008상반기, 평양)

제4장

남북장관급회담



제4장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2000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6월까지 21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 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각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2.15)

가. 개 요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남북회담은 상당기간 중단 상태에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2007년 2월 12일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이 2월 13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2007년 2월 1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 표	유형호(통일부 국장)	전중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쌍방은 중단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우리측 기조발언 요지 》

- 장관급회담을 비롯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각종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
- 중단상태에 있는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되기를 기대
- 남북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협의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요청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쌍방 당국은 남북관계문제 해결에서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
- 거래의 염원에 부응하여 의미있는 결실을 내놓아 전반적인 남북관계 국면을 6.15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을 2007년 2월 15일 개성에서 진행
-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확인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27~3.2)

가. 개 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대화가 중단된지 7개월 만에 열린 회담인 점을 감안 남북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국제적인 흐름에 남북만이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동안 쌓아온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 복원과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설득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계기를 통해 「2.13합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인도주의사업 재개와 관련하여 화상상봉 실시 및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 등 우리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 문제들은 제8차 적십자회담(4.10~12, 금강산)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상반기 내 열차시험 운행 실시 등 6개항에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장관)	권호응(내각 책임참사)
대 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2.28)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2.13 합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도적사업의 신속한 재개, 상반기 중 열차시험운행 실시 및 열차 연내 개통,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제도화 기반 마련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지난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있는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 정기항로 운영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세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민족우선, 민족중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쌍방 당국이 민족대단합 실현에 앞장서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반통일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애들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러운 일
- 지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동 합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
 - 「2.13합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참가국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사항을 책임있게 분담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
- 남과 북이 한반도 정세변화의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
 -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 인도적 사업을 조속히 재개
 - 금년 상반기 내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에 철도 개통
 -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사업이 진척되도록 촉구
 - 남북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 미진한 사업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기초하여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안
 - 남북관계에서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대한 실천적인 조치를 이행

- 민족대단합 실현과 다방면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제도적 법률적 장치철폐, 금년6.15 및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당국 지원및 참가
-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쌍방 협력문제에 대해 토의
- 그동안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이번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며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

(2) 제2차 전체회의(3.2)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진행하여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 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 대축전에 적극 참가
-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
 - 제5차 화상상봉을 3.27~29,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쌍방 적십자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

-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 10일~12일간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
-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2007년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3월 14일~15일간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 진행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추진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7년 5월 29일~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3.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5.29~6.1)

가. 개 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제20차 회담 이후 정상화된 남북관계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간다는데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하였다. 이 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 부분개통,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 등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중시·민족우선 원칙 견지,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의 쌀차관 제공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측의 입장설명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쌀차관 제공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장관)	권호응(내각 책임참사)
대 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5.30)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즉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 부분개통,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그리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2.13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진행 중인 당국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미 합의된 협력사업을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여갈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해 나가기 위한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족중시·민족우선 원칙 견지, 국가보안법·합동군사훈련 등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중지, 3대 장벽 철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을 앞당길 것을 촉구
 -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남과 북,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노력요청

- 쌍방 군사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와 관련된 협의에 본격 착수
-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확대·발전시키는 노력 가속화
 -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본 단지 통신 공급, 출입절차 개선, 임금직불 문제 등 해결
 - 남북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에서 남북 철도연결구간의 단계적 개통 추진
-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제의
 - 민간차원에서 우선 실천 가능한 과제들의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
- 남북대회를 제도화하고 남북간 현안문제 등을 착실히 실천
 - 남북자·국군포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 채널과 병행하여 책임있는 당국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3가지 원칙을 제시
- 첫째, 민족중시, 민족우선 입장에서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 원칙 견지
- 둘째,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적 조치 이행
- 셋째, 회담에서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이미 합의한 대로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협의를 지향
 - 정치, 군사, 경제 분야의 3대 장벽 제거문제를 비롯 남북관계에서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결
 - 쌍방이 남북대결의 마지막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용단과 결단을 내릴 필요

(2) 수석대표 접촉(5.31) 및 제2차 전체회의(6.1)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2007.4.18~22)에서 합의한 쌀차관 제공문제와 북한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을 교환하였다.

쌀차관 제공과 관련한 남북간 입장차이로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회담진행 경과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
-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
 -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동 인식
-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

제5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제5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군당국간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총 6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고, 군사실무회담도 제17차에서 제31차까지 총 14차례 진행되는 등 20회의 각종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 7월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간 군사회담도 2006년 5월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 넘게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2007년 2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성사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면서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도 재개되었다.

2007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국방장관회담 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개최되었고,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서 등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가. 개 요

2007년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2007년) 11월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지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에서 11월 29일까지 평양 「송진각초대소」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협상채널을 마련하고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평화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방안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장수(국방부장관)	김일철(인민무력부 부장)
대 표	정승조(국방부 중장) 박찬봉(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허찬호(인민무력부 소장) 리인수(인민무력부 소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1.27)

우리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과 서해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평화수역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설명하면서, 서해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등 충돌방지를 위한 당면 개선조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개선,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등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를 조속 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남북 최고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전쟁시기 실종자 유해발굴 사업 공동추진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결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평화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서해해상에서의 불가침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양 정상간 합의한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과 북 군사당국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과 관련하여 민족의 공동번영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원칙에서 즉시적인 보장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쌍방 군사당국이 상호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뜻과 의제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
- 첫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
 - 쌍방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남북간 단계적 군축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
- 둘째, 서해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
 -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이를 평화수역으로 점차 확대하고, 남북 함대사간 직통전화 개설 등 신속한 의사소통수단 마련

- 셋째, 남북간 각종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발전되도록 적시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과관련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넷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쌍방 군사당국간 적극협력
 - 이를 위해 남북 최고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운영 등
-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군인문제와 전쟁시기 실종자 유해발굴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평화문제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는 문제로서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
 - 6.15 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
- 첫째, 쌍방 군당국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실제적인 조치를 추진
- 둘째, 쌍방 군당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셋째, 쌍방 군당국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정상들이 만나 증전을 선언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
- 넷째, 쌍방 군당국은 남북간의 여러가지 협력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잘 관리

(2) 제2차 전체회의(11.28) 및 종결회의(11.29)

북한측은 서해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주특구, 공동어로, 한강하구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현 NLL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공동어로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향후 평화수역으로 확대 발전하자고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선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총 7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키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신뢰보장 조치를 협의하기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제3차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2008년 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적대감 조성행위 금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철저히 준수
 -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및 상호 연락채널 확대
-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 해상경계선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
-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
 -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공동 골재채취구역 설정
 -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협력
 -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 추진
 - 전쟁시기의 실종자 유해발굴 추진대책을 협의·해결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추진
 -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
 - 서해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군사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 12.11 철도화물수송 개시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12월초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문제와 함께 군사보장 합의서 체결
 -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보장조치 마련
-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 2008년 제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서울), 군사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

2.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7차)

가.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8~11)

(1) 개 요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시 남북은 2006년 최중단계에서 무산된 남북열차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처음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서해에서의 공동어로문제와 서해해상경계선, 북한민간 선박의 해주직항 허용문제, 제주해협 통과문제, 북측지역에 살포된 전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쌍방은 회담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연장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와 총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대령) 김왕경(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5.8)

우리측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 및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 합의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 논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2007년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 이외에 제2차,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과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도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순서에 맞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회담의 주된 의제로서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매듭짓고, 둘째,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에 맞게 열차의 시험운행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하며, 셋째, 남북관리구역 통행질서 위반행위 등 이미 채택한 군사적 합의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오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
 -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 및 도로 통행의 군사 보장 합의를 채택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필요

- 지난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쌍방 당국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철도·도로가 개통될 수 있

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번에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 의서를 타결함으로써 열차시험운행은 물론, 남북관리구역의 철도·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 아울러 철도·도로 통행문제 이외에도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과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적극 지원하고협력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이번 회담에서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
 - 첫째, 상정된 회담의제로서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조속매듭
 - 둘째,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에 맞게 민족의 공영·공리를 도모 하고 통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
 - 셋째, 상호비방 중지 등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나) 제2차 전체회의(5.9) 및 종결회의(5.11)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군사분야 현안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으며, 5.17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채택하였다.

특히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쌍방 군사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공동어로 실현에 있어서도 서해 평화정착, 공영·공리 도모라는 추진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기 합의한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등과 관련 합의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쌍방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문제를 지속 협의
 -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공리 도모의 원칙에서 공동어로 실현
 -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 지속 협의
 - 서해상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해주항 직항로 통행문제 협의
- 남북 경제협력·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채택,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지속
 - 임진강 수방,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제6차 남북장성급회담을 7월 중 개최

나.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24~26)

(1) 개 요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7.7.16)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합의됨에 따라, 200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쌍방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승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길강섭(국방부 대령) 정진섭(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립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7.24)

우리측은 지난 5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고 이미 남북간 합의한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과 관련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해상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어로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가 정착되는데 따라 확대·실현해 나가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철도·도로 완전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인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공동어로구역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문제를 남북간 해운협력 차원에서 즉각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첫째,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돌방지 조치 이외에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 운영 등 구체적 개선조치에 대한 긍정적 호응을 촉구
- 둘째, 제5차 회담시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동어로수역을 설정
- 셋째, 남북경협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철도 ·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며,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도 시급히 마련
- 넷째,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기본입장은 명백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존중 · 준수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들을 전면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동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문제는 6.15 통일시대에 더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민족적 과제

○ 회담을 진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쌍방 군당국이 주체가 되어서해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촉구

- 낡은 시대,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그릇된 주장·견해 포기
- 서해해상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민족 모두가 공감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협약과 법적 요구를 지침으로 설정
- 충돌방지문제를 논의하면서 함선을 대화상대방의 영해에 들이밀어 긴장을 격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

(나) 제2차 전체회의(7.26) 및 종결회의(7.27)

우리측은 쌍방간 입장차이가 커서 의견절충이 어려운 사항보다는 서해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설치 등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의 근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선 논의할 것을 계속 강조하였다.

쌍방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도 북한측이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 및 공동어로문제가 우선 협의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쌍방은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2.12~14)

(1) 개 요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1일차 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 교류협력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서해해상에서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흥기(국방부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목(국방부대령) 이상철(국방부대령) 정진섭(국방부대령) 황봉연(통일부정치군사회담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12.12)

우리측은 통행문제와 관련 편도통행(방문, 복귀계획 분리통보) 방식 도입 등 통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통신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통신센터, 통신중계국 구성 등 실무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되,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무선 전화통신 허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비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시급히 도입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NLL 이남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남북간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NLL를 무력화하려는 것이고, 효과적인 어장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며, 제3국 불법조업 선박차단에 무용함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북한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평화수역을 우선 설정한 후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남북의 군사당국자들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합의에 대한 군사적 이행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
 - 첫째, 회담운영은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다음,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협의
 - 둘째,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 셋째,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협의·해결

- 쌍방 군사당국자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상호 합의·이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협의·해결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문제와 관련 통행시간을 늘이고 통신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보장하며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에서 3통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

- 남측의 북방한계선 기준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은 부당

-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서해해상에 존속되어온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마련

쌍방은 사전에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1일차 회담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을 보장
 -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
 -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나) 제2~제4차 전체회의(12.13) 및 종결회의(12.14)

우리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과 관련 북한측과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등 쌍방간에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NLL 남측으로 평화수역을 우선 설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공동보도문 등 합의서 체결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합의서 체결을 거부하였다.

결국 쌍방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더 이상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6차)

가.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6.8)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이행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6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실현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고, 철도·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의 조속한 채택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및 한강하구 골재채취관련 군사보장문제 협의를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넓은 수역에 걸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비무장수역으로 하여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해해상에서의 충돌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문제가 협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담은 북한측이 서해해상 경계선문제의 우선 해결, 공동어로구역 우선 설정 등을 고집함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정진섭(합동참모본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제29~31차) 황봉연(통일부 정치군사회담팀장) (제32~36차)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전창재(인민무력부 상좌)(제29~31차)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제32~34차)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제35~36차)

나.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7.10)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7월 10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제29차 회담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대북방송 등을 통해 남측이 대북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 비난하면서 심리전 방송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한강 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7.16)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이어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7월 1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경계선문제는 현 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합의서 군사분야 신뢰조치 합의사항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NLL 기준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는 것은 NLL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쌍방간 입장차이가 큰 사안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쌍방 의견절충이 용이한 합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서해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의 사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더 이상 실무급회담에서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회담 종결을 주장함에 따라 회담이 종료되었다.

라.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12)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절차, 의제 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11월 12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하며, 남측 대표단은 서해직항

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고, 회담일정은 1일차(전체회의-환영연회), 2일차(회의-참관-답례연회), 3일차(종결회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다만 남측 대표단 규모 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어 추후 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마.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0~21)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7년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측 대표단 규모는 3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신회선 구성문제 등 기타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회담의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불가침경계선 재설정문제와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동어로수역 설정방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및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국군포로문제 해결 및 실종자 유해발굴사업도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서해해상 불가침 문제가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주된 의제로 되어야 하며 동 문제가 우선 협의되는 조건 하에서 여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한 북한측 입장의 수용을 요청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문제는 이후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서로의 입장을 각기 돌아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바.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4)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회담의제와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위해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007년 11월 2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서로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리측은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서해해상경계선 문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쟁점사안과 추가적인 세부문안 협의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사.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12.5)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서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체결을 위한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2월 5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12월 11일 철도화물수송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군사보장 합의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북한측은 신속한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철도화물수송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판문역에서의 세관심사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8개 항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를 채택하였다.

동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가서명하였으며, 남북간 문서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측 국방부 장관과 북한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 주요 합의사항 〉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해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 개방
- 통과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 열차 현황 등을 상대측에 통보
- 열차는 최저 20km/h, 최고 60km/h로 운행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출입 및 세관심사 등 실시(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는 추후 협의)
- 열차운행구간에서 사진촬영 금지, 통제품·금지품 철저히 준수 등

아.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25)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관련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8년 1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북한측은 남북간 철도화물 열차 운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화물열차가 개통된 초기인 만큼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행하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당국회담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우리측은 열차운행방식과 관련된 사안을 관계당국에 충분히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장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6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제6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8년 2월 현재까지 경제분야에서는 총 72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 총괄협의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 처음 개최된 이래 참여정부 하에서도 9차례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철도·도로, 개성공단, 청산결제, 원산지, 수산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을 두고, 남북간 합의된 경협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참여정부 기간 경제분야 회담 개최현황 〉

분야	경추위/경공위/위원접촉	서해추진위	경협제도	철도·도로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환경	임진강수해방지	기타	합계
개최횟수	17	1	10	19	4	5	5	5	1	2	3	72

2007년 상반기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등 총 10회의 경제분야 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에 합의하여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추진되어온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분야에서도 2회의 당국간 실무협의와 2회의 이행기구간 협의를 통해 경공업 원자재 제공품목과 상환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유무상통의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비롯하여 농수산물,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등이 15회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회담은 회담의 급이 격상되고, 협의의제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농수산물, 조선 및 해운, 경제협력제도, 자원개발 등 8개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문제는 경제와 평화라는 두가지 의제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장관급의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한강하구, 공동어로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 경제분야 회담 개최현황 2007~2008.2 〉

분야	경추위/위원접촉	경협공동위	서해추진위	철도·도로	개성공단	경공업지하자원	조선·해운	농수산물	보건·환경	기타(중유/금강산)	합계
개최횟수	2	1	1	7	2	4	1	3	1	3	25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3.14~15)

(1) 개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은 2005년 11월 처음 개최된

이래 주로 협의의제의 사전조율을 위한 실무협의체로서 기능해왔다.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협의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은행 실시문제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열차시험은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고경빈(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직무대리) 성길영(통일부 국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 이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가 발효되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측이 열차시험은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시험은행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4.18~22)

(1) 개 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분야 총괄협의체 역할을 해오면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협사업과 청산결제, 원산지확인, 상사분쟁, 이종과세방지 등 4대 경협합의서 체결 등 남북간 경제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추진해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는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 까지 평양「고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쌀차관 제공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10개항의 「합의문」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와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진동수(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동찬(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홍재형(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오정규(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고통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상반기 중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열차시험운행 실시일정을 확정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

공과 함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병행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위원급 실무접촉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열차시험운행과 동시에 이행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경공업 원자재는 6월말부터 제공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쟁점사항을 타결하고 「합의문」과 함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와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감안, 북한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은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획득의 지름길
 -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남과 북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

- 5월 중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이어서 철도와 도로를 개통하여 정상 운영
 - 열차시험운행의 조속한 실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진행

- 통행·임금직불·통신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도모

-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 문제 및 이미 합의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문제를 협의
 - 경협물자의 육로운송 실시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자연재해 공동방지, 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등 협의 추진
 - 남북간 직선 항공로 이용과 정기노선 개설문제 협의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투자규모와 물자 반출입 제한 폐지, 개성공단 내 북한은행 지점설치를 통한자금결제의 원활을 도모
-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 공동진출 및 라진-선봉지구 원유화학공업기지 공동건설,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의 조속한 이행, 열차시험운행문제 등 협의
- 기타 비료공장 건설 및 남북간 논의되어온 상시중재위원회, 임진강 수해방지 등의 문제에 대한 협의 추진

〈 합의문 요지 〉

-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 모색
- 5.17 열차시험운행,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열차시험운행문제 협의를 위해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최(4.27~28)
 -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현지 공동조사 실시 및 필요한 자료 보장 협력
 -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5.2~4)
-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문제 협의를 위해 5월중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
- 제3국 공동진출관련 실무접촉 6월 중 개성 개최
-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5월초)
- 한강하구 골재채취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실무접촉 개최하여 추진
- 자연재해방지 및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중 개성에서 진행
 - 수산협력실무접촉, 상시중재위, 출입체류공동위 일정은 문서교환방식 협의 확정
-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쌀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경추위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 협의 확정

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1) 개 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유무상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7.9~12)에서 처음 합의되었으나, 원자재 품목 및 규격, 북한공장의 생산능력 등 실무문제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2006.6.3~6)에서 쌍방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어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를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가 채택되고,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이 진행되었다.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의 진행경과 〉

구 분	일 정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2007.5.2~4, 개성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2007.5.22~23, 개성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2007.6.7~8, 개성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2007.7.5~7.6, 개성

남과 북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섬유·신발·비누 등 품목별 원자재의 가격, 당해연도에 대가의 3%를 상환하는 문제, 지하자원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세부문제를 협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단 장	김응희(통일부 경협기획관)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¹⁾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가)
대 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김 민(산업자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장) 김병호(통일부 팀장) 이승배(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총괄지원부장) ²⁾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장주표(경공업성 방직관리국장) 리광순(경공업성 신발관리국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안승수(전 명지총회사 사장)

1) 제2차 이행기구 실무협의(7.5~6)시 교체참가

2) 제1차 이행기구 실무협의(6.7~8) 이후부터 참가

(2) 진행경과

(가)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5.2~4)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으로 하되 원자재 중 일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하고, 1항차는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실무협의에서 개발대상과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경공업 원자재 1항차 출항시기, 전문가 기술지원,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자료제공,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6월 27일 인천 ↔ 남포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
-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북한측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 북한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 6월 12일 이전에 제공
-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25~7.6 진행,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 남과 북은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하며,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나)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5.22~23)

남과 북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접촉을 개최하여,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협의의제는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납기, 원료대신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문제, 대가의 3%를 당해연도에 상환하는 문제,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2차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이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CIF기준으로 하고, 신발과 비누 등의 일부품목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3% 대가문제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2차 현지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 기준으로 하여 부대비용을 남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납기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㉔) 제1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를(6.7~8)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를 우리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간에 200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선 6월 27일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제1항차 단섬유 500톤에 대한 가격 절충을 시도하였다. 가격기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CIF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은 FOB기준으로 하고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쌍방은 가격기준에 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㉕)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를(7.5~6)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를 2007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재개되었다.

우리측은 5.17 남북열차시험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제반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자재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으로 하여금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비누와 신발 원자재를 반제품 또는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호응해왔다.

이에 따라 쌍방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품목을 일괄 타결하는 한편,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공동조사 일정과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는데 합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라.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4.27~28, 5.13~14)

(1) 개 요

남북철도·도로연결 협력사업은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후,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2002년 9월에 개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5차례 실무협의회와 14차례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남북철도·도로 연결문제를 협의해왔다.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2차례 개최되었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 기념행사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랑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2) 진행경과

(가) 제1차 회의(4.27~28)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

구하면서, 열차시험운행의 절차문제는 2006년도에 합의한 전례에 따라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적 보장조치는 군사회담에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문제는 군사보장조치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군사보장조치 이후 추가접촉을 개최하여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2차 회의(5.13~14)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8~11)에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제13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시험운행열차의 승차인원, 열차운행 방법, 시간계획 등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제반 절차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요지 〉

- 명칭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날짜 : 2007년 5월 17일
- 참가인원 : 남측에서 100명, 북한측에서 50명, 참가급 : 장관급
- 열차시험운행 시간 : 10:30~15:30,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 진행
- 시험운행 구간 :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 시험운행 방식 :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씩 연결
 - 경의선은 북한측 인원이 남측으로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이동
 - 동해선은 남측 인원이 북한측으로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이동

마.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6.12~13)

(1) 개 요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은 2002년 12월 처음 개최된 이후 통행·통신·통관·검역 등 개성공단 건설에 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당국간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3차 실무접촉은 개성공단건설 활성화와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2007.4.18~22)에 따라 2007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근로자 충원 문제,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 통행·통신·통관 절차 간소화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협력방안 등 실질 문제에 대한 토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협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설동근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조정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정준희 (통일부 지원총괄팀장) 이동언 (통일부 팀장)	한명철 (민족화해협의회경제담당 부원)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황명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김철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5회의 접촉을 가지고, 개성공단 건설 활성화를 위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 1단계 건설 내실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 적기 충원과 근로자 숙소건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통근 및 화물수송 열차운행 등을 제시하는 한편, 2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연내 착수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공단 건설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 관련 국무총리 발언, 우리측의 개성공단 지원법 등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하였다.

쌍방은 결국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합의문 채택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

(1) 개 요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분야 총괄 협의체가 기존의 차관급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 및 2단계 측량·지질조사 착수 등 총 10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권오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전승훈(내각 부총리)
위 원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용근(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유영학(보건복지부정책홍보관리실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이재균(해양수산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백룡천(내각 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철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우선 정상선언 합의이행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지하자원개발 협력,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확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추가적 협력과제로서 평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세계은행의 북한 경제인력 교육훈련사업,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중장기 남북경협발전계획 공동연구, 대북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분야 협력의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으나, 추가 협력과제들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대북투자환경 개선 등 추가 협력의제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상선언 합의의제들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분야별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10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북한측 비교우위 부문인 인력·지하자원을 활용하여 섬유·의류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단계적으로 전기·전자 및 중화학공업으로 발전
 -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북한측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KOTRA 평양 무역관설치
-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공동이용 협력, 북한측 경제인력 연수사업 실시 논의, 두만강개발계획(GT)을 통해 나진항 및 인근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협력 모색
 - 내년 중 경의선 철도를 이용한 여객·물자 수송, 동해선 철도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객 수송
- 개성공단의 활성화 조치로 통행은 금년내 편리한 시간대에 상시출입을 위한 조치 마련, 통관은 금년내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한 선별검사 전환 추진
- 농수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식량생산기반 복구에 협력, 농업 및 수산업력의 이행·발전을 위해 조속히 세부계획 마련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에 대한 개성공단 수준 투자여건 마련, 상시분쟁 해결절차 시행,통계기반 등 경제의 기초여건 정비, 남북경협의 제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험제도분과위 구성
- 북한측의 경제개발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되도록 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강화
- 남북의 연구기관이 중장기 경험발전계획의 공동연구에 착수, 경제시찰단 교환과 경제단체간 상호협의체 구성문제 논의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남북경제협력이 폭넓게 진행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필요한 분과위원회 구성 완비
 -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북남지하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와 청산결제 등 경협제도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북남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보충적으로 더 구성

- 각 분과위원회 회의 및 실무접촉 시기와 장소문제 협의 확정
 -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하순에, 민간선박들의 해주직항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은 12월 중순 개성에서 진행
 - 개성공업지구 통행, 통관, 통신문제와 근로자들의 숙소, 출퇴근도로 건설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12월 중순개성에서 진행
 -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도 12월중 개성에서 진행

- 경제협력대상들에 대한 현지조사시기를 협의 확정
 - 단천지구 광산투자를 위한 제3차 현지조사 및 안변·남포의 조선협력 지구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중순경에 진행,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조사도 12월 중순부터 시작

〈 합의서 요지 〉

-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의
 - 도로 협력분과위(2008.2.12~13, 개성) 및 철도 협력분과위(2008.1.22~23, 개성) 개최
-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의
 -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
 -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12.25~28, 부산) 개최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개성공단분과위(12.20~21, 개성) 개최
-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지하자원개발 분과위 구성, 2008년 1월 중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12.20~26)
-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해 현지조사 실시(12.21~25)
 - 북한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 우선 추진
 - 농수산협력분과위(12.14~15, 개성) 개최
-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추진
 - 환경보호 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2008년부터 추진
 -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12.20~21, 개성)
-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경협제도분과위」 구성 및 2008년 4월초 제1차 회의 개최(개성)
-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11.20~21)

(가) 개 요

남과 북은 제1차 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을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 문제, 개성~신의주 철도 현지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고 총 7개항의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 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황삼린(철도성)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여 점진적으로 남북간 열차운행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추진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남북간 열차운행을 위한 기술적 절차문제를 담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운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 대해서도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 국한시켜 적용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에 관한 세부절차를 담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일정 및 향후 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11월중에 교환,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
 -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 해결
-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 증대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
- 개성~신의주간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 진행
 - 2007년 12월 12일~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 진행,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 진행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1)

(가) 개 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호성 통일부 출입총괄팀장과 10명의 위원이, 북한측은 김철호 철도성 책임부원과 10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쌍방은 화물열차 운행횟수, 화물열차 편성, 화물 취급절차, 운임 등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정례적인 운행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회의록」으로 채택하였다.

(나) 회의결과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역과 판문역간에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왕복하고, 운행열차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으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남북열차운행사무소를 판문역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남북열차운행사무소간 철도전화를 설치하는 한편,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열차 또는 육로로 출퇴근 근무하기로 하였다.

화물운임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르되,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달러화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1.29~30)

(가) 개 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당초에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과의 일정협의 과정에서 1주일 늦추어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쌍방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정밀조사 실시,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열차이용을 위한 긴급보수,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방식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위 원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대석(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엄세룡(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류지상(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1차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2차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방식을 현실에 맞게 화물적재 화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하지는 입장을 제시하고, 열차화물 증대를 위해 북한측이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벌크화물 수송문제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정밀조사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 등을 우선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우리측이 제기한 문산~봉동간 열차화물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와 관련, 화물적재 화차만 운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여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1)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11.28~29)

(가) 개 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일정 및 방법,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제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대 표	유인상(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성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국(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와 관련한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지조사 일정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보수를 계기로 경험 및 인도적 지원물자의 수송, 남북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고속도로의 공동이용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개보수 공사를 2008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료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는 보다 상위의 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중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중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안으로 완공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남북 각 20명)를 2007년 12월 11일~27일까지 완료하고, 추가적 조사는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추진
 -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측량설비 등 보장, 북한측은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및 각종 편의 제공
 - 전반적인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공동작성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개최,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및 공동이용문제 등을 협의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2.12~13)

(가) 개 요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 추진 문제, 고속도로의 공동이용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영국(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팀장)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성일(국토환경보호성 부원)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백문길(민족화해협의회 실장)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보수 이후 구체적인 공동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고속도로의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를 우선 확정하고자 요구하면서, 공동이용 문제는 개보수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남북공동의 현지공동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정밀안전진단 계획, 개보수 방안과 공동이용 문제 등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 협의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회의를 빠른시일안에 개최

라. 개성공단건설협력분과위원회의 제1차 회의(12.20~21)

(1) 개 요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 등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 근로자 적기 충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용 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 7개조 10개항의 「합의서」 및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최보선(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위 원	이용석(정보통신부 협력기획팀장)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박문태(통일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윤승현(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2) 진행경과

우리측은 군사보장조치가 완료된 3통 문제 개선사항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이행시기를 확정할 것과, 북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 건설, 출퇴근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3통 문제는 군사당국간에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숙소 건설, 출퇴근도로 개보수, 물자하차장 건설 등의 의제에 대해서만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개성공단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는 중요한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
 - 2007년 10월 남북정상은 개성공단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3통문제 개선을 강조
 - 이번 분과위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의제에 대해 총리회담 및 경험 공동위,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첫번째 만남으로서 의의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3통문제 개선 구체화, 북한측 근로자 적기 총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 편의보장 등 조치 필요
- 개성공단 개발경험은 향후 추진될 조선협력단지와 해주경제특구 개발과정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므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개성공업지구 통행문제관련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조속히 협의·발효시킴으로서 출입증, 관광증, 거주등록증 등 출입체계를 수립
- 통신문제는 개성공업지구통신센터를 조속히 완공할 필요
- 야간통행과 통관에서 선택검사 실시를 위한 물질적 보강대책을 강구할 필요
- 제2단계 구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도로를 새롭게 만드는 문제도 매우 시급

○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숙소 건설을 조속 개시하는 것은 근로자 적기보장을 위한 관건적 대책

쌍방은 개성공단 3통 문제 이행문제와 근로자의 적기 충원 및 숙소 건설, 출퇴근용 도로 건설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합의서」 및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 보장
 - 일요일 통행시 48시간 전 통보, 쌍방 주요명절과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 통행시간 확대 및 야간통행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보장에 협력
 - 남북간 출입심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를 2008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
- 통신센터 완공,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
-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로 빠른 시일 안에 간소화, 물자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 북측근로자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1만 5천여명 규모의 숙소 착공(2008년 상반기)
-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진입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2008년 1월중)
 - 2008년 개성공단 근로자의 통근열차 운행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 2월중 개성 개최

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14~15)

(1) 개 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농업분야에서 △종자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동식물 검역체계 확립 등, 수산분야에서 △동해북측어장 입어 및 어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개발 △효율적 유통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총 6개조 8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박현출(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리만성(농업성 국장)
위 원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임송학(해양수산부남북수산협력팀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박인건(수산성 국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고창립(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전석조(농업성 과장)

(2) 진행경과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종자분야 협력을 위해서 우선 현지조사를 진행 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 하였다. 북한측 관심사항인 동식물 검역체계 수립 문제는 남북간 협력을 통 해 북한지역을 질병청정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조 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북간 검역합의서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요 구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동해 공동어로를 위한 조업수역과 입어료,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쌍방은 농업분야에서의 현지조사 추진, 검역체계 확립, 수산분야에서는 2008년 중 동해어장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 조속추진
 - 현지조사 : 12.21~25,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
 - 북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보장, 남측은 설비·물자 제공
 - 2008.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2008.3월중 개성에서 기술협의 개최
-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 협력 추진
 - 정보 상호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 치료약품 등 협력
 - 2008.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과수·채소·잡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중 북측 동해어장의 일정수역에서 남측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
 -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추진(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농수산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바.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11.5, 12.18)

(1) 개 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2005.8)에서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제1차 실무접촉(2007.11.5)에서는 양돈 시범협력사업에 대한 총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실무접촉(2007.12.18)에서는 양돈 시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총 7개항의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1차	수석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김영철(조국명화통일위원회서기국 참사)
	대 표 김경규(농림부 구조정책과장) 이동언(통일부 팀장)	김영희(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리학철(농업성 축산관리국)
2차	수석대표 배광복(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장)	전호현(농업성 축산관리국 사무장)
	대 표 이천일(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김영학(농업성 축산관리국) 림룡철(조선이태평화위원회 참사)

(2) 진행경과

(가) 제1차 실무접촉(11.5)

우리측은 남북농업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기하면서, 시범 양돈협력사업은 차관방식의 유상지원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육로수송이 필요함을 설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유상지원 방안 및 사료의 육로수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육로수송 문제는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

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육로수송 문제는 추후 이행기구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평양 강남군 일대 시범양돈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평양 강남군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시범 양돈협력 사업을 진행,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
 - 빠른 시일내에 총괄이행기구 지정, 상대측에 통보,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답사 실시
- 남측은 자재 및 장비·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지원, 차관합의서는 별도협의를 통해 체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쌍방 이행기구가 협의
 - 북한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 제공,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 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2007년 중 개성에서 개최

(나) 제2차 실무접촉(12.18)

한편 우리측이 2007년 11월 14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이행기구로 지정하여 북한측에 통보한 데 대해, 북한측은 「농업성 축산관리국」을 이행기구로 선정 통보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이행기구간 접촉을 조속히 진행하고 2008년 2월 중 착공식을 진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절차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행기구간 접촉은 준비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개최하자고 대응하였다.

제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신축 양돈장 규모를 부지면적 45,000㎡, 건물면적 11,000㎡ 내외로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이에

동의해왔다.

쌍방은 양돈장 시설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의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자재·장비 제공 합의서 요지 〉

-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한측에 연산 1천톤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30년, 이자율 연 1.0%
 - 차관 공여 및 상환은 「南 한국수출입은행 ↔ 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름.
-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설정
 - 수송비용은 육로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 남측이 부담하고, 그 외 북한측 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한측이 부담

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0~21)

(1) 개 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병원현대화·제약공장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사업,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협의하였다.

쌍방은 보건의료·산림·환경분야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을 담은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문창진(보건복지부 차관)	리봉훈(보건성 부상)
위 원	이재홍(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양창석(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윤영균(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 최상규(통일부국장)	김영철(국토환경보호성) 장준상(보건성 국장) 림춘철(국토환경보호성) 김영희(민족화해협의회 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병원현대화·제약공장 원료지원·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약속공장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 생태계보존·환경오염저감 등 환경협력사업, 양묘장 조성·산림녹화·병해충 공동방제 등 산림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중시,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환경, 산림분야에서의 관심사업들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우리민족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한 삶을위해 보건의료협력 활발히 추진
 - 도병원 현대화 및 도병원 중심으로 의료인력 교류병행, 제약공장에 대

한 원료제공, 전염병예방백신 제공, 말라리아 공동방역, 보건의료 협력 사업 현장조사 2008년 1월중 실시

○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대기오염 측정시설 시범설치, 농어촌지역 대상 마을상수도 시설 시범설치, 백두산·비무장지대·금강산-설악산 일대 생태조사, 한반도 생물지 발간사업, 철새 이동경로 조사, 남북경협사업 지역에 대한 환경생태영향평가
- 시범 양묘장사업, 상습 수해발생지역 대상 시범 녹화사업 추진, 공동방제사업 단계적 확대 등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철저히 구현, 민족공동의 평화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애국애족 사업으로 추진,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

○ 보건의료 협력사업 관련제안

- 진단·치료·과학연구설비 통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의 현대화와 건설, 고려의학부문 협력사업 강화, 심장전문병원 건설 적극 지원

○ 환경분야 협력사업 관련제안

- 백두산지구 화산 공동연구, 황사감시망 구축사업, 환경보호센터 건설, 양묘 및 조림능력 강화, 병해충 구제와 관련한 실제적 협력사업 진행

쌍방은 회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 환경·산림 2개의 부문별 접촉을 진행하면서 입장을 조율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접촉에서 우리측은 도병원 현대화·약솜공장·전염병 공동방제사업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심장병원 지원, 주사기

공장·제약공장 건설 등 보건의료 장비 협력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산림분야 접촉에서 쌍방은 양묘장·산림녹화·병해충 방제 등 산림분야 사업에 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고, 환경분야 협력사업 가운데 관심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백두산화산 공동연구·황사피해 등 대기오염 피해방지 사업·한반도 생물지 사업·환경보호센터 사업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에 합의하고, 이번 회담에서 제기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차기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4개조 10개항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에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사업 시범 진행, 도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 착수,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
 -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냉장운반장치, 진단시약, 치료제 등을 지원하고 전염병 공동퇴치를 위해 노력
 -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 사업기간 중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 보장
-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공동연구사업 추진, 2008.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황사 및 대기오염 피해 축소를 위해 2008년 중 평양에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설치, 그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환경보호센터·한반도 생물지 사업 중요성 인식, 2008년 4월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 2008년 3월중 공동조사 실시
- 산림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방역을 실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개최
- 제2차 회의는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사무소에서 개최

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5~28)

(1) 개 요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조선분야에서는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출입·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문제 등에 대해, 해운분야에서는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 통행질서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최명락(산업자정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위 원	김우철(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장) 김충환(통일부 교역물류팀장) 허진봉(국무조정실 과장)	맹인섭(육해운성 조선국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리상덕(육해운성)

(2) 진행경과

조선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조선협력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선협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에 조선협력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과 전력·용수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문제는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해운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이미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에 따른 통항질서 준수문제를 강조하고, 장거리 직접 통신문제와 해난구조 기관간 직통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해주직항로 통과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측의 통항절차 준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제3국 경우 북한선박의 남북항로대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였지만,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 일정과 차기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 진행, 앞으로 계속 협의
-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개최
-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를 각기 실무접촉에서 계속 협의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12.28~29)

가. 개 요

남과 북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서해지역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1차 총리회담(2007.11.14~16, 서울)에서는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중에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백종천(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박승남(국토환경보호상)
위 원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영과(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진 흥(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박상규(건설교통부건설선진화본부장) 김춘선(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정순(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일영(수산성 국장) 강종관(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기사장) 김광운(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임통철(조국명화통일위원회 참사)

나. 진행경과

(1) 예비접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예비접촉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기간 중인 2007년 12월 4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서해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정, 대표단 구성 등 제반 실무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촉박한 준비일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부족 등으로 실무적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전해 오에 따라 예비접촉은 주로 우리측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방향과 현지 조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측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북한측이 현지조사 인원, 왕래 경로, 조사 항목, 측량장비 목록 등 현지조사 구상을 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와, 우리측은 현지조사계획을 12월 5일 전달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고경빈(통일부정책홍보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 표	이동욱(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 손명선(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장) 이안호(해양수산부 남북협력총괄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용일(조국명회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김광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현지조사 후 시범단지 조성구분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설명하면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경제지대 개발전망을 제시하자, 북한측은 1단계에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개발방안에 동의하나, 2단계 이후에는 해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고 요청하였다.

해주항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2008년에 기존부두를 개보수하고, 개성공단 등 물동량에 따라 다목적 부두, 잡화부두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북한측은 해주항 개보수 방법과 절차, 수로준설, 항만신축방안 등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동어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군사당국간 협의와 병행하여 상호 이견이 적은 백령도 북서어장부터 공동어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군사회담에서 구역설정 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강하구 공동이용관련, 우리측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경제적·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골재채취, 관광 및 생태보존을 위한 다목적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평화수역 설정 후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측이 제의한 예비 육안조사는 불필요하며 부존량 조사를 바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사실상 합의된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를 이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별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서해를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여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번영의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
 - 투자환경 개선 및 정보·자본의 흐름을 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면서 교류협력 적극 추진
- 해주를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개성공단과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육성
 - 해주항은 해주특구 개발과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
- 서해어장을 공동 활용하여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어로구역 등 서해 접경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여 평화적으로 관리
- 한강하구는 골재채취를 비롯하여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 북한측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를 이용함으로써 항로대를 단축하고, 남북 간 물류이동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 서로 협력하여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가꾸고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앞당길 것을 제의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서해지역의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특기할만한 조치로 평가
- 서해상에서의 평화수역 설정은 서해특별지대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서 평화수역문제를 제쳐놓는다면 경제협력문제들을 원만히 진척시킬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
 - 회의에서는 현지 공동조사방법과 같은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범위와 조사기간문제 등은 서해특별지대가 설정된 이후 실무접촉을 가지고 구체화

〈 합의서 요지 〉

- 해주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개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해주지역 현지조사를 2008년 1월 31경 실시, 조사단 방문경로와 인원, 조사방법 등을 협의 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1월 개성 개최
-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 개발하고 활용
 -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해주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개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해주지역 현지조사를 2008년 1월 31경 실시, 조사단 방문경로와 인원, 조사방법 등을 협의 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1월 개성 개최
-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 개발하고 활용
 -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
 - 2008년 상반기 안으로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 20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제2차 회의 및 4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4.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2007.12.25, 2008.2.5)

가. 개 요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2007년 12월 25일 및 2008년 2월 5일 두 차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설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총 3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조선야태평화위원회 참가)
대 표	정성태(통일부서기관) 김훈아(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용희(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가)

나. 진행경과

(1) 제1차 실무접촉(12.25)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체계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신축은 빠른 공법을 이용해도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차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설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만큼, 금강산 관리위원회와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제2차 실무접촉(2008.2.5)

우리측은 제1차 실무접촉시 보여준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축계획 및 조감 등 구체적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통행검사소 건립과 관리위원회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치, 동해선 북측통행검사소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
-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

5.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6.29~30)

가. 개 요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중유 5만톤을 제공하는데 따른 중유 품질, 수송조건 및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보도문」과 「부속문건」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한충희(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 부단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승신(청와대 과장) 유재필(국무조정실 과장)	문춘원(연유총국 소속) 리인철(해상운송총국 대외사업국 사업과장) 안혜란(연유총회사 연구원) 김태이(민족화해협의회 참가사)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이번 중유지원이 향후 6자회담에 참여한 유관국가들의 대북 중유지원에 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경제에너지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기준의 세부사양에 따른 중유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품질(유황성분 2.5%, 응고점 27.5)의 중유에 대해 가열설비가 부족하여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고점 10 이하의 중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송일자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합의서 서명 후 10일 이내로 첫 배를 출항해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측은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생산 등 내부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금번 회담에서 합의된 중유품질 및 공급자측의 항만비용 부담 등이 향후 다른 공급국의 중유 제공시 선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중유 제공에 관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6개항의 「중유 인도·인수 절차」에 합의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2.13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1차분 중유 5만톤을 북한측에 제공
 -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 북한측 인수기관은 민경협으로 지정
 - 중유품질은 유황함유량 2.5% 응고점 10 이하,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
- 첫배 출항시기는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로 하고, 출항 후 20일 이내에 나머지 분량의 출항을 위해 노력
 - 남측 인도기관은 수송선박, 수량 등을 매출발 5일전에 통보하고, 북한측 인수기관은 매출발 3일 전에 하역항 준비상태를 통보
 - 북한측지역까지의 수송 및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 하역비용 및 체선료는 북한측이 부담

제7장

남북 인도 ·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7장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참여정부 기간에도 연 1~2회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지속 협의하면서 북한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진행하였다.

또한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공동노력하였으며, 이후 조류인플루엔자(2005년), 구제역(2007년), 산림병충해(2007년) 등 북한지역에 전염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이 방역·방제작업에 협력하였다.

체육분야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2002)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3)에 북한 대표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아테네올림픽(2004)에서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이 2005년 제1차 회의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진행되었고, 2005년에는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된 「8.15 통일축구경기」의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문화분야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을 2005년 9월에 개최하여 2007년까지 4차례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 협력사업,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2008년 상반기 개최, 적

십자·사회문화회담 일정 및 협의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11월에 개최되었고, 남북기상협력실무접촉,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2차례 개최되었다.

1. 남북적십자회담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적십자실무접촉(3.9~10)

(1) 개 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은 2005년 8월 31일 착공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측의 지원 유보조치에 대해 반발하여 북한측이 2006년 7월 19일 면회소 건설 중단을 통보해오에 따라 일시 중단되었다.

이후 「2.13 합의」로 북한 핵문제 협의를 진전됨에 따라 재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 평양)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면회소건설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 등 인도적 협력사업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금강산면회소건설과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 등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시점과 관련 북한측은 내부절차문제를 이유로 3월 하순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이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3월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면회소 건설을 위한 현지 연락체계 구성에 대해서 북한측은 면회소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단체를 포함하는 ‘상무조’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상무조 구성이 불필요하나 필요하다면 현지연락체계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쌍방은 현지연락체계를 구성하기로 하고, 현지연락체계에 대한 표현은 각자 편리한대로 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이번 회담에서 다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지원시기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조건으로 3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
- 면회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
-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한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 자재 및 물품구입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4.10~13)

(1) 개 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회담일정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였으나, 하루 연장되어 4월 1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상봉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확대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주소확인,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시범실시 등 7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상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은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4. 10)

우리측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함을 강조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확대, 상봉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추석 계기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및 영상편지의 시범적 실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이산가족 테두리 내에서의 해결 등을 주장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기구 구성
- 이산가족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생사·주소 확인사업의 전면적 실시, 상봉행사의 정례화, 우편물 및 영상물 교환사업 실시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한 이산가족들의 면회방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8.15와 추석 계기에 두차례 화상상봉 실시
- 추석을 전후한 적절한 시기에 제16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진행 및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진행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행불자들의 문제는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

(나) 수석대표접촉(5회) 및 대표접촉(7회)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하자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여 쌍방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쌍방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의 정례화, 우편물교환 등 이산가족 교류 정례화 및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으나, 북한측은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천해 나가자고 주장함으로써 추석 계기 대면상봉 1회, 8·15 및 추석 계기 화상상봉을 각각 1회 실시하며, 추석 계기로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20가족씩 교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 적십자단체간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한측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타) 제2차 전체회의(4.13)

쌍방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7개항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기 40가족)
-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남북 각기 100가족)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 이미 상봉한 바 있는 남북 이산가족 각각 20가족
 -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 추진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11.28~12.1)

(1) 개 요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당초 회담일정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나, 하루 연장되어 12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 전 우리측에서 먼저 11월 24일 적십자회담 합의서 초안 및 부속합의서 3건을 전달하였고, 북한측이 11월 26일 적십자회담 합의서 초안을 송부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협의하여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정소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가) 제1차 전체회의(11.28)

우리측은 회담개최 전에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 간단한 모두발언을 하고 합의서 문안협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회담을 운영하자고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제9차 회담의 중점 강조사항을 간단하게 언급하며 의제별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도 간결한 기본발언을 통해 의제별 기본 입장을 설명하였다.

《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 정상회담으로 군사·경제·사회분야 남북관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산가족 분야도 이러한 남북관계 흐름에 맞게 획기적·창의적으로 접근
- 2008년 상반기에 면회소가 완공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시상봉 방안 마련이 우선과제이며,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도 기대
- 이외 영상편지, 금강산면회소 대표상주문제에 대한 마무리 필요

《 북한측 기본발언 요지 》

- 겨울철 제외하고 분기별 100명 상봉, 상봉후보자 생사확인 은 반기별 400명 실시
- 화상상봉은 연 4회, 1회 40가족, 생사확인 은 연 400명 실시
- 영상편지 시범교환은 2008년 새해 20가족 시범 실시, 기상봉 대상 분기별 30가족 실시
- 금강산면회소에 적십자회 중앙위원급 쌍방 대표 상주, 필요한 조건은 남측에서 보장

(나) 수석대표접촉(8회) 및 대표접촉(2회)

우리측은 2008년 상반기에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고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이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면회소를 통한 상시상봉 실현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며 우리측 구상을 설명한데 대해, 북한측이 인력·조직상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호소해와 연간 400명 선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특별상봉을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북한측이 화상상봉 진행자를 대상으로 6.15 계기 특별상봉을 실시하자는 방안으로 수정제시해와 6.15 계기에 화상상봉 진행자를 대상으로 100명 특별상봉을 추진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2008년 새해를 기해 대표가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상주시점을 밝히지 않아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총리회담 위임사항임을 강조하면서 협의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이산가족문제 테두리 내에서 계속 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타) 제2차 전체회의(11.30)

이산가족 대면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담은 6개항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

-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실시
 -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400명 대면상봉
 - 2008년 6.15 계기, 화상상봉 진행한 대상자 중 각 100명씩 특별상봉
 - 분기별로 각각 40가족씩, 1년에 160가족씩 화상상봉
 - 대면상봉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가족 1명 추가
- 2008년 새해에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고, 분기마다 기상봉자 대상으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
-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

2. 남북체육회담

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2.13)

(1) 개 요

남북은 2005년 12월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체육 회담을 시작으로 3차례의 체육회담을 가졌으며, 2006년 내에 제4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15일 북한측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체육회담을 1월 2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1월 17일 우리측은 1월 30일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장춘에서 제4차 체육 회담을 갖자고 수정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이 답을 주지 않아 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북한측이 회담날짜를 2월 13일로 제의해왔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하여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2007년 2월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단일팀 구성의 핵심 쟁점사항인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 참가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기된 문제를 연구한 후 빠른 시일 내 차기회담을 갖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 표	홍양호(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오영우(문화관광부 국제체육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IOC 권고안과 예선전 개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하고 난 후 그 결과를 보아 ‘경기력 위주’로 단일팀을 구성하되, 여타의 문제는 융통성있게 대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근본목적은 6.15시대에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래의 ‘동수 구성원칙’을 되풀이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 ‘동수구성’ 명분을 살리며, 예선전 일정개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선전에 개별참가한 후 참가자격 획득팀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엔트리 2배수 범위 내에서 5:5 동수로 단일팀을 1차로 구성한 후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단일팀을 최종 구성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단일팀의 근본목적에 입각, 큰 틀에서 기본원칙에 먼저 합의하고 이 원칙을 기초로 세부문제는 실무선에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단체종목 동수구성원칙을 계속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은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후 연락하여 차기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12.28)

(1) 개 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 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측은 12월 13일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을 12월 25일부터 26일간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와, 우리측은 12월 28일로

수정제의를 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28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응원단 규모, 남북 공동응원, 열차이용 방법 등을 논의하고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양측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접촉을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주광일(민화협 참사) 림대석(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먼저 응원단 규모가 확정되어야 열차, 숙소, 입장권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짓자고 강조하면서 남북응원단이 ‘공동응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관계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입장이 정리되면 조속히 통보해주겠다면서, 응원방법 등에 대해 물어오는 등 공동응원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응원단의 열차이용방법과 관련 우리측은 우리측 열차를 이용하여 왕복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올림픽 육로성화 봉송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추후정세 등을 보며 검토할 문제라고 반응하였다.

쌍방은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남북응원단이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후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남과 북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응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
- 차기접촉은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개최

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2008.2.4)

(1) 개 요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차기접촉을 2008년 1월중에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북한측은 2008년 1월 25일에 제2차 실무접촉을 1월 31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회담대표의 일정을 고려하여 2월 4일로 수정제의를 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2008년 2월 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쌍방은 제1차 실무접촉에 이어 응원단 규모, 응원단 이용열차, 응원방법 등을 논의하고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에술지도국 부국장)

(2) 진행경과

북한측은 남북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여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며 제1차 실무접촉시 우리측이 제안한 응원단 규모에 동의하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하였다. 응원단 이용열차 및 열차이용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이 문제는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쌍방은 남북응원단이 개·폐막식에 참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응원종목은 남과 북의 경기 참가종목이 확정된 후에 선정하기로 하였다. 응원곡, 응원복장, 응원형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과 입장권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
-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 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
-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결정
-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 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 응원단 이용열차 및 그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

3. 북한 방역·방제지원 실무접촉

가. 구제역 방역자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3.30)

(1) 개 요

2007년 1월 10일경 북한 평양 상원군 및 함북지방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북한측은 3월초 FAO(식량농업기구)와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하였다. 동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 우리측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측은 3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대북 지원의사를 표명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필요한 자료와 약품, 설비명세 등을 3월 14일 전달해왔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요청한 물자의 전달계획을 3월 19일 통보하면서 쌍방 방역관계자간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는데, 북한측이 3월 21일 이에 동의해옴에 따라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2007년 3월 30일 개성 「봉동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한측이 요청한 지원요구품목 가운데 지원이 가능한 품목을 제공한다는데 합의하고 방역전문가가 방북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전달시기 및 현장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마무리 짓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리경군(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대 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김창규(내각 사무국 과장) 권정혁(중앙수의방역소 책임검사원) 리순학(내각 사무국 책임부원)

(2) 진행경과

북한측은 실무접촉 목적이 구제역 방역물품 지원문제 협의인 만큼 지원 품목과 지원시기를 먼저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이 요구한 품목에 대해 지원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량조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방역복과 장화 등 방역 소모품에 대한 지원의사도 표명하였다.

우리측이 구제역 방역장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제역 확산범위와 혈청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자, 북한측은 상원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제역 검사자료는 추후 통보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우리측은 장비인도시 우리측 방역전문가의 현장방문과 방역종료 후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추후 물품전달시 구체적인 전문가 방문계획도 협의하자고 하였다.

회담 이후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평양 인근지역(상원군)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실태를 조사하고 장비설치와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답사가 실시되었다.

나.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5.8)

(1) 개요

북한측은 2007년 3월초부터 '송충이 피해'가 발생·확산되어 3월말 FAO(식량농업기구)에 병충해 방제지원을 요청하였고, 피해범위가 확산되자 4월 5일 남북경협협회사무소 북한측 소장명의로 '참나무시듬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 기술적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우리측은 4월 11일 지원 의사를 알리면서 쌍방 산림병충해 방제관계자간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4월 26일 실무협의를 동의하며 2007년 5월 8일 개성 「남북경

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실무협의를 갖자고 답을 보내와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리측이 지원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장답사, 산림병충해 피해지역·규모관련 자료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측에서 솔나방·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방제전문가가 방북하여 북한측 산림병충해 발생현장을 방문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물품의 지원시기는 우리측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오기표(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랑기건(민경련)
대 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신상철(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	최정호(국토환경보호성 산림국 산림보호처 처장) 장국일(민경련 정책실 참사)

(2) 진행경과

우리측은 우선 정확한 방제지원을 위해 피해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피해지역·규모, 방제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피해발생 면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공품목과 관련 우리측은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한 자료제시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필요한 농약·설비 및 기술자료 등에 관련된 문건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수량의 근거 등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지원품목과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쌍방은 우리측에서 디프액제, 포스파미드 등의 약품과 연무기, 천공기 등 방제장비 제공과 함께 참나무시들음병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기술자료를 지원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메프유제와 메탐소디움(소나무재선

충,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의 경우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북한측은 현장답사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답을 주겠다고 언급하였고, 물품지원시기는 우리측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전달경로와 관련 우리측은 육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측이 남포항을 통한 해로전달을 고집하여 해로운송으로 합의하였으며, 논의가 미진한 사항은 추후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인근 지역(중화군 마장면)에서 잣나무넓적잎벌에 대한 공동시범방제사업을 실시하였다.

4.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4.10)

가. 개 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 6. 21~24)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05년 9월 제1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한 후,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 자료를 교환하였다. 쌍방은 유해위치, 공동 현지조사단 일정 및 조사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나 3차례의 실무접촉 이후 2006년 6월에 유해매장 추정위치에 대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2006년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 상호교환, 유해 매장지역의 확정과 유해 매장 예상지역의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중국정부 협조요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7년 3월 22일 북한측에 제4차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동의함으로써 4월 10일 개성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를 상호교환하고 가장 유력한 매장추정지로 '여순감옥 뒷산 일대'를 확정하면서, 4월말부터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발굴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중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병구(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평통서기국 부장)
대 표	김계진(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화협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나. 진행경과

북한측은 유해발굴지역을 1단계로 시·발굴지역 전체(25,000m²) 중 1,500m²를 하고 2단계로 나머지 전체지역의 발굴을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시·발굴시기는 동의하나 시·발굴 범위는 유력한 매장 추정지 중 10,000m²(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우선 시·발굴할 것을 제안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쌍방은 발굴장소 보존, 발굴장비 현장반입 등 중국정부에 협조요청할 사항에 합의하고, 각자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히 문서로 요청하기로 하고, 합의내용에 대해 각자 편리한 대로 「공동보도문」을 내기로 하고 문안 상호 교환 후 실무접촉을 종료했다.

〈 공동보도문 〉

-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舊地) 뒷산 일대’를 유해 발굴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정
- 유해 공동발굴단을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 실시
-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
-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5.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12.17~18)

가. 개 요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 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기상협력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기상정보교환, 기상관측장비 지원, 기술 및 인적교류 등 기상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8년 2월 중 차기접촉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경협기획관)	한광일(기상수문국 처장)
대 표	남재철(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 김경식(기상청 기술기반정책과장) 황진규(통일부과장)	최광국(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황철호(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현창건(내각 책임부원) 리영민(조평통 서기국 참사)

나. 진행경과

(1) 제1차 전체회의(12.17)

북한측은 기상협력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기상협력 추진, 남북간 균일성있는 자료 담보를 위한 통일된 기상관측체계 구축, 공리공영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협력추진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

북간 직접통신망을 통해 기상관측자료를 상호 교환하는 문제, 기상장비 협력을 통한 기상관측 정보수준 제고 문제, 남북 기상전문가간 정례적 협의를 마련 등을 제안하며 합의서안을 전달하였다.

기상전용통신망 구축과 관련 우리측은 북한측이 구체적 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와 관련장비와 S/W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상시설 현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북한측 관측소의 단계적 보수를 제안한데 반해 북한측은 전 시스템을 한번에 현대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폭우·황사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기상분야 전문가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 제2차 전체회의(12.18)

우리측은 기상전용통신망 개통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용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북한측은 지상관측소 27개소 장비, 레이더 제공 등 장비지원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논의결과를 반영한 합의서 수정안을 전달하며 문안조정을 유도하였으나, 북한측은 장비지원문제에 중점을 두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직접통신망 구축안이 없는 합의서를 채택하기 보다는 차기접촉 일정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내고 회담을 종료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

-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인력 및 기술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
- 차기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 구체적 내용은 추후 협의 결정

부 록

1. 남북관계일지

2. 남북회담합의서

- 남북정상회담
- 남북총리회담
- 남북장관급회담
- 남북 군사분야 회담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1. 남북관계일지

2007년

〈1월〉

- 1. 1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핵억제력 보유’를 바탕으로 ‘경제강국 건설’
- 1. 3 북한 백남순 외무상 사망
- 1. 11 북한, 장춘(중국)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제의
- 1. 16 국회 FTA특별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방문
- 1. 28 장춘(중국)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2월〉

- 2. 8~13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 2. 13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개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 발표
- 2. 15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개성)
- 2. 27~3. 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3월〉

- 3. 8 북한,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30만톤 지원 요청
- 3. 9~10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 제6차 실무접촉(금강산)

- 3. 14~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3. 19~22 제6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베이징)
 - '북핵 불능화 로드맵' 논의
- 3. 20~4. 20 북한 세계청소년축구대표단 방남 전지훈련
- 3. 2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 3. 27 대북 지원비료 30만톤 전달 개시
- 3. 27~29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3. 30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개성)

〈4월〉

- 4. 6~9 북한 장웅 IOC위원 및 태권도시범단 방남
- 4. 8~11 미국 빌 리차드슨(William Richardson)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 방북(4.8), 판문점을 통해 방한(4. 11)
 - 미군유해 6구 송환
- 4. 10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개성)
- 4. 10~1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4. 18~22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평양)
- 4. 2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발효
- 4.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4. 27~28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1차 회의(개성)

〈5월〉

- 5. 1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창원)
- 5. 2~4 경공업 및 지하자원 실무협의를(개성)
- 5. 8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개성)
- 5. 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남북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
- 5. 9~14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 5. 13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2차 회의(개성)
- 5. 17 남북 열차시험운행
- 5. 1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족
-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총괄 이행기구
- 5. 22~23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개성)
- 5. 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5. 28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지정
(지정기관 :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5. 29~6. 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6월〉

- 6.1 내금강 관광 개시
- 6. 7~8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
(개성)
- 6. 8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6. 12~13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개성)
- 6. 13 세계식량기구(WFP) 사무총장, 우리정부의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요청
- 6. 14~17 6.15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최(평양)
- 6. 21 남북 송전선로 연결
- 6. 26 대북 식량(쌀)차관 40만톤 전달 개시
- 6. 29~30 「2.13합의」 이행에 따른 중유 5만톤 대북공급 실무접촉(개성)

〈7월〉

- 7. 5~6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의
(개성)
- 7. 10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7. 12 「2.13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개시
- 7. 14 북한,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 미국에 통보
- 7. 16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7. 18~19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실무접촉(개성)
- 7. 18~20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베이징)
- 7. 24~26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7. 25 경공업 원자재 지원 개시
- 7. 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7. 28~8. 18 제1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8월〉

- 8. 2~3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1차 남북특사접촉(평양)
- 8. 4~5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제2차 남북특사접촉(평양)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합의(8.5)
- 8. 7~8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판문점)
- 8. 7~11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측 경공업 현장방문
- 8. 8 남북정상회담 8. 28~30 평양개최 남북 동시발표
 - 국가안전보장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 심의의결
- 8. 13~14 제6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 8. 14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발표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제1차 실무접촉(개성)
- 8. 16 남북정상회담 관련 분야별 제2차 실무접촉(개성)
- 8. 16~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 8. 18 북한 수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기 합의
- 8. 23~25 수해관련 대북 긴급구호물자 지원

〈9월〉

- 9. 1~2 6자회담 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제네바)
- 9. 3 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
 - (제네바, Hill-김계관)
 - 연내 북핵 불능화, 북한에 정치·경제적 보상 합의
- 9. 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미정상회담
- 9. 10 대북 수해복구 자재·장비지원 개시

- 9. 11~15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 9. 18~21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 9. 27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대표단 300명 확정 발표
- 9. 27~30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베이징)
- 9. 27~10. 1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10월〉

- 10. 2~4 남북정상회담(평양)(10.4 「2007 남북정상선언」 발표)
- 10.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발표
- 10. 11~19 미 북핵 불능화팀 방북
- 10. 16 대북 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고성)
- 10. 17~22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 10. 20~11. 7 제2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 10. 26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개성)
- 10. 30 「2007 남북정상선언」 국무회의 의결·발효

〈11월〉

- 11. 1~5 미 북핵 불능화팀 2차 방북 및 불능화 착수
- 11. 5 남북농업협력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1. 9 남북총리회담 제2차 예비접촉(개성)
- 11. 11 남북총리회담 제3차 예비접촉(개성)
- 11. 12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1. 14~15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 11. 14~16 제1차 남북총리회담(서울)
- 11. 19~20 미·북한 금융실무회의(뉴욕)
- 11. 20~21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개성)
- 11. 21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 11. 24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남북공동자원개발 제품(흑연) 최초 반입

- 11. 27~29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
6자회담 북핵 불능화실사단 방북
- 11. 27~12. 1 백두산관광 사전답사
남북농업협력사업(양돈) 현장답사
- 11. 28~29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1. 28~12. 1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11. 29~12. 1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방남

〈12월〉

- 12.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 4~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 12. 4~8 제1차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현장방문
- 12. 5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육로이용 개성관광 시작
- 통일부, (주)현대아산의 개성관광 남북협력사업 승인
(12.4)
- 12. 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
- 12. 10 도라산물류센터 준공
- 12. 11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례운행 개시
- 12. 11~13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현지조사
- 12. 12~14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판문점)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 군사보장
합의(12.13)
- 12. 12~18 개성 ~ 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 12. 13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상환광물 1차분 도착(인천)
- 12. 14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
장을 위한 합의서 발효
- 12. 14~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 15~18 남북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지(안변, 남포)조사
- 12. 16 6자회담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긴급제공 우선 1차분

- (철강류)출항
- 12. 17~18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개성)
 - 12. 18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개성)
 - 12. 20~21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 20~26 제3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 12. 21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청사 준공(개성)
 - 12. 21~25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사업 관련 현지조사(평양, 은율)
 - 12. 21~27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현지조사
 - 12. 25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치관련 실무접촉(개성)
 - 12. 25~28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부산)
 - 12. 2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접촉(개성)
 - 12. 28~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008년

〈1월〉

- 1. 1 북한 신년공동사설 발표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중기 국가비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 1. 9~10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방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면담(1.10), 북 핵프로그램 완전한 신고 촉구
- 1. 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 29~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 면담(1.30), 개성공단 및 판문점 방문(1.31)

〈2월〉

- 2. 4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개성)
- 2. 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개성)
남북 적십자단체 판문점 연락관 접촉,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 12~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2. 남북회담합의서

합의문 목록

□ 남북정상회담 / 158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2007. 8. 5)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10. 4)

□ 남북총리회담 / 163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 11. 16)

□ 남북장관급회담 / 170

-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2007. 2. 15)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 3. 2)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7. 6. 1)

□ 남북 군사분야 회담 / 174

-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2007. 5. 11)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 5. 11)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 회담 합의서(2007. 11. 29)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 12. 6)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 12. 13)

□ 남북 경제분야 회담 / 185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2007. 4. 22)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 4. 22)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2007. 4. 22)
-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공동보도문 (2007. 5. 4)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2007. 5. 13)
-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6. 30)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2007. 7. 7)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5)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1. 16)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7. 11.16)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2007. 11. 21)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21)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2007. 11. 29)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2007. 12. 1)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6)
-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15)
-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7. 12. 18)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1)
-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 12. 21)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1)

-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7. 12. 28)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2007. 12. 29)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8. 1. 30)
-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2008. 2. 5)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2008. 2. 13)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 293

-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7. 3. 10)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7. 4. 10)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7. 4. 13)
-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2007. 11. 30)
-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2007. 12. 18)
-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7. 12. 28)
-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
(2008. 2. 4)

□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국가정보원

원장 김민복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흠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흠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 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대표접촉이 2007년 2월 15일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여 제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15일

개 성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양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 울

□ 남북 군사분야 회담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 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단장
소장 정승조 중장 김영철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문산 - 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개방한다.

2. 쌍방은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50×40 cm 크기의 주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4.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로,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을 받는다.

쌍방은 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지원 문제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하며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금지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열차운행시 사고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상대측 구호(작업) 차량 및 인원의 긴급통행을 허용하는 등 정상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8. 본 합의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 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으며 동, 서해지구 기본도로, 철도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7년 12월 6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 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 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하기로 하였다.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남북 경제분야 회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과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1항, 2항, 8항, 1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 한다.

1. 1항과 2항의 “2006년”을 “2007년”으로 수정한다.

2. 8항 중 “1개월”을 “10일”로 하고, “8월”을 “6월”로 수정한다.

3. 10항을 “이 합의서의 효력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르되,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4. 이 수정·보충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동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삼백팔십달러(US\$380)로 계산하고, 남측에서 생산된 쌀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제공되는 쌀(40만톤)의 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 절차」 및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해 남측은 식량 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쌀 수송시기 보장, 쌀 분배현장 방문 등 식량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9.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남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 동 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첨부 1〉

식량 인도 · 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쌀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으로 한다.

② 제공되는 쌀 중 남측에서 생산된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하며, 외국산 쌀은 백미 US.No.3수준 이상으로 한다.

2. 포장

① 쌀은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3%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2007년 5월 하순 첫 항차를 출항시킨다.

4. 수송조건

① 남측은 해로의 경우 남포항·해주항·송림항·홍남항·원산항·청진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수송하며, 육로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하여 수송한다.

② 남측의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과 북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선박(제3국 선박 포함)과 차량의 북측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③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수송 선박·차량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쌀 인수회사는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지와 하역항의 준비

상태를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첫 수송의 경우 사전통보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쌍방은 지정된 식량 인도회사와 식량 인수회사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학명을 포함한 검역 또는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남측에 통보한다.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흘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남측 쌀 인도회사에 제공한다.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및 차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확인서(부록)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고,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부족수량과 부패물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한 수량을 보충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수송서류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 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 ① 제공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와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식량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매 10만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남측 인원들이 식량 분배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방문 장소는 동해안 3곳·서해안 2곳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을 허용한다.
- ③ 분배현장 방문을 위한 남측 인원은 5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첨부 2〉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육로수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육로로 수송하는 식량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5만톤으로 한다.
2. 수송경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통하여 주 4회 수송하며, 개성지역에 3만톤과 고성지역에 2만톤을 수송하되, 하역지는 북측이 통보하는 장소로 한다.
3. 1일 수송량은 1천톤 이상으로 하되, 수송량 및 수송횟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차량은 25톤 적재 화물차로 하며, 매회 수송시마다 인도인원 차량 1대와 정비차량 1대(정비기사 1명)가 동행한다.
5. 북측은 수송차량의 통행 및 식량의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며, 남측 인도인원의 하역과정 확인에 협조한다.
6.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여 식량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 부록 >

식량 인수확인서

2007년 4월 22일 채택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식량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차량명) :
4. 도착항(도착지)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진동수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을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및 제13차 회의에서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 38mm) 500톤을 6월27일 인천항 남포항간 정기해상 수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다.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첨부: 관련 자료 목록)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단천지역의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5. 남과 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3차 실무협약을 5월 22일에서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4일

개 성

〈관련자료 목록〉

- ① 일반자료 : 위치, 교통도, 기후, 광산 연혁
- ② 지질자료 : 지질보고서, 매장량, 품위, 시추자료
- ③ 채광 : 굴진, 채광·운반·통기·배수, 생산실적, 장비현황, 가동률, 인력현황, 광미시설, 갱외 시설
- ④ 선광 : 생산량, 품위, 실수율, 시설 및 장비현황, 가동률, 인력현황
- ⑤ 전력 : 1·2차 전압, 변전소·발전소 현황, 송전거리, 주파수
- ⑥ 용수 : 용수량, 용수거리, 용수원
- ⑦ 도로 : 도로폭, 운반거리
- ⑧ 철도 : 철도역, 운반거리, 화차용량, 운행실적
- ⑨ 항만 : 접안능력, 수심, 처리능력
- ⑩ 도면 : 지형도, 지질도, 지질단면도, 주상도·매장량산출도, 갱외시설도, 갱내개발도, 선광·가공계통도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4월 27일과 28일, 5월 13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하여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명칭 및 날짜

명칭은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으로 하며 날짜는 2007년 5월 17일로 한다.

2.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참가인원은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참가급은 장관급(상급)으로 한다.

3. 열차시험운행시간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4. 열차시험운행구간

경의선에서는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 동해선에서는 북측 금강산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로 한다.

5. 열차시험운행 방식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쌍방은 각기 자기측 기관차에 객차 5량(남측 발전차 포함)씩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 문산역에 육로로 들어와 남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북측 개성역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고, 동해선에서는 남측 인원이 북측 금강산역에 육로로 나가 북측 인원과 함께 열차를 타고 남측 제진역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

6. 열차시험운행 행사

열차출발역들에서 경과보고와 남북단장들의 기념사(축하발언)를 한 다음 열차시험운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7. 통행 및 세관검사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잠정합의서에 준하여 진행한다.

8. 통신방법

남북 철도통신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5월 14일에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연결한다.

9. 열차운행 통보

남북 쌍방 분계역장들이 열차출발 5분전 상호 통보(폐색)하고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출발을 상호 통지한다.

쌍방 분계역장들은 열차도착시 상대측에 통보한다.

10. 신호방식

신호는 수신호로 한다.

출발 : 녹색기로 원형을 그려 신호한다.

정지 : 적색기로 수평으로 신호한다.

11. 열차운행 안내

남과 북은 상대측 기관사가 동승하여 자기측 구간에 대하여 안내한다.

12. 철도시설 점검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 이전에 각기 자기측 해당지역의 철도시설을 책임지고 점검 보강한다.

13. 문건교환

열차시험운행 참가인원에 대한 사진명단과 필요한 발언문들은 5월 16일 오전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하여 교환한다.

14. 열차시험운행 일정

【경의선】

- 10:00 북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남측 출입사무소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0:10 북측 참가자 남측 출입사무소 출발
- 10:30 북측 참가자 문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남측 열차 문산역 출발
- 12:00 도라산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10 도라산역 출발

- 12:2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2:40 판문역 출발
- 13:00 개성역 도착
- 13:00~14:30 동석식사
- 14:40 개성역 출발
- 15:00 판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동해선】

- 09:30 남측 참가자 버스편으로 북측 통행검사소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0:00 북측 통행검사소 출발
- 10:30 금강산역 도착, 열차시험운행 행사
- 11:30 북측 열차 금강산역 출발
- 11:50 감호역 도착, 통행 및 세관검사
- 12:10 감호역 출발
- 12:30 제진역 도착, 통행 및 세관 검사
- 13:00~14:30 동석식사
- 14:30~15:00 제진역 통행 및 세관 검사
- 15:00 제진역 출발
- 15:30 군사분계선 통과

15. 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7년 5월 13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경중

북남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북측 단장 박정성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제공되는 1차분 중유 5만톤 공급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톤을 제공한다.
2. 북측에 제공되는 중유의 품질은 첨부 1 「중유 인도·인수절차」에 따른다.
3. 남측은 북측이 지정하는 선봉항, 남포항으로 중유를 수송하되 각 항구별 수송량은 첨부1에 따른다.
4. 북측은 중유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5. 중유제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007년 6월 30일

개 성

<첨부 1>

중유 인도·인수 절차

1. 중유의 수량 및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중유는 5만톤으로 한다.

항 목	규 격
유황분(wt, %)	2.5
점도(cst, 50℃)	350
밀도	0.90~0.98
인화점(℃)	60이상
유동(응고)점(℃)	0~10이하
저위발열량, kcal/kg	9,700이상

② 제공되는 중유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③ 남측은 제공되는 중유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④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으로 한다.

2. 수송 일정

남측은 중유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에 첫 배를 출항시키며, 첫 배 출항 후 20일 이내에 중유 5만톤에 대한 출항을 전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송조건

①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로 하고, 북측 인수기관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남측은 북측이 지정한 선봉항, 남포항으로 각기 지정된 양의 중유를 수송한다.

③ 남측의 중유 인도기관은 수송 선박, 선적수량, 수송 인원 명단, 출발 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북측 인

수기관에 통보하며, 북측 인수기관은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통해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④ 선박대리점은 북측 평양에 소재한 조선외국선박사업회사(KOSA)와 상기 회사가 위임한 해외대리점으로 하며, 북측 인수기관은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7일 이내에 수송선박이 항해중 교신할 북측 해안무선국 또는 북측 선박 대리인을 지정하여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흡수선, 하역능력, 작업 소요 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중유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5일 이내에 남측 인도기관에 통보한다.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한다.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⑧ 중유 수송 선박이 북측 항구에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⑨ 북측에 제공되는 중유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비용과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측은 하역비용과 체선료를 부담한다.

4. 전달방법

① 남측 인도인원은 선박당 3~4명으로 하고, 남측 당국(제공기관)의 위임장을 소지하며 제공되는 중유는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한다.

②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수송서류(선하증권 품질 및 수량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등)를 확인하고 중유인수확인서(첨부 2)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③ 양하지에서 선박의 중유가 탱크송유인출관(매니폴드)을 통과한 이후에는 북측 책임하에 중유를 관리한다.

④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⑤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 인도인원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족수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보충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5. 하역항에서 선박 및 화물처리

- ① 남측 중유수송 선박 선장은 북측 항만당국과 협의하여 하역한다.
- ② 하역은 선박 선장 책임하에 진행되나, 하역 작업중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은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6. 안전보장 및 편의 제공

- ① 북측은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 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 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인원(선원제외)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첨부 2〉

중유 인수확인서

2007년 6월 30일 남과 북 사이에 합의된 「중유 인도·인수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유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체결된「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달러), 신발(4,200만달러), 비누(1,100만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 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 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 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 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계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괴, 마그네사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수량·가격은《부록 2》와 같이 한다.

상환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의 인도·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시기의 국제시장 가격(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7월 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의 위임을 받아
위 원 김 형 석 실 장 리 영 호

< 부록 1 >

경공업 원자재 품목, 수량, 가격

의복류 원자재

NO	HS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550320	폴리에스터단 섬유(테트론섬)	2D×51mm	톤	1,500	1,470	2,205,000
			1.4D×38mm	톤	7,732	1,420	10,979,440
			3D×76mm	톤	150	1,570	235,500
2	550330	아크릴단섬유	5D×76mm	톤	200	2,450	490,000
3		방 적 사	스테사(54N, 3:7)	톤	1,000	3,080	3,080,000
			면테사(54N, 5:5)	톤	400	2,760	1,104,000
			순테사(48N)	톤	1,000	2,415	2,415,000
			순테사(34N)	톤	400	2,180	872,000
4	540233	테트론인견사	50D/24FDTY	톤	10	3,086	30,860
			150D/144FDTY	톤	100	2,600	260,000
			75D/72FDTY	톤	10	2,600	26,000
			50D/36FDTY	톤	10	3,000	30,000
			150D/96FFDY	톤	70	1,653	115,710
			75D/6FFDY	톤	15	4,000	60,000
			20D/1FFDY	톤	14	3,300	46,200
			50D/24FFDY	톤	50	1,940	97,000
5	3247	분산물감 (Dystar)	황색(Y-124)	톤	3	13,978	41,934
			황색(Y-23)	톤	4	10,753	43,012
			황색(Y-64)	톤	3	8,602	25,806
			등색(D-29)	톤	20	6,452	129,040
			등색(D-73)	톤	3	9,677	29,031
			홍색(R-362)	톤	2	29,032	58,064
			홍색(R-74)	톤	4	16,129	64,516
			홍색(R-50)	톤	1	6,452	6,452
			자주색(R-73)	톤	5	5,914	29,570
			보라색(V-31)	톤	2	16,129	32,258
			청색(B-56)	톤	10	8,065	80,650
			청색(B-60)	톤	3	16,129	48,387
			청색(B-183)	톤	15	12,903	193,545
			곤색	톤	50	5,591	279,550
흑색	톤	65	5,162	335,530			
갈색	톤	5	9,677	48,385			

NO	HS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6		우비텍스	EBF200	톤	5	19,355	96,775
7	3204	양이온물감	황색(Y-40)	톤	1	26,882	26,882
			황색(Y-11)	톤	1	7,527	7,527
			황색(Y-28)	톤	1	8,065	8,065
			청색(B-41)	톤	2.5	15,054	37,635
			등색(O-21)	톤	1	8,602	8,602
8	550320	데트론솜	2 D 1 m m	톤	2,259.92	1,470	3,322,082
합 계					15,127		27,000,008

※ 신규로 제시된 4개 품목(방적사)은 남북이 각기 제시한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잠정 합의한 것이며, 합의서 서명 후 15일 이내 남측이 제시한 최저 가격을 최종 가격으로 확정함. 또한 최종 확정가격과 잠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물량은 폴리 에스테르 단섬유(2D*51mm) 제공물량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 부 록 2〉

경공업 원자재 대가상환 품목, 수량, 가격

NO	HS	품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1	7901110000	아연괴	25kg				
2	2519901000	마그네슘크링카	전기용용 마그네시아				
계							\$2,400,000

* 아연괴와 마그네슘크링카 상환비율은 9:1로 하며, 가격 및 수량은 상환시기에 협의 결정함.

〈 부 록 3 〉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 인도·인수 절차

1. 품목, 수량, 품질

①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는《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의 《부록 1》에 따른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② 북측이 상환하는 3%의 상환품목은《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의 《부록 2》에 따른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③ 남측이 북측에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와 북측이 남측에 상환하는 제품은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

2. 포장 및 표시

제품을 포장할 경우, 품목·수량 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시를 하며, 제품에 붙어 있는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3. 수송일정

① 남측은 2007년 7월 25일에 경공업 원자재 첫 항차분을 제공하며 나머지 원자재는 북측의 생산공정에 맞추어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② 북측은 아연괴 또는 마그네슘크링키를 경공업 원자재 제공기간 중 남측에 전달한다.

4. 수송조건

① 남측의 인도·인수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하고 북측의 인도·인수기관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인천항 남포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각기 자기측 선박으로도 수송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수송 선박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통보하며,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통보한다.

④ 남과 북은 신속한 하역과 상선을 보장하며, 발생하는 하역비용, 체선료 등은 제공받는 측이 부담한다.

⑤ 남과 북은 수송선박(제3국 선박 포함)의 상대측 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⑥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① 제공되는 물자는 선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들이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수확인서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②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은 3~4명으로 하고,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남과 북의 인도·인수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과 북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각기 해당물량의 보존 및 추가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되, 부족수량과 불량품이 확인되면, 수량보충 문제는 쌍방 이행기구간 협의 해결한다.

6. 수송서류

남과 북은 수송시기마다 다음의 서류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
- ②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③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원산지 증명서

7. 검사조건

①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제품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 검사기관이 발행한 증서로 확인한다.

② 남과 북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및 수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인수사용결과 통보

북측은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남측은 상환된 제품의 수량과 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물자를 인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문건으로 통보한다.

9. 분쟁해결 및 불가항력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상환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하되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 당국이 협의 해결한다.

② 화재, 자연재해 등 제공자측이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한다.

불가항력으로 합의이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 7일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불가항력이 존속되는 기간만큼 계약이행을 연장한다.

10.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① 남과 북은 인도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행,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②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상대측 인도인원들의 전신, 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며, 체류시 사용한 국제전화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남과 북은 인도인원들의 체류기간 중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부 록 〉

경공업 원자재 인수확인서

2007년 7월 7일에 체결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공업 원자재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부 록 〉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 인수확인서

2007년 7월 7일에 체결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 인수를 확인함.

1. 품 목 :

2. 수 량 :

3. 선박명 :

4. 도착항 :

5. 인수일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한다.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5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기혁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김영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한다.
- ② 양측의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운영한다. 우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실무접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위원회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 또는 위임한데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주관한다.
- ② 공동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접촉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위원회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제4조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와 부칙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었던 분야별 실무협의회와 실무접촉의 사업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접촉에서 담당하여 계속 진행한다.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서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우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쌍방 당국 사이의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한 사업들을 주관한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추진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부속서는 남과 북(이하 '쌍방' 이라 한다)이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열차운전취급, 화물운송, 철도시설·전기분야 유지보수, 차량 인도인수, 사고처리·손해배상책임·편의보장 및 활동관계 등 남북간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남과 북이 정한 운행구간에서의 열차운행에 관련 하 여서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및 부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또는 분계역장회의에서 상호 합의하여 처리 한다

제3조(정의) 이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운행구간”이라 함은 분계역(역구내 포함)간을 말하며, 이 구간을 운 전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을 운행열차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1. “동력차”라 함은 동력을 가진 차량으로서 열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 량을 말한다.

2. “화차”라 함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3. “차장차”라 함은 화물열차 또는 공사열차의 후부에 차장을 승무시키 기 위하여 연결하는 차량으로 차장실 설비를 갖추고 수동제동장치, 차장변, 조명장치, 공기압력계 등이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특수차”라 함은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사고복구 용차, 모터 작업차 및 시험차 등으로 객차와 화차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불량차”라 함은 고장으로 정상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을 말한다.

③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열차를 정차하고,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④ “분계역장”이라 함은 분계역의 역무전반과 분계역 사이의 운전취급업무의 담당책임자를 말한다.

⑤ “운전보안장치라 함은 폐색장치, 신호장치, 연동장치, 선로전환장치, 제동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운전경계장치, 열차방호장치, 운전용통신장치, 등을 말한다.

⑥ “유효장”이라 함은 열차를 정차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에 있는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의 길이를 말하고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에 대하여는 출발신호기까지의 길이(자동화된 구간에서는 전기막이 이음목 사이의 길이)를 말한다.

⑦ “퇴행운전”이라 함은 열차가 운행도중 최초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추진운전”이라 함은 동력차를 맨 앞으로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폐색구간”이라 함은 2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⑩ “고장”이라 함은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차량 기기 및 장치의 오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의 비정상 상태를 말한다.

⑪ “수리”라 함은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차량상태를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시키는 정비작업을 말한다.

⑫ “철도안전사고”라 함은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또는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⑬ “철도사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 사상사고를 말한다.

⑭ “일반안전사고”라 함은 철도자체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열차운행 중단과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차사고, 설비사고 등을 말한다.

⑮ “운행장애”라 함은 열차 또는 차량 운전에 일시적인 지장을 준 것으로서 철도사고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⑯ “철도시설의 재해”라 함은 기상조건, 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⑰ “인적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철도직원, 여객 또는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⑱ “사망자”라 함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자 또는 사고로 부상 당한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자를 말한다.

⑲ “부상자”라 함은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을 증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증상으로 한다. 다만 사고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 “정상”판정을 받고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⑳ “물적 피해”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본 부속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건물이나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동식물이 사상, 부상 또는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㉑ “수습”이라 함은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쌍방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운 전

제4조(열차운행)①운행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승무원과 동력차 및 차장차는 홀수년도에는 남측이, 짝수년도에는 북측이 담당한다. 다만,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운행년도가 아닌측의 열차, 승무원으로 운행구간을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운행열차승무원은 경계(군사분계선)를 기준하여 반드시 해당측의 규정과 지시 및 운전설비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열차정상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상호교환하고, 만약 수정·보완으로 열차정상운행에 영향

을 미칠 때에는 즉시 상대방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열차운행횟수, 운전시각 등 연간 열차운행계획은 남북철도운영공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열차운행은 낮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한한다.

제5조(운행구간)①운행구간은 남과 북이 정한 분계역간의 운행구간으로 한다.

②분계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남측	북측	비고
경의선	도라산역	판문역	

③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로 정한다.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①쌍방의 분계역장은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매일 08시 이전까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통보하며 오전 8시부터 유선 전화로 재확인 한다. 다만, 분계역장회의에서 사전합의 결정된 사항은 생략 할 수 있다.

②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 이후 변동사항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일일열차운행계획 통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번호, 기관차번호, 편성량수, 차종, 품명, 운행시간
2. 승무원 명단
3. 승무원인 및 화물수송량
4. 열차출발예정시각
5. 차량복귀 요구일
6. 기타 열차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열차의 취급)①쌍방의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 상호간 운행열차 폐색취급 합의 없이는 운행구간에 열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행열차는 상호 합의하여 정해진 운전시각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 또는 도착 시에는 즉시 상대측 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에게 출발 또는 도착시각, 편성량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역이외 구간에서 정차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으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무원 소속 분계역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분계역장은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 받은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차 후 출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운행구간의 운행열차는 퇴행·추진운전 할 수 없다. 다만, 선로 또는 열차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쌍방간의 분계역장이 합의하여 승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⑥분계역장 또는 운전취급자는 열차출발시 마지막 차량이 출발선 최종 전철기를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하며 도착시에는 도착 3분전에 나가 열차를 감시하고 편성량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분계역장 지시에 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25km/h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고, 차장은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연동폐색취급)①운행구간에 운행열차를 진입시키려 할 때에는 분계역장이 협조하여 폐색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취급은 운행열차를 진입시킬 시각 10분 이전에는 할 수 없다.

③폐색취급 후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 하였을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연동폐색수속(절차)에 대하여는 분계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열차조성)①열차조성은 열차출발시각 30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 지장여부 확인은 각 측에 파견된 열차인수·인도 요원이 합동으로 시행 한다.

③열차의 길이는 쌍방의 분계역 유효장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계역장간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열차에는 객차와 화차를 혼합연결 할 수 없으며, 파손차량은 각 측의 열차운행사무소장의 검사를 받은 후 운전도중 분리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선전화기의 사용)①열차 또는 차량에서 무선 전화기의 사용은 쌍방이 정한 운행구간에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정한 공용주파수를 이용한 무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취급을 할 때에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운전정보를 교환할 때(역-기관차-보수자(승무원) 상호간)
2. 운전상 위급을 요하는 사항을 통고할 때
3.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취급 및 각종 전호를 할 때

③열차무선전화기의 호출방법은 [부록2]에 의한다.

④기관사(승무원)은 출고시 기관차용 무전기와 휴대용(비상용) 무전기를, 역무원은 근무교대시 역용 무전기를, 작업자는 작업출무전 휴대용 무전기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열차 운행중 기관차 무선전화기 고장 또는 장애시에는 휴대용무전기를 사용한다.

⑥열차운행에 참가한 모든 무선전화기는 언제나 동작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3장 화물 운송

제11조(운송의 의무)①쌍방 철도는 다음과 같은 화물운송에 대하여 본 부속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운송한다. 다만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1. 쌍방간 화물운송계획에 포함된 화물
2.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는 화물

3. 송화인이 본 부속서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
- ②쌍방철도의 역명은 자기측 제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역명을 사용한다.

제12조(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 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운송의 제한 또는 정지
2. 전체 또는 부분 일시정지
3. 탁송의 거절 또는 조건부 수탁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기측 제규정에 의거 공포를 요할 때에는 공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송기한)①쌍방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송기간 : 1일
2. 수송기간 : 매 200km마다 1일

②천재지변이나 통관 등 쌍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운송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1건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화물은 1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송화인, 수화인, 발역, 착역, 탁송일시, 취급종별 및 운임요금 지급 방법이 같을 것
2. 차급화물은 1차에 적재할 수 있는 수량

제15조(운송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①쌍방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운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합의서 제9조 2항에 정한 화물
2.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운송을 금지하는 화물

②본 부속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허가되지 않는 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억류시켜, 화물을 억류시킨 철도측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특정조건 하에 운송이 허가되는 물품)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화물은 수송설비를 갖추고 수송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
2. 자기차륜의 회전으로 운송되는 철도차량
3. 귀중품 및 위험품
4. 사체 및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물
5. 부패하기 쉬운 화물

②제1항에 규정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송화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7조(운송계약의 체결 및 결제수단) ① 출발역 역장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송화인과 상대측 구간을 포함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다.

②분계역장은 출발역 역장에게 인계 받은 송장과 해당 화물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인계인수함으로써 송화인과 상대측 철도간에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운임은 자기측 화폐단위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병기하며, 당해 연도 초 공동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운임은 자기측 구간은 자기측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상대측 구간은 상대측 운임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정산하되, 별도 운임체계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8조(의무이행의 담보)①송화인과 수화인이 비용납부 등 제반 의무사항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속한 측의 화주가 대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쌍방은 운송계약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송장)①쌍방의 철도화물에 사용되는 송장은 국제철도화물협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한다.

② 송장에 사용되는 용어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송화인이 알려야 할 사항)①송화인이 화물을 탁송할 때에는 화물 각각에 대하여 정확하게 송장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출발역 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송화인은 송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발역
2. 도착역
3. 송화인과 수화인
4. 화물의 품명 및 포장의 종류, 성질
5. 화물의 품명마다 그 개수(산적(散積)인 것으로서 개수를 계산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실중량(kg), 부피(m³)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화물의 포장)①운송도중 성질·형상·중량변화가 예상되는 화물은 감량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②용기나 포장없이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쌍방은 책임지지 않으며, 그로 인한 철도측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송화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①분계역에서 화물의 인도인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개차와 조차에 적재한 화물은 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하며, 상·하부의 문고리 부분에 봉인한다.
2. 컨테이너화물은 세관봉인에 근거하여 인도인수 한다.
3. 산적화물을 분계역에서 계량한 결과 송장의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송장의 중량을 정정하여 날인하고, 인도인수서에 해당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역에서 계량한 화물이 도착역에서 계량한 결과와 상이 할 경우에는 분계역에서 계량한 중량으로 한다.

4. 인도인수시 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계량 또는 관계자 입회하에 화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계중기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중량을 계량하는 비용은 상호 면제한다.

③송화인이 송장에 신고한 중량과 상이할 경우 쌍방 인도인수 책임자가 서명한 기록서(국제철도화물협정 제18조에 정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산한다.

제23조(운송계약의 변경)①쌍방 철도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발역에서 화물을 되돌려 받는 경우
2. 도착역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화인을 변경하는 경우

②1항의 운송계약 변경시 자기측 분계역장을 경유하여 상대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송계약 변경은 국제철도화물협정 별지 제17호(운송계약변경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화물운송의 책임)①쌍방은 송장에 의거하여 화물이 도착역에서 수화인에게 인계되는 시점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쌍방은 화물과 송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운송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운임수수 및 정산)①운임은 남북 각각 자기측 운임체계에 의하여 적용한 운임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최종운임은 발송역에서 송화인에게 수수한다.

②쌍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비용정산협정을 체결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4장 시설, 전기 유지보수

제 1 절 선 로

제26조(선로의 보전)①운행구간내 쌍방의 선로는 열차 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남북관리구역의 선로 등 시설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선로 순시는 매일 최초열차 운행 전에 도보 또는 자주식 장비로 시행하고 순회결과를 상대측의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③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재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를 감시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가능여부를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행구간내 선로의 작업시에는 작업예고 표지판을 세우고 열차는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⑤각종선로의 제표(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등)는 수시로 점검하여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건널목에는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필요시 직원을 배치하여 열차 및 차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건축한계(레일두부 상면에서 높이 6,450mm, 궤도중심부에서 폭 2,100mm) 내에는 열차 및 차량의 안전운행에 저촉되는 물건을 둘 수 없다. 다만, 작업상 필요한 경우로서 열차 및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쌍방의 운행구간내 선로변경 및 개량 시에는 완료된 관계도서(선로평면도, 선로종단면도, 정거장평면도, 선로일람약도, 구조물도 등)를 상대측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⑨운행구간중 남북관리구역내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및 기계작업시 작업자는 쌍방이 인정하는 공동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작업내용, 작업예정시간, 작업인원, 작업위치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고, 분계역장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및 승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및 선로순시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열차운전취급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6조(일일열차운행계획)에 의거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제 2 절 전기통신 및 신호

제27조(전력계통 운영)①역사 및 역간 전력계통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은 별도의 사항은 분계역장간 합의하여 정한다.

1. 분계역간의 전력공급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고압배전 선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계역사내 전원공급은 자기측 전력계통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전력설비 유지보수)①분계역간 고·저압 전력설비는 쌍방이 정한 일정 주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날짜를 정하여 상호 통보하고 시행한다.

②전력설비 점검시 사전에 점검내용, 방법 등을 통보한다.

③점검보수 시 한계지점간 쌍방의 관리구간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통신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①통신설비의 운영은 분계역장이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무선, 유선통신 설비에 대하여 쌍방은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통신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내용 및 방법 등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분계역장은 통신고장 등으로 열차 출발 및 도착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⑤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승무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점검보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경계(분계선)구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으로 시행하여야할 구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신호설비 유지보수-연동검사 포함)신호설비의 유지보수 등은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①보수작업(연동검사 포함)의 시행

1. 쌍방은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협의한 날짜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유지보수 계획서를 통보 받은 자는 면밀히 검토한 후 합동보수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계획서에 의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합동보수를 시행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운전협의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장치가 정상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계역장에게 완료통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계역장은 장치가 정상상태임을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②장애 및 긴급보수작업의 시행

1. 장애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및 내용 등을 분계역장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단독으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합동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수작업 완료 후 작업시간, 사유, 조치사항 등을 상대측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

1. 신호보안장치를 사용중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고 또는 장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중지한다.

나. 신호기 및 건널목보안장치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표지 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선로전환기류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분계역장에게 선로전환기의 췌정을 요구하여 췌정하고 관계가 있는 진로도 사용 중지 한다.

라. 연동장치 취급버튼의 사용을 중지 할 때에는 그 취급 버튼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설비도 사용을 중지한다. 이 경우 취급버튼에 카바를 씌우거나 테이프를 붙여서 취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2.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장치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 구내에 있어서는 분계역장에게 취급지장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장 차량 인도인수

제31조(차량 인도인수 기본원칙)①쌍방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조립 부품이 완비된 양측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열차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한다. 단, 별도 협의가 있을 때는 지정된 차량을 사용 할 수 있다.

②자기측 구간에서 운행되는 상대측 차량으로 자기측 화물운송은 할 수 없으며, 상대측으로 운송 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빈차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상대측 차량의 체류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운용일수는 화차는 7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③항의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예정 1일전까지 그 사유 및 차량의 현재위치, 복구예정일 등을 상대측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환기일이 지난 차량은 반환기일까지의 지연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지연료는 운임과 연계하여 분기별 분계역장회의에서 정산한다.

⑤상대측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차량에 대한 현재의 위치 및 차량상태를 파악하여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차량의 유지보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측에서 책임진다. 운행열차의 운용경비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불량 차량의 위탁검수비 등 따로 정한 수리비용은 운임에 연계하여 정산토록 한다.

⑦남측 차량의 차호 인식은 현재 남측에서 운용하고 있는 차량번호 앞에 'S' 표기와 철도마크(표지)로서 구분한다.

제32조(인도인수 절차와 방법)① 쌍방의 열차운행에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그 조립품이 완비되어 정상상태이어야 하며, 쌍방간 차량인도인수 기술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쌍방은 <별표 1>의 철도차량 인도인수서를 4부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2부씩 서로 교환한다.

1. 인도인수서에는 차량상태, 불량차 내역, 당일 누계 차량 인도인수량, 연간누계 인도인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쌍방은 인도인수 차량수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③쌍방은 차량 인도인수시 불량차를 인도할 수 없으며, 인수소속은 불량차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④인수거부 불량차는 인도측에서 수리 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보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소속의 과실 또는 부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인수차량의 불량개소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차량을 유치하고 “불량차량 유치조서” <별표 2>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고, 쌍방 열차운행 사무소장이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협의한다. 이 경우 차량은 인수가 안된 것으로 보며, 인도소속의 책임으로 협의되면 수리 또는 위탁수리를 의뢰한다.

⑥인수거부 불량차 중 인도소속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은 차량이 소속된 인수소속에 위탁수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리의뢰서” <별표 3> 4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2부씩 갖는다. 위탁수리 시간은 4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9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⑦물건을 실은 차량이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경미한 불량인 경우 “불량차량등록부” <별표 4>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차량과 함께 인도하고, 인수할 때 기재 된 불량 개소는 수리 없이 인수한다.

⑧쌍방은 차량인도시 적재상태가 불량하여 인수 거부된 차량에 대하여는 적재상태를 재정비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⑨차량의 인도는 상대방측 분계역에서 하고, 인수는 자기측 분계역에서 한다.

⑩쌍방은 차량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각각 4명의 인도인수 요원(검수요원)을 상대방측 분계역에 파견한다.

⑪인도인수는 쌍방의 차량검수 책임자간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임받은 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⑫쌍방은 상대방측에 상주하는 자기측 인도인수요원의 명단을 매월단위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승인하여야 한다.

⑬인도인수를 위해 상대방측 분계역으로 이동하는 인도요원은 당일 최초 운행열차 및 최종 운행열차에 승차하여 상대방측 분계역으로 이동 및 자기측 분계역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검수 및 기술지원)① 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방측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보수품을 요구할 경우에 상대방측은 보수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리완료 후 보수내역 및 차량상태를 상대방측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부품은 당해 차량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②자기측 구간에서 운행중인 상대방측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측은 필요인원 파견 및 장비를 제공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고, 자기측은 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쌍방간 차량운용 전에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요원의 실무교육은 쌍방이 지정하는 정비소속에서 시행하고, 인원 및 기간은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4조(검수시설 설치)①쌍방은 자기측 분계역에 차량 인도인수요원의 사무공간 및 차량정비용 장비의 설치 등 필요 시설물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설치시설물은 자기측 부담으로 하고, 인도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장비가동에 사용되는 전기는 상대방측이 공급한다.

②차량 정비용 장비는 <별표 5>과 같으며, 추가장비 설치시는 쌍방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사고처리 · 손해배상책임 · 편의보장 및 활동

제 1 절 사고처리

제35조(사고의 구분 및 종별)①“사고”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된 철도안전사고, 열차운행선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일반안전사고로 구분한다. 단, 사고보상 및 책임부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철도사고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열차사고

- 가. 열차충돌 : 열차가 다른 열차 또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나. 열차탈선 : 열차가 탈선한 사고
- 다. 열차화재 :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열차운행이 중단된 사고
- 라. 열차전복 : 차량이 수직면에서 지면으로 45도이상 넘어지거나 자체와 대차가 서로 분리되어 그 중 어느 하나가 자갈표면 밖으로 나간 사고
- 마. 열차분리 : 열차가 운행중에 열차가 서로 분리되는 사고
- 바. 열차지연 :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차가 운전시분보다 11분 이상 늦은 사고

2. 건널목사고 :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과 충돌 또는 접촉한 사고

3. 사상사고 :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36조(사고보고 및 조사)①정거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차적으로 분계역장이 대응하고, 정거장외에서 발생시에는 기관사 또는 사고현장 발견자가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 1. 안전사고 경위 및 처리상황
- 2.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망원인
- 3. 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부상정도, 입원내용

4. 차량의 파손 등 피해정도

5. 물적피해 상황 등

②분계역장은 신속히 사고내용을 조사토록 하고 필요시 상대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정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정밀 조사토록 할 수 있다.

③분계역장은 사고대책 수습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보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상자 조치)①역구내 외에서 사상자 발생(상대측 직원)시에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 사망자 발생시는 사고현장 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 밖으로 안치하여야 한다.

②열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장은 사상자수, 부상정도, 사상자의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사고지역에 가까운 분계역장에게 보고하고, 쌍방은 도움 요청을 받은 즉시 사상자 구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사고처리 후 책임판정을 위하여 “사상사고처리보고서”〈별표 6〉를 작성하여 분계역장이 보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부상자가 원할 경우 자기측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⑤사망자에 대한 시체의 인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시체를 검시한 후 시체는 소지품과 함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신속히 인도한다.
2.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측과의 동의하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할 수 있다.

제38조(사고차량 처리)①상대측 차량이 자기측 구간에서 열차의 탈선, 전복, 추돌 등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으로 사고원인, 차량상태, 수리 가능 여부를 상대측 철도직원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파손 차량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 수선을 의뢰할 때는 “위탁수리 의뢰서”〈별표 4〉를 4부 작성하여 2부씩 보관하고, 수리비용은 쌍방이 협의한다.

③자기측 구간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대측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한 후 차량이 소속된 철도에서 인정하면,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의 10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차량이 소속된 측에서 사고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면 차량이 소속된 측의 분계역까지 운송하고 쌍방의 인도인수 철도직원이 공동 확인하며, 사용 가능 부품이 있을 경우 재사용하는 조건으로 제작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잔존금액은 남북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차량이 소속한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복구)①분계역장은 사고복구 대책반을 구성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현장상황보고 등을 최초보고, 중간보고, 진행보고, 최종보고 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시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한다.

②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물품은 사고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와 점검 등으로 비상시 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상대측의 요구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고복구 비상자재(품목 및 수량)를 쌍방이 합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쌍방은 복구방법 및 복구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손해배상책임

제40조(배상금 지급의 보증)①쌍방의 정부당국은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급보증을 한다.

②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 또는 제3국의 보험회사의 현장조사 요구시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배상의 면제)쌍방의 철도당국은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2조(배상금 지급방법)①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미달러 또는 유로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배상금은 상대측 분계역장 입회하에 수령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인적피해 손해배상 산정은 쌍방이 인정한 보험회사의 배상기준에 따른다.

제44조(물적피해 배상범위)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상한다.

1. 물건이 멸실 또는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 가액
2. 훼손된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제45조(화물의 배상)①쌍방은 철도측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화물의 멸실, 훼손, 부패 혹은 기타 원인에 의한 질량저하로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배상액 한도는 남북이 합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송장에 화물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장 기재가격을 근거로 하여 배상한다.

제46조(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액)화물이 운송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운송기한을 초과한 철도측은 운송비용과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수화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연료를 지불한다.

1.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6%
2.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1/10 이상이거나 2/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2%

3.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2/10 이상이거나 3/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18%
4.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3/10 이상이거나 4/10 미만인 경우 : 운송비의 24%
5. 초과일수가 전체 운송기한의 4/10 이상인 경우 : 운송비의 30%

제47조(화물피해 배상청구)①송화인과 수화인은 운송계약을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②배상청구 시 송화인은 출발역에, 수화인은 도착역에 배상청구신청서와 배상청구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제출받은 철도측은 배상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배상청구를 심의하여, 배상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였다면 배상청구인에게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④배상청구인이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절 편의보장

제48조(편의보장의 대상)쌍방이 편의를 보장하여야 할 대상은 상대측 대상자(이하 '통행자' 라함)와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이다.

1. 철도직원
2. 통행차량의 기관사 및 승무원
3. 화물수송에 참여하는 외국인

제49조(편의보장)①쌍방은 통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보장을 하여야 한다.

1. 쌍방은 통행자의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쌍방은 통행자가 운행구간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며 위

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법칙금을 부과하거나 상대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쌍방은 통행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②법질서를 위반하고 자기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상대측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법질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③쌍방은 통행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④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측과 해당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50조(환경보존 대책)①열차가 운행하게 될 남북관리구역은 50여년 동안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이고, 세계적으로 보존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쌍방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철도운행으로 인한 생태계변화 등을 쌍방의 관계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2년 단위로 남북이 합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③본 지역에 선로 및 구조물의 신설 또는 개량과 노선변경 등을 시행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를 시행하여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④보존가치가 있는 희귀생물, 멸종 동식물, 곤충, 자연습지, 해안사구 등에 대한 자료는 상호 연구결과 등을 교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세운다.

제51조(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부록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운영세칙' 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속서의 개정)본 부속서는 쌍방이 합의하에 내용을 개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53조(부속서의 발효)본 부속서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한 후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판문역에서의 화물취급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의한다.

2. 제46조에 정한 화물운송기한 불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은 판문역의 화물취급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 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 측 단 장 박 정 성

〈 부 록 1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세칙

1. 총칙

본 세칙은 부속서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2. 회의소집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 소집은 주최하는 측에서 회의개최 1개월전에 회의날짜, 회의장소, 토의의제 등을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문을 받은 측은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연락방식과 수단

공동위원회 회의 등 관련 업무연락은 쌍방 분계역에 주재하는 열차운행사무소 소장이 전화 또는 팩스, 공식접촉에 의한 서면 전달방식으로 한다.

4. 기타사항

본 운영세칙은 쌍방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부 록 2 〉

열차무선전화기 호출방법

1. 열차무선전화기 호출방법

가. 역과 열차간 통화시

- ○○열차, ○○열차 ○○역 이상(○○역에서 ○○열차를 호출)
- ○○열차 이상(○○열차에서 응답)
- 운행지점이 어디입니까?, ○○Km지점 통과중입니다.(운전정보 등을 상호교환)
- 잘 알았습니다, 안전운행바랍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나. 휴대무전기 상호간

- 철도휴대 ○○호, 철도휴대 ○○호 철도휴대 ○○호 이상(철도휴대 ○○호에서 철도휴대 ○○호를 호출)
- 철도휴대 ○○호 이상(철도휴대 ○○호에서 응답)
- ○○Km지점에 ○○이 이상이 있으니 신속히 와주십시오!(선로변 작업정보 등을 교환)
- 잘 알았습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다. 열차내승무원 상호간

- ○○열차 ○○○, ○○열차 ○○○, ○○열차 승무원 이상(○○열차 승무원이 호출)
- ○○열차 ○○○ 이상 (○○열차 ○○○이 응답)
- ○○열차 ○○호실로 구급약을 가지고 급히 와주십시오!(열차내 승무원정보 등을 교환)
- 잘 알았습니다. 통화끝(무선통화 종료시)

〈 부록 3 〉

본 부속서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동일한 뜻으로 해석한다.

《남 측》

부속서
운송
동력차
폐색구간
유효장
퇴행운전
추진운전
열차안전사고
수정·보완(4조2항)
따라야 한다(4조2항)
운전시각
현시
송화인
수화인
컨테이너
계중기
송장
화주
시점
구배표
건널목
관계도서
지급(29조5항)
취급버튼(30조3항)
정산
처리상황
별표
폐차
감안하여(37조2항)
인력
협조

《북 측》

부속합의서
수송
기관차
길차지구간
쓸길이
뒷걸음운전
밀기운전
열차운전사고
작업과정
복종한다.
열차다님표
표시
짐보내는 사람
짐받는 사람
짐함
차판저울
짐부침표
짐임자
순간
물매표
건넘길
관련문서
휴대
취급단추
청산
처리정형
붙임표
폐기
장악하여
노력
방조

〈별표 1〉

철도차량 인도인수서

날 자 : 200 . . .

열차번호 : 인도자 : 측 (인)

인도인수역 : 역 인수자 : 측 (인)

차 호	연결위치	차 량 상 태			실은차 빈차	기타 특기사항 (부속품 없는 것)
		주행부	연결부	차체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고사항						

〈 별표 2 〉

불량차량유치조사서

분계역에서 인수 거부한 차량에 대하여 작성함

발행번호 : 제 호

열차번호 : 제 열차

도착일자 : 2007.

순서	차 호	차 종	실은차 빈차	인수거부 사유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 별표 3 〉

위탁수리의뢰서

차량인도인수시 불량차 및 파손차량을 협의한 가격에 의하여 (남, 북)측 철도로부터 (남, 북)측 철도에 수리를 의뢰함(인도인수서 사본첨부)

발행번호 : 제200 호

순서	차 호	차 종	교환부품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 별표 4 >

불량차량 등록부

인도역 : (남, 북)측 철도 역

발행번호 : 제200 호(인도인수서 제 호에 첨부)

번호	차 호	차 종	불량상태	운행주의사항	비 고

인도자 : 측 (인)

인수자 : 측 (인)

〈 별표 5 〉

차량정비용설비 설치현황

설비명	규격	수량	비고
	H형	1	
공기압축기	9kgf/cm ²	1	
공기탱크	3m ³	1	
전기용접기	17KW	1	
탁상드릴링머신	Φ13	1	
산소용접기		1	
관나사절삭기		1	
자끼	300KN	4	

< 별표 6 >

사상사고처리보고서

200 년 월 일 역장

구분		뛰어타고 내리기	도중 추락	타박상	선로 보행	운전 사고	계단 실족	열차와 접촉	객차내	기타	계	귀책 사유
여객	사망	귀책										
		면책										
	중상	귀책										
		면책										
	경상	귀책										
면책												
계												
공중	사망	귀책										
		면책										
	중상	귀책										
		면책										
	경상	귀책										
면책												
계												
합계	사망											
	중상											
	경상											
	계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열차운행 확대에 따라 수정 보충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위원 명단을 11월중에 교환하고,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에 따라 남북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회의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하고,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측은 판문역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열차운행을 위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자재·장비 등을 본 합의서<부록1>과 같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재·장비 등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화물열차운행에 따른 행사를 12월 11일 판문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와 방법을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시 제공하기로 했던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이번 합의에 따라〈부록 2〉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개성공단과 남측지역간 화물수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은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장과 개성공단간 화물수송을 처리하며, 판문역 임시화물처리시설 공사를 화물열차운행 전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신호·통신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화물열차 개통전까지 계속 협의 추진하면서,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화물운송을 위해 구 봉동역 화물역사 및 부대시설과 철도 건설에 협력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협의 확정 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화물역사 등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공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화물역사 등의 건설을 위한 기자재 품목 및 수량은 〈남북 철도·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첨부1〉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을 점차 확대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간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현지조사는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개략조사를 진행하며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문서교환 등의 방법으로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1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형석	북측 단장 박정성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자수송의 활성화를 위해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 하며, 2008년 중 공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안으로 완공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조사사업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본적인 현지조사 인원을 쌍방 각기 20명 내외로 하며, 조사 구간은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구간으로하기로 하였다.

① 남측은 조사인원의 출입, 조사장비 반입,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지조사 착수 7일전까지 문서로 북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조사 대상은 교량, 터널과 암거, 배수관을 비롯한 소구조물, 옹벽구조물, 도로노반, 안전시설 및 입출구 등으로 하며, 전반적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③ 북측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남측에 책임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④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설비운반용 차량과 측량, 측정 설비 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북측은 남측인원의 왕래 및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인원이나 차량의 사고 발생시 긴급 구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긴급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하였다.

⑥ 남측의 현지조사 인원들은 조사과정에 북측의 안내에 따르며, 현지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에 개성에서 개최하고, 현지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범위와 추진 방향 및 공동 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29일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북남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 형 석	북측 단 장 강 수 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남과 북(이하 '쌍방' 이라함)은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경의선 문산 - 봉동 사이의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의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회의에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명단은 본 회의록 부록 1에 첨부함)

1. 회의 의제

1)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 편성수, 운행시간 문제

2)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작업 절차

3)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4)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의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 환율문제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등 일정문제

6) 기타 사항

2. 주요 합의사항

1) 화물열차 운행 횟수, 열차편성수, 운행시간문제

- 쌍방은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당면한 화물열차 운행은 하루 1회 왕복으로 하며, 편성량은 기관차 1대, 화차 10대, 차장차 1대(기관차 포함 총12량)를 기본으로 하되, 화물수송량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는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하여 9시 30분에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판문역에서 남측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14시로 한다.

* 비무장지대에서의 열차운행은 쌍방 군사당국의 합의에 따른다.

2)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직원 작업절차

○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절차 및 열차운행 사무소 직원들의 공동작업 절차는 본 회의록 부록2로 첨부한다.

3)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 문제

○ 경의선 분계역 사이에서의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화물장표류는 본 회의록 부록3으로 하며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한다.

4) 화물취급과 관련한 운임 문제

○ 경의선 도라산역 - 판문역 사이에서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운임 및 요금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 및 요금체계에 따르며, 적용 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달러로 하되, 환율, 운임적용방법, 결제 및 지불방법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5)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문제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서면 또는 연락 대표들의 접촉을 통하여 결정한다.

6) 기타 사항

① 경의선 문산 ~ 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남측은 12월 10일 까지 판문역 임시 화물 처리장을 건설하며 북측과 합의한 대로 마감공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자재 비품을 12월 7일까지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을 12월 8일 이전까지 북측에서 서면, 또는 실무접촉을 통하여 남측에 통보한다.

③ 남과 북은 분계역간 신호·통신 설비의 정상운영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시험통화를 2007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발생한 사고현장을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⑤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운전취급규정, 화물취급규정, 선로보수정비규정 등의 해당하는 내용을 최대한 교환한다.

⑥ 본 회의록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사업들과 관련된 문제, 열차운행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실무 문제들은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소장들을 통하여 협의·처리한다.

2007년 12월 1일

남 북 철 도 운 영 공 동 위 원 회 북 남 철 도 운 영 공 동 위 원 회
남 측 대 표 김 호 성 북 측 대 표 김 철 호

〈부록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참가자 명단

남 측	북 측
김 호 성 대표	김 철 호 대표
박 영 수 위원	황 삼 린 위원
김 난 영 위원	석 영 철 위원
전 철 중 위원	림 영 두 위원
유 학 곤 위원	김 만 선 위원
강 승 룡 위원	강 순 덕 위원
변 현 진 위원	장 철 수 위원
윤 양 수 위원	김 영 호 위원
임 재 익 위원	리 룡 국 위원
임 동 춘 위원	김 철 준 위원
박 대 희 위원	

〈 부 록 2 〉

판문열차운행사무소와 판문역에서 화물열차 취급절차

1. 남북 철도분계역 운행사무소에서의 열차 취급 절차

남북 경의선(도라산역~판문역)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운행사무소의 열차취급절차가 남북철도 상호간 공통적인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남북 분계역 열차운행사무소에서 적용되는 열차취급 절차는 도라산역과 판문역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열차 취급 절차

1) 판문역 도착절차

①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소장은 남측 도라산역 열차운행 사무소 소장(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통보를 오전 8시 이전에 받고 판문역 역장실에서 남측 도라산역 역장과의 오전 8시 일일 열차 운행계획통보 내용을 청취한 다음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에게 일일 열차운행 관계를 알려 주고 사업을 계획한다.

②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부소장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충적인 대책을 세우며 특히 열차의 차량검사 준비사업을 직접 계획한다.

③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책임직원은 일간 근무계획을 작성하여 소장의 비준을 받은 다음 화물원, 검사원, 사고처리원에게 작업지시를 한다.

* 도착열차의 세관통검 검사가 끝나면 남측 열차승무원은 문서(화물운송장 화물인계서 6부, 차량인계서 4부, 전신, 전보 등)을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세관 통검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남측 열차승무원들과 열차는 판문역 구내 처음 도착한 선에서 움직일 수 없다)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남측 열차승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들에 서명하고 날짜 확인도장을 찍어 판문열차 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에게 넘겨준다.

* 판문 열차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은 남측으로부터 문서를 넘겨 받은 다음 북측 직원들(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에게 전달하며, 그에따라 북측 직원들은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화물원, 검차원 등)들과 공동입회하에 판문역 역화물원, 역검차원들과 함께 화물과 차량에 대하여 문서와 현물, 현차를 대조 검사한다.

도착 열차의 화물 및 차량에 대한 검사는 열차승무원차로부터 기관차 방향으로 가면서 진행한다.

④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사고처리원은 화물의 파손 및 훼손, 차량불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남측 해당 직원과 판문역 역화물원, 또는 판문역 역검차원과 함께 공동입회 확인을 한 다음 조사결과 4부를 작성하며 그 사실을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북측 책임직원에게 보고하여 부소장, 또는 소장에게 알린 다음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당일 책임자 또는 담당자 연대서명을 하고 남측에 2부를 넘겨준다.

⑤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은 화물영업상태에 대한 검사를 품종, 수량, 중량 등 열차 취급 절차대로 진행하며 화물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하여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에게 알린 다음 결론을 받아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것은 열차운행 시간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것은 인수 거절로 처리 하도록 제기하며 정상일 때에는 화물인계서에 서명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3부를 남측 해당직원에게 넘겨준다.

⑥ 북측 판문 열차운행사무소 검차원은 차량확인검사를 차량의 국적, 차호, 기호 등 화차에 표기되어 있는것이 차량인계서와 맞는지, 차량이 짐을 수송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차량기술 규정과 운영조건에 맞지않는 미비한 것이 발생되면 부소장(또는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열차 운행 시간내에 조치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거절내용을 차량 인계서에 밝혀 확인도장을 찍도록 한다음 2부를 남측 해당직원에게 넘겨준다.

* 한개 열차 도착취급이 끝나면 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은 매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작업사실을 해당 대장과 작업 일지에 정리하고 책임직원에게 보고하며 책임직원은 역운전에 작업이 끝났음을 통보한다.

(역운전에서 통보하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붉은기 또는 붉은 표시 등을 철수하기 전에는 도착한 남측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을 할 수 없다.)

2) 출발열차

①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소장(부재시 부소장)은 판문역장으로 부터 출발열차에 대한 예보를 받은 다음 북측 열차운행 사무소 직원들에게 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한다.

②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부소장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취하며 특히 열차(차량)검사를 책임적으로 수행한다.

③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책임직원은 열차출발검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역운전원으로부터 열차 출발 50분전에 열차 조성표 2부를 받아 1부는 남측 해당 직원에게 넘겨주고 1부는 보관하며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 검차원, 사고처리원에게 작업과정별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 준비상태를 점검 한다.

④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은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과 함께 공동 입회하여 출발 열차화물에 대한 품종별, 차수, 톤수 등을 열차취급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⑤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검차원은 북측 부소장(또는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직원과 공동입회하여 화차의 국적, 차호, 기호 등 화차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차량 인계서와 맞는 지, 화차가 화물을 수송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북측 부소장(또는 책임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 열차운행 시간내에 조치 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하고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해당 절차대로 처리한다.

⑥ 북측 판문역 열차운행사무소 사고처리원은 출발열차에 대한 화물 및 차량검사에서 화물 파손 및 훼손, 차량불량이 발생되면 북측 책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화물원 또는 검차원, 판문역 역화물원 또는 검차원과 함께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해당 직원들과 공동 입회

하여 자체로 수리 및 조치할수 없는것은 화물인수 거절, 차량기술 불량차량 유치조서(차량기술불량조서) 4부를 작성하여 북측 부소장, 책임직원, 사고처리원이, 남측에서는 판문역 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당일 책임자와 담당직원이 연대 서명한 다음 2부를 남측 해당 직원에게 넘겨준다.

* 출발열차에 대한 화물 및 차량검사가 완료되면 남측열차승무원은 화물운송장을 판문역주재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에게 주며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은 북측 운행사무소 책임직원에게 넘겨준다.

책임직원은 화물운송장에 근거하여 화물인계서 6부, 차량인계서 4부를 작성하여 서명후 확인도장을 찍고 화물인계서 3부, 차량인계서 2부를 남측에 넘겨주며 넘겨줄 때 날짜 확인도장을 찍고 서명한 후 시간을 기록한다. 이때의 시간을 인수인계 시간으로 본다.

책임직원은 출발열차 조성이 끝나면 역운전에 작업 종료를 통보한다.

열차 출발후 화물원은 화물인계서를 제출하고 품명에 따르는 차수, 톤수 합계를 해당 기록철에 기록한다.

검차원은 불량개소와 수리현황, 차종에 따라 영·공차별로 종합하여 열차별 대장에 기록한다.

2.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열차취급방식

1) 판문역으로 열차 출발시

- 도라산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전화기를 들고)
〈제 000열차를 보낼 수 있습니까?〉
- 판문역 : 열차를 받을수 있는 준비가 되면
〈000열차 보내세요〉
- 도라산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승인요구 단추를 누른다.
- 판문역 : 승인요구 신호가 온것을 확인하고 폐색 단추를 누른다.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폐색〉
- 판문역 : 〈000열차 0시0분 폐색〉복창

도라산역은 열차를 출발시킨후 3분안에 판문역으로 열차가 출발했음을 통보를 한다.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발차>
 - 판문역 : <000열차 0시0분 00량 발차> 복창
-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하면
- 판문역 : 도착단추를 누른다
- 그리고 <제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복창

2) 판문역에서 열차 출발시

- 판문역 : (운전 취급자는 폐색 전화기를 들고)
<000열차 보낼수 있습니까 ?>
 - 도라산역 : 열차를 받을수 있을때
<000열차 보내시오>
 - 판문역 : 폐색 승인요구 단추를 누른다
 - 도라산역 : 폐색 승인요구가 온것을 확인하고 폐색 승인 단추를 누른다.
 - 판문역 : 폐색 승인이 오면 그를 확인하고
<000열차 0시 0분 폐색>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폐색> 복창
- 판문역은 열차를 출발시킨후 3분내에 도라산역으로 열차 출발을 통보한다.
- 판문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출발>
 - 도라산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출발>라고 복창
- 열차가 도라산역에 도착하면
- 도라산역 : 도착단추를 누르고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 판문역 : <000열차 0시 0분 00량 도착> 복창

3. 판문역에 도착한 남측 화물열차의 입환

1) 판문역으로부터 출발신호를 받은 도라산역에서는 제000 열차를 출발시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제정된 열차운행 시속으로 판문역 5번선에 도착시킨다.

*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열차운행은 쌍방 군사당국 합의에 따른다.

2) 판문역 5번선에 도착한 남측 열차편성에 대한 통행검사를 한후 남측 기관차를 열차편성에서 떼어 입환하여 4번선 남쪽에 세운다.

3) 판문역 6번선에 정차하고 있던 북측기관차를 입환하여 5번선에 있는 화물 열차편성에 연결하여 1번 선에 차입한다.

4) 화물열차편성에 있는 컨테이너와 원자재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남측 상하차 설비로 남측자동차에 옮겨신고 개성공업지구로 떠나며 이미 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나온 컨테이너들과 생산물들은 화물열차 편성에 옮겨 싣는다.

남측에서 들어온 컨테이너와 원자재는 판문역에서 상차하여 개성공업 지구안에서 세관검사를 진행하며 판문역으로 나오는 컨테이너와 생산물들에 대한 세관검사는 개성공업지구안에서 사전에 한다.

5) 판문역 1번선에 있는 열차편성을 5번선으로 보낸 후 북측 기관차를 분리하여 6번선으로 전선하고 4번선에 있는 남측 기관차를 5번선에 있는 화차편성에 연결 후 열차 취급절차에 따라 출발한다.

* 12월 11일 당일 행사시에 1번선에서 열차를 출발시킨다.

4. 판문역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인원 및 열차승무원들의 통행, 통신 절차와 방법

1)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통행절차와 방법

①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인원은 분기 및 월 통행계획을 인원(사진포함)과 함께 문서로 통보한다.

②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직원들의 통행구간은 남측을 경유하여 북측 통행세관검사소에서 통행검사를 한 다음 자기측 열차 혹은 육로를 당일에 한하여 출퇴근을 할수있다.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자기측 숙소에서 숙식할 수 있다.

③ 통행시간은 매일 09:00 부터 13:00 로 한다.

④ 영접안내

영접안내는 통행세관검사소(CIQ)를 통하여 북측에 들어오고 남측에 나

갈 때와 개성공업지구~열차운행사무소 구간, 동석식사와 참관을 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2) 남측 열차승무원들의 통행절차와 방법

① 남측은 열차승무원들의 북측 지역에 대한 통행계획을 1주일전(매주 월요일)에 서면(사진첨부)으로 열차운행 사무소를 통하여 통보한다.

* 남측 열차승무원들의 자동차보장은 남측열차운행사무소가 한다.

② 남측 열차승무원들의 통행구간은 판문역-개성공업지구로 하며 식사와 참관을 요구할 경우 개성 시내까지 할수 있다.

③ 열차승무원들의 통행시간은 8시~18시로 한다.

④ 영접안내

판문역~개성공업지구 구간에서 진행하며 식사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개성시내구간에서 진행한다.

3) 열차운행사무소 통신보장

① 판문역 남측 열차운행사무소

남북 철도전화 1대, 남북 철도팩스 1대.

② 판문역 북측 열차운행사무소

남북 철도전화 1대, 남북 철도팩스 1대, 북측 시내전화 1대

* 남북이 합의하여 전화번호를 상호 교환한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 공장 현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 북 경 제 협 력 공 동 위 원 회	북 남 경 제 협 력 공 동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 오 규	내 각 부 총 리 전 승 훈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올해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완료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하여 금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단 규모는 20명 이내로 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제반 부지조건을 조사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은 부지, 인력, 기초자료와 남측 인원들의 현장방문 및 설비, 물자의 반입 등을 위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측은 공장건설을 위한 기술과 설비,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

필요시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저장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물자 등에 대한 대책을 쌍방이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건설규모와 건설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유전자원 수집·보존·이용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기술협의를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동식물의 검역체계를 확립하며 동식물방역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나가면서 중요 검역소의 검사·소독장비의 현대화, 가축질병의 예방·진단·치료약품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 중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수산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중에 북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남측 어선이 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대상수역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기타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생산 및 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에 개성에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날짜와 장소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5일

남	북	농	수	산	협	력	분	과	위	원	회	북	남	농	수	산	협	력	분	과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박		현		출	리		만		성			리		만		성							

남북농업협력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에 필요한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총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연산 1천톤(상시사육두수 5,000두)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장비 등의 품목 및 수량, 수송경로 등 세부 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인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측의 「농업성 축산관리국」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차관 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한다.

수송비용과 관련하여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한다.

그외 북측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4. 사업기간(2년) 내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는 남측이 보장하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금액에 포함시킨다.

5. 북측은 남측인원들의 북측지역내 체류시 통신·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6.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18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배광복 북측 단장 전호현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인원과 차량들이 연간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도로를 통하여 개성공단에 출입하려는 경우 인원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일요일 통행시에는 48시간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쌍방 주요 명절, 기념일의 통행은 쌍방이 합의하여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통행일의 19시까지 상대방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출입계획 양식과 통보 절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력, 자재, 장비 등의 보장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세칙」을 해당 기관간 상호 협의·확정하여 발효시키는데 따라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2008년내 개성공단 통신센터의 완공과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통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 방식을 통해 간소화해 나가기로 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부지와 규모 등은 해당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측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남과 북은 1단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 근로자 숙소는 2008년 상반기중에 우선 1만 5천여명 규모로 착공하고, 남북간 협의를 거쳐 숙소를 추가로 건설해 나가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출퇴근도로로 활용하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를 2008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해당 실무협의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측위원장	북측위원장
최보선	박철수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북측 근로자 숙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구역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를 15,000명 수용능력으로 먼저 건설하며,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를 2008년 상반기중에 착공하여 건설하기로 한다.

① 숙소건설 부지는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구역과 인접한 개성시 동창리의 일부로 한다.

② 숙소(기반시설 포함)의 설계는 쌍방이 합의하여 완성하며, 시공과 감리는 남측이 지정한 기업이 담당한다.

③ 북측은 숙소건설에 필요한 건설인력과 구입가능한 자재를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한다.

④ 숙소건설 부지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는 2008년 초에 시작한다.

3. 남과 북은 북측 근로자들의 숙소건설에 적극 협력한다.

① 북측은 숙소건설부지의 무상보장과 숙소건물에 대한 세금의 면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에 따른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편리한 출입·체류, 숙소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반출입을 원만히 보장한다.

② 남측은 숙소건설이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장비를 보장하기로 한다.

4. 소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권과 숙소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지원하는 남측의 단체가 가지며,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은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규에 따른다.

5. 숙소건물 및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와 전력, 난방을 비롯한 생활조건의 안정적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숙소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단체가 징수한다.

① 숙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력을 이용하고, 용수와 통신은 북측이 맡아 보장한다.

② 숙소의 관리운영비용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따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숙소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기측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측위원장
최보선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
박철수

남북보건의료 ·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 ·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 · 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전문가 교류 등 그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을 착수하기로 하고 규모 및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방문 기간 중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전염병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를 제공하며, 남북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들과 관련한 실태조사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북측 제약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료의약품을 제공하며, 설비 현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하며, 사업기간 중 필요한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환경보호 · 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

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8년 2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3/4분기안으로 평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2008년 4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	위	원	회	북남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문		창		진	리		봉		훈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부 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문제

나.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문제

라.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문제

마.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완비하는 문제 등

②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08년 1월 31일경에 실시하기로 하고 북측은 자료제공과 시설 방문 등 제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조사단의 방문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해주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나. 해주항 개발을 해주경제특구 개발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다. 현존 부두 개보수와 항로확보, 단계별 부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는 문제 등

제3조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서해공동어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확정하는 문제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

③ 공동어로구역을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

④ 서해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수산분야 기술교류를 비롯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 등

제4조 남과 북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한강하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

②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며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③ 한강하구 시범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적인 공동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④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제5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제6조 수정 및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9일

서 해 평 화 협 력 특 별 지 대
추 진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 종 천

서 해 평 화 협 력 특 별 지 대
추 진 위 원 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토 환 경 보 호 상
박 송 남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1월 30일

개 성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8년 2월 5일 개성에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008년 2월 5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접촉	남북당국간 접촉
남측 수석대표	북측 단장
정동문	강용철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13일

개 성

□ 남북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하며, 면회소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10일

금 강 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유해발굴 우선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유해남북공동발굴단”(이하 남북공동발굴단)을 구성하여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10일

개 성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2차례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100명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한다.

영상편지 교환대상은 이미 상봉한 바 있는 이산가족들로 하며 그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20가족씩으로 한다.

쌍방은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적십자단체들이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7. 이 합의문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1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적 십 자 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중앙위원회
사 무 총 장 장 석 준	부 위 원 장 최 성 익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을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남	측
수	석	대	표	장	석	준	단	장	최	성	익	수	석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 인력 및 기술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개 성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응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차기접촉은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개 성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200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8년 2월 4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으로 하며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으로 한다.

2. 남과 북의 응원단은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하며 함께 응원하는 경기 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의·결정한다.

4.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며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한다.

5. 남과 북은 남북응원단이 이용할 열차 및 그 편성 등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협 의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008년 2월 4일

남	북	실	무	접	촉	북	남	실	무	접	촉	
남	측		대	표	단	북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우	상	일	단	장		황	철

남 북 대 화

제73호('07.1~'08.2)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 2-28
☎ (02) 2076-1043 Fax : 2076-1230
<http://dialogue.unikorea.go.kr>

인쇄처 양동문화사 ☎ (02) 2272-1767
인쇄일 2008년 2월 19일
발행일 2008년 2월 21일

비매품